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2012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2_{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발 간 사

2012년 한 해 동안의 언론중재위원회 활동내역과 성과를 담은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12년에 2,401건의 조정 및 59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하였고 259건의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2010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연간 처리 건수가 2,000건을 넘었으며, 조정성공률 64.1%, 본안성공률 75.7%, 신청효율은 71.5%를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이같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과는 나날이 신장되는 국민의 권리의식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위원회는 보다 더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2012년도에 다음의 몇 가지 중점 과제를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첫째는 피해구제보도문의 개선입니다. 위원회는 2011년에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피해구제보도문 개선방안을 2012년부터 심리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바로잡습니다”,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지던 관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한 문제된 보도가 게재된 지면이나 방송된 뉴스시간에 정정 등의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였으며, 정정 등 보도문의 말미에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임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손해배상 사건 전담중재부의 신설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손해배상 전담중재부(서울제8중재부)를 신설하여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위자료 산정을 위해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그 결과물로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를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활동 내용을 담아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좀 더 정확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2012년에 처리된 사건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4건을 엄선하여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전체사건 목록을 별도로 실어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2011년에 이어 올해도 e-book 형태로 발간하여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며,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언론의 현황 및 언론분쟁의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에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5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차 례

제1부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15
제2부 주요 언론조정·중재사례	69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	신청인의 아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회피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박 원 순 對 (주)조선방송 (2012서울조정27 정정청구)	70
사례 2	신청인이 주유소협회의 국회의원 불법후원 관련 내부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이○○ 對 (주)제이티비씨 (2012서울조정42·43 정정·손배청구)	74
사례 3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단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對 부산일보 주식회사 (2012부산조정11 반론청구)	78
사례 4	탈북자 복송을 반대하는 성명서에 신청인 단체 회장의 이름이 누락되어 피해를 입었다.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對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2012서울조정239 정정청구)	115
사례 5	신청인 회사가 전국의 지사와 전화국 등 부동산을 자신이 최대주주인	

부동산개발 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려쓰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주식회사 ○○○ 對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2012서울조정241·242 정정·반론청구) 119

사례 6

신청인이 철거업체 대표인 고향 후배의 청탁을 받고 뉴타운 관련 비리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권○○ 對 한국방송공사

(2012서울조정262·263·264 정정·반론·손배청구) 126

사례 7

대전 지역 일부 경찰과 지역 내 불법 오락실이 유착 관계에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對 조○○(대전시티저널 발행인)

(2012대전조정2, 2012대전조정3(병합) 각 정정청구) 129

사례 8

‘신재생에너지업체의 법정관리인인 신청인이 대주주 협박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포탈하였다’는 소액주주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이○○ 對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2012서울조정350·351 정정·손배청구) 134

사례 9

신청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의 보안이 ‘메신저피싱’에 뚫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주)○○○ 對 1.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2.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2012서울조정556, 2012서울조정557(병합) 각 정정청구) 138

사례 10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한 음식을 중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허○○ 對 1. (주)제이티비씨, 2.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2012서울조정691·692, 2012서울조정693·694(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142

사례 11

신청인이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았다.

남○○ 對 주식회사 연합뉴스 (2012서울중재15 추후청구) 148

사례 12

통합진보당원인 신청인이, 5살 때부터 당원이었던 딸을 대신해 10년 동안 대리투표를 했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강○○ 對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2012서울조정756 · 757 정정 · 손배청구)	152

사례 13

KBS노사가 파업철회 합의를 하면서, ‘대통령 라디오 연설 폐지’를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방송공사 對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2012서울조정890 · 891 정정 · 손배청구) ...	155

사례 14

대부분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가를 부풀려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모 네트워크 치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협회 직원인 신청인 2.와의 전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1. (사)대한치과의사협회, 2. 최○○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2012서울조정937 · 938 반론 · 손배청구)	158

사례 15

흡연억제용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보다 해롭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회사명이 찍혀있는 전자담배를 화면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주식회사 ○○○○○○ 對 한국방송공사

(2012서울조정967 · 968 · 969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163

사례 16

신청인이 인턴사원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증권사가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제보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對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2012서울조정986 · 987, 2012서울조정988 · 989(병합) 각 정정 · 손배청구)	167

사례 17

소비자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펜션 사례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펜션 전경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채○○ 對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2012서울조정1021 · 1022, 2012서울조정1023 · 1024(병합) 각 정정 · 손배청구) ...	174

사례 18

jtbc 방송이 민주당합당 대표 경선 후보들을 취재하면서, 기자의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도둑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주)제이티비씨 對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2012서울조정1096 정정청구)	177

사례 19

신청인들이 보조금을 횡령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됐으나 보조금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며, 복직판정도 받았다.

1. 최○○, 2. 임○○ 對 한국방송공사 (2012강원조정5 · 6 정정 · 손배청구)	182

사례 20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對 (주)씨비에스아이 (2012서울조정1151, 2012서울조정1156(병합) 각 정정청구)	185
사례 21	농협영암군지부가 기탁한 장학기금이 '영암군이 예산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 그 차익으로 기탁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영암군 對 한국산업건설(주) (2012광주조정55 정정청구)	191
사례 22	신청인 회사의 택시 주차지가 초등학교로부터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운수 주식회사 對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2012서울조정1188 · 1189 정정 · 손배청구)	194
사례 23	신청인이 병원 수술장비를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對 주식회사 국제신문 (2012부산조정22, 2012부산조정23(병합) 각 손배청구)	198
사례 24	정부가 2012년 3월 체결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에 '일반철도시설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토해양부 對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2012서울조정1390 정정청구)	200
사례 25	초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다른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을 축구부 감독으로 선임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 유홍접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최○○ 對 주식회사 호남매일신문사 (2012광주조정72 · 73 정정 · 손배청구)	205
사례 26	신청인이 ○○건설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 對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2012서울중재43 정정청구)	210
사례 27	신청인 기관이 제2대 원장 취임 이후 주요보직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연구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對 주식회사 코리아메디케어 (2012서울조정1572 · 1573 정정 · 반론청구)	227

사례 28

신청인단체가 주관하는 순수한 지역축제인 봉어찜축제를 전시성 예산낭비 및
지자체장의 표심모으기 행사라고 폄하하여 피해를 입었다.

○○봉어마을 對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2012충북조정45 · 46, 2012충북조정47 · 48(병합) 각 반론 · 손해청구)	232

사례 29

신청인이 대중가요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과 관련, 신청인이 표절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피고 김 모 씨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진○○ 對 (주)스타뉴스 (2012서울조정1609 · 1610 반론 · 손해청구)	236

사례 30

학교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이 도리어 학우들에게 흥기나 하기채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일삼았으며, 신청인의 가족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송○○ 對 (주)광역매일 (2012부산조정41 · 42 · 43, 2012부산조정44 · 45 · 46 (병합) 각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246

사례 31

탤런트인 신청인이 호화 전원주택에서 직원들을 포함한 20여 명과 함께
거주하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셔틀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 對 주식회사 문화방송 (2012서울조정1685 · 1686 정정 · 손해청구)	252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사례 32

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 후보와 인사를 나누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이데일리 주식회사 (2012서울조정477, 2012서울조정478(병합) 각 손해청구)	255

사례 33

교정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1. 강○○, 2. 장○○ 對 주식회사 매일방송

(2012서울조정673·674, 2012서울조정675·676(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259

사례 34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직원인 신청인이 은행고객을 안심시키는 장면을 동의 없이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박○○ 對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2012서울조정710, 2012서울조정711(병합) 각 손배청구) 263

사례 35

무분별한 음주문화 실태를 방영하면서, 지하철에서 잠이 든 신청인을 무단으로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안○○ 對 한국방송공사 (2012서울조정976 손배청구) 268

사례 36

음악적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자녀 선발을 위한 오디션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이○○ 對 1. 주식회사 충청리뷰사, 2. 주식회사 충북인뉴스

(2012충북조정31, 2012충북조정32(병합) 각 손배청구) 270

사례 37

백화점 장기 세일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물건을 구경하는 신청인들(예비 신랑신부)의 모습을 몰래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1. 이○○, 2. 김○○ 對 주식회사 인터넷한국일보 (2012서울중재26 손배청구) 273

사례 38

알루미늄 호일의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알루미늄 호일 생산 업체의 대표인 신청인에게 제작 의도를 숨기고 취재,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신○○ 對 주식회사 매일방송

(2012서울조정1507, 2012서울조정1508(병합) 각 손배청구) 277

사례 39

신청인이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1. (주)뉴스1, 2.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2012서울조정1669, 2012서울조정1678(병합) 각 손배청구) 280

사례 40

신원 비공개를 전제로 신청인의 주택담보 대출 사례를 인터뷰 했는데, 실명과 초상을 그대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2012서울중재56, 2012서울중재57(병합) 각 손배청구) 283

제3장 성명권 침해 사례

사례 41

농협캐피탈 사칭 사기대출 관련 기사에 농협캐피탈 직원인 신청인의
광고 전단지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주식회사 경북일보 (2012대구조정8 손배청구) 287

사례 42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 혐의로 검찰이 당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인 신청인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고○○ 외 3인 對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2. 주식회사 동아닷컴
(2012서울조정1656, 2012서울조정1657(병합) 각 손배청구) 290

제4장 사생활 침해 사례

사례 43

신용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부당공개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제보를 한
신청인의 파산 사실을 함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 對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2012서울조정558 손배청구) 293

사례 44

여성 재소자인 신청인이 수감 중 출산한 자녀를 친정으로 보낸 사연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혼사실 등 사생활까지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박○○ 對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012서울조정1787 손배청구) 296

제3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사례 색인 299

제4부 주요 시정권고사례 305

제5부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전체 목록 321

제1부
언론조정 · 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조정사건 3년 연속 2,000건 상회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2,401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2011년에 비해 약 13% 증가한 것이다. 조정성공률은 64.1%, 본안성공률은 75.7%, 신청효율은 71.5%를 각각 기록했다.

인터넷매체에 대한 청구 61.8% 차지

2012년의 경우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 청구 비율은 61.8%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청구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구제보도문 개선효과 가시화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피해구제보도문 개선방안을 도출한 데 이어, ‘정정보도문 등 작성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여 2012년도에 이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정정보도 등의 제목과 내용, 게재지면이나 방송 방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면서 단순히 ‘바로잡습니다’ 또는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던 관행은 거의 사라졌으며, 조정대상보도가 게재된 지면이나 방송된 뉴스시간에 피해구제보도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단순한 편집 실수 등으로 인한 언론사 자체 정정보도와 구분하기 위해, 정정이나 반론보도의 말미에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전

[바로잡습니다]

지난달 8일 의정부지법이 고양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

유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고양시가 내린 실시계획 등 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으며,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2008. 09. 11. SBS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후



['K 전 비서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관련 정정보도]

채널A는 지난 7월 17일 프로그램에서 “저축은행 ‘뒷돈’ 받은 청와대 인사 또 있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활동을 벌여 청와대 OO실 행정관이었던 K 전 비서관이 000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 전 비서관은 000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2. 09. 03. 채널A ‘굿모닝 채널 A’ 프로그램]

손해배상 전담중재부 신설 및 운용

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적극적인 조정을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전담하는 1개 중재부(서울제8중재부)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손해배상 전담중재부는 손해배상만

단독으로 청구된 사건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에 비중이 있는 병합사건도 선별적으로 심리하며, 활발한 증거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사건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손해배상사건 조정액 평균 190만 원

위원회는 2011년 10월부터 중재위원 5인으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과물로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를 채택하였다.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는 침해법익 또는 보도매체의 규모에 따라 기준 금액을 설정한 다음, 침해의 양태나 내용,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가감하는 방식의 위자로 산정 기준이다. 위원회는 이 산정표를 2012년 2월까지 시범 적용하였고, 이후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7,400만 원이었으며,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전자조정중재시스템 품질 개선 및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의 편의 도모 및 업무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2011년 5월부터 조정신청, 각종 문서제출, 결재 등이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전자조정중재시스템을 마련, 운영해왔다. 2012년에는 전자조정중재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각종 오류를 수정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조정신청을 위한 통합시스템인 ‘언론중재 EYE-NET’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상담과정에서도 적극 안내하였으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바로가기 메뉴를 설치하는 등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접수비율이 향상(14.3%→21.9%) 되었다.

네이버, 신청건수 118건으로 가장 많아

2012년 접수·처리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에 117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보였던 다음은 98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방송매체 중에서는 KBS-1·2TV와 KBS지역네트워크를 포함해 한국방송공사가 70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기록했다. 중앙일간지 중에는 2011년에 이어 조선일보가 65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보였다.

시정권고소위원회, 자살관련 보도 등 총 259건의 시정권고 결정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총 751개 매체를 심의하여 259건의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1년의 426건에 비해 167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2년에 총선 및 대선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법익침해 기사가 적었던 데다가 위원회가 분기별 · 반기별로 언론사에 시정권고 결정 현황 등을 꾸준히 송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시정권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개선하고 기자들에게 시정권고 관련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제1장 조정사건 접수현황

1. 연도별 현황

위원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2,401건의 조정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전년도에 비해 277건(13%)이 증가한 수치이다. 위원회가 연간 접수 · 처리한 조정건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언론사닷컴 등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2009년에 1,500건을 넘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2,000건 이상이었다.

[표 1-1] 최근 5년간 조정사건 접수현황

(2008. 1. 1. ~ 2012. 12. 31.)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청 구 건 수	954	1,573	2,205	2,124	2,401
전년대비 증감	-89	619	632	-81	277

2. 중재부별 현황

2012년 중재부별 접수현황을 보면 1,832건을 접수 · 처리한 서울중재부가 전체의 76.3%를 차지했고, 경기중재부 119건(5.0%), 광주중재부 92건(3.8%), 경남중재부 80건(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가 대부분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매체수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 및 광주 지역의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중재부 \ 연 도	2010		2011		2012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서울중재부	1,627	(73.8)	1,465	(69.0)	1,832	(76.3)	4,924	(73.2)
부산중재부	59	(2.7)	36	(1.7)	50	(2.1)	145	(2.2)
대구중재부	31	(1.4)	26	(1.2)	29	(1.2)	86	(1.3)
광주중재부	77	(3.5)	49	(2.3)	92	(3.8)	218	(3.2)

연 도 중재부	2010		2011		2012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대전중재부	42	(1.9)	33	(1.6)	53	(2.2)	128	(1.9)
경기중재부	120	(5.4)	118	(5.6)	119	(5.0)	357	(5.3)
강원중재부	28	(1.3)	18	(0.8)	11	(0.5)	57	(0.8)
충북중재부	35	(1.6)	47	(2.2)	55	(2.3)	137	(2.0)
전북중재부	49	(2.2)	28	(1.3)	47	(2.0)	124	(1.8)
경남중재부	89	(4.0)	174	(8.2)	80	(3.3)	343	(5.1)
제주중재부	48	(2.2)	130	(6.1)	33	(1.3)	211	(3.1)
계	2,205	(100)	2,124	(100)	2,401	(100)	6,730	(100)

3. 청구권별 현황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2,401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223건(50.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손해배상청구 794건(33.1%), 반론보도청구 315건(13.1%), 추후보도청구 69건(2.9%) 순이었다. 청구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3년간 평균 비율이 51.1%로 나타났다. 다른 청구권에 비해 정정보도청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신청인들이 신청접수 단계에서 정정보도가 가장 적합한 피해구제수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 비율은 33.1%로 정정보도청구 5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최근 3년간 평균 비율은 35.2%로 나타났다.

[표 1-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도 청구명	2010		2011		2012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정 정	1,211	(54.9)	1,004	(47.2)	1,223	(50.9)	3,438	(51.1)
반 론	171	(7.8)	168	(8.0)	315	(13.1)	654	(9.7)
추 후	50	(2.3)	148	(7.0)	69	(2.9)	267	(4.0)
손 배	773	(35.1)	804	(37.8)	794	(33.1)	2,371	(35.2)
계	2,205	(100)	2,124	(100)	2,401	(100)	6,730	(100)

4.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2년도에는 전체 조정청구 건수 중 개인에 의한 청구가 1,393건(58.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일반단체가 310건(12.9%)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기업체 306건(12.7%), 국가기관 96건(4.0%), 공

공단체 92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청구비율은 2011년에 비해 약간 감소했으며, 국가기
관과 공공단체에 의한 청구는 최근 3년간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1-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신청인 유형	2010		2011		2012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개 인	1,284	(58.2)	1,283	(60.5)	1,393	(58.0)	3,960	(58.8)
국가기관	66	(3.0)	78	(3.7)	96	(4.0)	240	(3.6)
지 자 체	66	(3.0)	71	(3.3)	76	(3.2)	213	(3.2)
공공단체	58	(2.6)	55	(2.6)	92	(3.8)	205	(3.0)
일반단체	293	(13.3)	252	(11.9)	310	(12.9)	855	(12.7)
종교단체	2	(0.1)	19	(0.9)	16	(0.7)	37	(0.5)
기 업 체	329	(14.9)	305	(14.3)	306	(12.7)	940	(14.0)
언 론 사	87	(3.9)	31	(1.4)	85	(3.5)	203	(3.0)
교육기관	20	(0.9)	30	(1.4)	27	(1.2)	77	(1.2)
계	2,205	(100)	2,124	(100)	2,401	(100)	6,730	(100)

5. 매체 유형별 현황

매체 유형별 청구건수는 인터넷신문 945건(39.4%), 신문 665건(27.7%), 인터넷뉴스서비스 454건(18.9%),
방송 243건(10.0%), 뉴스통신 83건(3.5%), 잡지 11건(0.5%) 순이었다.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해 인터넷신
문에 대한 청구가 240건이 늘어난 데 반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청구는 56건이 줄어들었다.

포털에 대한 청구건수가 줄어든 것은 주요 포털사들이 주로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게재하는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포털의 아웃링크기사에 대하여는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다나 반론보
도를 한 경우 대부분 그 내용이 포털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특별히 포털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정정보다 등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파란, 야후 등 주요 포털사들
이 각각 2012년 7월 말과 12월 말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뉴스서비스도 함께 중단한 점도 이유로 들 수 있다.

[표 1-5]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매체 유형	연도	2010		2011		2012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신 문	일간신문	354	(16.1)	405	(19.1)	496	(20.7)	1,255	(18.6)
	주간신문	186	(8.4)	181	(8.5)	169	(7.0)	536	(8.0)

1) 아웃링크 : 포털에서 검색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포털사 홈페이지가 아닌 기사제공언론사 홈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됨

방 송	189	(8.6)	250	(11.8)	243	(10.0)	682	(10.1)
잡 지	24	(1.1)	9	(0.4)	11	(0.5)	44	(0.7)
뉴스통신	42	(1.9)	62	(2.9)	83	(3.5)	187	(2.8)
인터넷신문	567	(25.7)	705	(33.2)	945	(39.4)	2,217	(32.9)
인터넷뉴스서비스	841	(38.1)	510	(24.0)	454	(18.9)	1,805	(26.8)
기 타	2	(0.1)	2	(0.1)			4	(0.1)
계	2,205	(100)	2,124	(100)	2,401	(100)	6,730	(100)

[표 1-6] 2012년도 매체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2. 12. 31.)

청구 건수	매체 유형	신 문			방 송				잡 지	뉴 스 통 신	인터넷 신 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중 앙 일간지	지 방 일간지	주 간 신 문	지 상 파		종합 유선방송	종합 편성채널				
					T V	라디오						
2,401		307	189	169	156	3	27	57	11	83	945	454
(100.0)		(12.8)	(7.9)	(7.0)	(6.5)	(0.1)	(1.0)	(2.4)	(0.5)	(3.5)	(39.4)	(18.9)

* () 안의 숫자는 %

6. 침해 유형별 현황

2012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2,110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87.9%를 차지했으며, 초상권 침해 128건(5.3%), 사생활 침해 101건(4.2%), 성명권 침해 43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의 비율은 다소 줄었으나,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로 청구한 건수와 비율은 증가했다.

[표 1-7]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도 침해 유형	2010		2011		2012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명예훼손	1,995	(90.5)	2,030	(95.6)	2,110	(87.9)	6,135	(91.2)
신용훼손	20	(0.9)	—	—	—	—	20	(0.3)
재산상 손해	—	—	8	(0.4)	10	(0.4)	18	(0.3)
초상권 침해	109	(4.9)	39	(1.8)	128	(5.3)	276	(4.1)
음성권 침해	3	(0.1)	—	—	8	(0.3)	11	(0.2)
성명권 침해	4	(0.2)	22	(1.0)	43	(1.8)	69	(1.0)
사생활 침해	20	(0.9)	24	(1.1)	101	(4.2)	145	(2.2)
기 타	54	(2.4)	1	(0.1)	1	(0.1)	56	(0.7)
계	2,205	(100)	2,124	(100)	2,401	(100)	6,730	(100)

* 2011년부터 침해유형 중 기존 신용훼손은 재산상 손해로 변경됨

7.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침해유형 중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기타 사항을 제외한 인격권(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 등) 침해를 원인으로 청구된 273건을 그 원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상이나 음성을 공표한 경우가 236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를 범위를 벗어나서 보도한 경우는 9건(3.3%),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경우가 21건(7.7%)으로 조사되었다.

[표 1-8]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2012. 1. 1. ~ 2012. 12. 31.)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청구건수
동의 없이 무단공표	236 (86.4)
동의를 범위를 벗어난 보도	9 (3.3)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21 (7.7)
기 타	7 (2.6)
계	273 (100)

* () 안의 숫자는 %

8.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2년 접수·처리된 사건을 조정대상보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사건·사고·고발 등을 다룬 사회분야가 1,626건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고, 정치·선거 분야가 207건으로 8.6%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연예분야 179건(7.5%), 경제·산업분야가 157건(6.5%), 교육분야 48건(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2. 1. 1. ~ 2012. 12. 31.)

조정대상보도 분야	청구건수
정치·선거	207 (8.6)
국방·외교	7 (0.3)
경제·산업	157 (6.5)
사회(사건/사고/고발)	1,626 (67.7)
보건·복지	47 (2.0)
스포츠·연예	179 (7.5)
레저·생활	3 (0.1)
환경	23 (1.0)
종교	14 (0.6)
노동	29 (1.2)
교육	48 (2.0)
미디어	45 (1.9)
기 타	16 (0.6)
계	2,401 (100)

* () 안의 숫자는 %

9.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2년 조정사건 중 방송 및 방송내용을 제공 또는 매개한 포털을 제외한 조정대상기사를 보도의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1,775건으로 88.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탐사·심층·기획기사가 97건(4.8%), 오피니언 48건(2.4%) 순이었다.

[표 1-10]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2. 12. 31.)

조정대상보도 유형	청구건수
스트레이트	1,775 (88.1)
사 설	46 (2.3)
오피니언	48 (2.4)
인터뷰	11 (0.5)
탐사·심층·기획기사	97 (4.8)
사 진	34 (1.6)
가 십	1 (0.1)
기 타	3 (0.2)
계	2,015 (100)

* () 안의 숫자는 %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은 제외됨

방송 및 방송관련 포털 보도를 장르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뉴스관련 보도가 278건으로 72.0%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시사고발 관련 프로그램이 62건(16.1%), 교양정보 프로그램이 28건(7.3%)으로 뒤를 이었다.

[표 1-11] 조정대상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의 유형별 현황

(2012. 1. 1. ~ 2012. 12. 31.)

조정대상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청구건수
뉴 스	278 (72.0)
시사고발	62 (16.1)
교양정보	28 (7.3)
연예·스포츠	11 (2.8)
다큐멘터리	2 (0.5)
기 타	5 (1.3)
계	386 (100)

* () 안의 숫자는 %

10. 접수 유형별 현황

2012년 한 해 신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조정신청사건 접수 방법은 전자우편(E-메일 1250건,

12.1%)으로 나타났다. 신청인들은 방문이나 우편과 같은 다른 접수방법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전자우편 접수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 전자조정중재시스템 도입으로 가능해진 전자문서 접수, 즉 ‘언론중재 Eye-Net’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2011년 304건(14.3%)에서 2012년 525건(21.9%)으로 증가했다.

[표 1-12]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도 접수 유형	2010		2011		2012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방 문	483	(21.9)	409	(19.3)	360	(15.0)
우 편	233	(10.6)	143	(6.7)	114	(4.7)
전자우편	1,205	(54.6)	1,221	(57.5)	1,250	(52.1)
전자문서	-	-	304	(14.3)	525	(21.9)
구 술	284	(12.9)	47	(2.2)	152	(6.3)
계	2,205	(100)	2,124	(100)	2,401	(100)

* 2011. 1. 1.부터 전자조정중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접수가 가능해짐

제2장 조정사건 처리현황

1. 연도별 처리결과

2012년 한 해 동안의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 972건(40.5%), 조정성립 805건(33.5%), 조정불성립결정 427건(17.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42건(5.9%), 기각 44건(1.8%), 각하 11건(0.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정성립은 2011년 725건(34.1%)에 이어 2012년 805건(33.5%)으로 나타나, 전체 처리건수 중 1/3 이상이 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재부가 양 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양 당사자가 수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하의 경우 2011년 951건(44.8%), 2012년 972건(40.5%)으로 여전히 조정사건 처리결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청구가 조정성립 등으로 원만히 처리될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게재한 다수 포털에서도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포털을 상대로 한 사건이 취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불성립결정은 전년도(13.4%)에 비해 다소 증가(17.8%)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청구비용이 높은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사건의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142건(동의 76건, 이의 66건)으로 전체 청구건수의 5.9%를 차지해 지난해(5.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사건처리에 따른 피해구제 결과와 관련, 위원회는 2011년부터 기존 신청효율 외에 조정성공률과 본안성공률 개념을 새로 도입해 피해구제 지표로 삼고 있다.

[표 2-1]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조 정 성공률	본 안 성공률	신 청 효 율
			동 의	이 의				심리 전	심리 중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754 (617)	377 (274)	79.0%	88.0%	79.2%
	%	28.6	4.9	1.8	7.1	6.2	0.1	34.2	17.1			
2011	2,124	725	65	40 (3)	285	44	14	506 (382)	445 (298)	70.9%	81.7%	71.3%
	%	34.1	3.0	1.9	13.4	2.1	0.7	23.8	21.0			
2012	2,401	805	76	66	427 (10)	44	11	592 (536)	380 (251)	64.1%	75.7%	71.5%
	%	33.5	3.2	2.7	17.8	1.8	0.5	24.7	15.8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text{※ 조정성공률} = \frac{\text{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동의)}}{\text{조정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불성립결정)}} \times 100$$

$$\text{※ 본안성공률} = \frac{\text{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심리 중 취하)}}{\text{본안심리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불성립결정+심리 중 취하)}} \times 100$$

$$\text{※ 신청효율} = \frac{\text{신청유�효건수(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times 100$$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2. 조정성공률

조정성공률이란 전체 조정청구사건에서 형식적 요건이나 신청내용 상의 흠결을 이유로 기각·각하되거나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제외한 사건 중 중재부가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 모두 동의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조정성공률은 2010년 79.0%, 2011년 70.9%, 2012년 64.1%로 나타났다. 2012년 조정성공률이 2011년에 비해 6.8% 낮아진 이유는 조정성립의 비율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동의율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됐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2] 최근 3년간 조정성공률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도	구분	청구건수(A)	기각·각하·취하 건수(B)	조정건수(A-B)	조정성공건수(C)	조정성공률 C/(A-B)
2010		2,205	1,269	936	739	79.0%
2011		2,124	1,009	1,115	790	70.9%
2012		2,401	1,027	1,374	881	64.1%
계		6,730	3,305	3,425	2,410	70.4%

3. 본안성공률

본안성공률은 전체 청구사건에서 기각·각하된 사건과 심리 전 취하된 건수를 제외한 조정심리에 부처진 사건 중에서 조정성립되거나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사건 및 심리 중 취하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본안성공건수에는 조정성공건수 외에도 중재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과 심리 중 취하된 사건이 포함된다.

최근 3년간 본안성공률을 살펴보면, 2010년 88.0%, 2011년 81.7%, 2012년 75.7%로 나타났다. 3년 동안 본안성공률이 계속 하락한 이유는 조정성공률 하락과 마찬가지로 조정불성립결정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3] 최근 3년간 본안성공률 현황

(2010. 1. 1. ~ 2012. 12. 31.)

구 분 연 도	청구건수(A)	기각·각하· 심리전 취하건수(B)	본안심리건수 (A-B)	본안성공건수 (C)	본안성공률 C/(A-B)
2010	2,205	892	1,313	1,156	88.0%
2011	2,124	564	1,560	1,275	81.7%
2012	2,401	647	1,754	1,327	75.7%
계	6,730	2,103	4,627	3,758	81.2%

4. 신청효율

신청효율은 전체 조정청구건수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청구 요건 적합 사건 중, 조정심리 개최여부 및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을 뜻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을 합해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 신청효율이다.

신청효율은 2010년 역대 최고치인 79.2%를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71.3%, 2012년에는 71.5%를 기록했다. 위원회가 양적인 신청효율보다 피해구제보도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2011년에는 신청효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2년에는 소폭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피해구제보도문 개선효과 가시화’를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2012년에 신청효율이 반등한 것은 언론사들이 피해구제보도문의 질적 향상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는 위원회가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하여 각종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외 홍보지에도 수록하였으며 언론사 대상 교육 시 피해구제보도문의 적절한 예를 제시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와 언론중재 EYE-NET에 개선된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시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효율 현황

(2010. 1. 1. ~ 2012. 12. 31.)

구 분 연 도	청구건수(A)	기각, 각하 건수(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신청유효건수 (C)	신청효율 C/(A-B)
2010	2,205	138	2,067	1,637	79.2%
2011	2,124	58	2,066	1,473	71.3%
2012	2,401	55	2,346	1,678	71.5%
계	6,730	251	6,479	4,788	73.9%

5.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2년에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추후보도청구의 신청효율이 97.1%

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반론보도(78.3%), 손해배상(7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후보도청구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청구이므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하고 판결문 등에 의한 입증이 용이하여 언론사가 신청인의 청구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2-5]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0	정정	1,211	337	74	20	(1)	87	(4)	66	1	626	(489)	79.3	87.7	79.1
	반론	171	52	10	1		13		31		64	(38)	81.6	85.9	71.4
	추후	50	23	1	1		1		2		22	(20)	92.3	96.6	91.7
	손배	773	218	24	18	(1)	56	(1)	38		419	(344)	76.6	87.1	8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0	88.0	79.2
2011	정정	1,004	375	40	23	(1)	150		25	5	386	(249)	70.6	79.7	68.3
	반론	168	72	6			28		7		55	(33)	73.6	78.8	68.9
	추후	148	23	1	1	(1)	7			2	114	(108)	75.0	86.3	91.1
	손배	804	255	18	16	(1)	100		12	7	396	(290)	70.2	81.6	71.8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81.7	71.3
2012	정정	1,223	450	40	35		238	(6)	17	3	440	(338)	64.2	75.5	69.3
	반론	315	113	7	3		35	(2)	11	5	141	(112)	75.9	84.0	78.3
	추후	69	2	2			1				64	(63)	80.0	90.9	97.1
	손배	794	240	27	28		153	(2)	16	3	327	(274)	59.6	72.4	70.1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7	71.5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 신청효율을 살펴보면 종교단체가 78.6%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75.0%), 국가기관(72.6%), 개인(70.1%) 등의 순이었다. 회사와 일반단체, 교육기관의 신청효율은 각각 60.3%, 65.2%, 66.7%로 평균 신청효율(71.5%) 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표 2-6]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신청인 유형	청 구 건 수	처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 청 효 율 (%)
			조정 성립	조정을 동 의	같은하는 결정 이 의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10	개 인	1,284	335	39	20	(2)	72	(4)	104	1	713	(605)	80.3	89.0	83.5	
	단 체	국가기관	66	22	11	1	5				27	(18)	84.6	91.5	77.3	
		지자체·공공단체	124	33	8	2	17		1		63	(44)	68.3	79.3	69.1	
		일반단체	293	108	30	7	37		28		83	(60)	75.8	83.8	74.7	
		종교단체	2	2									100.0	100.0	100.0	
		회사	416	119	21	10	20	(1)	4		242	(163)	82.4	92.6	73.8	
		교육기관	20	11			6				3	(1)	64.7	64.7	6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0	88.0	79.2	
2011	개 인	1,283	427	37	31	(2)	181		30	12	565	(455)	68.6	79.2	74.2	
	단 체	국가기관	78	21	5	4	(1)	17			31	(12)	55.3	74.2	50.0	
		지자체·공공단체	126	56	6	2	11		1		50	(44)	82.7	88.5	84.8	
		일반단체	252	112	4	2	35		11	2	86	(22)	75.8	82.5	57.7	
		종교단체	19	5	2		2				10	(10)	77.8	81.8	89.5	
		회사	336	94	11	1	36		2		192	(130)	73.9	82.3	70.4	
		교육기관	30	10			3				17	(7)	76.9	85.7	56.7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81.7	71.3	
2012	개 인	1,393	434	39	41		206	(1)	26	6	641	(555)	65.7	77.9	70.1	
	단 체	국가기관	96	40	6	3	12		1		34	(23)	75.4	86.0	72.6	
		지자체·공공단체	168	70	7		30	(1)			61	(48)	72.0	76.9	75.0	
		일반단체	310	113	15	2	81	(4)	14		85	(61)	60.7	68.1	65.2	
		종교단체	16	4			2		2		8	(7)	66.7	84.6	78.6	
		회사	391	134	9	20	88	(4)	1	5	134	(85)	57.0	72.2	60.3	
		교육기관	27	10			8				9	(8)	55.6	61.9	66.7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7	71.5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7.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2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로 구분해보면 연예인이 신청한 사건의 신청효율이 100%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한 특정 연예인이 다수의 매체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후 피해가 구제되자 신청을 일괄하여 취하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외에 학생(89.1%), 문화예술인(87.9%), 회사원(84.6%) 등이 비교적 높은 신청효율을 보였다.

한편 신청효율이 낮은 직업군을 살펴보면 조정건수가 적은 주부와 공공기관장, 법조인, 금융업 종사자 등을 제외하면 시민활동가가 신청한 사건의 신청효율이 0.0%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신청이 자진취하, 또는 신청인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해 취하간수된 결과이다. 그밖에 종교인(30.4%), 언론인(51.4%), 국회의원(59.2%) 등의 신청효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 분 직 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국회의원	49	18			15			16	(11)	54.5	63.4	59.2	
법조인	5			4				1	(1)	0.0	100.0	20.0	
공무원	71	29			15			27	(23)	65.9	71.7	73.2	
군인·경찰	46	23	5		5			13	(9)	84.8	88.4	80.4	
기초광역단체장·의원	47	16		2	9			20	(19)	59.3	75.7	74.5	
정당정치인	71	20			16	(1)	2	33	(25)	55.6	66.7	66.7	
의료인	38	4	2	4	2		3	23	(19)	50.0	89.5	71.4	
문화예술인	140	30			9			101	(93)	76.9	82.7	87.9	
종교인	23	7		4	12					30.4	47.8	30.4	
회사원	203	41	10	8	18		4	4	118	(114)	66.2	80.4	84.6
언론인	51	14	3	4	18			12	(9)	43.6	64.0	51.0	
교육자	84	34	4		13		5	28	(14)	74.5	82.9	65.8	
개인사업가	289	115	10	7	38		1	2	116	(104)	73.5	83.3	80.1
금융업종사자	5	1			2		2			33.3	33.3	33.3	
연예인	76	2						74	(74)	100.0	100.0	100.0	
학 생	55	32	1		6			16	(16)	84.6	87.5	89.1	
시민활동가	24				4		6	14		0.0	0.0	0.0	
공공기관장	2				2					0.0	0.0	0.0	
조합대표협회장	5				4			1		0.0	0.0	0.0	
주부	10	3		2	2		2	1	(1)	42.9	71.4	50.0	
무직	6	5			1					83.3	83.3	83.3	
알 수 없음	41	15	4		3		1	18	(16)	86.4	91.2	87.5	
기타	52	25		6	12			9	(7)	58.1	72.7	61.5	
계	1,393	434	39	41	206	(1)	26	641	(555)	65.7	77.6	70.1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8.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신청효율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84.4%로 가장 높았으며 잡지(81.8%), 인터넷 신문

(74.6%), 뉴스통신(70.4%), 신문(61.9%), 방송(61.4%)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기반 매체가 지면이나 시간상의 제약이 신문·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다소 여유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 수 있다.

[표 2-8]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동 의	같은하는 결정 이 의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10	신 문	540	261	15	14		64	(2)	25		161	(87)	78.0	85.3	70.9
	방 송	189	84	10	6		41		14	1	33	(12)	66.7	73.2	60.9
	잡 지	24	8	3			10	(1)			3		52.4	58.3	50.0
	뉴스통신	42	10						7		25	(18)	100.0	100.0	80.0
	인터넷신문	567	190	12	14		29	(2)	43		279	(219)	82.4	91.3	80.7
	인터넷뉴스서비스	841	77	69	6	(2)	13		48		628	(555)	88.5	96.2	88.7
	기 타	2									2		0.0	0.0	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0	88.0	79.2
2011	신 문	586	244	19	13		95		22	5	188	(91)	70.9	79.6	63.3
	방 송	250	75	11	6		61		9	4	84	(33)	56.2	68.9	50.2
	잡 지	9	5	1			3						66.7	66.7	66.7
	뉴스통신	62	21	2	2	(2)	7		1		29	(14)	71.9	83.3	63.9
	인터넷신문	705	230	22	19	(1)	81		10	4	339	(254)	71.6	82.9	73.4
	인터넷뉴스서비스	510	150	10			38			1	311	(288)	80.8	89.8	88.0
	기 타	2							2				0.0	0.0	0.0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81.7	71.3
2012	신 문	665	265	27	27		163	(4)	9	5	169	(107)	60.6	71.3	61.9
	방 송	243	78	10	10		63		10		72	(55)	54.7	68.5	61.4
	잡 지	11	7				2				2	(2)	77.8	80.0	881.8
	뉴스통신	83	23	9			18	(2)	2		31	(23)	64.0	71.0	70.4
	인터넷신문	945	348	26	23		157	(4)	18	5	368	(310)	67.5	76.7	74.6
	인터넷뉴스서비스	454	84	4	6		24		5	1	330	(290)	74.6	90.0	84.4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7	71.5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9.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2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생활 침해(97.0%)와 성명권 침해(95.3%), 초상권 침해(92.4%) 등이 높은 신청효율을 보였고, 이에 반해 가장 청구건수가 많은 명예훼손은 상대적으로 낮은 68.9%를 나타냈다. 사생활이나 성명권, 초상권 등은 명예훼손에 비해 침해의 인정 여부

가 좀 더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역시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9]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동의	같은 결정 이 의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10	명예훼손	1,995	591	107	39	(2)	144	(5)	87	1	1,026	(801)	79.2	88.0	79.0
	신용훼손	20					2		1		17	(13)	0.0	0.0	68.4
	초상권 침해	109	27	1			10		12		59	(54)	73.7	77.3	84.5
	음성권 침해	3	1		1						1	(1)	50.0	100.0	66.7
	성명권 침해	4									4	(2)	0.0	0.0	50.0
	사생활 침해	20	3	1			1		11		4	(4)	80.0	80.0	88.9
	기 타	54	8						26		20	(16)	100.0	100.0	85.7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0	88.0	79.2
2011	명예훼손	2,030	697	60	35	(3)	272		40	14	912	(656)	71.1	80.7	71.7
	초상권 침해	39	9	3	1		3		3		20	(15)	75.0	84.2	75.0
	음성권 침해	3					1				2	(2)	0.0	66.7	66.7
	성명권 침해	22	3	2	3		9				5		29.4	52.6	22.7
	사생활 침해	24	15		1				1		7	(5)	93.8	100.0	87.0
	재산상 손해	5									5	(2)	0.0	0.0	40.0
	기 타	1	1										100.0	100.0	100.0
	계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81.7	71.3
2012	명예훼손	2,110	765	65	60		420	(10)	34	10	756	(583)	63.4	74.8	68.9
	초상권 침해	128	23	5	3		4		9	1	83	(81)	80.0	90.7	92.4
	음성권 침해	8	3				1		1		3	(1)	75.0	83.3	57.1
	성명권 침해	43	1		2						40	(40)	33.3	100.0	95.3
	사생활 침해	101	13	6	1		2				79	(79)	86.4	94.3	97.0
	재산상 손해	10									10	(2)	0.0	100.0	20.0
	기 타	1									1	(1)	0.0	100.0	100.0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7	71.5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10.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한편, 매체별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지면을 기반으로 한 일간지, 주간신문, 잡지 등의 매체의 경우 명예훼손이 95.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초상권, 음성권 등 명예훼손 외의 인격권 침해가 4.3%로 나

타났다. 방송은 명예훼손 외 인격권 침해가 13.6%,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15.5%를 차지하였다.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명예훼손 외 인격권 침해의 비율이 지면 매체에 비해 다소 많은 것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주로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공개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등 매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 편성채널은 초상권·음성권·사생활 침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사건이 전체의 24.6%(57건 중 14건)로 나타나는 등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10]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2012. 1. 1. ~ 2012. 12. 31.)

매체 유형	구 분 매 체 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 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중 앙 일 간 지	경향매일	1	1							1					
	경향신문	25	25							10	2	7			6
	국민일보	8	8							2	1	3			2
	내일신문	1	1							1					
	동아일보	42	41			1				18	6	7	2	2	7
	문화일보	9	9								2	4		1	2
	서울신문	10	10							2		1	2		5
	세계일보	7	7							4		2			1
	조선일보	65	61	2			2			21	4	23	2		15
	중앙일보	25	23				2			8	2	4		2	9
	한겨레	39	39							9	5	15			10
	한국일보	14	11				3			4		1			9
	소계	246	236	2		1	7			80	22	67	6	5	66
지 역 일 간 지	내외일보	3	3							3					
	서울일보	1	1							1					
	신아일보	1	1									1			
	아시아일보	3	3							3					
	아시아투데이	4	4							3		1			
	국제신문	6	5	1						2		1	2		1
	부산일보	5	5							1	1	1			2
	울산신문	1	1												1
	울산제일일보	3	3							3					
	울산광역매일	5	5							3					2
	경도일보	2	2							2					
	경북일보	3	2			1				1		2			
	경안일보	3	3							1		2			
	대구일보	1	1												1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거절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간 지	매일신문	3	2	1											3
	영남일보	2	1					1							2
	광남일보	1	1							1					
	광주일보	2	2								1				1
	남도일보	2	2							1					1
	무등일보	2	2							1					1
	전광일보	4	4							2		1			1
	전남매일	1	1												1
	금강일보	4	4							3					1
	대전투데이	4	4							4					
	중도일보	2	2							2					
	충남일보	8	8								2				6
	충민일보	2	2								2				
	충청투데이	5	5							4					1
	세종매일	2	2							2					
	경기도민일보	1	1									1			
	경기신문	8	8							5		2			1
	경기일보	2	2							1					1
	경인일보	9	9							2		4			3
	경인종합일보	2	2												2
	인천신문	3	3									2			1
	인천일보	9	9							2		2			5
	전국매일	2	2							1	1				
	중부일보	9	9							4		3			2
	강원일보	3	3							3					
	동양일보	3	3							1		2			
	중부매일	5	5									4			1
	충청매일	2	2									1			1
	충청일보	3	3							1		2			
	충청타임즈	3	3									2			1
	새전북신문	5	5							1		4			
	전북매일신문	2	2							2					
	전북일보	5	5							2		2			1
	전북타임즈	3	3							3					
	전주일보	2	2								2				
	경남도민신문	1	1							1					
	경남도민일보	4	4												4
	경남매일	5	4	1						4		1			

매체유형	구 분 매 체 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 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 역 일 간 지	경남신문	4	4							1		2			1
	경남연합일보	1	1							1					
	경남일보	2	2									2			
	전북일보	1	1												1
	창원일보	2						2							2
	한남일보	4	4							3					1
	한라일보	2	2							2					
	소계	192	185	3		1		3		83	9	45	2		53
경 제 지	매일경제	6	6									2			4
	머니투데이	7	7							1		4			2
	서울경제	6	6							2					4
	파이낸셜뉴스	4	4							3					1
	한국경제	15	13				2			2	1	2			10
	헤럴드경제	4	4							4					
	소계	42	40				2			12	1	8			21
외 국 언 론 간 지	The Korea Herald	1	1												1
	소계	1	1												1
특 수 일 간 지	디지털타임스	2	2							2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총파업특보	2	2									2			
	소계	4	4							2		2			
무 료 일 간 지	am7	2	2							2					
	데일리 노컷뉴스	4	2				2				2				2
	메트로	3	3												3
	이데일리(신문)	2		2							1	1			
	소계	11	7	2			2			2	3	1			5
중 앙 방 송	KBS-1·2TV	4	4									3			1
	KBS-1TV	43	43							12		15	2		14
	KBS-2TV	16	12	3			1			7	2	4			3
	MBC-TV	41	37	2	1		1			7	5	19	1		9
	SBS-TV	14	12	1			1			4		4	1		5
	소계	118	108	6	1		3			30	7	45	4		32
지 방 방 송	부산KBS-1TV	1	1							1					
	부산MBC-TV	7	7							1		2			4
	전주KBS-1TV	4	4							2			1		1
	제주MBC-TV	4	4							2		2			
	진주MBC-TV	2	2									2			
	청주MBC-TV	1	1												1
	춘천KBS-1TV	2	2							2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거절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방방송	경기방송R	3	3							1		2			
	소계	24	24							9		8	1		6
지역민방	CJB-TV	4	1	3						3					1
	G1-TV	2	2							2					
	KBC-TV	1		1											1
	KNN	2	2										1		1
	OBS경인TV	5	5								3				2
	TJB-TV	1	1												1
	UBC	2	2							1		1			
	소계	17	13	4						6	3	1	1		6
케이블	CBS-TV	1	1									1			
	CTS기독교TV	2	2									2			
	KC-TV	2	2							2					
	TVN	2		2						1	1				
	YTN	13	12		1					6	2	1			4
	티브로드 서울뉴스	1	1												1
	티브로드 중부방송	1	1												1
	한국경제TV	1	1									1			
	현대HCN충북방송	1			1							1			
	엠비씨에브리원(MBC Every1)	1		1											1
	hello tv 금정방송	1	1												1
	KBS drama	1	1												1
	소계	27	22	3	2					9	3	6			9
종합편성채널	jtbc	13	10		2			1		4			3		6
	MBN	14	9	4	1					9	1				4
	TV조선	16	15	1						7	2	3			4
	채널A	14	9	1			4			4	4		1		5
	소계	57	43	6	3		4	1		24	7	3	4		19
뉴스통신	뉴스1코리아	11	9	1		1				2	3	4			2
	뉴스1	32	31	1						10		7			15
	뉴스1(경남)	5	5							1		2			2
	아시아뉴스통신	9	9								4	2			3
	아시아뉴스통신(경남)	3	3							1		2			
	연합뉴스	20	19	1						7	2	1	2		8
	뉴스1코리아(광주전남)	1	1							1					
	뉴스1코리아 전북	1		1						1					
	NSP통신	1		1											1
	소계	83	77	5		1				23	9	18	2		31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 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시 사 주 간 신 문	대전투데이	2	2								2				
	호남매일	2	2							2					
	중앙매일	2	2								2				
	충청신문	2	2								2				
	민주신문	2	2							1	1				
	일요서울	2	2									1			1
	주간한국	7	7							6					1
	중앙Sunday	3	3							1		1			1
	소계	22	22							10	7	2			3
지 역 주 간 신 문	순창신문	2	2							2					
	안성신문	2	2							2					
	이북도민연합신문	1	1										1		
	성동저널	2	2									2			
	은평뉴스비전	1	1							1					
	주간 고향신문	1	1							1					
	나주뉴스	2	2												2
	나주투데이	1	1							1					
	담양신문	4	4							2	1	1			
	장선군민신문	3	3							3					
	전남희망신문	3	3							3					
	삼군신문	3	3							3					
	장성사람들	1	1												1
	목포시민신문	2	2							2					
	우리군민신문	3	3								3				
	놀이신문	2	2							2					
	충남시사신문	2	2									2			
	부평신문	1	1							1					
	안산미래신문	1	1									1			
	안산신문	1	1									1			
	안산정론신문	1	1									1			
	안산타임스	1	1							1					
	여주시민신문	2	2							1		1			
	평택시사신문	2	2							1		1			
	강화뉴스	2	2									2			
	강원신문	2	2									2			
	보은신문	3	3							2					1
	충청리뷰	3	2	1						1					2
	군산신문	4	4							4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 주간 신문	서해타임즈	2	2									2			
	소통신문	2	2								1				1
	해피데이고창	1	1								1				
	더함안신문	2	2							1					1
	서경신문	2						2							2
	고성미래신문	2	2									2			
	소계	69	66	1				2		34	6	18	1		10
특 수 주 간 신 문	서울문화투데이	1	1							1					
	대한급식신문	3	3							3					
	도시재생신문	1	1							1					
	마케팅경제신문	2	2									2			
	미디어오늘	6	6							4					2
	부천신문	2	2									2			
	서울파이낸스	2					2								2
	수산신문	2	2							2					
	어패럴뉴스	1	1												1
	여행미디어	2	2							2					
	전기신문	2	2								2				
	청년의사	2	2							2					
	한국기독교신문	2	2							1		1			
	한국농정	2	2									2			
	한국섬유신문	1	1							1					
	한신의힘	1	1							1					
	오마이건설뉴스	1	1							1					
	주간파주신문	5	5							1		4			
	크리스천 포커스	2	2							2					
	코리아리포트	2	2							2					
	덴탈포커스	2	2								2				
	세무사신문	2	2							1	1				
	전국언론노조KBS본부노부	2	2									2			
	서울구민신문	2	2												2
	한국관광신문BTMICE	2	2									2			
	대한변협신문	2	2												2
	나무신문	2	2							2					
	소계	56	54				2			27	5	15			9
시 사 주 간 지	매경이코노미	3	2			1				2					1
	시사IN	4	4							2		2			
	시사저널	6	6							4	1	1			
	주간경향	1	1							1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 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시사주간지	주간동아	3	3							1		2			
	주간조선	2	2							2					
	한겨레21	3	3							3					
	소계	22	21			1				15	1	5			1
잡지	레이디경향	2	2							2					
	신동아	4	4							4					
	월간조선	1	1												1
	월간중앙	3	3									2			1
	함께걸음	1	1							1					
	소계	11	11							7		2			2
인터넷	데일리안 광주전라	2	2												2
	아이컬쳐뉴스	3	3							1					2
	소비자연합타임즈	2	2												2
	인터넷코리아리포트	2	2							2					
	인터넷소통신문	2	2								1				1
	인터넷레이디경향	2	2							2					
	인터넷이코노미세계	2	2												2
	데일리서울파이낸스	1	1												1
	양주동두천닷컴	1	1							1					
	경인일보닷컴	5	5									4			1
	시티데일리	2					2								2
	인터넷덴탈포커스	2	2								2				
	인터넷보은신문	3	3							2					1
	인터넷주간조선	2	2							2					
	인터넷안성신문	2	2							2					
	CBC뉴스	2						2							2
	CNBNEWS	7	4	1				2		2					5
	CNBNEWS광주전남본부	2	2							2					
	CNN21	2	2									2			
	CTN	1	1												1
	e논산신문	2	2							2					
신문	e수원뉴스	2	2												2
	KJB방송	2	2									2			
	TV리포트	1		1											1
	카톨릭뉴스 지금여기	1	1							1					
	거제타임즈	1	1												1
	경제투데이	3	2	1											3
	노컷뉴스	26	23			1	2			11	3	4	1		7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감응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뉴데일리	1		1											1
	뉴스앤조이	5	5									3			2
	뉴스엔	2					2								2
	뉴스웨이	3	1				2			1					2
	뉴스웨이호남본부	4	4							2	2				
	뉴스천지	1		1											1
	뉴스타운	4	4							4					
	뉴스토마토	5	5												5
	뉴스핍	3	2	1											3
	대전시티저널	3	3							3					
	더벨	6	6							2		3			1
터	더사이언스	2	2												2
	더한국타임즈	2	2												2
	데일리안	11	8	1			2			3			3		5
	데일리팜	2	1	1								2			
	디트뉴스24	2	2									2			
	로이십사(LAW24)	2	2												2
	마이데일리	4	3			1				1					3
	메디컬투데이	1		1											1
	메디파나뉴스	1	1												1
	문화저널21	2	1	1								1			1
	미디어스	11	11							5					6
문	민주일보	2					2								2
	민중언론 참세상	1	1							1					
	민중의소리	7	4	1			2			1		2			4
	뉴스앤뉴스	8	8							6		2			
	브레이크뉴스	4	3	1						2					2
	빅뉴스	2	2												2
	소비자가만드는신문	3		1			2								3
	스타엔	1				1									1
	스포츠서울TV	1		1											1
	시민의소리	2	2							1	1				
	아츠뉴스	1		1											1
이	에이블뉴스	2	2												2
	엑스포츠뉴스	1		1											1
	오마이뉴스	25	24			1				10	2	6			7
	올인코리아	1	1												1
	이데일리(인터넷)	4		2			2				1				3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감응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이슈제주	2	2							2					
	인터넷 전남희망신문	2	2												2
	제주의소리	6	6							4					2
	제주인터넷뉴스	2	2							2					
	제주투데이	2	2							2					
	조선비즈닷컴	1	1								1				
	조이뉴스24	1				1									1
	충북인뉴스	3	2	1						1					2
	컨슈머타임즈	4	1	1			2								4
	코메디닷컴	2	2							2					
	통영인터넷뉴스	1					1				1				
	티브이데일리	3	2	1						2					1
	파인뉴스	3	3							1		2			
	프런티어타임스	2	1	1											2
	프레시안	13	13							3		9	1		
	프로슈머	2					2								2
	한강타임스	2	2							2					
	한국취업신문	1	1												1
	헬스코리아뉴스	2					2								2
	익산시민뉴스	1	1									1			
	포커스인아시아	1	1												1
	표수	2	2									2			
	KNB방송	1	1							1					
	구리넷	5	5							2					3
	전남인터넷신문	1	1									1			
	스타뉴스	5	4			1				2		1			2
	디펜스21	2	2							2					
신문	포바이포 아웃도어뉴스	2	2									2			
	e상조뉴스	5	5							5					
	enews24	2	1	1										1	1
	경남타임즈	2	2							1					1
	인터넷 충남사신문	2	2									2			
	폭로닷컴	2	2							2					
	성남일보	2	2							2					
	푸드투데이	1	1							1					
	호남뉴스24	1	1							1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2	2							2					
신문	조세일보	1		1											1

매체유형	구분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감응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365	1		1											1	
	오에스이엔	1				1									1	
	이버즈	1		1											1	
	무비조이	1		1											1	
	DKBnews(도깨비뉴스)	1		1											1	
	더블유스타뉴스	1		1											1	
	프레스바이플	1		1											1	
	CBSi	1	1									1				
	e머니투데이	31	30	1						7	1	13			10	
	논산투데이	2	2							2						
	뉴스한국닷컴	2	2									1			1	
	동아닷컴	44	39	2		1	2			20	7	5			12	
	로컬세계닷컴	1	1												1	
	매경닷컴	15	11	1		1	2			5					10	
	세계닷컴	12	8	2			2			5		2	1		4	
	스포츠서울닷컴	3	1	2						1					2	
	아시아경제닷컴	8	6	2						3	1		1		3	
	아시아투데이닷컴	18	15	1			2			4					14	
	아이(i)-이투뉴스	5	2			1	2			2					3	
	아주뉴스(인터넷아주경제)	7	7							3	1				3	
	온라인중앙일보	25	22			1	2			6	2	3		1	13	
	신문	이뉴스투데이	2	1	1											2
		이투데이	4	1			1	2				1				3
		인터넷 경기일보	3	2			1				1					2
경북매일신문		1	1							1						
인터넷 경안일보		3	3							1		2				
인터넷 경향매일		1	1							1						
인터넷 경향신문		22	21			1				8	3	4			7	
인터넷 광남일보		2	1				1			1					1	
인터넷 광주일보		1	1								1					
인터넷 금강일보		2	2							1					1	
인터넷 기독일보		2	2												2	
인터넷 나주투데이		1	1							1						
인터넷 남도일보	2	2							1					1		
인터넷 내외일보	3	3							3							
인터넷 뉴스포스트	2					2								2		
인터넷 대구신문	2	2							2							
인터넷 도시재생신문	1	1							1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 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2	2							2					
	인터넷 매일신문	1				1									1
	인터넷 부천신문	4	4							2		2			
	인터넷 부평신문	1	1							1					
	인터넷 새전북신문	3	3							1		2			
	인터넷 서울경제	7	6	1						2				1	4
	인터넷 서울신문	9	8	1						3					6
	인터넷 스포츠경향	3	2			1									3
	인터넷 스포츠조선	3	2	1											3
	인터넷 시사저널	6	6							4	1	1			
	인터넷 신아일보	1	1									1			
	인터넷 엠티엔(MTN)	2					2								2
	인터넷 울산신문	1	1												1
	인터넷 일간스포츠	1		1											1
	인터넷 일요서울	2	1			1						1			1
	인터넷 일요시사	7	5				2			4					3
	인터넷 일요신문	1		1											1
	인터넷 전기신문	2	2								2				
	인터넷 중앙SUNDAY	2	2							1					1
	인터넷 청년의사	4	4							2			2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3	3							3					
	인터넷 한겨레	28	28							7	2	9			10
	인터넷 한겨레21	3	3							3					
	인터넷 한남일보	4	4							3					1
	인터넷TheKoreaHerald	2	2												2
	인터넷강원일보	2	2							2					
	인터넷경남도민신문	1	1							1					
	인터넷경남도민일보	4	4												4
	인터넷경남매일	5	4	1						4		1			
	인터넷경남신문	5	4						1	1		2			2
	인터넷경남연합일보	1	1							1					
	인터넷경남일보	2	2									2			
	인터넷국제신문	3	2	1						1			1		1
	인터넷내일신문	2	2							1					1
	인터넷놀이신문	2	2							2					
	인터넷동양일보	1	1							1					
	인터넷 메트로	2	2												2
	인터넷 문화일보	9	9							3	2	2			2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인터넷 미디어오늘	17	17							7		7			3
	인터넷부산일보	4	3	1							1	1			2
	인터넷서울일보	1	1							1					
	인터넷아시아일보	2	2												2
	인터넷안산타임스	1	1							1					
	인터넷인천일보	3	3							1		2			
	인터넷일간뉴스경남	1	1												1
	인터넷주간동아	1	1							1					
	인터넷중부매일	3	3									2			1
	인터넷중부일보	10	9	1						5		2			3
	인터넷창원일보	2						2							2
	인터넷충청매일	3	3							2		1			
	인터넷충청일보	2	1	1						1					1
	인터넷충청타임즈	3	3							2					1
	인터넷충청투데이	5	4			1				3					2
	인터넷한국농정	2	2									2			
	인터넷한국일보	14	12	1			1			4		1		1	8
	인터넷한라일보	2	2							2					
	인터넷헤럴드경제	12	8	2			2			6			1		5
	조선닷컴	65	57	4			4			18	4	20	2		21
	쿠키뉴스	14	11	1			2			3	1	2	3		5
	프라임경제	2	2							2					
	한경닷컴	16	14				2			5					11
	인터넷주간한국	3	3							3					
	아이피디저널(IPD저널)	3	3							3					
	인터넷 전국매일	2	2							1	1				
	인터넷 삼군신문	2	2							2					
	인터넷 기자협회보	1	1							1					
	인터넷 전남매일	1	1												1
	인터넷 무등일보	1	1							1					
	인터넷 강화뉴스	2	2									2			
	인터넷 담양신문	1	1								1				
	인터넷 장성사람들	1	1												1
	인터넷 성남도시신문	1	1									1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1	1							1					
	인터넷 자치안성신문	2	2							2					
	경기북부인터넷뉴스	2	2								2				
	인터넷울산광역시매일	5	5							3					2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신문	인터넷 서울구민신문	2	2												2
	인터넷 신안신문	1	1							1					
	e머니위크	1	1											1	
	인터넷민주신문	2	2							1	1				
	인터넷 수산신문	2	2							2					
	인터넷 신동아	4	4							4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2	2							2					
	인터넷 브레이크뉴스 전남	2	2							2					
	인터넷 경기신문	3	3							1		2			
	인터넷 기호일보	2	2									2			
	인터넷 경북일보	2	2							2					
	인터넷 성동저널	2	2									2			
	인터넷 기독교신보	2	2										2		
	인터넷 스포츠동아	1		1											1
	인터넷 중도일보	1		1											1
	대전일보닷컴	1		1											1
	인터넷 나무신문	2	2							2					
	인터넷 스포츠한국	1				1									1
	인터넷 여주시민신문	2	2							1		1			
	소계	945	799	63		19	61	2	1	348	49	157	18	5	368
인터넷 뉴스 서비스	네이버	118	89	8		10	11			11		2			105
	네이트	65	56	5		1	3			9					56
	다음	98	79	6		8	3	2		7			1	1	89
	드림위즈	1	1												1
	모네타뉴스	2		2						1					1
	야후	18	17	1						2					16
	조인스엠에스엔	2	2							2					
	줌닷컴	6	6							2					4
	파란	1	1												1
	iKNN	1	1												1
	iMBC	35	32	2			1			11	5	8	1		10
	KBS i	36	33	2			1			9		7	2		18
	SBSi	12	10	1			1			4		2	1		5
	와우넷	5	4			1				3		1			1
	인터넷 BBS불교방송	1	1							1					
	인터넷 TV조선	9	8	1						3	2	3			1
	인터넷 소비자TV	3	3							3					
	인터넷 채널A	3	3								1				2

매체 유형	구분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jtbc	11	10		1					6					5
	인터넷 MBN	13	9	4						7					6
	인터넷 YTN	11	10		1					3	2	1			5
	인터넷 엠비씨에브리원	1		1											1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1	1												1
	인터넷 KBS drama	1	1												1
	소계	454	377	33	2	20	20	2		84	10	24	5	1	330
	계	2,401	2,110	128	8	43	101	10	1	805	142	427	44	11	972

11.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를 서울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신청효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73.6%, 지역은 65.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제3중재부의 신청효율이 84.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강원 중재부와 제주 중재부가 각각 81.8%의 신청효율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조정성공률은 광주 중재부가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제3중재부(82.2%) 강원중재부(81.8%)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중재부의 경우 지역 중재부에 비해 취하되는 사건의 수가 월등히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서울의 경우, 포털 등이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함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전체 142건 중 약 73.9%인 105건이 서울 중재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재부에서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광주 중재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2-11]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 의	이 의											
2010	서울1	258	41	48	8				34		127	(109)	91.8	100.0	88.4
	서울2	234	85				11		17		121	(104)	88.5	91.7	87.1
	서울3	241	75	12	3	(2)	5		16	1	129	(113)	91.6	95.2	90.2
	서울4	225	32	8	12		10	(1)	3		160	(136)	64.5	92.6	79.7
	서울5	215	27	10	2		24		6		146	(104)	58.7	76.9	67.5
	서울6	238	74	23	1		6		9		125	(92)	93.3	95.1	82.5
	서울7	216	27	1			20		40		128	(101)	58.3	74.7	73.3
	소 계	1,627	361	102	26	(2)	76	(1)	125	1	936	(759)	81.9	90.7	81.6
	부산	59	13				13		1		32	(19)	50.0	56.7	55.2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0	대구	31	16				8	(1)	2		5	(1)	66.7	68.0	62.1
	광주	77	20	3	4		18	(2)	1		31	(14)	51.1	69.5	51.3
	대전	42	29						5		8	(4)	100.0	100.0	89.2
	경기	120	44		2		17				57	(48)	69.8	78.5	76.7
	강원	28	9				15	(1)			4	(4)	37.5	40.0	50.0
	충북	35	23				4		3		5	(3)	85.2	86.2	81.3
	전북	49	22				5				22	(14)	81.5	85.7	73.5
	경남	89	57	4	8						20	(14)	88.4	100.0	84.3
	제주	48	36				1				11	(11)	97.3	97.6	97.9
	소 계	578	269	7	14		81	(4)	12		195	(132)	74.4	81.8	72.3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0	88.0	79.2
2011	서울1	179	61	20	6	(1)	31		7	2	52	(28)	68.6	76.0	64.7
	서울2	163	68	4			14		13	4	60	(32)	83.7	86.5	71.2
	서울3	303	93	4	5	(2)	13				188	(162)	84.3	92.3	86.1
	서울4	334	139	8	4		39		1	2	141	(121)	77.4	82.6	81.0
	서울5	143	29	9	2		38				65	(39)	48.7	64.8	53.8
	서울6	165	68	3	10		15		2	2	65	(30)	74.0	88.1	62.7
	서울7	178	38	1	1		49		11	2	76	(55)	43.8	56.6	57.0
	소 계	1,465	496	49	28	(3)	199		34	12	647	(467)	70.6	79.5	71.5
	부 산	36	12	1			5				18	(6)	72.2	84.4	52.8
	대 구	26	5				6			2	13	(8)	45.5	66.7	54.2
	광 주	49	12	3	3		19				12	(2)	40.5	50.0	34.7
	대 전	33	16				11				6	(4)	59.3	63.3	60.6
	경 기	118	59		2		22		2		33	(23)	71.1	75.0	70.7
	강 원	18	8		1		5		2		2	(2)	57.1	68.8	62.5
	충 북	47	24	2	1		10		4		6	(2)	70.3	76.2	65.1
	전 북	28	10	4			4				10	(4)	77.8	83.3	64.3
	경 남	174	65	6	5						98	(62)	93.4	100.0	76.4
	제 주	130	18				4		2		106	(100)	81.8	91.3	92.2
	소 계	659	229	16	12		86		10	2	304	(213)	71.4	82.6	70.8
	계	2,124	725	64	41	(3)	285		44	14	951	(680)	70.8	81.7	71.3
2012	서울1	253	64	4			78	(8)	7	5	95	(84)	46.6	58.1	66.4
	서울2	223	71	6	4		37		9		96	(66)	65.3	78.9	66.8
	서울3	314	114	6	1		25		3		165	(144)	82.2	87.7	84.9
	서울4	285	76	6	3		24			1	175	(141)	75.2	86.5	78.5
	서울5	246	73	18	24		49		4	1	77	(72)	55.5	73.2	67.6
	서울6	238	86	8	4		45		1		94	(79)	65.7	76.7	73.0
	서울7	224	65	1	13		36	(2)	12	4	93	(81)	57.4	75.7	71.6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2	서울8	49	8	5	2		7		3		24	(23)	59.1	74.1	78.3
	소 계	1,832	557	54	51		301	(10)	39	11	819	(690)	63.4	76.7	73.6
	부 산	50	17	2			7		4		20	(11)	73.1	80.0	65.2
	대 구	29	15				6				8	(4)	71.4	76.9	65.5
	광 주	92	49	8	4		7				24	(16)	83.8	90.0	79.3
	대 전	53	24		10		6				13	(13)	60.0	85.0	69.8
	경 기	119	43	3			43				30	(22)	51.7	60.2	57.1
	강 원	11	9				2						81.8	81.8	81.8
	충 북	55	23				16				16	(9)	59.0	60.0	58.2
	전 북	47	18	9			13		1		6	(1)	67.5	68.3	60.9
	경 남	80	27		1		20				32	(17)	56.3	66.7	55.0
	제 주	33	23				6				4	(4)	79.3	79.3	81.8
	소 계	569	248	22	15		126		5		153	97	65.7	72.6	65.1
계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5.7	71.5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제3장 손해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 손해배상사건수 및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취하 41.2%, 조정성립 30.2%, 조정불성립결정 19.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6.9%, 기각 2.0%, 각하 0.4% 순으로 집계되었다. 예년에 비해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6.9%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증가한 것(14.9%→19.4%)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신청되는 경우가 많고, 정정보도와 일괄적으로 합의되거나 조정불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표 3-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수 및 비율

(2010. 1. 1. ~ 2012. 12. 31.)

연 도	구 분	전체 청구건수	손해배상사건수	비율(%)
2010		2,205	773	(35.1)
2011		2,124	804	(37.9)
2012		2,401	794	(33.1)

[표 3-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 분 연 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조 정 성공률	본 안 성공률
2010	773	218	24	18[1]	56[1]	38		419[344]	76.6	87.1
	(100)	(28.2)	(3.1)	(2.3)	(7.3)	(4.9)		(54.2)		
2011	804	255	18	16[1]	100	12	7	396[290]	70.2	81.6
	(100)	(31.7)	(2.2)	(2.0)	(12.4)	(1.5)	(0.9)	(49.3)		
2012	794	240	27	28	153[2]	16	3	327[274]	59.6	72.4
	(100)	(30.2)	(3.4)	(3.5)	(19.3)	(2.0)	(0.4)	(41.2)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12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7,4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상담단계에서 적절한 안내를 함으로써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중앙액은 150만 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190만 원이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2011년 10월부터 중재위원 5인으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과물로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를 채택하였다.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는 침해법익 내지 보도매체의 규모에 따라 기준 금액을 설정한 다음, 침해의 양태나 내용,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가감하는 방식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다. 위원회는 이 산정표를 2012년 2월까지 시범 적용하였고, 이후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면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3-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10. 1. 1. ~ 2012. 12. 31. 단위 : 원)

구 분 연 도	청 구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10	100	10,000,000,000	65,993,749	20,000,000
2011	100,000	50,000,000,000	279,208,198	20,000,000
2012	10,000	3,418,600,000	74,250,871	30,000,000

[표 3-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0. 1. 1. ~ 2012. 12. 31. 단위 : 원)

구 분 연 도	조 정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10	150,000	20,000,000	2,739,744	1,000,000
2011	100,000	20,000,000	2,147,826	1,350,000
2012	300,000	10,000,000	1,895,000	1,500,000

[표 3-5]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2010. 1. 1. ~ 2012. 12. 31. 단위 : 조정건수)

구 분 연 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200만 원 미만	200만 원~500만 원 미만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합 계
2010	9 (31.0)	11 (37.9)	7 (24.1)	1 (3.4)	1 (3.4)	29 (100.0)
2011	15 (31.3)	20 (41.7)	10 (20.7)	2 (4.2)	1 (2.1)	48 (100.0)
2012	9 (16.7)	17 (31.5)	25 (46.3)	1 (1.9)	2 (3.6)	54 (100.0)

※ ()안의 숫자는 %

[사례 1] 최저액으로 조정된 손해배상청구 사례

A언론사는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할인행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B와 신청인 B의 자녀 C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 B와 C는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기사를 삭제하고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2] 최고액으로 조정된 손해배상청구 사례

A언론사는 정보당국의 전언을 근거로 모 국가 대통령의 딸과 신청인 B가 결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중 당사자간 손해배상금액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담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음을 인정, 신청인에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침해 유형별 손해배상 조정액을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500만 원, 최저 50만 원, 평균 175만 원,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300만 원, 최저 30만 원, 평균 132만 원, 성명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200만 원, 최저 50만 원, 평균 125만 원 정도였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는 최고 1,000만 원, 최저 300만 원, 평균 475만 원이었다. 특히 사생활 침해에 대한 최고액과 평균액 등이 다른 침해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례 2]와 같은 사건이 여러 언론사에 신청되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조정성립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6] 2012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2. 1. 1. ~ 2012. 12. 31. 단위 : 원)

침해유형	조정액	인용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26	500,000	5,000,000	1,750,000	2,000,000	1,000,000
초상권침해		19	300,000	3,000,000	1,320,000	1,500,000	500,000
음성권침해		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성명권침해		3	500,000	2,000,000	1,250,000	1,500,000	2,000,000
사생활침해		5	3,000,000	10,000,000	4,750,000	2,000,000	3,000,000

* 2011년부터 침해유형 중 기존 신용훼손은 재산상 손해로 변경됨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사건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5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118건, 사생활 침해 62건, 성명권 침해 43건, 음성권 침해 8건, 재산상 손해 4건, 기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2012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2. 1. 1. ~ 2012. 12. 31)

구분 침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명예훼손	558 (100)	209 (37.5)	40 (7.2)	146 (26.2)	6 (1.1)	2 (0.4)	155 (27.6)
초상권 침해	118 (100)	16 (13.6)	8 (6.8)	4 (3.4)	9 (7.6)	1 (0.8)	80 (67.8)
음성권 침해	8 (100)	3 (37.5)		1 (12.5)	1 (12.5)		3 (37.5)
성명권 침해	43 (100)	1 (2.3)	2 (4.7)				40 (93.0)
사생활 침해	62 (100)	11 (17.7)	5 (8.1)	2 (3.2)			44 (71.0)
재산상 손해	4 (100)						4 (100)
기타	1 (100)						1 (100)
계	794 (100)	240 (30.2)	55 (6.9)	153 (19.3)	16 (2.0)	3 (0.4)	327 (41.2)

* () 안의 숫자는 %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개인의 신청이 총 57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가기관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전혀 없는 이유는 정정이나 반론청구와 달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당사자 능력을 확대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기관이 아닌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3-8] 2012년도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2. 1. 1. ~ 2012. 12. 31)

구 분 신청인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개인	575 (100)	160 (27.8)	41 (7.1)	79 (13.7)	15 (2.6)	3 (0.5)	277 (48.3)
국가기관							
지자체	7 (100)	4 (57.1)		2 (28.6)			1 (14.3)
공공단체	11 (100)	1 (9.1)		6 (54.5)			4 (36.4)
일반단체	76 (100)	29 (38.2)	4 (5.3)	31 (40.8)	1 (1.3)		11 (14.5)
종교단체	2 (100)	1 (50.0)		1 (50.0)			
기업체	87 (100)	36 (41.4)		20 (23.0)			31 (35.6)
언론사	30 (100)	7 (23.3)	10 (33.3)	12 (40.0)			1 (3.4)
교육기관	6 (100)	2 (33.3)		2 (33.3)			2 (33.3)
계	794 (100)	240 (30.2)	55 (6.9)	153 (19.3)	16 (2.0)	3 (0.4)	327 (41.2)

※()안의 숫자는 %

제4장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인터넷신문은 2005년 하반기에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중재 대상 매체에 새로 포함되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건수는 시행 첫해인 2005년 48건에서 출발해 매년 꾸준히 늘었으며, 2010년 567건을 기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1년에는 705건, 2012년에는 94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전체 청구건수의 5.4%에 불과했으나 2010년 25.7%, 2011년 33.2%, 2012년 39.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조정사건이 급증한 이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9년 8월 7일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정·중재대상 매체가 아니었던 언론사닷컴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²⁾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4-1]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 정 성공률 (%)	본 안 성공률 (%)	신 청 효 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0	567	190	12	14	29[2]	43		279[219]	82.4	90.6	80.7
	(100)	(33.5)	(2.1)	(2.5)	(5.1)	(7.6)		(49.2)			
2011	705	230	22	19[1]	81	10	4	339[254]	71.6	82.4	73.4
	(100)	(32.7)	(3.2)	(2.7)	(11.5)	(1.4)	(0.5)	(48.0)			
2012	945	348	26	23	157[4]	18	5	368[310]	67.5	76.5	74.6
	(100)	(36.8)	(2.8)	(2.4)	(16.7)	(1.9)	(0.5)	(38.9)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2) 관련 규정은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9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제5장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의 시행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포털 및 방송사닷컴)도 조정·중재대상 매체에 새로이 포함되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의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며, 언론중재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에 인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시켰다. 2009년 8월 7일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2009년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청구건수는 181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8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이후 2011년 510건, 2012년 454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포털에 대한 청구건수가 줄어든 것은 주요 포털사들이 주로 아웃링크 방식³⁾으로 뉴스를 게재하는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포털의 아웃링크기사에 대하여는 기사언론제공사가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를 한 경우 대부분 그 내용이 포털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특별히 포털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정정보다 등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파란, 야후 등 주요 포털사들이 각각 2012년 7월 말과 12월 말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뉴스서비스도 함께 중단한 점도 이유로 들 수 있다.

[표 5-1] 최근 3년간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구 분 연 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 정 성공률 (%)	본 안 성공률 (%)	신 청 효 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10	841	77	69	6[2]	13	48		628[555]	88.5	95.8	88.7
	(100)	(9.2)	(8.2)	(0.7)	(1.5)	(5.7)	628	(74.7)			
2011	510	150	10		38		1	311[288]	80.8	87.1	88.0
	(100)	(29.5)	(1.9)		(7.5)		(0.2)	(60.9)			
2012	454	84	4	6	24	5	1	330[290]	74.6	89.8	84.4
	(100)	(18.5)	(0.9)	(1.3)	(5.3)	(1.1)	(0.2)	(72.7)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2012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사건을 처리결과에 따라 살펴보면 취하가 33건(72.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정청구가 조정성립 등으로 원만히 처

3) 아웃링크 : 포털에서 검색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포털사 홈페이지가 아닌 기사제공언론사 홈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됨

리될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게재한 다수 포털에서도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포털을 상대로 한 청구가 취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조정성립 84건(18.5%), 조정불성립결정 24건(5.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0건(2.2%) 등의 순이었다.

제6장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중재제도는 당사자 합의를 우선시 하는 조정과는 달리 중재부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결정을 내려 분쟁을 중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2005년 중재제도 도입 이후 2008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중재건수는 모두 31건으로 제도 활용이 다소 미진했으나, 2009년부터 위원회 중점추진과제로 중재제도 활성화를 선정하고 중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111건, 2010년 77건, 2011년 113건, 2012년 59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위원회 중재제도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12년 처리된 중재사건 59건 중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매체에 대한 중재건수가 51건(86.4%)이었고, 신문 등 기존 매체에 대한 건수는 8건으로 나타났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2012년 신청된 중재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59건 중 56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 외에는 초상권 침해가 3건 있었다.

[표 6-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도	구분	청구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기 타
2010		77	76						1
2011		113	112		1				
2012		59	56		3				

2. 청구권별 현황

중재사건을 청구권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정청구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론청구가 16건, 추후청구가 7건, 손해청구가 5건을 차지했다. 총 59건의 중재사건 모두 중재결정이 내려졌다.

[표 6-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및 처리결과

(2010. 1. 1. ~ 2012. 12. 31)

연도	구분	청구명	청구건수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10		정 정	35	34		1	
		반 론	28	28			

2010	추후	12	12					
	손배	2	2					
	계	77	76		1			
2011	정정	63	60				3	
	반론	27	24				3	
	추후	12	12					
	손배	11	11					
	계	113	107				6	
2012	정정	31	31					
	반론	16	16					
	추후	7	7					
	손배	5	5					
	계	59	59					

3. 매체 유형별 현황

2012년 신청된 중재사건을 매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51건으로 86.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신문, 방송, 뉴스통신 및 잡지 순이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는 기사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기사를 단순히 매개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중재신청의 특징은 단독 신청이 아닌,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신청에 수반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처리결과 면에서도 기사제공언론사의 조정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청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보다 용이하게 중재신청에 사전 합의하는경우가 많다.

[표 6-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0. 1. 1. ~ 2012. 12. 31)

구분 연도	청구건수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신문	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2010	77	54	12	7	3	1	
2011	113	99	8	3	2	1	
2012	59	51	4		1	2	1

제7장 자동소제기 현황

2012년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신청되어 자동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64건이었다. 그 중 법원에서 인용된 사건이 10건, 취하가 11건, 기각, 각하가 20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23건이다. 자동소제기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동아닷컴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가 4건, iMBC, MBC-TV, 인터넷 경향신문이 모두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7-1] 최근 3년간 자동소제기 및 1심 법원 판결결과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 도	구 분 건 수	청 구 명				이 의 신 청 인			1 심 결 과			
		정 정	반 론	손 배	추 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 용	취 하	기 각 각 하	계 속
2010	40	20	1	18	1	7	31	2	20	8	12	0
2011	38	23		15		6	30	2	16	11	5	6
2012	64	33	3	28		26	28	10	10	11	20	23
계	142	76	4	61	1	39	89	14	46	30	37	29

※ 인용은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 청구인낙 등을 포함

[표 7-2] 2012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 현황

(2012. 1. 1. ~ 2012. 12. 31)

매 체 유 형	매 체 명	건 수	청 구 명				이 의 신 청 인			1 심 결 과			
			정 정	반 론	손 배	추 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 용	취 하	기 각, 각 하	계 속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2	1		1		2						2
	동아일보	4	2		2		2		2				4
	조선일보	2	1		1			2		1		1	
	한겨레	2	1		1		2					2	
지역 일간지	대전투데이	2	1		1		2			1		1	
	충남일보	2	1		1		2			1		1	
	충민일보	2	1		1		2			1		1	
	전국매일	1	1					1			1		
무료일간지	이데일리	1			1			1			1		
중앙방송	KBS-TV	2	1	1				2					2
	MBC-TV	3	2		1			1	2				3
종합편성 채널	MBN	1			1			1				1	
	TV조선	2	1		1			2		1		1	
	채널A	2	1	1				2			2		
시사주간 신문	중앙매일	2	1		1		2			1		1	
	충청신문	2	1		1				2	1		1	
특수주간 신문	전기신문	2	1		1		2					2	
	덴탈포커스	2	1		1			2					2
인터넷 신문	인터넷 덴탈포커스	2	1		1			2					2
	인터넷 이데일리	1			1			1			1		
	통영 인터넷뉴스	1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인터넷 신문	동아닷컴	5	3		2		2	1	2		2		3
	이투데이	1	1				1				1		
	인터넷 경향신문	3	1	1	1		3				1		2
	인터넷 전기신문	2	1		1		2					2	
	인터넷 한겨레	2	1		1		2					2	
	조선닷컴	2	1		1			2		1		1	
	인터넷 전국매일	1	1					1			1		
인터넷 뉴스서비스	경기북부인터넷뉴스	2	1		1			2		1		1	
	iMBC	3	2		1			1	2				3
	인터넷 TV조선	2	1		1			2		1		1	
	인터넷 채널A	1	1					1			1		
	계	64	33	3	28		26	28	10	10	11	20	23

연도별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조 정

(1981.3.31. ~ 2012.12.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공률 (%)	신 청 효 율 (%)
		조정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1981	44	9			12 (5)	1	2	20 (2)	42.9	39.0	
1982	50	19			19 (5)		2	10 (4)	50.0	58.3	
1983	71	21			22 (7)	1	1	26 (8)	48.8	52.2	
1984	54	12			29 (8)	3		10 (5)	29.3	49.0	
1985	59	12			28 (5)	4		15 (7)	30.0	43.6	
1986	49	14			10 (2)	1		24 (11)	58.3	56.3	
1987	47	10			9 (4)	1		27 (2)	52.6	34.8	
1988	55	16			12 (5)		1	26 (13)	57.1	63.0	
1989	121	29			35 (10)		6	51 (21)	45.3	52.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49.4	59.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52.0	48.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0.6	55.2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57.9	56.2	
1994	541	162			127 (10)	7	24	5 (128)	56.1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42.5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42.7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67.1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69.2	59.6	
1999	641	244	11	1 (2)	102 (17)	24	5	237 (92)	68.0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72.0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0.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71.7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72.2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7.0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4.5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3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2.8	64.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5.5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82.6	73.9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0	79.2	
2011	2,124	725	65	40 (3)	285 44	14		951 (680)	70.9	71.3	
2012	2,401	805	76	66	427 (10)	44	11	972 (787)	64.1	71.5	
계	20,621	6,810	565	414 (32)	3,350 (287)	787	112	8,583 (5,361)	66.2	64.7	
	100.0%	33.1%	2.7%	2.0%	16.3%	3.8%	0.5%	41.6%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2005.7.28. ~ 2012.12.31.)

연 도	구 분	종 재 건 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2011		113	107			6
2012		59	59			
계		391	338	46	1	6
		100.0%	86.4%	11.8%	0.3%	1.5%

2012년도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사의 자율규제나 조정·중재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역할을 해왔다.

2012년에 위원회는 시정권고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TF팀을 구성하여 시정권고 효과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1년 11월 제정한 '시정권고 결정문 등의 송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분기별·반기별로 언론사에 시정권고 결정현황 등을 꾸준히 송부해오고 있다.

1. 침해 유형별 분석

개인적 법익 침해의 시정권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보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100건에서 40건으로, 사생활 침해가 36건에서 5건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더해, 위원회가 지속적인 시정권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된다. 사회적 법익 침해의 자살관련 보도가 2011년 189건에서 2012년 49건으로 감소한 것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사회적 법익 침해의 마약 및 약물보도는 전체 시정권고 건수의 44.8%를 차지하며 작년의 22.3%와 비교해 2배나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시정권고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마약 및 약물보도의 시정권고 건수와 비율이 증가한 것은,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마약 관련 보도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약 관련 보도로 인하여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권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 및 약물보도가 116건(44.8%), 자살 관련 보도가 49건(18.9%),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가 40건(15.4%), 범죄수법 상세묘사가 40건(15.4%), 기타 나머지 법익침해 보도가 14건(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도	구 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 용법 등 공개	자 살 관 련 상세묘사	범죄수법 상세묘사 (기 타)	
2010	284 (100)	2 (0.7)		49 (17.3)	2 (0.7)	10 (3.5)	4 (1.4)	199 (70.1)	18 (6.3)	
2011	426 (100)	2 (0.5)		100 (23.5)		36 (8.5)	95 (22.3)	189 (44.4)	4 (0.9)	
2012	259 (100)	5 (1.9)	3 (1.2)	40 (15.4)		5 (1.9)	116 (44.8)	49 (18.9)	41 (15.8)	

*()안의숫자는 %

2. 매체 유형별 분석

2012년 한 해 동안 내려진 259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160건(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간지 74건(28.6%), 뉴스통신 21건(8.1%), 주간지 3건(1.2%), 월간지 1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0. 1. 1. ~ 2012. 12. 31.)

연도	구 분 총 계	일 간 지		처 리 결 과				
				월간지	주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 송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2010	284 (100)	22 (7.7)	74 (26.0)	5 (1.8)	14 (4.9)	20 (7.0)	149 (52.4)	
2011	426 (100)	46 (10.8)	60 (14.1)	1 (0.2)	20 (4.9)	41 (9.6)	253 (59.3)	5 (1.2)
2012	259 (100)	51 (19.7)	23 (8.9)	1 (0.4)	3 (1.2)	21 (8.1)	160 (61.8)	

*()안의숫자는 %

[표 3]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12. 12. 31.)

연도	구 분 권고 건수	침 해 유 형									종 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일 간 지	주 간 지	월 간 지	뉴 스 통 신	인 터 넷 신 문	방 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용량 ·용법 등 공개	자 살 관 련 상세묘사	범죄수법 상세묘사 (기 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150	9		15	16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0			127	11	1	20	43	
2008	289	4		48	8	30	27	97	75			124	19	1	31	112	
2009	253		1	97	6	15		93	41			57	15		20	132	29
2010	284	2		49	2	10	4	199	18			96	14	5	20	149	
2011	426	2		100		36	95	189	4			106	20	1	41	253	5
2012	259	5	3	40		5	116	49	41			74	3	1	21	160	
계	6,699	726	137	2,112	1,041	355	1,219	855	254			5,269	149	23	353	868	37
	100.0%	10.8%	2.1%	31.5%	15.5%	5.3%	18.2%	12.8%	3.8%			78.7%	2.2%	0.3%	5.3%	13.0%	0.5%

제2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사례

※ 제2부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 · 처리한 총 2,401건의 조정사건과 59건의 중재사건 중 44건의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합니다. 주요 사례는 언론조정 · 중재사건이 접수된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수록되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

신청인의 아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회피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사 건 : 2012서울조정27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원 순

피신청인 : (주)조선방송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2. 01. 0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2011년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허벅지 통증으로 나흘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해 12월 재검에서는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아 병역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지난해 공군에 자원입대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입은 부상으로 인한 하지방사통과 허리통증 등으로 군복무가 어려워 귀가 조치됐고, 이후 군지정 병원의 검사와 병무청의 재검을 통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허리디스크가 인정돼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TV조선 :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현역에서 공익으로'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5일자 21:00)

내 용 : ▷ 앵커 : 조선일보 취재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박시장의 아들, 몇 달 전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허리통증을 이유로 귀가했었습니다. 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은 작년 8월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나흘 만에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장선거기간 동안 본인이 양손으로 입양돼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점과 맞물려 아들의 병역의혹이 불거지자 “축구시합에서 부상당한 후유증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10월말에는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박씨는 아버지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한달 뒤 재입영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수핵탈출증, 즉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박 시장 : “취재를 한번 해보세요, 취재”

▷ 리포트 : 그러나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던 박씨가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TV조선 밤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익근무’

2. 내 용 : 본 방송은 2012년 1월 5일 밤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작년 8월 공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나흘 만에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 했으며,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지 한 달 뒤 재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가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던 박씨가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은 건 이해하기 어려워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과 군지정 병원 등에서 확인한 결과, 박씨가 작년 현역병으로 입영 후 나흘 만인 9월에 귀가 조치된 사유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발병한 대퇴부 신경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하반신이 저리고 허리통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입영통지를 받은 후 군지정 병원인 해민병원에서 12월9일 정밀재검을 한 결과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로 판명되었고, 이러한 지병 때문에

12월 27일 병무청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4급 판정)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시장의 아들은 평소의 지병에 의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이며, 본 방송에서 보도한 것처럼 병역을 회피하려는 어떤 의혹도 없으므로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관련 반론보도

나. 내용: TV조선은 지난 5일 <9시 뉴스 ‘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이 현역 입대했다 귀가한 뒤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일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측은 작년 공군에 자원입대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입은 부상으로 인한 하지방사통과 허리통증 등으로 군복무가 어려워 귀가조치됐고, 이후 군지정 병원의 검사와 병무청의 재검을 통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허리디스크가 인정돼 4급 판정을 받았으며 병역을 회피한 적도 없고, 회피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 후 최초로 방송되는 TV조선의 <9시 뉴스 ‘날’> 프로그램(21:00~22:00)에서 제1항의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만큼 앵커로 하여금 다른 기사들과 같은 형식으로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이 때 자막은 “박 시장 아들 병역 회피한 적 없어”로 하여 계속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news.tv.chosun.com>)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제1항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012. 01. 2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TV조선 :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박 시장 아들 병역 회피한 적 없어'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27일자 21:0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

신청인이 주유소협회의 국회의원 불법후원 관련 내부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42·4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제이티비씨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2. 01. 1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주유소협회가 국회의 특정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고 전하면서 협회 관계자인 신청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담당 기자로부터 취재연락을 받은 후 단순한 질의응답을 하였을 뿐 해당 통화내용이 방송에 보도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본인이 마치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보도되어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와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jtbc: 「뉴스10」 프로그램 「[탐사추적] 주유소협회 국회의원 불법후원금 줬다」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6일자 22:00)

내 용 : ▷ 앵커 : 주유소협회가 국회의 특정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 해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청목회의 후원금으로 파문이 일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 1만 4천여 개 주유소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주유소협회. 2년 전, 이 협회 공금 통장에서 수천만 원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 협회 관계자 : 출금 전표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 기자 : 협회 간부에 따르면 문제의 돈은 협회 계좌에서 전국 시도 지회 계좌로 이체된 뒤 각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원에게 전달됐습니다.

회원들은 협회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납부했다는 겁니다. 협회 간부들은 특정 상임위를 겨냥한 이같은 로비를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었습니다.

▷ 협회 관계자 : 협회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무국 국장급 정도 돼서네요.

▷ 기자 : 협회가 조직적으로 국회의원 후원에 나선 것은 주유소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 해섭니다.

▷ 협회 관계자 : 회장단 회의 석상에서 국회의원한테 줬다. 그때는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밖으로 새면 골치 아플 수가 있으니까. 카드수수료 인하 로비자금으로 줬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 기자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게재되고 회원들 간에 논쟁도 벌어집니다. 협회 공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후원금을 은폐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고 이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jtbc <뉴스 10>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협회 내부자 고발’ 관련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2월 26일 jtbc 뉴스 프로그램에서 “협회 내부자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협회 관계자’라는 자막과 함께 ‘협회 사람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무국 국장급 정도 돼서네요.’라는 멘트를 방송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당사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내부 고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1년 12월 26일자 jbc <뉴스10> 프로그램 [주유소협회, 불법후원금] 제목으로 주유소협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후원금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진술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은 불법 후원금과 관련하여 내부 고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을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의 성명 또는 직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또한 보도의 변조된 음성만으로는 신청인의 음성인지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내용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 법률 조항에 의한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보도에서 피해자로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의 성명 또는 직책이 직접 언급된 바가 없고, 또한 피신청인의 방송 보도에 사용된 변조 음성만으로는 그것이 신청인의 음성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한 그 밖의 자료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변조 음성이 신청인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01. 30.

사례 3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단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부산조정11 반론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피신청인 : 부산일보 주식회사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2. 02. 2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부산일보의 대주주인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해당 언론사의 경영과 편집권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현재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벌이는 등 부산일보의 편집권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였다.
- 또한, 공익재단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노조의 사장추천권 요구를 거절하는 등으로 언론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등의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부산일보가 오래 전부터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확실히 보장하여 편집권 독립을 수호해 왔고,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신문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박근혜 위원장은 정수장학회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 단체는 이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순수한 공익활동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은 관할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으며, 결국 피신청인은 2012. 05. 04.자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25개의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부산일보를 대상으로 반론청구(2012부산조정12)를 제기하였고, 담당중재부는 위 사건(2012부산조정11)과 같이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부산일보 :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1면)

내 용 : 부산일보 노조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을 향해 정수재단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

을 열었다. 회견에서 노조는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은 말로만 정수재단을 사회에 환원했다면서 자신을 보좌하던 비서관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소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는 박 의원이 평소 그토록 강조하는 신뢰와 원칙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며 “앞에서는 번듯하게 말하고 뒤로는 집착의 끈을 놓지 않는 두 얼굴의 지도자로는 대선에서 희망이 없고, 만약 당선 되더라도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수재단은 5·16장학회의 후신으로 부산일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박 의원이 재단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박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최필립(84)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부산일보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재단과의 관계 재설정을 요구하는 노조에 부산일보 사장이 징계 등 초강수를 들고 나오는 것은 대선을 앞둔 사전정지 작업”이라며 “명목상의 이사장과 사장을 내세워 부산일보를 간접 통치하고자 하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언론노조 위원장은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나와 무관하다’고 발뺌하는 것이 박근혜의 원칙이냐”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며 측근을 이사장으로 구성한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재단과 다른 점이 뭔가”라고 되물었다.

이○○ 지부장은 기자회견 후 국회 앞에서 정수재단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한편 부산일보는 사장후보추천제 도입을 요구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이○○ 지부장을 징계위에 회부해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일보 기자회견이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편집국장도 징계에 반대하는 서한을 사내게 시판에 올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을 비롯해 전○○ 한겨레신문지부장, 강○○ 경향신문지부장, 이○○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김○○ 전자신문지부장 등 언론사 노조위원장들은 ‘정수재단 사회 환원’을 위한 부산일보 조합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연대 투쟁할 것임을 밝혀 언론계 전반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일보 : (2) 『충선·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2면)

내 용 : 부산일보 노조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상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는 언론으로서의 공정성 확립이 절실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배경·전망

△배경=지난 2004년 4월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치렀던 17대 총선 당시 부산일보의 논조에 대해 안팎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거세게 불거졌었다. 이 사례에 비춰 볼 때 박 전 대표가 직접 후보로 나설 것이 유력한 대통령 선거 국면이 되면 또다시 공정보도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정수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다 지난 2005년 물러났으나 청와대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비서관 출신 최필립(84) 씨가 후임 이사장을 맡음으로써 그 동안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간접 소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6년 대통령 직속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부산지역 유력 기업인이던 김지태 씨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사와 부동산 등을 5·16 쿠데타 정권이 강제 헌납 받았으므로, 이 헌납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5·16장학회(이후 정수장학회로 명칭 변경)의 재산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부산일보 MBC 경향신문 등 정수재단 관련 언론사 노조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수재단의 이사진 교체와 재단명칭 변경, 부산일보 경영진 임명절차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런 요구에 대해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재산의 사회 환원이라는 명분으로 공익법인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재단 이사진에 친인척이나 지인을 앉혀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여타 사례들과 정수재단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평가다.

△전망=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정수재단 문제가 대선 1년을 앞두고 일찌감치 불거짐으로써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언론 공공성 확보와 공정보도 수호를 위해 정수재단과 부산일보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문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수재단이 쥐고 있는 ‘경영진 선임권’을 민주화하자고 요구해 온 이○○ 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장을 사측이 중징계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오히려 정수재단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수재단 문제를 제기할 뿌리를 잘라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통 큰 기부를 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행보와 대비해 박 전 대표의 재산과 그 형성과정의 핵심에 있는 정수재단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일보 :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1면)

내 용 : 정론직필을 위한 부산일보 사원들의 ‘편집권 독립운동’이 불붙었다.

정수재단의 사회 환원과 사장후보 추천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 끝에 회사 측이 30일 신문발행을 중단했다. 회사는 또 이후에도 기사가 문제가 되면 신문 발행을 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노조는 이를 사측에 의한 ‘신문 발행 거부 사태’로 규정하고 편집권 독립과 신문 발행 정상화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부산일보 사측은 이날 편집국이 부산일보의 노사갈등 내용과 그 전말을 다룬 기사를 지면에 실자

사장 명의로 운전기를 돌리지 말 것을 지시, 이 날짜 신문발행이 중단됐다. 또 부산일보 인터넷 뉴스사이트도 폐쇄했다. 부산일보의 운전기가 멈춰 선 것은 지난 1988년 편집권 독립 투쟁 이후 23년 만이며, 사측이 신문발행을 거부한 것은 65년 부산일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앞서 회사 측은 29일 정수재단의 사회 환원과 사장후보 추천제 도입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산일보 노조 위원장에게 면직이라는 초강도 징계를 내렸다.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 기사를 지면에 게재한 이○○ 편집국장에 대해서도 30일 상사 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대기 발령 징계를 내렸다.

회사는 또 회사 기강 문란 등의 이유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사 게재를 강행할 경우 무기한 발행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박근혜 의원을 상대로 ‘정수재단의 실질적 사회 환원과 현 경영진 퇴진, 신문 정상 발행’을 위한 총력 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후부터 사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편집국 부장단과 기자들도 편집국장 징계 무효를 선언하며 현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 정상 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결의했다.

유례없는 부당 징계 남발과 신문 발행 중단 사태에 전국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도 사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30일 오전 부산일보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노조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산일보 트위터(twitter.com/busantweet) 등에도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 투쟁을 지지하는 독자와 시민들의 격려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은 부산일보의 발행 중단 사태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신문발행 중단 사태는 편집권을 침해하고, 언론자유를 짓밟고 있다는 반증으로 정수재단의 사실상 소유주인 박근혜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도 논평을 통해 “부산일보 노조의 투쟁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 공정성과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수재단의 실소유주인 박근혜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또다시 침묵과 부정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행 노동법상 사장 임명 방식과 같은 경영권에 관한 문제는 노사 협의나 합의의 사안이 아니며 이에 대한 노조의 침해나 간섭은 불법”이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질서를 문란 시킨 노조 위원장과 편집국장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 (4)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면)

내 용 : 정치권은 부산일보 경영진의 노조위원장 및 편집국장 징계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고, 조속한 신문발행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부산일보 문제와 관련, “편집과 지면 완성까지 마친 상태에서 (경영진이) 윤전기 가동을 중단시켜 신문이 발행되지 않은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사태”라며 사측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 편집국장과 이○○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수재단 전 이사장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편집권 독립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노조와 기자들의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30일 긴급논평을 통해 “정수재단의 사회환원과 사장후보 추천제 도입을 요구한 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이○○ 편집국장을 대기발령 하는 등 도저히 시민들이 이해되지 않는 절차를 강행한 정수재단과 부산일보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수재단의 사회적 환원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정수재단의 전 이사장인 박근혜 의원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수재단의 사회 환원과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도 이날 논평에서 “부산일보 노조의 투쟁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 공정성과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며 “부산일보 경영진의 징계 추진은 언론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는 언론사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부산시당 유기준 위원장은 이날 본사로 전화를 걸어와 사측의 징계와 신문발행 중단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위원장은 “신문제작과 관련해 노조위원장과 편집국장을 징계하는 것은 너무나 것 같다. 더욱이 65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강 이남의 최고 일간지인 부산일보가 사내 사정을 이유로 발행을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신문발행은 그날그날 독자와의 약속인 만큼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1면)

내 용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지난 2005년 정수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부산일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인 최필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정수재단 이사장 자리에 직접

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산일보 노조위원장은 “2005년 3월 최필립 정수재단 이사장이 취임 직후 노조와 가진 면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해 맡게 됐다’며 이사장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이같은 발언은 이후에도 본인으로부터 수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만난 자리에서도 최 이사장은 ‘부산일보가 행여라도 노조의 강성 투쟁으로 문을 닫게 되면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뵈면 면목이 없지 않겠느냐’, ‘부산일보가 박 전 대표에게 잘 해준 게 뭐 있느냐’는 등의 말을 해 재단 이사장이 여전히 박 전 대표의 영향력 하에 있음을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수재단 측은 “부산일보의 경영과 편집권 문제는 전적으로 부산일보 구성원에게 일임했으며, 재단이 이에 대해 관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도 5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수장학회는 이미 사회에 환원된 공익재단이고, 2005년 퇴임 이후 재단 경영에 일절 관여한 적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면서 “다만 부산일보가 저렇게까지 된 것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화로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수재단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통해 “부산일보 노사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편향 논란을 끝내기 위해 공동으로 경영진 선임제도를 마련해 사주인 정수재단과 협의키로 했지만, 사측은 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조위원장 해고와 신문발행 중단 등 과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과 편집권 침해 행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부산일보 종사원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올바르며, 박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중대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일보 회사 측은 이○○ 편집국장과 이○○ 노조 위원장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출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1일 이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11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과 노조는 5일 오전 11시 부산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진의 신문 발행 거부로 지난 30일자 부산일보가 발행 중단된 책임을 물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사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노-사 갈등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부산일보 : (6)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 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1면)

내 용 : 부산일보 직원들의 ‘제2의 편집권 독립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일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수재단을 상대로 재단의 사회 환원과 사장후보 추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노조와 편집국 기자들의 편집권 독립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송○○(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신부와 이○○ 경실련 상임고문, 향토사학자 최○○, 소설가 이○○ 씨 등 부산지역 원로 인사 21명은 정수재단의 실질적인 사회 환원과 부산일보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6일 부산 광장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의 원로 인사들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수재단의 사회 환원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원로 인사들은 “부산일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지난 1988년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 초유의 신문사 파업이 진행될 당시 전 시민과 함께 우리도 함께 참여했던 사실과 그 애착 때문이다”며 “박근혜 의원과 정수재단에 의해 또다시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이 유린된다면 독자들과 부산 시민 전체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도 “부산일보 노조의 투쟁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공공성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65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강 이남의 최고 일간지인 부산일보는 부산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동참을 결의했다.

부산지역 43개 주요 시민단체와 야5당이 소속된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도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5일 부산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우리 부산시민이 부산일보를 지키는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또 “사측의 지시로 지난 11월 30일자 신문 발행을 중단함으로써 인해 피해를 입은 독자와 광고주들을 규합해 ‘시민소송단’을 구성해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데 따른 법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일보 독자 릴레이 1인 시위’ 등 범시민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야권과 진보진영 인사들의 격려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유시민 통합신당 공동대표는 7일 오전 민병렬 · 고창권 시당위원장과 함께 본사를 찾아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앞서 6일 오후에는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가 김영희 부산시당 위원장과 함께 본사를 방문해 성원을 보냈다.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오후 강용호 민주당 중앙위원과 함께 노조와 편집국을 지지 방문했다.

부산일보 : (7) 『독자와 약속 내뿜개친 사측 뚝고 직원들이 윤전기 돌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3면)

내 용 : 부산일보는 지난 1988년 파업으로 기자들이 편집국장을 뽑는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였다.

하지만 이후로도 정수재단은 부산일보 경영과 편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부산일보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재단이 일방적으로 사장 선임권을 행사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산일보 직원들의 요구는 추천제 등을 통해 사장선임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나아가 군사정권 시절 강탈한 장학재단을 온전하게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론직필과 불편부당을 완결짓는 것이 목표다. 이 목표를 위해 벌어지는 최근의 사태를 부산일보 직원들은 제2의 편집권 독립운동이라고 부른다.

■ 윤전실로 간 기자들

지난 1일, 이른 아침부터 부산일보 4층 편집국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전날 한국 언론사상 초유의 ‘사측에 의한 신문 발행 중단’ 사태가 발생한 탓이었다. 부산일보 회사 측은 ‘노조의 주장을 담은 기사가 실린 신문은 절대 발행할 수 없다’며 제작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켰다. 신문이 결간되자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미발행 원인을 아는 독자들의 격려 전화도 하루 종일 편집국에 울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신문은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기자들과 제작, 광고, 독자서비스국 등 직원들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한마음이였다. 4층 편집국에서 편집을 마친 기자들이 부산일보 3층 제작국으로 몰려갔다. 필름 제작이 완성되자 이번엔 윤전기가 있는 지하실로 달려갔다.

육중한 윤전기에 한 장 한 장 지면 인쇄용 판이 걸리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이○○ 노조 위원장이 가동 버튼을 눌렀다. 굉음을 내며 윤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치 신문의 1면 제목은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선언’이었다.

■ 멈출 수 없는 신문

“신문이 중단된다는 것은 정보의 흐름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독자들이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뜻이다. 독자와의 약속인 신문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발행이 중단되면 안 된다.”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이○○ 교수는 신문은 사회의 공적인 그릇이기에 편집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유권은 경영적 책임이고, 편집권은 제작의 책임으로 각각의 구조가 역할 분담을 해야 정론 기능이 가동되기 때문에 편집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 교수도 “신문 발행은 상식”이라며, “매일 신문을 내기 때문에 일간신문인데 독자와의 신문 발행 약속을 못 지키면 존속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신문 발행을 거부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채○ 교수도 “신문 발행은 기본적으로 존재 이유이자 독자와의 어길 수 없는 약속”이라며 “방송으로 치면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방송 중단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사태다”라고 규정했다.

■ 제2의 편집권 독립

언론학자들은 소유권과 편집권을 신문사를 구성하는 두 개의 권리라고 규정한다. 신문사도 하나의 기업이니까 경영권이 있다. 사주나 경영진은 경영을 책임지고 기자들은 콘텐츠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제작 자율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언론학자들은 주장한다. 신문제작의 자율적 권리인 편집권이 경영권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신문을 조간으로 할 것인가 석간으로 할 것인가부터 보수층을 대변할 것이냐,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것이냐는 광의의 편집권은 공유되는 게 맞지만 신문제작에 관한 편집권은 기자들이 있는 편집국 전체가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도 “신문은 독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존재하는 기업인데 역사적으로 언론의 영향이 막강하다 보니 사회 기득권층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라며 “언론이 본연의 비판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편집권은 꼭 지켜져야 할 가치다”고 제시했다.

부산일보 : (8) 『88년 뜨거웠던 '6일간 전면파업' 한국 언론사 '큰 획'』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내 용 : 노조원들은 파업 기간 특보를 만들어 돌렸고,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부일노조의 편집권 독립은 한국 언론사의 큰 분수령이 되었다. 자유언론을 향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 돌 맞던 신문사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이 온 거리를 메우던 1987년 6월, 남포동에서 시작된 시위 행렬은 부산역을 지나 동구 초량동에 이를 때쯤 1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서면로터리를 향해가던 시위 군중들이 당시 초량 근처에 있는 KBS 앞을 지날 때쯤 술렁이기 시작했다.

“관제방송 물러가라” “KBS는 각성하라.” 시위대가 던진 돌에 건물의 유리창이 순식간에 박살났다. 그 시위대가 부산진역을 지날 즈음. 이번에는 부산일보 건물에 돌이 날아들었다.

“어용언론 각성하라.” 이 광경을 취재하던 모 기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신문사가 시위대의 돌에 맞는 것을 보며 분노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섰다. 그해 겨울 관제언론이라는 비판을 받던 부산일보의 젊은 기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래 노동조합을 만들자.” 6월 민주항쟁이 전두환 정권의 항복 선언으로 마무리 되면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이 봇물 터지듯 시작됐다.

기자들도 자유언론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겨울인 1988년 1월 22일 부산일보사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 혹독한 기자 탄압

돌이켜보면 부산일보의 노동조합의 역사는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6년 9월 10일 부산일보가 창간한 이래 기자들의 크고 작은 편집권 독립 요구가 있었다.

1948년 당시 부산일보 기자들은 공정보도와 공정인사를 요구하며 최초의 파업을 했다. 기자 11명이 해고되었다. 자유당 정부의 신문법 제정에 맞서 ‘언론자유와 제한의 가부 제고찰’이란 특집 기사를 싣기도 했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부산일보의 경영권을 거머쥐고 제작 간섭이 노골화 됐지만 1964년 11월 24일 ‘다시 언론자유를 생각한다’는 칼럼이 지면에 실렸다.

서슬 퍼런 유신 시대이던 1973년 6월 편집국 기자 전원이 공정보도 등을 요구하며 일괄 사표를 내기도 했다. 그 다음해인 1974년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 3개 항의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1986년 5월 기자들은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의 편파보도에 항의하는 성명을 내고 당시 윤○○ 사장과 김○○ 상무가 좌지우지 했던 편집국 제작회의를 편집국장 책임 체제로 환원시켰다.

이 뿐만 아니라 1987년 6월 전두환의 장기집권 음모인 4·13 호헌에 맞서 편집권의 진정한 독립을 요구하는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했다. 그 과정에 수많은 기자들이 해고되고 지방으로 전직되었다.

■ 민주언론의 횃불

언론사에 보안사 요원들이 상주하던 시절이었다. 편집국장이 대장(인쇄 직전의 지면)을 보기도 전에 보안사 요원들이 붉은 사인펜을 들고 기사를 검열했다. 재단이 임명한 사장은 방패막이가 되기는커녕 한 술 더 떠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

1988년 2월 당시 편파보도의 지시자이던 윤○○ 사장은 주주총회 때 물러가겠다는 기존 약속을 저버리고 상무이사만 퇴사시킨 뒤 종전의 제작 태도를 고수했다. 기자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당시의 상황은 얼마나 열악했을까.

‘우리는 언론 본연의 사명인 공정보도의 실현은 물론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왔다.’ 부산일보 노동조합 결성 취지문의 한 구절이다.

기자들은 파행적으로 발행되는 굴절된 지면을 여건 탓으로만 돌려왔던 태도를 반성했다. 부산일보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천명했다. 노동조합 설립만이 공정보도를 지향하는 정신을 살리고, 언론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임을 굳게 믿었다.

6일간의 파업 끝에 기자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편집국장을 선출하는 편집권 독립의 실체인 ‘편집국장 3인 추천제’를 회사로부터 따내며 승리했다.

언론 자유의 교두보를 마침내 마련한 것이다. 부산일보 기자들이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는 한국 신문 역사상 유일한 이 제도는 ‘편집권 독립’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부산일보의 소유

자인 정수장학재단은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는 시도를 줄기차게 벌였다. 사측은 노조와 임단협 협상을 할 때마다 ‘편집국장 3인 추천제 철폐’를 들고 나왔다.

부산일보 : (9)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④]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4면)

내 용 : 1962년 7월 5·16장학회가 출범했다. 김지태 씨로부터 강탈한 부산일보와 MBC 등이 기본 재산이었다. 김 씨의 재산은 국고에 환수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절차도 거치지 않고 5·16장학회로 이전됐다.

이 모든 과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중앙정보부가 주도했다. 당시 기부승낙서에 김 씨의 날인을 받은 고○○ 전 법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62년 6월께 ‘중앙정보부가 김지태 씨한테서 기부 받아둔 재산을 바탕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라’는 박정희 장군의 지시를 받고 부산에 내려갔다”고 증언했다.

이후 5·16 장학회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동창, 행정부 각료 등이 이사장과 이사진을 장악했다. 이를 두고 백원우 국회의원은 2005년 “완벽에 가깝게 박 전 대통령의 사유 재산화 됐다”고 말했다. 부정축재를 했다는 이유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결국 자신이 부정축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5·16장학회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1982년 1월 이름을 ‘정수장학회’로 바꾼다. ‘5·16’이란 이름을 바꾸라는 전두환 정권의 요구에 박정희의 ‘정(正)’자와 육영수의 ‘수(修)’를 따서 개명을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남긴 부정축재의 유산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고스란히 승계됐다. 80년대 들어 정수장학회 이사장 자리에는 조○○(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서), 김○○(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 김○○(정수장학회 출신자 모임 상청회 고문) 씨 등 박 전 대표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앉았다. 박 전 대표는 1995년 직접 나서서 2005년 물러날 때까지 10년간 이사장을 지냈다. 연봉은 2억 5천만 원까지 받았다. 2005년 정수장학회 문제가 논란이 되자 박 전 대표는 이사장 자리를 박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을 지낸 외교관 출신의 최필립 씨에게 넘겨준다.

박 전 대표는 “이미 이사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정수장학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수장학회에 대한 지배권이 여전히 박 전 대표에게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일보 : (10)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31면)

내 용 :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 유력 일간지가 힘을 못 쓰는 지역이 바로 부산이다. 그것은 바로 부산일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부산일보는 일찍이 편집권이 독립되어 공정보도를 해 왔기 때문이

다. 88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편집국장을 기자들의 투표로 선출했고, 사장은 그 편집국장의 편집권을 인정했다. 일선기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산일보는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전국 최대의 지방지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20여 년 넘게 이어온 부산일보 편집권이 훼손될 처지에 있다. 편집국장을 대기발령하고 노조지부장을 해고한 것이다.

사회에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는 정수장학회가 사장 선임 등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정수장학회는 장학사업만 열심히 하면 될 일이고 부산일보 경영에서는 물러나야 한다. 그 길이 독립정론지로 거듭나 부산시민과 독자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노사 간의 대립이 공정보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12월 1면 ‘흠어진 해양정책 통합 총괄행정기구 서둘러야’ 같은 중앙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사가 바로 부산일보의 자랑이다. 3면이 바다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인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아까운 청춘이 목숨을 잃었다. 해양항만은 국토부가, 수산분야는 농림수산부가 가지고서는 종합적인 해양수산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해양경찰이 순직한 일은 해양분야 총괄행정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박 14일 1면 ‘철강신화 지다’에서 박○○ 포스코 명예회장은 분명 공과가 있는 사람이다. 과에 대한 보도가 없어 아쉽다. 14일 3면 ‘일본 사죄 때까지 저승에서 1만 번이라도 외칠 겁니다’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대통령의 일본방문 때 의제로 다름지예에 대한 보도도 기대하게 한다.

15일 1면 ‘연 459억 원 시민혈세 나갈 판’에서 459억 원은 거가대교의 예측통행량 부족으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물어 줘야 할 세금이다. 민자사업은 바로 세금 먹는 하마였던 것이다. 부산은 북항대교 천만산터널까지 만들어지면 유료도로 천국이 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6일 1면 ‘취업률 부풀리기 목숨 거는 대학들’과 3면 ‘실적 낮으면 재정지원 제한 돈줄 마른 대학 편법 총동원’ 기사는 좋았다. 보통 사회현상만 이야기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없이 넘어갔는데 사회현상과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안까지 보도한 것이다.

예산을 정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 가장 급한 것 먼저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16일 5면 ‘동래 금강공원 새 단장 950억 투입 드림랜드 조성’이란 기사를 보면서 씁쓸했다. 제2의 도시에 동물원 하나 없는데 그 동물원 공사가 몇 년째 답보상태인데 다시 금강공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안타깝다.

17일 12~13면 ‘人 + 間’을 잘 보고 있다. 부산지역 인물에 대한 심층보도가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이번 주 윤○○ 교수에 대한 이야기도 순탄치 않게 살아온 삶이 내일을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많은 감

등을 주리라 생각한다.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지역의 이슈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기 때문이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론직필하는 부산일보가 또다른 자랑이다. 이런 부산일보가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부산시민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

부산일보 : (11)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대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23면)

내 용 :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부산일보의 가장 큰 잘못은 지난 11월 30일 신문이 발간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1988년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던 기자들에 의해 처음 있는 뒤 두 번째이며, 23년 만의 일입니다. 회사 측이 발행을 거부하기로는 65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애독자 제현(諸賢)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독자 제보와 항의 전화 창구인 사회부 데스크의 전화통이 요란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오신 분들은 주로 필자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당장은 아니지만 이 사태가 계속되면 신문을 끊겠다’는 말씀을 남기시더군요. 본보에 대한 애정에 감사하면서도 얼른 사태가 해결돼야겠구나 하는 조바심이 교차하였습니다.

애독자들의 질정(叱正) 가운데 가장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왜 내부 문제를 지면에 담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독자에게 정작 필요한 정보를 외면한 채 내부 다툼을 기사화하는 것은 독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꾸짖었습니다. 편집권 독립이 아니라 편집권 남용이며, 지면의 사유화라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조금 보면 내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발단은 징계 문제였으니까요. 노조위원장은 면직, 편집국장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징계는 사실상 해고조치로 노조의 견제와 기자의 편집권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노조위원장은 정수재단의 사회환원 및 부산일보 사장 후보 추천제 도입을 요구했고, 편집국장은 이 내용을 보도한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넓혀 보면 이 문제의 뿌리는 아픈 현대사에 닿아 있습니다. 부산일보의 원 소유주는 부산의 대표적 기업인이자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한 고 김지태 씨였습니다. 그는 5·16 군사 쿠데타 거사 자금을 거절했다가 1962년 군부정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강탈해 만든 게 현재 부산일보 주식의 100%를 소유한 ‘5·16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입니다.

정수재단 이사장은 한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였다가 2005년부터 그의 비서 출신인 최필립 씨가 맡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지난 1988년 과업을 통해 재단의 간섭을 물리치고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만, 사장 선임권은 여전히 재단에 있습니다. 소유, 경영, 편집이라는 삼각 체제는 한때 잘 작동하

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론학자들조차 높이 평가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장 선임권은 신문의 경영과 편집에 대한 영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유가 경영을 장악하고, 경영이 편집을 압박하는 부끄러운 상황이 빚어진 거죠.

‘소중한 지면에 내부 문제를 담아도 되느냐’는 항의에 대한 답은 미국 뉴욕타임스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가 기사 내용을 조작했다가 들통 나자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자들이 자사의 발행인과 사주는 물론 편집국 간부를 취재해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습니다. 비판의 칼날을 자신과 자신들의 상사에게 겨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뉴욕타임스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독자에게 내부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비판대에 세우는 과감함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독자들 곁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작금의 부산일보 사태도 2003년의 뉴욕타임스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편집권이 소유주와 경영진에 의해 잠식당하는 상황을 자기고백하는 것은 부끄럽긴 하나 숨길 일은 아닙니다. 진정 부끄러운 건 사주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부 거대신문의 행태가 아닐까요.

내부의 문제가 밖으로 들리는 것은 독자께서 구독하시는 신문이 제법 건강한 신문이기 때문이라고 여겨 주십시오. 치부를 드러내는 부산일보의 자기고백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부산일보 : (12)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5일자 1면)

내 용 : 여야 정치권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정수장학회를 내려놓아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이미 정수장학회에서 손을 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치권 내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박 위원장과 관련한 ‘정수장학회 의혹’에 대해 “대권에 도전하는 분으로서 털고 가는 게 당연하다”면서 “박 위원장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과거에 사실은 강탈한 재산이 아니냐. 그걸 왜 집착하느냐”면서 “그래서 결국은 다른 주자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런 이미지하고 정반대 대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석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도 4일 MBC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 “박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의혹이 정리되지 않으면 (대선에서) 박 위원장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박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그렇다면 정수장학회 같은 것 말이나”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에도 비슷한 취지

의 발언을 했다.

이 위원은 이어 “여기저기서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하니까 국민 의혹이 많다”면서 “유죄나 무죄냐를 따지기보다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해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하나이니까, 대선 전략상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도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했고, 박 위원장이 지금도 정수장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 정치무대에선 박 위원장에 대해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결단을 내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박 위원장에게 이 같은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 대비가 된다는 지적이 많다.

부산일보 : (13)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때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2면)

내 용 :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부산 국회의원들의 반 이상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정수장학회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해법으로는 MBC 방송문화진흥회같이 이사진을 투명하게 구성하거나 부산시민 또는 제3의 단체(공익)에 기부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6일 본보가 지역 국회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정수장학회 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묻는 설문을 통해 나왔다. 이번 조사에는 전체 18명의 의원 중 13명이 응답했고,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기 위해 본인 의사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했다.

먼저 박 위원장이 장학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이 13명 중 8명에 달했다.

A의원은 “형식적으로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최필립 장학회 이사장 등 이사진들이 박 위원장과 관련 있는 인물이라면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C의원은 “부산일보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장학회 이사장을 박 위원장이 임명한 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고, F의원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언론의 정치 사유화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장학회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입장인 의원들은 “부산일보 사태는 노조와 장학회 사이 갈등이다. 박 위원장을 끌어들이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 “박 위원장은 이사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손을 뗄 것이 있겠느냐”는 등으로 반대논리를 폈다.

정수장학회의 향후 처리 등 해법과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경우 대선주자인 박 위원장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A의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이 자진사퇴해서 박 위원장의 집을 털어줘야 한다. 이후 장학회는 부산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법은 뻔한데, 왜 이사장이 고 집을 피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박 위원장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B의원은 “장학회가 지분을 갖고 있는 MBC의 방송문화진흥회같이 이사진 구성을 여당 6명, 야당 3 명으로 투명하게 꾸려가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의원은 “이번 사태는 현 이사장의 과잉충성 형태로 인해 빚어진 문제다. 이로 인해 박근혜 비대위 원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이외에 “공익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최초 소유주인 김지태 씨 유족에게 돌려줘야”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 이○○ 노조위원장은 “이미 과거사 진실위로부터 1962년 김지태 씨로부터 강 탈한 재산이라는 판정이 나왔고 장학회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아니냐”면서 “여권의 총선을 책임지고 대선주자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 (14)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면)

내 용 : 8일 낮 12시 서울 중구 정동 정수장학회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빌딩 앞. 새벽부터 전세 버스를 타고 올라온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 조합원과 가족 30여 명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지역 지·본부 노조간부와 가족 20여 명도 함께 모였다.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과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상식을 이행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0년 동안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가 오랜 측근인 최필립 이사장에게 자리만 넘겨놓고 자신과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낮부끄러운 행위”라며 “타조가 천적을 만나 도망가다가 급하면 모래밭에 머리만 파묻고 숨는데 지금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변명은 타조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일보 지부 이○○ 위원장은 “지난 1988년 편집권 독립을 위한 한국 언론사 최초의 파업 승리에 이어 지금 부산일보는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전국 최대의 지역 일간지인 부산일보가 편집권 독립을 지켜 더욱 건강한 언론이 되도록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지부 조합원들은 9일부터 서울 정동 정수장학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강○○ 경향신문 지부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

은 바로 정수장학회다. 사회에 제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한겨레신문 지부장도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오후 1시 서울 명동 거리에서 이어진 2차 기자회견은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눠주며 시민들의 박수와 호응 속에 진행됐다.

한편 정수장학회 관련 의혹 해소를 강력하게 촉구해온 한나라당 이준석 비대위원은 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의혹해명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정수장학회 의혹해소에 대해 “대선주자로서 선결과제” “의혹해소 돼야 대선투표 가능” 등에 이은 발언으로, 박 위원장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다.

이 위원은 정수장학회 해법에 대해 “장학회는 개인이 사유할 수 없는 형태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시민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 즉 이사회 인선이나 여러 부분에서 앞으로 정수장학회 측이 좀 더 조심스러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 (15) 『**잘못된 것 없다며 자진 사퇴 '이율배반적 행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6면)

내 용 : “잘못된 것이 있어야 사퇴하는 것이 아닌가”

2004년 7월 당 대표를 맡고 있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유신논쟁’을 제기하며 당 차원의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탈 유산’인 정수장학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라며 박 비대위원장을 압박했다.

정수장학회 8대 이사장인 박 비대위원장은 1995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1999년, 2003년 두 차례 연임되면서 2007년 5월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정수장학회는 헌납된 것이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버티던 박 비대위원장은 다음 해 2월 28일 재단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비대위원장은 “예전에는 단지 그때 사퇴할 경우 마치 잘못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안 했던 것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까 사퇴한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잘못이 없다면 도 자진 사퇴라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과 한나라당 비주류 측이 끊임없이 공격해 온 정수장학회 문제를 ‘이사장직 자진 사퇴’로 돌파해나가고자 하는 의도이거나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한 걸음 비켜서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박 위원장이 정도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재산 축적과정에 문제가 있는 정수장학회의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후 정수장학회에 대한 용단을 요구받을 때마다 “명망 있는 분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관장하는 공익재단이고, 나는 이사장직도 내놨는데 내가 뭘 더 어찌란 말이나?”란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비대위원장의 정수장학회와의 절연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재단의 막후에서 수렴청정하고 있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필립 현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부산일보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해 맡게 됐다”며 박 비대위원장이 후임 이사장을 직접 지명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사장직을 떠난 신분이어서 정수장학회의 실질적 환원을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제라도 사회환원이 옳다’는 입장 표명만이라도 하라는 요구가 들끓고 있으나 박 비대위원장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일보 : (16) 『**불투명한 이사장 · 이사 선임 구조, 공익재단 역할 못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6면)

내 용 : “이미 사회에 환원한 공익재단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무슨 …”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수장학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 한마디 말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장학회 내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여전히 장학회를 장악하고 있고, 모든 의사결정은 그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타인의 재산을 빼앗아 사유화 한 이들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수많은 수혜자들은 친목회를 통해 박 위원장의 탄탄한 지지 세력으로 발전했다는 평까지 듣고 있는 게 현실이다.

■ 끊을 수 없는 인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2005년 2월 장학회 강탈 논란에 휩싸이자 정수장학회 이사장 직을 내던졌다. 그 자리는 최필립(84) 씨가 이어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출신인 최 이사장은 바레인 대사 등을 거친 외교통이였고, (주)○○농수산 회장의 신분이었다. 그는 박근혜 위원장이 지난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최 이사장은 이후 신○○(70) 최○○(74) 씨를 2005년 5월과 10월 이사로 영입했다. 신 이사는 주필리핀 대사와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지냈고, 최 이사는 지난 2002년 외교통상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 이들은 모두 외무공무원 출신으로, 외교관 출신인 최필립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직속 후배이다. 이로써 최 이사장은 자신까지 등기 이사 5명의 과반이 넘는 3명의 이사를 확보해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거리낌이 없게 됐다. 나머지 이사는 1999년과 2000년 취임한 송○○(59) 전 서울교대 총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김○○(71) 전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이다.

공익재단이면서도 설립자의 실질적인 지배가 가능하게 된 데는 불투명한 선임 구조도 한몫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학회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이사는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이사회 의결안은 과반 이상의 이사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는 사실상 형식 절차일 뿐,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 측근의 자격으로 추천된 최 이사장의 의사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공익재단의 형태이지만 정치적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셈이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이○○ 위원장은 “최 이사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최 이사장은 ‘박근혜 의원이 이사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해 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 가족까지 총동원한 정치후원

최필립 이사장은 자신의 가족까지 총동원해 박근혜 위원장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 최 이사장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개인 최대한도인 500만 원을 각각 냈고, 2008년에는 부인과 세 자녀가 500만 원씩을 후원해 최 이사장 가족이 공식적으로 낸 후원금만 모두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이사장은 장학회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연간 1억 원 이상의 상당한 임금을 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돌아갈 거액의 장학금이 꼬박꼬박 이사장의 연봉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다른 비영리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 대체로 이사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수장학회 관계자는 “이사장의 개인 프라이버시라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이사장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월급 1천100만 원과 함께 승용차와 기사를 장학회로부터 제공받았다. 한때 섭외비를 포함한 연봉이 2억 5천만 원에 달했고, 2000년 이전에 섭외비 명목의 돈을 받고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박근혜 위원장 측은 국정원 진실위원회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놓은 정수장학회 관련 조사 결과 등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에 대해 최근까지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관계자는 “이사회 내부에서 이사장과 이사를 추천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다른 장학회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며 “이사장과 직원들의 임금은 이자 소득과 부동산 이익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일보 : (17) 『‘박정희 사람들’ 두루 돌아가며 부산일보·MBC 등 ‘요직’ 역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6면)

내 용 : 정수장학회를 이끌어 온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른바 ‘박정희 사람들’로 구축한 친정 체제가 확연히 드러난다.

5·16 장학회의 초대 이사장은 이○○ 재건국민운동본부장이었다.

또 부일장학회를 빼앗는 데 개입했던 고○○ 법무부 장관을 상임이사로 앉혔고, 김○○ 삼양사 회장과 이○○ 삼성물산 회장 등 기업인과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 등 7명이 초대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어 엄○○ 최고회의 의장 고문, 문화방송 이사이자 박 전 대통령의 친구인 최○○ 씨 등 최측근들이 장학회 이사장을 맡았다.

정수장학회 이사를 거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0년부터 8년간 5대 이사장을 맡은 조○○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서이자 박근혜 위원장의 이모부였다.

그는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부산일보 회장을 지냈다. 이후에도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 장학생 모임인 상청회 고문이 이사장을 맡았다.

1995년부터 10년간 역임한 8대 이사장은 8년간 육영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다. 사실상 2세 세습이 이뤄진 것이다.

정수장학회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장학회 임원과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사장 등의 요직을 두루 오간 사실이 확인된다. 1988년부터 10년간 이사와 상임이사로 일한 손○○ 씨는 오랫동안 영남학원 이사와 육영재단 이사로도 겸임했다.

중앙정보부장 이○○ 씨도 1966년부터 8년간 장학회 이사였다. 역대 이사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총무비서관, 문화방송 부산일보 사장, 영남학원 또는 육영재단 이사 등을 지낸 인물들로 채워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기이자 친구들이 장학회 안팎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부산일보에서 일하면서 1966년부터 8년간 장학회 이사를 맡은 황○○, 1965년부터 20년간 부산문화방송 사장 등을 맡은 조○○, 왕○○ 부산일보 전 사장(1973~1980) 등이 그런 인물이다.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일보 사장 자리는 박○○ 공화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의장(1963~1964), 최○○ 공보부 차관·국회의원(1964~1971), 왕○○, 대구사범 출신인 김○○(1997~2006) 씨와 같은 측근들이 차지했다.

부산일보 : (18) 『재단-부산일보 소유관계 개선이 진정한 편집권 독립』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8면)

내 용 : 증권기자 K 씨는 부산일보가 1988년 5일간의 파업을 통해 편집권 독립 장치 방안을 쟁취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입사했다. 하지만 견습이 갓 지날 적 겪었던 아픈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당시 박정희 군부 쿠데타와 관련한 기사를 쓰고 난 뒤 담당 데스크로부터 질책을 당했기 때문이다. ‘5·16 혁명’을 ‘5·16군사쿠데타’로, ‘박정희 대통령 제3공화국’을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으로 쓴 대목이

문제였다. 데스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용어만 좀 빼자”고 했다. 은근하고 강한 톤이었다.

■ 부산일보 소유 문제는 불완전하다

부산일보는 신문재벌이나 기업재벌의 소유가 아닌 비영리 단체인 공익 장학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바람직한 소유 형태라고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김○○ 교수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소유주(정수장학회)가 소유권을 행사하려 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정희 정권의 직할 통치를 받던 1970년대와 신군부가 등장한 1980년대, 부산일보는 ‘숙명적 여당지’로 존재했다. 언론의 기본 사명인 비판과 감시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1979년 12·12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뒤 언론사를 강제 통폐합 했다.

1980년 11월 14일 이루어진 언론통폐합은 한국 언론 암흑기의 시작이었다. 정권의 강요에 의해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을 스스로 채택한 언론사들은 자정을 결의했다. 결국 보안사령부에 의해 강제 재편성된 언론사는 서울 종합지 6개, 경제지 2개, 영자지 2개, 지방지 10개, 통신과 방송은 각각 1개사와 2개사였다.

부산일보는 ‘1도 1사’로 살아남았다. 부산일보가 폐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유주가 정수장학회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사회 민주화 바람을 업고 언론자유화 조치가 내려지자 부산일보 기자들은 여당을 대변하던 논조를 버리고 양심의 북대를 쥐게 된다. 언론사 최초 1988년 5일간의 파업과 승리였다. 기자들이 편집국장 선출에 참여하는 편집국장 3인 추천제를 따냈다.

■ 부산일보가 박근혜 신문이라고?

1998년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 일선에 나선 박근혜 의원이 2004년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면서 부산일보와의 관계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대구 달성군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의원이었던 시절 박근혜 의원의 행보와 관련해서 부산일보의 논조가 오해를 살 일은 없었다. 하지만 야당 대표가 되면서 부산일보의 야당 대표에 대한 보도 태도는 정치권과 독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게 된다.

부산일보가 단순히 장학재단이 소유한 신문이 아닌, 유력 정치인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있는 신문으로 위상이 바뀐 것이다.

특히 정수장학회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부산일보는 정수장학회의 단순한 ‘수익기관’에 불과하다. 부산일보가 언론사로서의 자기 역할과 공공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서 소유권을 가진 장학회에 기금을 내면 되는 식으로 관계가 정립돼 있다. 부일장학회 강탈 문제를 조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부산일보를 장학사업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 목적 사용이라 보기 어렵고,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에 반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2004년 박 대표나 정수장학회의 노골적인 편집권 간섭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면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다.

‘비운의 대통령 딸’이나 ‘첫 부녀 당수’ 같은 사실에 기반 한 용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편들기로 비쳐졌다. ‘박다르크(박근혜+잔다르크)’나 ‘홍탄에 쓰러진 어머니를 대신해 22세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다는 표현에 대해 언론 감시 시민단체는 ‘동정심을 유발한 편들기’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조는 “박근혜 이사장이 정치를 계속 하려면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2005년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결국 자신이 청와대에 있을 때 비서관이었던 최필립 씨를 이사장에 앉히고 물러난다.

■ 소유문제 개선이 편집권 독립의 핵심

지난해 말 부산일보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된다. 이른바 사측에 의한 신문발행 중지 사태이다. 2011년 11월 30일자 부산일보는 한국 언론역사상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고 말았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편집권 독립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장 선임에 구성원(부산일보 사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부산일보 노조의 오래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의 판단에 의해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노동조합은 사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동시에 정수장학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측은 오히려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또한 관련 사실을 보도했던 편집국장에게 대기발령이라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징계 남발 상황을 보도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사측은 “노조 측의 일방적인 견해만 실었다”며 아예 윤전기를 세워 버렸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소유주(정수장학회)가 소유권을 행사하려 들면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부산일보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사장 임면권을 행사하는 정수장학회의 민주화와 부산일보와의 관계 재정립이 선행조건임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부산일보 : (19)『**장학금 수혜자 모임 청오회 · 상청회는 박근혜 지지세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6면)

내 용 :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외곽 조직을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바로 ‘상청회’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이 모임은, 정수장학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장학생 출신 인사들의 모임이다. 회원들은 현재 학계 관계 법조계 재계 등에 두루 포진해 있다. 언론에서는 주요 시기마다 이들을 박 비대위원장의 우군 세력으로 분류, 소개한다. 이른바 ‘박근혜 인맥’이란 애기다.

그러나 공익법인인 장학회의 수혜자들이 외부의 눈에 특정 정치인의 지지 세력으로 비쳐진다는 것

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그냥 친목회” vs “조직된 우군”

정수장학회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생 모임으로 청오회, 졸업생들의 모임으로 상청회를 두고 있다. 개인의 가입 의사와 상관 없이 장학금을 받는 동안은 청오회원, 졸업한 뒤에는 상청회원이 된다.

이러한 자동 가입 시스템에 대해 상청회 측은 “그냥 동문 모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인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대학 동문회 소속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400여 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오회의 경우 중앙에 임원단을 두고, 전국에 10개 지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각 지회에도 회장, 부회장 등 임원단을 따로 두고 있다. 게다가 상청회 소속 선배들은 지도교수의 역할을 맡아 각 지역 대학생들을 관리한다.

다른 장학재단에서도 별도의 장학생 모임을 조직하고 관리할까. 그렇지 않다. 대학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측은 “장학생 모임도 없고 따로 행사를 마련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학기당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동송천재단 관계자도 “공식적인 모임도 없고 조직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오회원들은 이와 달리 정수가족 한마당, 전국 하계 수련회, 지회별 단합대회 등 행사를 통해 남다른 유대감을 만들어 가고 있다. 게다가 행사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 2학년 때 정수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돼 3년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한 부산지역 대학생은 “1년에 한두 차례 생가 방문을 한다”며 “참석 여부는 자유라서 나도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조계 · 정계 · 학계 등 광범위한 인맥

일부에서는 대규모로 조직돼 있는 이 같은 모임이 박 비대위원장의 대선 조직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 1979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정수장학금을 지원받았던 부산지역의 한 공기업 직원은 “공고 재학시절 반에서 1등을 해 장학금을 받았지만 청오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지는 않았다. 대학생들 위주로 엘리트 계급이 형성된다는 느낌, 자기들끼리 사회 세력으로 뭉친다는 느낌이 들어 소외감을 느꼈다”며 “장학회는 장학사업만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박정희, 박근혜 친위 세력인 양 서로 뭉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의 경우 실제 대단한 인맥을 자랑한다. 우선 정계 인물로는 김기춘 현경대 강성구 전 한나라당 의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있다. 법조계

인사도 많다. 대표적 인물이 신○○ 전 검찰총장, 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다. 장학생 출신 졸업생들답게 학계 인맥도 상당하다. 회원 중 대학 교수만 3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광범위한 상청회 인맥과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박 비대위원장이 정수장학회와의 인연을 끊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정적인 후원도 무시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기업인 출신인 상청회 김○○ 회장은 매년 500만 원씩 박 비대위원장에게 후원금을 내는 고액 기부자다.

그러나 상청회, 청오회원들은 대부분 “우리 모임은 친목을 위한 동문 조직”이라며 정치색을 띤 집단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거부감을 표했다.

상청회 부산지부 총무와 청오회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동아대 이○○(전기공학과) 교수는 “상청회, 청오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을 당시 행사장에서 만나 기도 해서 인간적인 친분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회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다르기 때문에 박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 반, 아닌 사람 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부산일보 : (20) 『정수재단 사회 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면)

내 용 : 공권력에 의한 강탈 논란과 함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수렴정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정수재단의 실질적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송○○ 신부와 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이○○ 전 동아대 총장 등 부산지역 민주 원로 인사 23명은 정수재단의 원상회복과 부산일보의 정상화를 위해 박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0시 부산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6일 정수재단의 사회 환원과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을 지지하기 위해 지역 원로들이 뜻을 모은 지 40일이 지났다”며 “오늘 이렇게 원로들이 다시 모인 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공론화 된 정수재단 사회 환원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로 인사들은 “박 위원장이 진정 한나라당의 쇄신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안고 있는 구악부터 털고 가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이 한나라당 유력 대권 후보로서 정수재단의 실질적 환원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정수재단 사회 환원을 위해 전국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도 꾸려진다. 백○○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박○○ 진보연대 대표, 한○○ 성공회대 교수, 김○○ 민주노총 위원장 등 재야 및 노동·진보계 인사들은 전국언론노조와 공동으로 ‘(가칭)독재유산 정수재단 사회환원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17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박 위원장이 정수재단과 부산일보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당 쇄신을 부르짖는 것은 위선”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이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 ‘박근혜-정수재단-부산일보’로 이어지는 관계는 부산일보의 공정성에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는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박 위원장이 이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 (21) 『이사장 연봉이 1억 7천여만 원이라니, 공익재단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6면)

내 용 : 직원들의 월급명세서가 인터넷에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임금 수준은 월 100만 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비영리 공익재단의 이야기다. 직업이 대학 교수인 이 재단의 이사는 직원들의 명세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무처 직원들이 오히려 반대를 했다. “공익재단의 직원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더 줘야 한다’, ‘못 받겠다’는 승강이 끝에 올해는 월급을 10만 원만 올리기로 합의를 했다. 월급 110만 원, 연봉이 1천320만 원이다. 그런데 정수장학회는 이사장 한 사람의 월급만 1천400만 원을 넘는다.

■ 비영리 공익재단

비영리 공익재단 정수장학회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권력이 강탈한 개인 자산을 국가가 아닌 특정 세력의 소유물로 바꿔 장학회를 출범시켰고, 장장 50년간 장학회를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탄탄히 다져왔다는 사실이다.

재단이 이미 사회에 환원되었다면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 재산의 기부(공익재단 설립)가 오히려 재산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 재산을 제대로 사회에 환원 하려면 미국의 대부호 워런 버핏처럼 해야 한다. 경제 매거진 ‘에콘 브레인’ 유○○ 편집장은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들은 개인 재단을 설립하기보다는 기부 기구인 기빙 플레지를 통해 기부 서약을 한다”며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재단을 설립하거나 각종 부정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형식적으로 재단을 만들어 사회에 내놓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우리 기부 문화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 투명성이 생명

각종 기업이나 개인이 장학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등을 만들어 자신의 돈을 사회에 기

부한다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명목상 사회 환원이지만, 또 다른 형태로 사유 재산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알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은 매년 관할 관청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명백한 회계 부정이 아닌 이상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로 친숙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지난 2010년 종합감사 결과 3년간 182회에 걸쳐 업무와 상관없는 항목의 비용으로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소모했고, 경기모금회의 총무회계 팀장은 4년에 걸쳐 9천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빼돌려 지탄을 받았다.

정수장학회도 순환 보직이나 전보 발령도 없는 내부 통제 제도, 인맥 중심의 폐쇄적인 특성 등 비영리 법인이 가진 특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이런 단체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 구성된 외부 감사를 진행해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단 설립을 통한 편법 상속, 재단 운영 과정에서의 공금 유용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있다. 바로 공익법인 공시제도다.

정수장학회의 총자산가액은 257억 5천만 원인데 그중 금융자산만 202억 원이다. 부산일보에 2010년 한 해 12억 원을 정수장학회에 기부했다. 그런데 목적 사업인 장학사업의 관리비로만 연간 10억 원이 쓰인다. 관리비의 대부분은 이사장 등 임직원의 급여로 추정된다. 공시된 자료에 직원 급여 항목은 따로 표시돼 있지 않다. 일반인들은 장학회 공시 자료를 보더라도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가 없다. 서울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최필립 이사장의 세전 연봉만 1억 7천429만 원에 달한다.

■ 공익이사제를 허하라

공익재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 재단’은 이사 추천 과정부터 투명하게 진행된다. 모금을 통한 배분이 주목적인 이 단체는 이사진을 구성할 때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모금 능력과 사업 관계의 중립성도 중요한 항목의 하나다.

아름다운 재단 이사인 한양대 경영학부 예○○ 교수는 “비영리 재단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윤리성이 강조되는 직업군이나 회계 전문가 등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며 “정수장학회의 경우 수익을 내는 기업도 아닌데 이사장이 역대 연봉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사 선출도 객관적인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게 돼 있지만, 재산 출연자와의 특수 관계자가 5분의 1을 넘지 않는 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정수장학회는 이사진의 추천에 의해 다른 이사의 동의를 얻어 이사를 임명한다. 그런데 주로 인맥에 의한 선거와 임명이 이뤄지는 게 문제다. 최필립 이사장 취임 이후 새로 추천된 2명의 이사는 공교롭게도 모두 외교관 출신이다. 최 이사장은 전 리비아 대사 출신이다.

이와 관련,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김○○ 교수는 “공익법인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이사회인데 공익 이사가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기존 이사진들의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가 파견되도록 법이 마련된 만큼 공익법인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 (2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면)

내 용 : 군사 정권의 유산인 정수재단의 실질적 사회 환원을 위한 시민사회계의 범국민적 운동이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지역 53개 시민단체와 언론 노동 학계, 야3당은 17일 ‘정수재단반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이번 시민연대 발족은 그동안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소속 단체 중심으로 진행돼 온 정수재단 환원과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시민운동의 외연을 확대하고, 정수재단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지역 민주 원로 인사 23명도 고문단으로 참여했다.

시민연대는 17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발족 기념 토론회를 갖고 정수재단 반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모두 발언에 나선 송○○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위원장은 “정수재단 사회 환원은 권력에 의해 강탈된 재산의 반환이라는 의미”라며 “나아가 권력에 의해 장악된 언론의 독립을 되찾고 유신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외대 이○○(역사학과) 교수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유 재산을 강탈하면서 박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닌 공익 재단의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강탈이나 부정축재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며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정경 유착이나 인권 유린 등도 상당 수준 용인될 수 있다는 경제 지상주의의 출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영산대 이○○(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법적 형식이나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강탈 재산의 사회 환원과 언론의 독립성 확보라는 부산일보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공통된 요구에 주목해 정수재단이 사회적 공익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백○○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박○○ 진보연대 대표 등 전국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 인사들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재유산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정수재단과 부산일보 문제를 사회 의제화해 해결책을 토론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의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과거사 청산 특별법 제정 △정수재단 사회 환원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부산일보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계의 지원 △1인 시위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 (2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면)

내 용 :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 이사진 교체 주장에 대해 “사회에 이미 환원했고 저랑은 이제 관계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해 비난을 사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사회에 환원했는데 뭘 더 환원하라는 것이냐.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기에 이사진이 주인 역할을 한다”며 모든 권한은 장학회 이사진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수장학회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부산의 기업가 김지태 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후 그 재산을 기본으로 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현재 부산일보 주식 100%와 MBC 주식 30%, 경향신문 건물 땅을 소유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장학회 이사장을 맡았다.

박 위원장은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 요구에 대해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알아보니 편집국장을 노조가 뽑는데 그러면 편집권이 100% 독립돼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

또 부산일보 노조의 경영진 선임권 요구에 대해서도 “장학회 이사진과 부산일보 관계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장학회와 무관한 내가 왜 거기에 들어가냐. 이슈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필요한지 몰라도 억지고 본질과 다른 얘기”라고 거듭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 소명됐기 때문에 접었다”면서 “그런데 또 얘기가 나온다. 모든 것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위원장의 동어 반복식 해명에 대해 유력 대권 후보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탈 유산’인 정수장학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의 압박에 “잘못된 것이 없다”며 버티다 이듬해 이사장직 자진 사퇴로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후임 최필립 이사장 지명 논란 등 박 위원장이 여전히 재단의 막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사장 직분을 내놔서 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지시할 수 없다면 ‘사회환원이 옳다’는 입장 표명만이라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끓고 있으나 박 위원장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정수재단반환시민연대 박○○ 집행위원장은 “부산일보 사원들의 사장 후보추천제 요구를 묵살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현 재단 이사진들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박근혜 위원장에게 있다”며

“편집권 침해와 독단 운영으로 부산일보와 정수장학회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현 상황에서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책임을 비켜가는 것은 유력 대권 후보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당 내에서도 이제는 박 위원장이 기존의 입장을 접고,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한나라당 모 의원은 “누가 봐도 정수장학회에 관여돼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면 믿겠느냐. 본인이 대선에 나가고, 총선을 진두지휘할 입장인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부산일보 : (24) 『**친박,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5면)

내 용 :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정수장학회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데 대해 ‘친박(친 박근혜)계’가 노골적으로 박 위원장과 장학회 편을 들고 나섰다.

친박계 핵심인 서병수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근혜는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는 한 팔로어의 주장에 “웁습니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어 “정수장학회는 이미 사회에 환원된 공익법인”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과는 아무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론하는 것은 총선, 대선을 앞두고 사실과 관계없이 단순반복함으로서 민의를 왜곡시키고 정치적으로 박 위원장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0년 당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에선 유일하게 최고위원에 오르며 박 위원장의 신임을 받은 인물로 계파내 신망이 두텁다.

그동안 친박계 의원들은 대외적으로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입장을 자제해왔는데, 그의 발언이후 친박계의 장학회 편들기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사장선임 · 편집권 관여 문제가 불거진 이후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언론,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확산 양상이어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지역 일각에선 “야당 의원들은 몰라도 여당 의원들마저도 정수장학회 바로세우기를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정치적으로 몰아세운 것은 그 자체가 오버한 것”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이같은 친박계의 입장은 지난 6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본보의 정수장학회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친박계 의원들은 “박 위원장과 정수장학회는 무관하다”며 박 위원장의 손을 들었다.

친박계 의원들은 “부산일보 사태는 노조와 장학회 사이 갈등”, “박 위원장은 이사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알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는 달리 답변에 응한 ‘친이(친 이명박)계’ 성향의 의원들은 “박 위원장이 손을 떼라”, “정수장학

회 이사진을 공정하게 교체하라”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부산일보 : (25)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2면)

내 용 : 파업 중인 MBC 취재기자와 방송기자가 만든 ‘제대로 뉴스데스크’가 인터넷에 뒀다. ‘공정 보도 실현’을 위해 파업 중인 MBC 기자들이 그동안 잊선의 눈치를 보느라 방송되지 못한 취재 아이템을 ‘제대로 뉴스데스크’라는 이름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9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제대로 뉴스데스크’ 1회에는 △MBC 뉴스데스크의 불공정 보도 사례 △부산일보 사태 해결의지 없는 박근혜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과 검찰 조사 상황 △영터리 MB 예산, 현장을 가다 △파업 후 김○○ 사장 잠행 행보 등을 다루고 있다.

뉴스데스크의 불공정 보도 사례에선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와 김문수 경기지사 인사 조치 뉴스를 외면한 MBC 뉴스를 타사 뉴스와 비교하며 자기비판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 뉴스는 이 대통령의 가계도를 따져가며 비리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일보 사태 해결 의지 없는 박근혜 위원장’에선 유력한 대선 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립 언론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부산일보 노조의 투쟁을 현장 취재했다. 박 위원장이 총선, 대선을 앞두고도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언론을 두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MBC 노조는 “지난 1년간 일선 MBC 기자들의 요청에도 보도 책임자들이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현장 취재를 막아왔다”며 “‘제대로 뉴스데스크’는 있는 그대로 방송하고 싶은 MBC 기자들의 의지 표현이다. 회사 장비를 쓸 수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제대로 뉴스데스크’는 매주 1회 이상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다음 주에는 MBC 피디들이 만든 ‘파(워)업 피디수첩’도 공개된다. 여기서 ‘MB(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어떻게 이뤄졌나’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제대로 뉴스데스크’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트위터에는 어제 하루만 2천 300여 건에 이르는 지지 글이 쏟아졌다. 대부분 “정말 오랜만에 진짜 뉴스를 봤다” “이렇게 잘할 것을 진짜 왜 못했나” “눈물 난다” “제대로 된 피디수첩도 기대하겠다” 등의 반응이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산일보 1면 중앙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 중 2012. 1. 16.자 제목 “이사장 연봉이 1억 7천여만 원이라니, 공익재단 맞나” 기사의 활자와 동일한 굵기와 크기로 전면에 걸쳐 보도하며, 부제목 및 본문 활자는 위 기사의 부제목 및 본문 활

자와 함께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편집권을 침해한 바 없고 박근혜씨와 무관

– 부산일보 노조의 사장추천권 주장은 경영권 관련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론 –

2. 내 용 : (1) “편집권 독립은 오래 전부터의 편집국장 추천제로 국내 언론사 중 가장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

본 신문은 2011. 12. 1.(“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 동일자 제2면(“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라는 제목의 기사), 2011. 12. 7.(“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으로”라는 제목의 기사), 같은 날(“[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운동] 1. 기자들, 윤전실로 가다”라는 제목의 기사), 2011. 12. 8.(“[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운동] 2. 88년 파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의 기사), 2011. 12. 19.(“[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 2011. 12. 29.(“[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답하여”라는 제목의 칼럼), 2012. 1. 18.(“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일보의 대주주인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경영과 편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현재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줄기차게 벌였으며, 부산일보 사측에서 편집국장을 대기발령하고 노조지부장을 해고함으로써 부산일보 편집권이 훼손될 처지에 있고, 이에 부산일보 직원들이 벌이고 있는 제2의 편집권 독립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부산지역 주요 시민단체와 야5당도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에서는 편집권 독립을 위해 노조측에서 추천하는 3인의 편집국장 후보 가운데 1명을 회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편집국장 3인 추천제”를 1988년에 노사합의로 도입한 이래로 단체협약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이나 기타 외부의 눈치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편집국장으로 임명되어 왔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신문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으로 편집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함으로써 혹시라도 경영진이 편집 방향을 문제삼아 임기를 단축시킬 여지가 사전에 차단되어 있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나 부산일보 사측에서 기사의 편집방향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며, 지금까지 본 신문이 자신의 대주주인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본 신문의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밝혀왔습니다.

더 나아가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현재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

으며, 부산일보 사측이 편집국장을 대기발령하고 노조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직무상 의무 위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 등 부산일보 사측과 노조 측 사이의 내부문제 때문이지, 여기에 편집권을 제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2) “노조의 사장추천권 요구는 경영권 문제로 요구사항이 될 수 없어 위법하고, 언론 역사상 실제 사례도 없어”

본 신문은 2011. 12. 19.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과 2012. 1. 12.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4. 겉으론 소유뿐, 속으론 편집 영향 ‘재단-부산일보 소유관계 개선이 진정한 편집권 독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편집권 독립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장 선임에 부산일보 사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부산일보 노조의 오래된 주장이었으나 이러한 주장은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의 판단에 의해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는데, 사회에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는 정수장학회가 사장 선임 등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공정한 언론보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경영과 편집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하고 있으나, ‘경영과 편집의 분리’가 곧 노조에게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주식회사에 있어서 대표이사 선임권은 주주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 고유한 권리로써 주주가 이를 주주 아닌 직원 등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한 주장이고, 다른 언론사나 방송사의 예를 보더라도 주주 아닌 자가 해당 언론사나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이러한 노조의 무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밝혀왔습니다.

(3) “박근혜 위원장은 정수장학회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어”

본 신문은 2011. 11. 18.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 동일자 제2면 (“총선 · 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 2011. 12.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이라는 제목의 기사), 2011. 12. 13.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④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5.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이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6.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9. (“부산일보 노조원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상경 투쟁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10. (“박근혜,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정치적 꼼수’”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11.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3. 정수장학회, 누가 지배하나”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11. (“정수장학회 역대 이사장 · 이사 면면 살펴보니”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13.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5. 정수장학회는 거대한 집단 “장학금 수혜자 모임 청오회 · 상청회는 박근혜 지지 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 2012. 2. 10.(“‘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05년에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부산일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인 최필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정수재단 이사장 자리에 직접 앉혔다는 의혹이 있고, 박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여전히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를 장악하고 있어 이사회 의결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여전히 박근혜 위원장이 재단의 막후에서 수렴청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2005. 2. 28.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이사직 및 이사장직을 사임하였는데, 당시 후임자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사회가 속개되었으며, 이후 2005. 3. 5. 속개된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로 최필립씨가 추천되었으나 다른 이사들이 최 후보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여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결국 약 1달에 걸쳐 최필립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05. 3. 24.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박근혜 전 이사장이 직접 최필립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동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사회 의결은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이사들은 평생 동안 공직생활을 하거나 교육계에 종사한 전문가들로서 사회적으로 경륜과 덕망이 높으며 단순히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생 쌓아온 경력에 흠이 될 만한 의사결정을 할 인사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4) “정수장학회는 이미 사회에 환원된 재산이고 순수한 공익활동만을 하고 있어”

본 신문은 2011. 11. 18.(“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16.(“정수재단 사회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16.(“[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6. 장학재단은 공공의 자산 “이사장 연봉이 1억 7천여만 원이라니, 공익재단 맞나”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20.(“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 2012. 1. 25.(“친박,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말로만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면서 자신을 보좌하던 비서관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렴청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실질적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동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학사업, 학술 교육, 문화진흥사업 등을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이래 50여 년 동안 무려 37,751명의 학생들을 지원하였고, 그 동안 장학금 등으로 지

급된 금액만도 약 500억 원에 이르며, 특히 2011년에는 장학금 수혜자가 625명에 이르고, 지원되는 장학금만 해도 2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90% 이상을 목적사업인 장학사업 및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에 있어 학교나 지역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성별, 사회적 지위, 출신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고 공익법인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운영에 있어서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있고, 매년 예산서 및 결산서를 감독청에 보고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및 장기차입시 사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있는 등 정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어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며 실제로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나 다른 외부인사 누구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재산은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며 위 기사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부산일보 2면 우측 상단에 3단 크기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중 2011. 12. 1.자 2면의 제목(“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과 같은 크기와 굵기로 하고, 중간제목(“편집권 독립은 편집국장 추천제를 통해 확실히 보장” 외 3개)활자는 위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부당한 징계 철회..)과 같은 크기와 굵기로 하며, 본문활자도 위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한다.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2. 03. 06.

<별지>

1. 제 목 : 정수장학회 관련 반론보도문

2. 본 문 : 부산일보는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부산일보의 대주주인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경영과 편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현재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줄기차게 벌이는 등 부산일보의 편집권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공익재단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노조의 사장추천권 요구를 거절하는 등 경영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박근혜 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렴청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편집권 독립은 편집국장 추천제를 통해 확실히 보장”

부산일보에서는 편집권 독립을 위해 노조측에서 추천하는 3인의 편집국장 후보 가운데 1명을 회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편집국장 3인 추천제”를 1988년에 노사합의로 도입한 이래로 단체협약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이나 기타 외부의 눈치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편집국장으로 임명되어 왔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신문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으로 편집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함으로써 혹시라도 경영진이 편집 방향을 문제 삼아 임기를 단축시킬 여지가 사전에 차단되어 있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나 부산일보 사측에서 기사의 편집방향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며, 지금까지 부산일보가 자신의 대주주인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본 신문의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현재의 편집국장 추천제를 임명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으며, 부산일보 사측이 편집국장을 대기발령하고 노조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직무상 의무 위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등 부산일보 사측과 노조측 사이의 내부문제 때문이지, 여기에 편집권을 제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노조의 사장추천권 요구는 경영권 침해”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가 공정한 언론보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경영과 편집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하고 있으나, ‘경영과 편집의 분리’가 곧 노조에게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주식회사에 있어서 대표이사 선임권은 주주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 고유한 권리로써 주주가 이를 주주 아닌 직원 등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한 주장이고, 다른 언론사나 방송사의 예를 보더라도 주주 아닌 자가 해당 언론사나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이러한 노조의 무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박근혜 위원장, 정수장학회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2005.2. 28.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이사직 및 이사장직을 사임하였는데, 당시 후임자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이사회가 속개되었으며, 이후 2005. 3. 5. 속개된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로 최필립씨가 추천되었으나 다른 이사들이 최 후보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여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결국 약 1달에 걸쳐 최필립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05. 3. 24. 이사회 의결로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박근혜 전 이사장이 직접 최필립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동 재단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사회 의결은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이사들은 평생 동안 공직생활을 하거나 교육계에 종사한 전문가들로서 사회적으로 경륜과 덕망이 높으며 단순히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생 쌓아온 경력에 흠이 될 만한 의사결정을 할 인사들이 아님을 밝힙니다.

“정수장학회는 이미 사회에 환원된 재산”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학사업, 학술 교육, 문화진흥사업 등을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이래 50여 년 동안 무려 37,751명의 학생들을 지원하였고, 그 동안 장학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만도 약 500억원에 이르며, 특히 2011년에는 장학금 수혜자가 625명에 이르고, 지원되는 장학금만 해도 28억원에 달합니다.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어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며 실제로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거나 다른 외부인사 누구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운영에 관

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재산은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고 봅니다.

위 반론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부산일보 : 『정수장학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4일자 2면)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4

탈북자 복송을 반대하는 성명서에 신청인 단체 회장의 이름이 누락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239 정정청구

신 청 인 :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피신청인 :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2. 02.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 단체는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복송과 관련한 이북도민들의 정서를 확인한 뒤 이를 성명서로 대내외에 발표하기로 하고 자체 발간하는 이북도민연합신문과 동아일보에 관련 성명서를 게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단체가 평안북도 중앙도민회장인 자신의 성명을 누락시킨 채 위 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마치 신청인이 해당 성명서의 취지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는 성명서이자 광고에 해당하므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이북도민연합신문 : 『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복송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1면)

내 용 :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정권을 견디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을 강제 복송시키려는 중국정부의 반인도주의적인 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에 탈북하면 3대를 멸족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상황에서 탈북자 31명이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만약 북으로 강제 송환된다면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복송되면 결국 정치범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에 종신 수용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는 고향에서 본보기로 처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녘이 고향인 8백만 이북도민들은 탈북자들은 명백하게 북한 독재정권으로부터 목숨을 위협 받고 있는 정치 경제적 난민임을 밝히며, 중국정부의 반인륜적 강제북송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국제법을 무시한 반인도적인 처사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8백만 이북도민들은 북송 직전에 놓인 탈북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국제난민협약상 국제법 위반인 중국정부의 북한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의 인권유린을 막고, 중국과 신속히 협의해서 북송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31명의 탈북자들을 전원 구출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라!

1. 유엔과 국제사회는 중국정부에 유엔난민협약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생존권이 걸린 탈북자들의 북한 강제송환을 중단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1. 8백만 이북도민들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북한에서 기아와 억압을 견디지 못해 탈출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력히 밝히며, 탈북자들의 중국내 인권유린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2012. 2

-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장 안 ○○(황해도민 회장)
- 평안남도 중앙도민회장 박 ○○
- 함경남도 중앙도민회장 홍 ○○
- 함경북도 중앙도민회장 안 ○○
- 미수북경기도 중앙도민회장 최 ○○
- 미수강원도 중앙도민회장 장 ○○
-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북도민연합회가 자체 발간하고 있는 이북도민연합신문 1면 광고란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광고의 제목 활자인 “중국정부는 탈북자의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2012년 2월 15일자 성명서에 평안북도 중앙도민회장 ‘오○○’이 누락되어 바로 잡습니다

2. 내 용 : 이북도민연합회는 자체신문인 이북도민연합신문 2012년 2월 15일자 1면 하단(성명서)과 2012년 2월 20일 동아일보 A31면 광고란에 “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명서를 게재하면서 이북도민연합회 회원인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회장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회원들로부터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오○○회장이 이북도민연합회 정책에 반하는 정서를 가진 것으로 오해되어 오○○ 회장이 도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고, 평안북도 도민들이 회장 이름 누락이 동아일보 성명서에서도 잇달아 빠지게 됨으로 인하여 이북도민연합회에 항의가 잇달아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도민 및 오○○ 회장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2. 2. 15.자 이북도민연합신문 제1면 하단에 [중국정부는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게재하였는 바, 위 성명서에 신청인 대표자 이름이 누락되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정정보도의 게재를 구한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피해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위 ‘언론보도등’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를 의미하며(언론중재법 제7조 제1항), ‘언론 보도’라 함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언론중재법 제2조 제15호),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같은 조 제14호).

살피건대,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2012. 2. 15.자 이북도민연합신문 제1면 하단의 광고란에 “중국정부는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성명서는 광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광고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신청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3. 결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03. 05.



사례 5

신청인 회사가 전국의 지사와 전화국 등 부동산을 자신이 최대주주인 부동산개발 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려쓰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241·242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2. 02.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회사가 2011년 4분기에 적자를 기록하자, 이를 흑자로 반전시켜 일시적으로 경영지표를 좋아지도록 만들기 위해 사실상 최대주주로 있는 투자회사에 사용 중인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매각·재임대하였으며, 이는 재직 중인 회장의 연임을 위해 경영실적을 포장하거나 고배당을 통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한 투자회사의 사실상 최대주주라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재직 중인 회장의 연임을 위해 경영실적을 포장하거나 고배당을 통해 주가를 관리해 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 : (1) 『○○, 수상한부동산매각 '흑자꼼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1면)

내 용 : ○○○(○○)가 전국의 지사와 전화국 등 부동산 20건을 자신이 주도한 부동산개발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려쓰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는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가의 용산사옥을 1018억 원에 파는 등 전국에서 모두 20건의 부동산을 ○○○○○제○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주식회사(○○○○○)에 4703억 원에 매각했다. ○○○○○는 부동산투자펀드인 리츠를 설립해 자본금 2000억 원과 대출 2600억 원 등으로 이를 인수했다. ○○○는 리츠에 건물을 매각한 뒤 이를 다시 10년 동안 임대해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는 지난해 12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2958억 원의 수익을 올린 덕분에 4분기 287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교묘한 매각으로 적자를 흑자로 반전

시킨 셈이다.

○○○는 최근 장비 소형화 및 자동화로 유휴 부동산이 늘어나자 자회사 ○○○ 에스테이트와 ○○○ 에이엠시(AMC)를 세워 보유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이번에 매각한 부동산은 유휴 부동산이 아니라 용산사옥처럼 모두 현재 사용중인 업무용 알짜 자산이다. 불필요한 자산 매각으로 ○○○는 일시적으로 경영지표만 좋아졌을 뿐 전에 안 내던 임대료를 물게 됐다.

○○○가 채택한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의 부동산 매각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방식이다. 그러나 ○○○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이 아닌데다 매각 상대가 제3자가 아닌 ○○○가 참여한 부동산신탁펀드라는 점에서 경영실적을 포장하기 위한 매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신이 만든 리츠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시 임대한 기업은 ○○○가 최초”라고 말했다.

부동산을 사들인 ○○○○○는 자본금 2000억 원으로, 보통주 15%를 ○○○가, 의결권 있는 우선주 85%를 베스타스2호 등 사모펀드와 농협·신한생명·삼성화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형식상 최대주주는 69% 지분을 보유한 베스타스2호지만 투자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재무적 투자자인 데다 ○○○○○ 설립을 ○○○가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 사실상 최대주주라고 할 수 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 우선주는 높은 배당과 함께 의결권도 주어진 게 특징이다.

○○○는 부동산 매각 의혹에 대해 “자산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부동산 자산을 선순환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의 우선주는 보통주처럼 의결권이 있고 ○○○ 지분은 15%에 불과해 자회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는 또 “세일 앤 리스백으로 매각한 이유는 통신망 광대역화로 통신사업용 부동산 규모가 줄고 있는 데 따라 장비를 이전하기 전까지 현재 공간을 써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 (2) 『○○ ‘수상한 부동산 매각’ 왜?’ 내달 회장연임 승인 주총 예정, 고배당 통한

『주기관리』에 신경』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5면)

내 용 : ○○○(○○)가 지난해 말 전국의 20개 지사와 전화국을 매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매각 뒤 임대라는 자산 유동화 방식은 자금난에 몰린 기업들이 동원하는 절박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의 주력인 통신사업은 초기 설비투자자와 가입자 확보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매달 현금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이고, ○○○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2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자산 유동화에 나섰던 기업들과 형편은 다르다. ○○○ 쪽은 “유휴 부동산 매각에 나섰지만 경기침체로 계획대로 팔리지 않게 된 상황에서 매각이 가능한 현재 사옥을 유동화시킨 것”이라며 “신규 사업 진출 등을 위해 자산 유동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는 통신시장의 포화로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통신 이외의 사업에 진출하는 데 현금이 필요한

상태다.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그룹 전체 매출에서 통신과 비통신 부문 비중을 5 대 5 정도로 만들 계획”이라며 “3년 동안 통신 부문의 매출을 강화해 경쟁력의 기초를 닦았다면 앞으로 2기에는 통신업계 1위 기업을 넘어 종합그룹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렌탈·위성방송·정보통신솔루션 같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2015년 40조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비씨(BC)카드, 금호렌터카 인수 등이 그 시도의 하나다.

그러나 부동산 매각의 배경에는 매출이익을 키워 투자자에게 높은 배당을 유지해야 하는 속사정이 있다. ○○○ 경영진은 순이익의 50%를 배당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는 2009년에도 순이익의 94%를 배당한 바 있다. 매각의 이유가 경영실적을 포장하거나 고배당을 통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된 이○○ 현 회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승인받아야 하는 사정도 매출이익과 주가를 각별하게 관리해야 할 배경이다. ○○○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1조9573억 원의 이익을 올렸지만, 4분기엔 2G 종료 비용과 주파수 전략 실패로 엘티이(LTE) 서비스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초부터 증권사는 보고서를 통해 4분기 실적 악화를 지적하며 고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가 유지가 어렵다고 ‘압박’ 해왔다. 조○○○○ ○인권센터 위원장은 “○○○는 경영실적이 안 좋을 때마다 부동산을 팔아 실적을 만들어왔다”며 “특히 비통신 부문을 50%로 키우기 위해 현찰이 필요하고 줄어드는 이익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메우는 구조”라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한겨레신문 종합 1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같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하고,

- 한겨레(<http://www.hani.co.kr>)의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제일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 부동산 매각 관련 의혹 허위로 밝혀져, 2011년 4분기 실적 안정, 부동산 매각은 장기 투자전략 일환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6일 “○○, 수상한 부동산 매각 ‘흑자 꼼수’ 의혹” 및 “○○ ‘수상한 부

동산 매각' 왜? 내달 회장연임 승인 주총 예정, 고배당 통한 '주가관리'에 신경"이라는 제목으로 ○○가 2011년 4분기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이를 흑자로 반전시켜 일시적으로 경영지표만 좋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가 사실상 최대주주로 있는 ○○○○○○라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실제로 사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매각하고 다시 재임대하고 있으며, 이는 이○○ 현 회장의 연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실적을 포장하거나 고배당을 통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의 2011년 4분기 실적은 부동산 매각이익을 제외하고도, 374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흑자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 부동산 매각은 2009년부터 마련된 자산포트폴리오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고비용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신규사업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총액은 부동산 매각이익을 제외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의 50%내에서 결정되었는데, 경영실적 포장이나 고배당을 통한 주가 관리 및 이를 통한 이○○ 회장의 연임을 위하여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가 부동산을 매각한 ○○○○○○는 베스타스 2호 등 사모펀드와 농협, 신한생명, 삼성화재 등이 85%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원에 대한 선임 및 개입권을 행사하면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는 위 회사 주식의 15%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바, ○○가 ○○○○○○의 사실상 최대주주라는 기사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한편, ○○가 채택한 '세일 앤 리스백' (Sale and Lease-back) 방식의 부동산 매각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료의 비율이 핵심 사업의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롯데, SK, HSBC 등의 우량기업들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어 본 신문은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 부동산 매각은 장기 투자전략 일환, 2011년 4분기 실적도 안정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6일 “○○, 수상한 부동산 매각 ‘흑자 꼼수’ 의혹” 및 “‘○○’ 수상한 부동산 매각' 왜? 내달 회장연임 승인 주총 예정, 고배당 통한 '주가관리'에 신경"이라는 제목으로 ○○가 2011년 4분기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이를 흑자로 반전시켜 일시적으로 경영지표만 좋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가 사실상 최대주주로 있는 ○○○○○○라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실제로 사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매각하고 다시 재입대하고 있으며, 이는 이○○ 현 회장의 연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실적을 포장하거나 고배당을 통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는 2011년 4분기 실적 및 부동산 매각 배경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의 2011년 4분기 실적은 부동산 매각이익을 제외하고도, 374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부동산 매각이익 2958억 원을 포함하여, 4분기 287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BC카드 등의 계열회사들이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상 수치로서, ○○실적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의 부동산 매각은 2009년부터 마련된 자산포트폴리오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고비용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신규사업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총액은 부동산 매각이익을 제외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의 50%내에서 결정되었는바, 경영실적 포장이나 고배당을 통한 주가 관리 및 이를 통한 이○○ 회장의 연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 부동산을 매각한 ○○○○○○는 베스타스 2호 등 사모펀드와 농협, 신한생명, 삼성화재 등이 85%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원의 선임 및 개입권을 행사하는 등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는 ○○○○○○의 15%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한편, ○○가 채택한 ‘세일 앤 리스백’ (Sale and Lease-back) 방식의 부동산 매각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료의 비율이 핵심 사업의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롯데, SK, HSBC 등의 우량기업들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아래의 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용산사옥 등 20건, 지분 가

진 ○○○○○에 팔아과 같은 크기로 한다. 또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 및 줄 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위 보도문을 동일기간 안에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가.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신문은 2012년 2월 16일자 1면 「○○, 수상한 부동산 매각 ‘흑자 꼼수’ 의혹」 및 5면 「○○ ‘수상한 부동산 매각’ 왜? 내달 회장 연임 승인 주총 예정 고배당 통한 ‘주가관리’에 신경」 제하의 기사에서 “○○가 2011년 4분기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이를 흑자로 반전시키기 위하여 ○○가 사실상 최대주주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에 사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매각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렸으며, 이는 이○○ 현 회장의 연임에 대한 주주 총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실적을 포장하거나 고배당을 통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재무제표 기준 ○○의 2011년 4분기 실적은 부동산 매각이익을 제외하고도 37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은 부동산 매각이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의 50% 내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적자를 흑자로 반전시키거나 부동산 매각이익을 배당에 활용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는 “○○가 부동산을 매각한 부동산개발회사는 ○○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아니고, 세일 앤 리스백의 매각방식 또한 법령상 허용되고 널리 활용되는 것이므로, ○○의 부동산매각이 경영실적 포장이나 고배당을 통한 주가 관리, 회장 연임 승인 등과 전혀 관계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03. 2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①

한겨레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2면)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②

인터넷 한겨레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사례 6

신청인이 철거업체 대표인 고향 후배의 청탁을 받고 뉴타운 관련 비리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262 · 263 · 264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신 청 인 : 권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2. 02. 2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총경인 신청인이 자신이 고향 후배인 철거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담당수사관을 강제로 인사조치 하는 등의 방법으로 뉴타운 관련 비리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뉴타운 지역 재개발 비리를 수사하던 서대문경찰서의 서장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문제가 된 인사조치 및 청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신청인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내사종결 또는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7일 이내에 조건부 후속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기사를 게시한 KBS를 상대로 정정 · 반론 · 손해 청구(2012서울조정265 · 266 · 267)를 제기했으며, 심리결과 조건부 후속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현직 경찰총경, '비리수사' 무마압력?'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22일자 21:00)

내 용 : ▷ 앵커 : 현직 경찰 총경이 뉴타운과 관련된 비리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7년 재개발이 추진된 한 뉴타운 지역. 입주를 앞둔 다른 구역과 달리 철거만 이뤄지고 각종 비리 소송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최근 이 지역 재개발 비리를 1년 넘게 수사하던 서울 서대문 경찰서의 최모 경위가 다른 경찰서로 인사조치됐습니다. 이에 최 경위는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자신을 강제 전출 시켰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권모 총경이 지난 10월 고향 후배인 철거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자 파출소로 발령을 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권 총경은 수사 진척이 늦어 조언과 도움을 준 것뿐 이라고 밝혔습니다.

▷ 녹취 (권○○ 총경/광주 ○○경찰서) : “(철거업체 대표가) 고향 후배고 하니까(담당 형사한테)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죄도 크지 않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조언을 했어요.)”

▷ 리포트 : 주민들은 수사경찰의 인사조치에 대해 경찰이 비리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보름 넘게 경찰청을 향의 방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가재울 4구역 주민) : “계속 첩보를 받아서 수사를 하셨던 분이 계속 진행을 해야지 이 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정확히 밝혀질 수 있잖아요.”

▷ 리포트 :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청은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가○○ 뉴타운 비리와 관련해 현직 총경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입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BS-1TV <뉴스 9> 프로그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BS-1TV <뉴스 9> 프로그램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경찰총경 비리’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 22.(9시뉴스)에서 「현직 경찰총경, ‘비리수사’ 무마 압력?」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권모총경 등이 지난해 10월 고향후배인 철거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방해하고 최경위의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이 보도내용은 최경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며, 최경위에 대한 인사는 본인의 문제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인사조치가 되었으며 서대문경찰서장과 광주지방경찰청 권모 총경과는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인사조치 및 청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경찰총경 비리’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 22.(9시뉴스)에서 「현직 경찰총경, ‘비리수사’ 무마 압력?」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권모 총경 등이 지난해 10월 고향후배인 철거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방해하고 최경위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권모 총경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경찰 수사 결과, 본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내사종결 또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이 7일 이내에 요청하면 7일 이내에 KBS-1TV 뉴스9 프로그램에 후속보도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보도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2. 03. 08.



사례 7

대전 지역 일부 경찰과 지역 내 불법 오락실이 유착 관계에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대전조정2, 2012대전조정3(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피신청인 : 조 ○ ○ (대전시티저널 발행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12. 03. 1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대전 지역 일부 경찰관이 지역내 불법 오락실에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금품을 상납받는 등 불법 오락실 업주와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불법오락실 업주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추측성 보도로써 대전 지역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대전시티저널 : (1)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상상초월'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내 용 : 대전 경찰이 지역 내 불법 오락실과 뿌리 깊은 상납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대전 경찰 가운데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를 눈감아 주는 댓가로 10여 원을 상납 받은 경찰관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문은 확산될 조짐이다.

실제 A 씨는 “경찰 조직이 굶을 대로 굶었다. 경찰이 떼떈하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찰과 불법 오락실의 상납 관계는 대전지방경찰청부터 시작해서 일선 지구대까지 뻗어 있다. 불법 오락실과 유착된 경찰이 이들로 부터 매달 상납 받는 돈만 수 천만원 선이다”라고 주장해 상상을 초월하는 유착 관계가 형성돼 있음을 시사했다.

A 씨는 또 “<시티저널>의 보도로 인해 일부 불법 오락실이 영업을 중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3월 중순부터는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단속되고 있는 불법 오락실은 대부분 영세 오락실이다. 조직폭력배가 직영·관리하고 있는 오락실은 아무런 영향없이 영업을 하

고 있거나, 잠시 문을 닫아 놓은 상태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오락실 B 업주는 “깡패들이 관리하는 불법 오락실은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문을 닫아 놓았거나, 섭외된 경찰을 믿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힘 없는 오락실만 단속하고 있다. 지역 조직폭력배의 경찰과 유착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고 말해 A 씨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B 씨는 이어 “경찰을 섭외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준비했지만, 그 금액으로는 어렵도 없다는 경찰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섭외비로 3,000만 원을 준비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오락실 매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납 장부 같은 건 애초에 만들지도 않는 것이 업계 룰이다”라고 경찰과 불법 오락실 상납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경찰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찰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내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감찰 중이지만 누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연관이 있다면 직무고발하고, 의혹이 있는 부분은 그 원인을 찾아 분석하겠다. 밝혀낼 수 있는 데까지 밝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정 의지를 밝혔다.

대전시티저널 : (2)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없다면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7일자)

내 용 : 대전 경찰 소속 일부 경찰관과 지역 내 불법 오락실이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의혹에 이어 대전 경찰 지휘부만 모르고 있는 현실이라며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불법 오락실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경찰 실명과 함께 소속 · 직위가 모두 알려져,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오락실에서 관할 지구대 팀당 1명씩 섭외하는 것이 업계 불문율이다”라고 주장하며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 대전청 근무 경찰 순으로 섭외하게 된다. 내부에서 모르는 경찰관이 없다. 유착이 없다면 거짓말이다”라고 경찰과 업체의 유착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관계자들은 “<시티저널> 보도 이후 대전청 청문과 감찰에서 몇몇 경찰관을 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계좌 · 통화내역 조회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유착 관계에 있으면서 상식적으로 자신의 계좌와 핸드폰을 사용하겠나”고 내사 자체에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지금 잠 못 자는 경찰들이 꽤 있을 것이다”라고 냉소를 보내며 “청문과 감찰이 제 역할만 한다면 줄줄이 사탕으로 엮일 텐데, 내사해 보고 이상이 없다고만 하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이 없다. 자체적으로 속아내지 못하면 검찰에 맡기는 게 낫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들은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이 인사까지 개입한다고 전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관 A 씨는 “불법 오락실에 섭외된 B 경찰관이 내년 자신이 가야할 자리를 보고 있고,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 로비를 했다고 한다. 섭외 경찰관들이

일명 ‘퍼즐 맞추기’로 서로를 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 C 씨는 “섭외 경찰이 같은 자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으면서 “지구대에 있는 D 경찰관이 청으로 가기 위해 작업 중이다. 섭외 경찰들은 서로를 옆에 두고 있거나 두려고 하는 상태다”라고 인사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경찰청이 최근 창설한 ‘허리케인 팀’에는 비난이 뒤따랐다.

또 다른 경찰관 F 씨는 “백날 해봐야 안 된다. 보여 주기식 밖에 더 되겠냐. 불법 오락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적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꼬집으며 “불법 오락실 단속하겠다고 의경·기동대·광수대 고생할 이유가 없다. 광수대 직원이 오락실이나 단속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허리케인 팀의 역할에 꼬리표를 달았다.

이들 경찰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다시 새판을 짜기 위해 모두 바뀌어야 한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휘부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물타기’에 나선 것 같다. 이래서야 대전 경찰이 바로 서기 힘들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대전시티저널(<http://www.gocj.net>)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대전시티저널(<http://www.gocj.net>)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2)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1. 제 목 :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상상초월’ 파문』은 사실이 아님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월 24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상상초월’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경찰은 불법 오락실 업주와 유착되어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경찰관과 업소의 유착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불법오락실 업주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추측성이고 일방적인 보도로, 대전경찰과 오락실 업자

간 유착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인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전경찰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한 보도였습니다.

대전경찰은 불법 오락실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대전경찰청의 상설단속반과 동부서와 둔산서에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불법 오락실을 뿌리 뽑고” 있으며 불법오락실 업주와 유착은 없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2)>

1. 제 목 :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없다면 ‘거짓말’』은 사실이 아님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3월 7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없다면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경찰은 불법 오락실 업주와 유착되어 있는데 지휘부만 모르고 있고 불법 오락실과 유착관계에 있는 경찰 실명과 함께 소속·직위가 모두 알려져 파장이 더 확산 될 것이며 복수의 경찰 A,B,C,D,F를 거론하여 인사로비 의혹 등 경찰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마치 사실처럼 보도하였으나 대전경찰 지휘부에서는 지방청에 “허리케인 팀” 동부·둔산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 오락실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오락실 유착 경찰의 실명이나 소속·직위가 알려진 사실이 없고 경찰의 인사 시스템을 모르는 불법 오락실 업주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추측성이고 일방적인 보도로, 대전경찰과 오락실 업자간 유착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인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전경찰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한 보도였습니다.

대전경찰은 불법 오락실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대전경찰청 허리케인 팀과 동부서와 둔산서에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강력한 단속 활동 및 투명성과 유착의혹을 단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경찰기동대 게임장 배치로 “불법 오락실을 뿌리 뽑고” 있으며 불법 오락실 업주와 유착은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대전지방경찰청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용 : 본지는 지난 2월 24일자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상상초월’ 파문』 및 3월 7일자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없다면 ‘거짓말’』 제목의 기사에서 대전지역 일부 경찰관과 지역 내 불법 오락실이 유착관계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경찰청은 단속정보 제공이나 섭외비, 금품 상납 등과 같은 불법 오락실과 경찰관의 유착관계는 불법 오락실 업주 등의 주장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유출 및 유착 의혹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추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힘 없는 오락실만 단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오락실은 모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오락실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야간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3월 19일 09:00부터 <대전시티저널> 홈페이지(<http://www.gocj.net>)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게재한다. 피신청인은 또한, 2012년 3월 19일 09:00부터 3월 22일 09:00까지 3일간 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별도의 배너형태로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이 계속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단, 배너 위치와 크기 등은 피신청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각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임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3. 1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대전시티저널 : 『대전지방경찰청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8

‘신재생에너지업체의 법정관리인인 신청인이 대주주 협박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수백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소액주주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350 · 351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2. 03.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재생에너지업체의 법정관리인인 신청인이 주가조작 등으로 수백억 원을 포탈하는 등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업체가 상장폐지된 이후에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구 경영진 간의 법적 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인터넷 헤럴드경제(2012서울조정352 · 353)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헤럴드경제 : 『이○○ 부친이 고소 · 고발 당한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6일자 13면)

내 용 : 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부친 이○○(54) 씨가 지난 9일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이하 ○○○○○○)의 법정관리인 신분인데, 과거 소액주주 40명이 이 씨와 공동관리인인 이○○ 씨 두 사람을 업무상 배임, 직권 남용,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 고발한 것이다.

소액주주 대표인 최○○ 씨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두 관리인은 상장폐지 협박 및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대주주를 내쫓고, 그 과정에서 인수 · 합병(M&A) 등 조작정보에 의한 주가조작, 회사 재산의 유용과 감자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며 수백억 원을 포탈하는 등 4,000여 명의 무고한 소

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증권 지점장과 국제영업부장을 거친 금융인 출신이다.

녹색주로 각광받으면서 한때 시가총액이 1,000억 원에 육박했던 ○○○○○은 2010년 우회상장 2년 만에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100억 원 규모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되면서 투자자들과 이 전 대표 간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져왔다.

이 전 대표는 올 초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은 현재 채권자인 삼보산업의 신청에 의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헤럴드경제 경제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이○○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이○○ 부친 수백억포탈 소액주주 주장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6일자 경제면에 “이○○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이라는 제목 하에 소제목으로 “○○○○○ 법정관리인 소액주주 수백억 포탈 주장”이라는 소제목으로

1) 소액주주 대표인 최○○씨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두 관리인은 상장폐지 협박 및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대주주를 내쫓고, 그 과정에서 인수 합병(M&A)등 조작 정보에 의한 주가조작, 회사 재산의 유용과 감자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며 수백억 원을 포탈하는 등 4,000여명의 무고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최○○ 씨는 이러한 제보사실을 부인하였고, 사실확인 결과 이○○ 부친인 이○○씨는 해당 회사가 보전처분이 내려진 2011년 11월 2일자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상기의 구 경영진간의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관련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또한 금번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혀 왔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이○○ 부친 수백억포탈 소액주주 주장”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헤럴드경제는 지난 3월 16일 경제면 “이○○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 제목의 기사에서 소액주주 대표인 최○○ 씨의 발언을 인용해 ○○○○○○○○의 법정관리인인 이○○ 씨가 주가조작과 회사 재산의 유용과 감자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며 수백억 원을 포탈하는 등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부친인 이○○ 씨는 상장폐지 이후인 2010년 11월 3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구 경영진 간 법적 분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씨는 보도에서 언급된 고소·고발건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추후 내용이 확인 되는대로 근거없는 악성비난이나 음해 등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임을 밝히며, 제보자인 최○○ 씨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제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4월 17일까지 <헤럴드 경제> 13면에 제1항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인 ‘이○○ 부친이 고소·고발 당한 까닭은?’ 활자와 같은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보도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년 4월 23일까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

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4. 1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헤럴드경제 : 『'이○○ 부친 수백억포탈 소액주주 주장'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3일자 19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9

신청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의 보안이 ‘메신저피싱’에 뚫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556, 2012서울조정557(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2.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2. 04.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회사의 모바일 메신저의 보안이 ‘메신저 피싱’에 뚫렸다고 지적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해당 모바일 메신저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회사는 자사 스마트폰 앱의 보안이 뚫린 것은 사실이 아니고, 허위보도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가 무너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들은 후속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1

중앙일보 : (1) 『**가입자 4,200만 ○○○○이 뚫렸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1면)

내 용 : 가입자 4,200만 명(12일 기준)을 넘어선 스마트폰 무료 메신저 앱인 ‘○○○○’의 보안이 ‘메신저 피싱’에 뚫렸다. 지금까지 ○○○○은 암호화 방식으로 운영돼 보안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1일 경찰과 인터넷 보안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영업을 하는 장모(52)씨가 “○○○ ○ 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해움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장씨는 지난 3일 중국으로 출장 간 친구 주모씨로부터 ○○○○ 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 ○으로 대화를 하던 친구의 이름과 사진 모두 그대로였다. 주씨는 장씨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너뿐 이라 급히 연락한다”며 “아내한테 비자금을 들킨 것 같다. 아내한테 통장에 돈이 있는 것만 확인시키고 돌려줄 테니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평소에 돈 거래를 하던 사이였고, 친구 이름으로 온 메시지라 장씨는 다른 사람일 거라 의심하지 못한 채 ‘비자금 계좌’라며 알려준 곳으로 600만 원을 보냈다. 장씨는 “두 시간 후 휴대전화를 보니 대화를 나눈 친구의 이름과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다시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기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송금한 지 10분 만에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난 뒤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PC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 피싱 외에 스마트폰 버전만 있는 ‘○○○○ 피싱’ 사례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황○○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사고점검팀장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해킹기술 때문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원격 피싱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악성코드 검사를 꼭 하고 백신을 다운로드받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 (2) 『악성코드 심은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면 원격 해킹에 당할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18면)

내 용 : 진화하는 해킹에 ○○○○(○○)도 더 이상 ‘피싱 예외지대’는 아니었다. 보안 전문가들은 “○○에 대한 피싱은 시간문제였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파악하는 ‘스마트폰 원격 해킹’ 기술이 개발됐다. 한 온라인 보안업체 관계자는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 등에 올려 놓은 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받으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스마트폰 보안 백신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은 사용자가 수천만 명인 만큼 피해 사례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PC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한 ‘○○○○’은 PC 해킹을 통한 것으로, 이미 피해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 일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앱 ‘○○○○’에서 친구 행세를 한 사람에게 180만 원을 보냈던 정모(33)씨의 피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폰에서만 이용 가능한 ○○은 ○○○○과는 경우가 다른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해킹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양한 해킹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 해킹 원인에 대해 황○○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사고 점검팀장은 “‘사회공학적 해킹’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안 시스템 자체를 공략하기보다는 ○○ 이용자의 학연·지연 등을 이용해 허점을 노린다는 것이다. 황 팀장은 “○○은 이름과 사진을 바꿔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만든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한 뒤 ‘친구추천’에 뜨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행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격하고 싶은 사람의 페이스북·트위터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는 소위 ‘신상털기’ 기법이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3월 ○○ 피싱 피해를 당한 장모(52)씨는 “말투와 사진·이름이 모두 친구와 똑같았다”며 “이름을 부른 뒤 ‘친구야’라고 덧붙이는 말투도 비슷해 친구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전에도 400만~500만 원씩 여러 번 돈을 주고받는 사이였기 때문에 친구가 이 돈을 받

으려고 일부러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친구 주씨 모두 스마트폰을 분실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 측은 기술적으로 ‘스마트폰 원격 해킹’에 ○○○○이 뚫릴 가능성은 없어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 홍보팀장은 “○○○○의 경우 인증체계가 휴대전화 번호와 이에 따른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면 이를 원격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 피싱 해커에 대한 추적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 업체들이 급증하는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이용자 접속기록을 일주일치만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건 접수 후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데만 일주일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②

온라인 중앙일보 : (1) 『“○○ 뚫렸다” 600만 원 보낸 후 전화기 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 - (1)의 보도내용 참조>

온라인 중앙일보 : (2) 『악성코드 심은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면 원격 해킹에 당할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 - (2)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1.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중앙일보 1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1면 조정대상 기사 제목 활자의 절반 크기로 하고 본문은 1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joongang.joinmsn.com>)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서로 연결되어있는 기사로 구성하여, 이용자가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거나 열람할 때 아래의 정정보도문도 함께 검색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가입자 4,200만 ○○○○이 뚫렸다”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3월 22일자 1면 “가입자 4,200만 ○○○○이 뚫렸다” 라는 제목의 기사와 18면

“악성코드 심은 앱 다운받으면 원격 해킹에 당할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원 사기 건이 ○○○○의 보안이 뚫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의 보안은 뚫린 적이 없으며, 3월 22일자로 보도한 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기사건이고 ○○○○이 ‘메신저 피싱’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①

중앙일보 : 『○○ 600만 원 송금 사기 친구사칭 사건으로 수사』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사회면)
내 용 : 지난 3월 처음 발생했던 ‘○○○○’을 이용한 송금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3월 스마트폰 메신저앱인 ○○○○에서 장모(52)씨의 친구를 사칭해 600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의자 특정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나선 지 2개월여가 지났음에도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22일 “돈이 인출된 은행 주변의 CCTV를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피의자가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친구를 사칭한 후 돈을 받아 달아난 사기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월 통신조회·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통장 개설자가 이모(35·여)씨인 사실을 확인,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었다. 또 대포폰 개설자를 추적하고 은행 ATM기 CCTV를 통해 2명 이상이 가담한 사실은 확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발신지 조회,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칭한 친구가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수법이 해킹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단정해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 보안이 뚫리거나 메신저 피싱에 노출된 사안이 아니다”며 “보안시스템과 관련 없는 단순 사칭 사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②

온라인 중앙일보 : 『○○ 600만 원 송금 사기 친구사칭 사건으로 수사』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6일자)
내 용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①의 보도내용 참조> 

사례 10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한 음식을 중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691·692, 2012서울조정693·694(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허 ○ ○

피신청인 : 1. (주)제이티비씨, 2. 제이큐브인터랙티브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2. 05. 07.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식당이 언론에서 맛집으로 소개되고 있는 반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식당·여행사 및 관광가이드 사이의 리베이트 문제로 인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식당을 운영중인 신청인은 보도내용은 자극적인 화면을 사용한 과장·왜곡보도로서 사실이 아니고, 보도로 인해 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 jtbc에 게재된 VOD 영상 및 향후 재방송 영상에서 신청인 식당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며, 신청인에게 사과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jtbc: 「미각스캔들」 프로그램 '9회 - 중국 관광객 전용 최악의 식당'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9일자 23:10)

내 용 : (전략) > 여성 아나운서 : 그런데 취재 도중 알게 된 또 다른 식당은 한 신문에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소문난 곳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실체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관광 식당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 내레이션 : 오랜 전통과 뛰어난 음식 맛으로 언론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이 집. 그만큼 가게 안은 늘 손님들로 가득한데. 그런데 언론인터뷰에서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다던 사장님 과연

이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든 음식을 가족에게 먹일 수 있을까? 쌀국수 안에는 죽은 초파리와 개미가 며칠째 방치되어 있었고 이 쌀국수는 육수만 부어 손님상에 나가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돼지갈비에서 철수세미까지 발견. 몇 해 전부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약 손님을 받고 있다는 이 집. 그리고 대형 여행사의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 제작진 : 혹시 ○○ 투어에서 오신 거예요?

▷ 녹취 (기사) : 네. 상태 안 좋아요. 지저분하다는 거죠. (음식이) 거의 그렇죠 아주 배고프지 않으면 참으면 되는 거죠. (가이드들이) 이야기 한데로 가는 거죠. 합의(계약) 끝난 데로 가는 거죠 견적 내서 사장님이 많이 받으면 나머지(가이드들이) 갖는 거죠 기본(가격) 빼놓고는 어디에 얼마 내는 게 딱 나오잖아요.

▷ 내레이션 : 실제로 음식점과 여행사 간에 리베이트가 이루어 지는 것일까? 음식값을 계산하는 가이드와 주인 간에 영수증이 한번 건네지고 이후 무언가 의심스러운 장면이 목격되었는데.

▷ 남성 아나운서 : 맛집으로 소개된 이 식당의 실제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오래된 식당만의 전통과 맛은 온데간데없고 비위생적인 주방환경과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음식을 보면 관광 한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 여성 아나운서 :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음식점들이 있지만, 특히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점검 또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이 식당에서 촬영한 영상을 들고 직접 해당 구청에 찾아가 제보를 하고 단속 및 점검을 해 줄것을 요청해봤습니다.

▷ 내레이션 : 해당 음식점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제작진. 해당 구청에 직접 찾아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을 제기했다.

▷ 송파구청 : 여기가... 통화하기 전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 제작진 : 중국인들 단체관광객을 받아요. 그걸 가서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 송파구청 : 우리는 당연히 가서 확인하죠. 내일 오후에 가면 월요일에 알려 드리고 혹시 뭐 오전에 가게 되면 빠르면 내일 오후에도 알려 드릴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우리가 원칙대로 점검하고 사실 통보하는 거니까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투명한 사회고 저희가 성심껏 단속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내레이션 : 확실한 단속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약속한 날짜에 해당 구청의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당 앞에서 잠복하고 있던 제작진. 마침 8시 50분경 식당을 찾아온 단속반을 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보통 식당의 영업시간에 비해 이른 단속시간. 그리고 단속반은 식당에 들어간 지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당 사장의 명함만을 갖고 식당을 나왔고 제작진에게는 오전 11시에 다시 단속을 하러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오후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단속을 나오지 않았고 이에 다시 재단속을 요청.

▷ 송파구청 : 아니요. 그 사람들(식당)은 눈치 못 챘고 어쨌든 다음 일정에 (단속) 해드릴게요. 걱정

하지 마세요. 끊으세요. 나 진짜 바빠요.

▷ 제작진 : 단속을 하실 의무는 주임님 일이시니까.

▷ 송과구청 : 한다고요.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 내레이션 : 구청이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단속을 미루는 사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저질 음식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 송과구청 : 어제 실시를 해서... 가보니까 정말 불결하고... 그런 사실은 모두 적발했거든요.

▷ 내레이션 : 해당 구청의 단속 이후 식당의 위생상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지 찾아가 봤다.

▷ 제작진 (잠입취재원/제보자) : 원래가 잘 웃어요.

▷ 녹취 (종업원) : 웃는 것에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음식 앞에다 놔두고 웃어 침 튀기는디?

▷ 제작진 (잠입취재원/제보자) : 침 튀길까 봐요?

▷ 녹취 (종업원) : 예.

▷ 제작진 (잠입취재원/제보자) : 웃지말까요?

▷ 내레이션 : 단속 이후여서일까. 위생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주방직원. 하지만 주방기구가 보관된 선반을 행주로 한번 닦아 냈을 뿐인데 묻어나는 검은 때. 설탕, 간장, 고추장 등 음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양념이 담긴 양념통. 오랜 전통의 맛대신 양념 통의 찌든 때가 이 집의 세월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이쯤 되면 이 찌든 때가 음식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

게다가 음식을 조리할 때 재료에 직접적으로 닿는 식칼의 보관상태는 제작진을 당황케 했다. 그런데 그 칼로 손님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위생상태. 도저히 구청의 단속 이후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기본적인 위생에 대한 개념 자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식당에서 직접 일을 해봤다는 사람을 어렵게 만나 주방의 실체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 제작진 (잠입취재원/제보자) : 양파 같은 건 까서 씻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고에 들어가서 다른 손님들 시키면 그 자리에서 채 썰어서 나가고.

▷ 제작진 (잠입취재원/제보자) : 양파를 썰어야돼요?

▷ 녹취 (종업원) : 그럼 양파를 썰어야되지.

▷ 내레이션 : 채소를 씻지 않는 것은 기본 그리고 갈비 주문 시 기본 반찬으로 많이 나가는 채를 썬 양파. 늘 손님이 많은 만큼 양파의 양도 많은데. 그런데 이 양파를 썬 기계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돼지고기를 썰었던 기계 사람에게 해로운 균이 살 수 있어 반드시 익혀먹어야 하는 돼지고기인데. 그곳에서 양파를 바로 썰어 손님 상으로 나가고 있었다. 제작진이 서울시 위생과에 알아본 결과 도마와 마찬가지로 고리를 썰었던 육절 위에서 바로 채소를 썬 것은 위생상 좋지 않다고 한다.

▷ 제작진 (잠입취재원/제보자) : 더러운 음식찌꺼기가 밑으로 흐르는데 소쿠리에 받침대 없이. 그냥

밑에다 두고 씻으니까 같이 묻는 거예요 밑에거는.

▷ 내레이션 : 뿐만 아니라 이 소쿠리의 보관 장소는 음식물 쓰레기통의 바로 옆. 중국인 관광객에게 나가는 돼지갈비는 불결해 보이는 냉장고에 덮개도 없이 보관되어 있었고 주문과 동시에 언제 재워두었는지도 모를 돼지갈비가 홀서빙 직원에 의해 제대로 된 고기양의 측정도 없이 손님 상으로 나가고 있었다.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중국인 관광객. 게다가 호일은 찢어지기 쉬워 고기가 불판에 닿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씻었는지 확인하기도 힘들 만큼 묵은 때 그리고 녹이 슬어 있는 불판.

더 황당한 것은 세척과정 없이 그대로 보관되어 다음 중국인 관광객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집의 불판. 주방 냉장고에서 포장된 버섯을 꺼내는 종업원. 그런데 씻지도 않고 포장지 채 그냥 찢어 된장찌개에 대충 찢어 넣는다.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채소 역시 씻지 않았다.

음식에 정성이란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식당. 손님들이 먹고 남긴 반찬을 버리지 않고 따로 놔두는 주방 종업원.

▷ 녹취 (종업원) : 이런 건 놔둬라...

▷ 내레이션 : 손님 상에 나갔다운 김치는 그대로 김치통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 녹취 (종업원) : 요즘은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으니까 잘못 되면 큰일 나.

②

인터넷 jbc : 『다시보기 9회 - 중국 관광객 전용 최악의 식당』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9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1.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jbc <미각스캔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이 방송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도 삭제한다)

• 피신청인2.는 jbc의 홈페이지 <미각스캔들>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게시되어 있는 동영상 중 신청인 관련 동영상은 삭제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해당식당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점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2012년 jtbc 미각스캔들 9회 2012년 4월29일 일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 [중국 관광객 전용 최악의 식당] 편의 두 번째 소개 되었던 [두 얼굴의 중국관광식당]의 방송내용중 자극적인 화면과 과장, 왜곡, 표적보도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다음 사항은 사실이 아님으로 확인되어 이에 저희 방송사는 정정보도를 합니다.

가. 며칠째 죽은 초파리와 개미가 들어있는 쌀국수는 며칠째 방치된 것이 아님으로 확인되었고
나. 음식점과 여행사 간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상황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다. 직접 일한 사람이라는 제보자는 식당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 씻지 않는 채소와 감자탕에 들어가는 안씻은 고기, 더러운 양념통, 고기를 찢었던 육절위에서 바로 채소를 써는 것과 덮개도 없이 보관된 돼지갈비, 양 측정없이 나가는 고기는 잠입취재원의 왜곡된 촬영과 허위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확인하여 방송내용중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정정하여 알립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들은 2012년 5월 24일까지 인터넷 조정대상방송 (http://home.jtbc.co.kr/Vod/VodView.aspx?prog_id=PR10010072&menu_id=PM10012525&epis_id=EP10011930) 및 향후 재방송 및 인터넷 VOD영상에서 신청인 식당 관련 부분을 삭제한다.

2.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들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은 담당 책임자 명의의 사과문을 2012년 5월 24일까지 발송한다.

2012. 05.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조정대상보도 삭제



사례 11

신청인이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았다.

사 건 : 2012서울중재15 추후청구

신 청 인 : 남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2. 05.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신청인이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만들어 비방글을 올리고, 사이트 폐쇄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12년 3월경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2012서울조정709)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 전에 양 당사자는 관련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중국적으로 따르겠다는 취지로 중재합의를 하였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추후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중재대상보도

연합뉴스 : 『**안티사이트 폐쇄 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3일자)

내 용 : 기업체의 안티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사이트 폐쇄를 조건으로 돈을 뜯으려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개설해 이 출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다가 작년 9월 ‘사이트를 폐쇄할테니 3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남모 씨를 구속했다.

남씨는 또 작년 9~11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모 정수기 안티사이트 등 6~7개 사이트에 가명으로 접속해 “편법 유통회사들이 구직자나 부녀자들 등쳐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경찰에서 “몇 년 전 한 다단계 회사 때문에 피해를 본 일이 있어 앙심을 품고 안티사이트 운동을 벌이다가 협박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연합뉴스에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되, 추후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후보도문>

1. 제 목 : “안티사이트 운영자 남모씨 무죄 확정”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4년 2월 3일자에 “안티사이트 폐쇄 조건으로 돈 요구”라는 제목으로 마포경찰서가 J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의 폐쇄를 미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남모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씨는 8년이 지난 금년 3월 29일자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과 남씨의 끈질긴 노력으로 J모 출판사는 지난 2007. 3. 30자로 폐업하였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고소조차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의 보도문을 연합뉴스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 사회면에 24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해 검색되도록 한다. 제목과 본문의 각 활자 크기는 중재

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각 같게 한다.

2. 위1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중재대상기사(안티사이트 폐쇄 조건으로 돈 요구)의 하단부에도 <별지>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며, 피신청인이 중재대상 기사를 데이터베이스(DB)에서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신청이유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통신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의 “안티사이트 폐쇄조건으로 돈 요구”(2004. 2. 3.) 제하 기사를 통해 신청인이 J모 출판사 안티 사이트를 만들어 비방글을 올리고, 사이트 폐쇄를 미끼로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지난 2012년 3월 29일 대법원이 신청인의 J모 출판사 협박 등 혐의 일체에 대해 무혐의 확정판결을 내림으로써 무죄가 밝혀진바, 신청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후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2. 판단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J모 출판사 안티 사이트를 만들어 비방글을 올리고, 사이트 폐쇄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 하는 등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제출자료(대법원 2011도1716, 2012.3. 29.선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청인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확정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은 추후보도 등을 통해 중재대상 기사를 접했던 독자들에게 신청인의 무혐의 판결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 대법원 판결문, 양 당사자의 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중재결정한다.

2012. 05. 22.

<별지>

가. 제 목 : 안티사이트 운영 남모씨 8년만에 무죄 밝혀져

나. 본 문 : 지난 2004년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만들고 사이트 폐쇄를 미끼로 업체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던 남모 씨가 8년여 만인 지난 3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씨는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무죄를 입증 받아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추후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안티사이트 운영 남모씨 8년만에 무죄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내 용 : <중재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12

통합진보당원인 신청인이, 5살 때부터 당원이었던 딸을 대신해 10년 동안 대리투표를 했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756·757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2. 05.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중에 5세에 당원(민주노동당)으로 가입해 현재 15세인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0년 동안 부모가 대리투표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통합진보당의 투표권은 13세 이상에게만 주어지므로 대리투표 가능성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기사 제공 언론사인 조선일보(2012서울조정752·753)와 조선닷컴(2012서울조정754·755)을 대상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중재부는 당사자 간에 의견차이가 커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였다. 이외에도 동일한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트(2012서울조정758·759)와 다음(2012서울조정760·761)을 대상으로 각각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했고, 심리결과 네이트와 다음이 해당 보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각각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네이버 : 『**다섯살짜리도 진보당 진성당원**』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2일자)

내 용 : 통합진보당 당원 가운데 5세에 당원(민주노동당)으로 가입해 현재 15세인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진보당 경남도당이 주최한 당원토론회에 참석한 창원시의 한 당원은 “내 딸이 다섯 살 때부터 10년째 진성(眞性)당원인데 당원 자격을 선거법상 투표 나이인 만 19세 이상에게만 주도록 당규

를 개정하면 내 딸은 어떻게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나이에 관계없이 한 달 수입 150만 원 이하의 경우 5,000원, 그 이상은 1만 원의 당비를 내면 투표권을 갖는 진성당원이 된다. 진보당은 이번에 만 19세 이상으로 당원 자격을 제한하려는 논의를 벌이다 실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창원시당 관계자는 “그 정도로 당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진 분”이라며 “어린 나이지만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서 당에 가입시키고 당원으로 활동을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다섯 살은 너무 어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민주노동당) 초창기에 그렇게 했다”며 “청소년 당원에게도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다. 아빠가 정보를 주고 아이가 판단해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비는 (부모가) 대납하는 꼴이 될 수도 있지만 용돈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당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족 당원들도 많다”며 “조○○ 진상조사위원장이 지금까지 당이 해왔던 특수성을 모르고 (중복 IP 투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당원은 본지 통화에서 “민노당 당규에는 13세 이상만 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딸은 그동안 청소년 당원으로 활동은 해왔지만 부모가 대리 투표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조○○ 진상조사위원장 측 관계자는 1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위원장이 다 공개한 게 아니다”며 “부정경선 자료는 더 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철호 부산 금정구의원 역시 “12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당권파가) 회의를 방해하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집착하면 그대들(당권파)은 모두 죽을 것이고 그대들의 과거까지도 부정당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홈페이지 뉴스면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나타나도록 하고 48시간 동안 게재된 이후에는 기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 대상 기사의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함께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다섯 살짜리도 진보당 진성당원”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네이버는 지난 2012년 5월 12일자 검색창에 “통합진보당 당원 가운데 5세에 당원(민주노동당)으로 가입해 현재 15세인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동안 부모가 대리투표를 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게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민주노동당 당규 상 만 13세 이상만 투표권이 주어짐으로 부모가 원천적으로 투표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10년 동안 부모가 대리투표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기사제공언론사로부터 조정대상기사의 삭제 요청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해당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 조치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2. 05. 2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조정대상보도 삭제



사례 13

KBS노사가 파업철회 합의를 하면서, ‘대통령 라디오 연설 폐지’를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890·891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2. 06. 1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KBS 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련해 KBS 노사가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와 대선 공정방송 설치, 탐사보도팀 부활, 시사프로그램 강화, 징계 최소화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방송사는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 등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노사합의서의 내용은 파업중단, 대선 공정방송 실천방안 마련 등으로서 보도와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경향신문 : 『**MB 라디오 주례 연설 사라진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8일자 1면)

내 용 : KBS 파업 철회를 위한 노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KBS 노사는 공정보도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을 폐지하고 시사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KBS 새노조는 7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과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추인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8일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파업 94일 만에 KBS 노사가 합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현재 파업 중인 MBC, YTN, 연합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BS 노사는 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와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탐사보도팀 부활, 시사프로그램 강화, 징계 최소화 등에 합의했다.

사측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해고된 최○○ 기자에 대한 재심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새노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불공정 방송을 제어할 필요가 있어 파업을 접고 보도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강제 폐지된 탐사보도팀을 부활시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복원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장기파업을 해놓고 성과 없이 파업을 끝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11월 임기가 끝나는 김○○ 사장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게 돼 편파 · 왜곡 보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송실대 김○○ 교수는 “KBS 파업이 종결되면서 MBC 파업은 더 어려워지게 됐다”며 “공정보도 투쟁을 통해 더 이상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19대 국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경향신문 1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MB 라디오 주례연설 사라진다”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보 6월 8일자 <MB 라디오 주례연설 사라진다> 제목의 글에서 KBS 노사가 파업철회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 탐사보도팀 부활, 시사프로그램 강화, 징계최소화 등에 합의했다’는 기사제목과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파업중단, 대선 공정방송 실천방안 마련, 소통하는 조직문화, 라디오 매체 활성화’가 명시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KBS 파업철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내용 : 본지는 지난 6월 8일자 1면 <MB 라디오 주례연설 사라진다> 기사에서 KBS 노사가 파업철회와 관련해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KBS 사측이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노사합의서의 내용은 ‘대선 공정방송 실천방안 마련, 소통하는 조직문화, 라디오 매체 활성화’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경향신문>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KBS 노사 파업철회 합의’)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보도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7. 0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KBS 파업철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4

대부분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가를 부풀려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모 네트워크 치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협회 직원인 신청인 2.와의 전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937·938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1. (사)대한치과의사협회, 2.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2. 06. 1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치과의 임플란트 가격이 병원마다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임플란트 수가에 비해 원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2.의 음성을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1.은 임플란트 가격은 의료법상 비급여항목으로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플란트 수가는 재료비 외에 의료진의 경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 2.는 동의 없이 본인의 음성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2천1백66만 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세상보기 시사각각」 프로그램 '천차만별 임플란트 가격의 진실은?'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7일자 21:40)

내 용 : ▷ 내레이션 : 인공치아 이식술인 '임플란트'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종잡을 수 없는 가격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 인터뷰 : “심구 씌우고 해서... 200만 원 정도”

“200 얼마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80만 원”

“120만 원 국산 것으로 해서”

▷ 내레이션 : 천차만별 임플란트 가격, 여러분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협회가 잘못됐다며 ○○치과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 내레이션 : 최근 치과계는 저가 임플란트를 내세운 네트워크 치과와 이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양측이 고소, 고발을 불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 갈리는 공방의 중심에는 저가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 홍○○ (○○치과 홍보팀) : 처음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은 가격 덩핑때문이었습니다. 저희를 가격 덩핑 치과라고 하고 네트워크 치과들을 비난했어요. 네트워크 치과에서 진료 원가를 공개, 저가 임플란트를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 :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원가, 원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공산품도 아니고..(의료가 그렇잖아요)

▷ 내레이션 : 임플란트 가격, 치과를 찾아가 직접 비교해 보았습니다.

▷ 인터뷰 : (치과 4곳의 화면이 각각 나오면서) ‘3개에 310만 원’

‘임플란트는요 치아 하나에 120만 원~150만 원’

‘5월 행사가 80만 원’

‘150만 원~180만 원’

▷ 내레이션 : 달라도 너무나 다른 임플란트 가격. 정확한 임플란트 가격 확인을 위해 임플란트 자재를 취급하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 임플란트 자재 납품업체 대표 : 이것들은 국내 400여 곳의 치과에 납품을 하는 제품들이예요.

▷ 내레이션 : 임플란트에서 사용되는 주요 자재들.. 그 원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 임플란트 자재 납품업체 대표 : 픽스처, 어버트먼트, 커버 스크류, 필링 어버트먼트, 임프레이션 코핑 등 (임플란트 수술에) 5~6가지의 자재가 들어가죠, 다 합치면 10만 원 정도 합니다.

▷ 내레이션 : 국내 5개 회사의 자재 원가를 확인해 보니 평균 12만 원! 치과마다 동네마다 천차만별인 임플란트 비용,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 치과업계 종사자 :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덜 벌고 손님에게 싸게 해 드리고 싶다고 하면 더 싸게 해 드리는 거죠. (선생님을) 잘 아시면 (가격을) 더 빼드리는 것도 있어요.

▷ 방송 관계자 : 치과의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건가요?

▷ 치과업계 종사자 : 그렇죠.

▷ 내레이션 : 그리고 수입 임플란트는 국산보다 비싸다는 게 일반론인데요.

▷ 치과의사(익명) : 저희가 쓰는 게 독일제거든요. (화면을 보이면서) 이것인데요.

▷ 방송 관계자 : 하나에 (얼마예요)?

▷ 치과의사(익명) : 원래 220만 원 받아요. 근데 (지금은) 180만 원 정도.. (국산 자재보다) 외국제품은 아주 비싸죠.

▷ 내레이션 : 과연 자재 원가도 그럴까요.

▷ 방송 관계자 : 하나에 (얼마예요)? (국산과 수입산) 자재 원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임플란트 자재 납품업체 대표 : 그렇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 방송 관계자 : 그런데 왜 훨씬 비싼가요?

▷ 임플란트 자재 납품업체 대표 : 마진(중간이윤)을 더 붙이는 거죠. 수입산에다가... 명품가방과 똑 같은 거예요. 명품이라는 이름 하나로 굉장히 비싸잖아요.

▷ 내레이션 : 국산과 수입 임플란트 자재 원가 차이는 15만 원대. 하지만 상한가 기준없이 가격을 치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서 임플란트 가격은 제각각인데요.

▷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 : 전문지식을 환자한테 주는데 있어서 어떤 의사는 (임플란트 수술을) 70, 80만 원에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의사는 “내 경력 때문에 200, 300만 원은 받아야 돼” 하며 200,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갖고 원가 원가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 내레이션 :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들쭉날쭉한 임플란트 비용, 충분한 비교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치과 고○○ 원장 : 진료의 수가가 낮아지면, 진료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수익이 좀 줄어들 뿐이죠. 그래서 진료 수가가 낮아지면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런 말은 의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내레이션 : 믿을 수 있는 가격과 의료의 질이 동반될 때 비로소 소비자 신뢰도 함께할 것입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MBC <세상보기 시사각각> 프로그램에서 성우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16p 정도)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제목 아래에는 양 단체가 합의한 세부 사항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종방 시사보도 MBC <세상보기 시사각각> ‘천차만별 치과임플란트 가격’ 반론

2. 내 용 : ▷ 앵커 : 지난달 종방된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MBC 세상보기 시사각각>에서 5월 17일 방송된 “천차만별 치과임플란트 가격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방송내용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임플란트 수가가 다양해 적정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비보험인 임플란트 수가는 적정기준을 정할 경우 담합행위로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득이 치과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

나 현재 치과마다 비보험 수가를 진료실 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어, 환자들은 원하는 수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원가를 거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의료수가에서 원가는 일부 요인일 뿐, 대체로 의료인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기술, 경험, 그리고 시술의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정하기에 원가만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방송에서 지적한대로 저수가를 내세운 네트워크 치과와 수가문제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전혀 없으며 단지, 의료질서 문란 행태에 대해 지적해 왔음을 밝힙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2.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취재 건과 관련해 부연 설명하던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몰래 녹취하여 불리하게 편집, 방송하였기에 신청인 2.에게 손해배상 2,166만 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세상보기 시사각각> ‘치과 임플란트 가격’ 관련 반론보도

나. 내 용 : MBC는 지난 5월 17일 <세상보기 시사각각> 프로그램 “천차만별 치과 임플란트 가격의 진실은?” 보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급여인 임플란트 수가는 적정기준을 정할 경우 담합행위로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득이 치과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현재 치과마다 비급여수가를 공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의료수가는 재료 원가 외에 의학적 지식과임상기술, 경험, 그리고 시술의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정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 7. 11.(수) 18:50에 방송되는 MBC-TV <공감 특별한 세상> 프로그램 말미에 제1항의 보도문을 아나운서 또는 성우의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

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1항 및 2항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7. 0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MBC-TV : 「공감 특별한 세상」 프로그램 「[세상보기 시시각각] 치과 임플란트 가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1일자 18:5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5

흡연억제용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보다 해롭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회사명이 찍혀있는 전자담배를 화면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967·968·969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2. 06. 2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미국내 일부 주들이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했으며, 전자담배 용액 1ml의 니코틴 함량 최고수치는 (일반 담배) 723개비와 같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현재 미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주는 없고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에 비해 훨씬 유해한 것처럼 보이도록 방송하면서 신청인 회사 제품의 로고와 상표 등을 수차례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2TV : 「스펀지」 프로그램 '엄마가 모르는 아이의 비밀 - 전자담배'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일자 20:50)

내 용 : ▷ 남 : 크게 배터리, 분무기, 카트리지가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 이 억제제가 단번에 전자담배로 바뀔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 부모님들! 알고 계십니까?

▷ 여 : 따라서 흡연욕구 억제제에 니코틴 액상을 바꿔 끼우기만 하면 바로 무늬만 흡연욕구 억제제인 전자담배가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 바로 전자담배의 액상을 직접 제조하기까지 한다는 것!

▷ 남 :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전자담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 부모님들이 직접 전자담배

를 구입해준다는 것이었는데요. 과연 옳은 것일까요?

▷ 여 : 전자담배 사용으로 니코틴을 과다 흡수하게 되면 두통과 구토는 물론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니코틴에 중독되게 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분석결과, 일반 농도의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은 ... 일부 전자담배에서는 용액 1ml당 최고 36.15ml의 니코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의 니코틴 치사량이 10mg임을 감안해 볼 때,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 남 : 이렇게 위험한 전자담배! 정말 자녀의 금연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KBS-2TV <스펀지>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KBS-2TV <스펀지>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미국의 일부 주에서 전자담배를 판매금지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전자담배 판매금지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1일 <스펀지> 프로그램에 “엄마가 모르는 아이의 비밀 : 전자담배”라는 제목으로 “미국 일부 주에서 전자담배를 판매금지한 주가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해당 당국에 확인한 결과, 미국에서 아직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전자담배의 액상이 기화된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의 양은 연초담배의 연기에 포함된 것보다

현저히 적어”(전자담배 액상에 포함된 ‘니코틴’ 관련 반론보도문)

2.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1일 <스펀지> 프로그램에서 “엄마가 모르는 아이의 비밀 : 전자담배”라는 제목으로 “전자담배 용액 1ml의 니코틴 함량 최고수치는 723개비와 같다”고 하여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에 비해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는 연초담배에 표기된 니코틴의 함량은 ISO10315 규격에 따라 해당 연초담배를 연소시켜 그 기체에 포함된 니코틴의 양이므로, 기화되지 않은 전자담배의 용액에 포함된 니코틴과 단순 비교할 수 없고, 오히려 전자담배의 용액을 ISO10315 규격에 따라 기화시키면 극히 일부의 니코틴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연초담배에 비하여 매우 적은 양의 니코틴만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전자담배’ 관련 반론보도

나. 내용 : 지난 6월 1일 방송한 「엄마가 모르는 아이의 비밀 : 전자담배」방송에 대해 ○○○○○○ 등 전자담배 회사 측은 “현재 미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주는 없고,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기화방식과 니코틴 표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담배 액상 자체에 포함된 니코틴 함량과 일반 담배의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 함량을 단순 비교해 전자담배가 더 유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8월 17일(금) 이전에 방송하는 KBS-2TV <스펀지> 프로그램 클로징 멘트 직전에 메인 진행자인 김○○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제1항 보도문을 방송하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

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제1항 보도문의 방송영상을 KBS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7. 0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KBS-2TV : 「스펀지」 프로그램 '전자담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3일자 20:5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6

신청인이 인턴사원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증권사가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제보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986·987, 2012서울조정988·989(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2. 06. 2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금융당국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증권사가 대학생 인턴사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영업실적을 올리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하면서 사측이 영업실적 전체 1등인 A 인턴사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해당 인턴사원이 ○○증권사가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제보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린 사람은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함께 피신청인 각각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조선일보와 조선닷컴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조선일보 :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 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A10면)

내 용 : ○○증권이 대학생 인턴사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영업 실적을 올릴 것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높은 실적을 올린 인턴만 채용하겠다고 영업을 강요해 2,600억 원대의 주식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전체 인턴의 절반 미만의 인원만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은행·보험사·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인턴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은 지난해 1·2차에 걸쳐 112명의 인턴을 선발했다. 이

들은 3,529개 증권계좌에 2,689억 원의 주식 투자대금을 끌어왔다. 하지만 이 회사는 선발한 인턴의 42%인 47명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들은 취업을 위해 무리하게 가족·친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 인턴 한 사람당 적게는 10억 원 안팎을, 많게는 60억~70억 원 정도를 끌어왔고, 회사 측은 인턴 개개인의 실적을 공개해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턴들의 영업으로 개설한 계좌에서는 50억 원이 넘는 투자 손실이 생겼다.

금감원은 또 인턴사원이 일임매매(투자자가 어떤 종목에 얼마를 투자할지 증권사에 맡기는 것)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자격증 없이 일임매매를 하면서 고객 정보를 다뤘다면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실은 ○○증권이 영업 실적이 전체 1등이었던 A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끌어온 고객이 손해를 보자 자비로 손실을 보전해줬는데, 회사 측은 이런 사실을 알고 A씨를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이 회사가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금감원은 조사가 끝나면 ○○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 임원 문책 등의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②

조선닷컴 :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1.은 조선일보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정규직 채용은 절반도 안해”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2.는 조선닷컴 뉴스(<http://news.chosun.com>)의 홈페이지 뉴스 메뉴 사회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2)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1. 제 목 : ‘A씨 불만을 품고 외부에 제보를 했다’는 문구는 기자의 개인적 소견일 뿐, 금감원 보도자료

에는 없던 내용으로 밝혀져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2.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8일자 사회면 A10면에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영업실적 1위를 했던 A가 채용에 탈락된 것에 불만을 품고 외부에 사실을 알렸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사를 작성한 손○○ 기자 본인의 추측을 마치 공식적인 금감원 보도자료인 것처럼 내보낸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2)>

1. 제목 : ‘A씨 불만을 품고 외부에 제보를 했다’는 문구는 기자의 개인적 소견일 뿐, 금감원 보도자료에는 없던 내용으로 밝혀져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2. 내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8일자 사회면 A10면에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영업실적 1위를 했던 A가 채용에 탈락된 것에 불만을 품고 외부에 사실을 알렸다’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사를 작성한 손○○ 기자 본인의 추측을 마치 공식적인 금감원 보도자료인 것처럼 내보낸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1.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선일보> 2면에 <별지1>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정규직 채용은 절반도 안해) 활자 및 크기로 2단

에 걸쳐 게재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2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선닷컴>(www.chosun.com)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2>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 하단에도 <별지2>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3. 피신청인들은 위 1.항 및 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2012년 7월 31일까지 1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피신청인들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감원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는 3개 증권사를 부문 검사한 결과 ○○증권이 인턴사원에게 영업 실적을 정직원 채용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영업실적 1위를 차지해 채용이 예정됐던 인턴사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일임매매와 손실보전을 해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채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고, 이는 여러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나. 한편 피신청인1은 2012. 6. 28.자 조선일보 10면에, 피신청인2는 조선닷컴 사회면에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 ○증권사가 영업실적 1등이었던 인턴사원 A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교보증권사가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각각 보도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증권이 영업실적 전체 1등이었던 신청인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신청인이 ○○증권이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사실이 없다. 피신청인들의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신청인1.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피신청인2.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들 주장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영업실적이 전체 1등이었던 A씨’라고만 표현하여 보도에 나온 A씨가 신청인이라는 점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기초로 추가 취재를 거쳐 보도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개별적 연관성의 유무에 대하여 조정대상보도에서 당사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보도 전후의 상황등에 비추어 조정대상보도와 신청인 간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정정보도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정대상보도의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언론매체에 다뤄진 바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증권’으로 한정하였으며 당사자를 ‘○○증권 영업실적 전체 1위’라고 특정하고 있는 A씨가 신청인임을 고려하면 해당 증권사의 인턴 직원들을 비롯하여 주변의 사람들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언급된 A씨가 신청인이라는 점을 추지할 수 있는 바,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는 이 사건의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감독원은 6. 27. 경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는 3개 증권사를 조사한 결과 ○○증권이 인턴사원에게 실적과 연계된 정직원 채용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영업실적 1위를 차지해 채용 예정됐던 인턴사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일임매매와 손실보전을 해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권회사 영업인턴사원 운영행태에 대한 검사결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위 보도자료의 내용에 더해 ‘○○증권 영업실적 전체 1등이었던 A씨가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이 회사가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신청인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대해 살펴본다.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사의 내용, 형식, 피신청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07. 10.

<별지1>

가. 제 목 : ‘○○증권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 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조선일보는 6월 28일자 10면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라는 제목으로 ○○증권이 영업실적 1등이었던 인턴사원 A씨를 채용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증권이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씨는 채용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에 제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별지2>

가. 제 목 : ‘○○증권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 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조선일보는 6월 28일자 10면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라는 제목으로 ○○증권이 영업실적 1등이었던 인턴사원 A씨를 채용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증권이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씨는 채용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에 제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①

조선일보 : 『‘○○증권 인터넷사원 정규직 채용’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6일자 A2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②

조선닷컴 : 『‘○○증권 인터넷사원 정규직 채용’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사례 17

소비자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펜션 사례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펜션 전경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021 · 1022, 2012서울조정1023 · 1024(병합) 각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채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2. 07. 05.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소비자에게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펜션과 예약, 취소, 환불 규정을 어기고 위약금을 물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5개 펜션업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뉴스내용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운영중인 펜션의 전경을 자료화면으로 잘못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iMBC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화면 중 신청인이 운영하는 펜션이 담긴 영상 부분을 다른 자료화면으로 대체 또는 삭제하는 한편 MBC-TV와 iMBC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iMBC로부터 동일한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정정청구(2012서울조정1025)를 제기하였고, 조정신청 후에 네이버가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은 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①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소비자등친 펜션'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8일자 21:00)

내 용 : ▷ 앵커 :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인 펜션과 렌터카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 기자 : 권 모 씨는 지난 6일 가족여행을 위해 경기도의 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펜션 예약을 취소해야 했지만 펜션측은 위약금으로 숙박비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권 모 씨) : “자기들 규정에는 7월 전에 취소해도 50%고 4일 전에 취소해도 50%고...”

▷ 기자 :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성수기 땀 열흘 전에 해약하면 숙박요금을 100% 환불해 줘야하고,

7일 전에는 90%, 3일 전에는 50%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정을 어기고 숙박요금의 40%까지 위약금을 물린 5개 펜션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영업중인 렌터카 업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5개 업체들은 과도한 요금을 정상요금인 것 처럼 신고한 뒤 이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여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광○○ (공정위 소비자 정책국장) : “신고요금을 정상가, 정상요금, 표준대여요금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증으로 허위표시...”

▷ 기자 :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5백만 원 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렌터카를 반납할 때 차를 빌릴 때보다 더 넣은 기름값을 정산해주지 않은 업체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김○○입니다.

②

iMBC: 『**소비자 등친 펜션 · 렌터카.. '꼼수 할인' 적발**』 제하의 기사(2012년 6월 28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 1.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피신청인 2.는 MBC 홈페이지(imbc.com)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소비자 등친 펜션’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28일 저녁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소비자 등친 펜션” 이란 제목하에 소비자에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펜션과 예약 · 취소 · 환불 규정을 어기고 위약금을 물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5개 펜션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과 전혀 무관하고 분쟁이 없는 경기도 청평소재 ○○○○○○ 펜션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잘못 방영하여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 2.는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시된 조정 대상보도 화면 중 신청인이 운영하는 펜션이 나온 부분을 다른 자료화면으로 대체 또는 삭제한다.

2. 피신청인들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 2,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07. 2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조정대상보도 삭제,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사례 18

jtbc 방송이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들을 취재하면서, 기자의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도둑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096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제이티비씨

피신청인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2. 07. 1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jtbc 소속 기자가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카메라를 들이대어 취재를 하였으며, 10여초짜리 답변을 ‘직격인터뷰’라고 포장해 메인뉴스에 내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방송사는 자사의 소속 기자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사전에 신분을 밝힌 후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후보자별로 40여 초에서 4분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한 뒤 적절히 편집된 분량을 방송에 내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오마이뉴스 : 『‘도둑 인터뷰’ 해야 하는 중앙종편의 골육』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1일자)

내 용 : 중앙종편의 주접스러운 ‘도둑인터뷰’ 행태가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중앙종편의 ‘도둑 인터뷰’, 자신들의 초라한 실상만 보여줬다> 제하의 논평에서 중앙종편이 ‘조중동방송에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야당 정치인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 인터뷰를 받아낸 뒤, 이를 ‘직격인터뷰’로 포장해 메인뉴스에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중앙종편은 메인뉴스에서 ‘직격인터뷰’라는 제목으로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9명의 후보들을 다룬 연속 보도를 내놨다. 12일에는 박지원 · 이학영 · 박용진 후보, 13일에는 김부겸 · 이강래 · 이인영 후보, 14일에는 한명숙 · 문성근 · 박영선 후보를 다뤘다.

민언련은 이 보도가 ‘직격인터뷰’라는 제목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격인터뷰’라는 제목과

달리 14일 방송된 한명숙·문성근·박영선 후보 보도에서는 인터뷰 없이 이들 세 후보의 연설 모습을 보여주고 약력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12일과 13일에 방송된 나머지 6명 후보자들 보도에서도 실제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긴 했으나, ‘직격인터뷰’라는 말을 붙이기엔 인터뷰 시간과 장소 등이 매우 어색했다며 “대부분 후보들이 짧게는 13초에서 길어야 38초 정도의 인터뷰를 하는데 그쳤고 내용도 일반적인 ‘정견발표’ 수준이었고 인터뷰 장소도 어수선했는데 후보자가 유세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후보자가 이동하는 중에 마이크를 들이대 걸어가면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무엇보다 중앙종편이 인터뷰를 받아낸 6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조중동 종편의 인터뷰와 출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지난 1월 7일 함○○(안중근기념사업회이사장), 박○○(전 대한변협회장) 등 사회원로 20명이 보낸 조중동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조중동 종편에 대해 인터뷰와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또 방송에서 보여준 중앙종편의 취재 행태가 ‘정상적’이라고 믿을 수 없었고, 지난해 11월 중앙일보의 김○○ 씨 인터뷰 기사에서도 집에서 나오는 김 씨를 붙잡고 억지로 몇 마디를 받아낸 뒤 김 씨의 집 평수, 차종, 핸드폰 종류 등등 ‘신상털기’ 수준의 내용을 담아 비난을 받은 일도 있어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언련의 사실 확인 결과 중앙종편에 인터뷰를 ‘당한’ 6명의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중앙종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사회원로들과의 약속을 결과적으로 어긴 것처럼 보인 데 대해 죄송하다’, ‘조중동 종편 인터뷰를 거부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또 중앙종편이 어수선했던 상황에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소속조차 밝히지 않았고, 한 캠프에서는 이런 무례한 취재방식 때문에 ‘도대체 어느 언론사인지 불쾌했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한 적도 없이 ‘직격인터뷰’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데 대해 당황하는 후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위법과 특혜로 탄생한 조중동종편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조중동종편에 출연하는 것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해한 뒤, “이런 상황에서 중앙종편은 ‘직격인터뷰’라는 기획을 하고도 그에 어울리는 내용을 채우지 못했던 모양”, “‘조중동방송’의 낙인이 찍힌 채 인터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는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러나 그렇다고 인터뷰어의 소속조차 밝히지 못한 채 ‘도둑인터뷰’를 받아내고, 10여 초짜리 답변을 ‘직격인터뷰’로 포장해서 내보내는 행태는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당당하게 인터뷰를 받아낼 자신이 없다면, 능력에 벗어나는 보도기획은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옳다”고 힐난했다.

더 나아가 민언련은 “야당 정치인들을 비롯해 조중동종편에 인터뷰를 하거나 출연을 하고 싶지 않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앞으로 ‘자나 깨나 조중동 조심’에 나서야 할 것 같다”며 “방심한 틈을 타 언제 어느 때 조중동종편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직격인터뷰’, ‘전격인터뷰’ 따위의 과대포장을 해서 방

송에 내보낼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정신청취지

오마이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인 “‘도둑인터뷰’ 해야하는 중앙종편의 굴욕”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중앙 종편’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본 매체는 지난 1월 21자에 “‘도둑인터뷰’ 해야 하는 중앙종편의 굴욕”이라는 제목으로 jbc가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자들의 인터뷰를 보도할 때 마치 jbc 소속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카메라를 들이대어 인터뷰를 하고, 경선 후보자들은 jbc 인터뷰인지 몰랐으며, 10여 초짜리 답변을 직격인터뷰라고 포장하였다고 보도하는 등 jbc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jbc 소속 기자들은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 jbc 소속 기자임을 미리 밝히고 인터뷰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해 후보자들이 이미 jbc 소속 기자와 인터뷰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② 10여 초 정도의 답변 내용을 과대 포장하여 방송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별로 40여 초에서 4분에 걸친 인터뷰를 jbc가 방송 분량에 맞게 적절히 편집하여 방송하였으며, ③ 인터뷰 시간 및 장소가 어수선하고, 그 내용도 정견발표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jbc측에서 후보자들의 바쁜 일정과 현장의 생생함을 고려하여 지역별 경선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한 판단에 따라 경선장소에서 인터뷰가 이뤄진 것이며, 각 인터뷰가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여 모든 인터뷰 내용이 정견발표 수준의 것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점 등 기사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오마이뉴스가 허위보도한 것처럼 ‘도둑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엄연히 인터뷰 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소속과 기자 이름을 밝히고 jbc 로고가 선명한 카메라를 이용해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정정당한 보도였기에 바로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jbc와 소속 임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1. 보도문

가. 제목: 「‘도둑 인터뷰’ 해야 하는 중앙종편의 굴욕」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월 21일자 미디어면 「‘도둑 인터뷰’ 해야 하는 중앙종편의 굴욕」 제하의 기사에서 “jtbc가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자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소속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카메라를 들이대어 인터뷰를 받아낸 뒤, 10여 초짜리 답변을 직격 인터뷰라고 포장해 메인뉴스에 내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인터뷰를 했던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해당 언론사가 jtbc임을 알고 있었는지는 논외로 하고 다만, jtbc 기자들은 본인의 소속을 밝히고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따라서 ‘주접스러운 도둑인터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불어 jtbc 측은 “후보자별로 40여 초에서 4분에 걸친 인터뷰를 jtbc가 방송 분량에 맞게 적절히 편집하여 방송하였으며, 후보자들의 바쁜 일정과 현장의 생생함을 고려하여 지역별 경선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한 판단에 따라 경선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은 원 조정대상기사 설명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3.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8. 1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오마이뉴스: 『< '도둑 인터뷰' 해야 하는 중앙중편의 굴욕>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7일자)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9

신청인들이 보조금을 횡령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됐으나 보조금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며, 복직판정도 받았다.

사 건 : 2012강원조정5·6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최 ○ ○, 2. 임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12. 07. 19.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대한노인회 춘천시회가 보조금 횡령의혹과 관련해 사무국장 임 모 씨와 총무부장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본인들의 징계처분은 보조금 횡령과는 전혀 무관하고 보조금은 올해 초 전액 반납된 것으로 밝혀진 동시에 면직처분에 대해서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에서의 혐의 일부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후속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춘천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보조금 횡령 의혹 연루 노인회 직원 면직'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4일자 21:00)

내 용 : 보조금 횡령의혹과 관련해 대한노인회 춘천시회가 직원 2명을 징계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춘천시회는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고 회계전반을 관리하며 각종 보고서를 지연 혹은 제출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사무국장 68살 임 모 씨와 총무부장 45살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면직처분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춘천시회가 보조금 4,3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으나 해당 직원들은 면직처분에 반발해 법정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춘천KBS-1TV <뉴스9-강원> 프로그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4월 24일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사무국장 68살 임 모 씨와 총무부장 45살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면직처분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보조금 횡령과는 전혀 무관하며 보조금은 2012년 2월에 전액 반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보고서 지연 및 미제출된 사유로 징계처분 받았으나, 이는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어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여 일어난 사태로 징계처분에 대해 노동부에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7월 3일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주문에 해당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에 정상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기에 이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각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보조금 횡령 의혹 노인회 직원’ 일부 무혐의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24일 『보조금 횡령 의혹 연루 노인회 직원 ‘면직’』이라는 제목으로,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가 사무국장 임 모 씨와 총무부장 최 모 씨 등 2명에 대해 면직처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 모 씨와 최 모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면직처분에 대해서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2. 8. 16.자 춘천KBS1-TV <뉴스7> 및 <뉴스9(강원)>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도록 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8. 1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춘천KBS-1TV : (1) 「KBS 뉴스7」 프로그램 '보조금 횡령 의혹 노인회 직원 일부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16일자 19:0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춘천KBS-1TV : (2) 「KBS 뉴스9」 프로그램 '보조금 횡령 의혹 노인회 직원 일부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16일자 21:0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0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151, 2012서울조정1156(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용노동부

피신청인 : (주)씨비에스아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2. 08. 01.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며 친정부 성향의 국민노총에 가입을 유도했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관시절 국회 상임위에서 ‘타임오프에서는 단체 행동권도 제한될 수 있고, 사용자가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할 필요는 없다’ 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기관은 노동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탈퇴나 가입권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일한 기사를 전송받아 이를 게재한 네이버(2012서울조정1152)와 다음(2012서울조정1153)을 대상으로 각각 정정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이들 사건에 대한 2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양 당사자가 관련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중구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네이버와 다음이 각각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했다.

조정대상보도

노컷뉴스 : (1) 『“돈 줄데니 민주노총 탈퇴를” ...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내 용 :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노동단체지원 명목으로 최소 30억 원, 노사파트너십지원 명목으로 최소 20억 원씩을 노동계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 상당수가 지원금 수령 이후 친정부적 성향의 국민노총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

지 1억 8천만 원, 인천광역시관광공사노조 등 9곳이 2009년부터 2년간 3,8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2011년에는 도시철도산업노동조합과 자유교원노동조합, 전국환경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각각 3천만 원, 한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맹이 2천만 원을 받았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들 노동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후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같이 이른바 MB노총이라는 국민노총에 가입했다.

국민노총의 핵심 노조인 서울메트로 노조와 서울SH공사 노조의 경우는 올해 이 돈 4천만 원씩을 받았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2009년부터 내리 3년간 노사파트너십지원사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돼 모두 8천만 원을 받았고, 서울SH공사도 2009년에 3천만 원을 받았다. 노동부가 친정부 노총을 띄우기 위해 돈을 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노조에게 전달된 지원금이 국민노총 준비 모임에도 사용됐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국민노총 소속 노조의 A위원장은 “국민노총 출범을 앞두고 가졌던 모임의 비용을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지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동부의 예산이 일부 기업 및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미끼로 이용됐을 개연성도 엿보인다. 일례로 KT노조와 지하철노조가 반정부 성향의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2009~2010년 사이 일부 노동부 인사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 권유를 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의 한 산별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인사가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 민주노총 탈퇴 제안을 은밀하게 해왔다”며 “탈퇴는 안했지만 노동단체지원 사업에 응모하면 선정해주겠다고 해서 응모를 했고 지원금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에서도 잘 나와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1억 3,860만 원과 1억 1,200만 원, 2,000만 원씩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산별노조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기로 한 상급단체(민주노총)의 원칙에 반하게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그 동안 공금증을 낳았던 터다.

그렇다면 정부 예산이 마치 찜질통처럼 이용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 고용노동부가 이 돈의 사용 내역을 언론 등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심지어 국회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지원 현황을 제외하고는 세부 지출 항목과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될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내부에서조차 노동계 뒤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단체지원사업 업무를 아는 노동부 사람들이라면 이 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 (2) 『전두환 때보다 더해...노동부 장관 ‘멘붕’ 왜?』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내 용 : “역대 최악의 장관이다”

지난 5월 30일 한국노총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장관의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 분야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정의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역시 노사관계에 있어 이 장관 재임 1년을 ‘재앙과 후퇴의 시기’로 못 박았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두 노동단체가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수장에 대해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최근 노동부의 타임오프(노조전임시간 상한제도) 지도점검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다.

노동부는 2년전 시작된 타임오프 정착 여부를 살피겠다는 단위 사업장에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노조에 제공했던 사무실 제공과 집기, 비품 등 각종 편의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중단시키고 있다. 또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한 각종회의나 행사참여, 교육참여 등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무실 관리비가 연체돼 전기와 수도, 전화가 끊기는 노조 사무실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박○○ 노무사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제도 시행이후 정해진 전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도 공개해야하는 등 노조들끼리 싸워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노조간 합의가 안되면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전임자 없이 노조가 운영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이어 “지금의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노조는 5년 내에 거의 정리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 큰 문제는 노동부가 점검 결과를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지시서’라는 이름의 행정공문으로 사업장을 속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정지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시정명령과 달리 근로감독관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아무 때나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여서 남용될 여지가 많다.

노동부가 올 한해 100인 이상 사업장 1천여 곳에 대해 타임오프에 대해 감독을 벌이겠다는 계획이어서 그 만큼의 시정지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이를 “전두환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극심한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노동부 차원의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견제는 이 장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장관은 2010년 차관 시절 국회 국정감사에서 “타임오프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도 제한될 수 있으며, 노동3권 행사를 사용자가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이 장관은 타임오프 문제와 관련해 공공연맹 이○○ 위원장을 고발하기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위원장이 2010년 5월 타임오프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노동자들의 출입을 허가해 기습시위를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당시 시위자들도 기소유예 처리를 받아 종결된 사건에 대해 2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했다”며 “당시 노사정책실장에서 3개월 만에 차관으로 고속 승진했던 이채필 장관이 노조 전임자 잡기에 얼마나 광분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이 노조 위원장을 고발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사건’이다. 이 장관의 의도적인 노조 배제는 다른 사례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취임한 이후 양대 노총을 방문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또 해외 행사장에서를 제외하고는 두 노총 대표자들을 면담한 적도 없다.

한국노총 이○○ 사무처장은 “예전 노동부 장관은 현안이 있으면 노동단체와 만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 장관과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돼 있는 상태이며 이는 노동계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노사관계는 파트너십으로 풀어야하고 이는 노동부가 거들어야 할 사안”이라며 “따라서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데 앞장서는 이 장관의 행태는 한마디로 직무 유기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 잘하는 장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장관에 대한 노동계의 평가는 한마디로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라는 것이다. 하반기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더 거칠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제안” 기사 관련 정정보도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2년 7월 12일자 노컷특종면에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 ... 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동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유도’ 관련 반론보도

나. 내용: 본 신문은 7월 12일자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 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며 친정부 성향의 국민노총에 가입을 유도했고, 7월 16일자 “전두환 때보다 더해... 노동부 장관 ‘멘붕’ 왜?” 기사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관시절 국회 상임위에서 ‘타임오프에서는 단체행동권도 제한될 수 있고, 사용자가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게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이용해 탈퇴를 권유하거나 국민노총 가입을 유도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업은 2006년 참여정부 때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예산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또한 고용부는 노동단체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국회에는 성실히 보고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이채필 장관은 “당시 답변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합법적인 파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타임오프)의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사용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노컷뉴스)는 제1항의 보도문을 2012년 8월 28까지 노컷뉴스 홈페이지(<http://www.nocutnews.co.kr>) 사회면 기사목록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각 조정대상기사(7월 12일 “돈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 7월 16일 “전두환 때보다 더해... 노동부 장관 ‘멘붕’ 왜?”)의 본문하단에도 제1항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들이 위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피신청인들이 위 제2항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2. 08. 2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유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1

농협영암군지부가 기탁한 장학기금이 ‘영암군이 예산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 그 차익으로 기탁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광주조정55 정정청구

신 청 인 : 영암군

피신청인 : 한국산업건설(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12. 08. 0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농협이 영암군의 예산을 예치하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낮게 이자율을 책정하고, 그 차익으로 영암군민장학기금을 기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자치단체는 군수가 금고약정 금융기관의 금리를 저금리로 약정해주고 그 차액을 군민장학금으로 기탁하게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오보로 인해 영암군의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삼군신문 : 『영암군민장학기금 사실 왜곡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1일자 1면)

내 용 : 영암군은 지난 24일 배포해 지역 신문에 게재토록 한 ‘(재)영암군민장학회(이하 군민장학회, 이사장 김일태 군수), 장학기금 100억 돌파’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와 관련, 사실 왜곡 논란과 군민장학회 김일태 군수의 치적세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는 군민장학회가 지난 2008년 장학회 설립부터 현재까지 출범 4년 만에 장학기금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으며, 개인기탁자와 기업기탁에 관한 언급과 이사장인 김일태 군수의 기탁내용만 언급하고 있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왜곡을 주장하는 군민 A씨는 “군민장학회가 밝힌 장학기금 103억 중 절반이상이 지난 박일재 군수 임기 때와 김철호 군수 임기를 거치며 현 김일태 군수까지 군비 1억~2억씩을 지원받아온 인재육성장학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인재육성장학기금이 더 많음에도 군민장학회와 이사장의 공적만 언급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군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인재육성장학기금을 군민장학기금으로 흡수 통합할 당시 인재육성장

학기금은 총 57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민장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인재육성장학기금과 군민장학기금이 따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단법인 형태로 통합 관리되고 있고, 인재육성장학기금을 포함한 장학기금 목표액이 100억 원이다”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지난해 의회에서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왜곡 보도라는 주장은 오해다”라며 “최초 보도자료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인재육성기금을 흡수해 통합한 것으로 언급했지만, 분량을 줄이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왜곡보도 주장과는 별도로 현대삼호중공업이 군민장학회에 기탁한 20억의 성격에 대한 잡음이 있었고, 농협영암군지부가 기탁한 6억 원은 ‘군이 예산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 그 차익으로 기탁한 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1992년에 영암군민인재육성기금 조례를 제정, 그동안 영암군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 오다 2008년에는 교육 1등군을 목표로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를 출범시켰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재)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영암군인재육성기금조례를 폐지해 인재육성기금을 장학기금으로 흡수 통합한 바 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삼군신문 메인페이지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영암군민장학기금 사실 왜곡 ‘논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영암군민장학기금 사실 왜곡 ‘논란’ 정정보도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31일자 메인페이지에 “영암군민장학기금 사실 왜곡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농협영암군지부가 기탁한 6억 원이 ‘군이 예산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 그 차익으로 기탁한 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이자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한 결과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자율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차익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는 말은 명백한 오보이므로 이에 따른 영암군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련의 기사내용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며 해당 기사가 잘못 보도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7월 31일 1면 “영암군민장학기금 사실 왜곡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농협영암군지부가 기탁한 6억 원이 ‘군이 예산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 그 차익으로 기탁한 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자율이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지 않았고, 그 차익으로 장학금을 기탁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위 정정보도문을 삼군신문 6면 우측 하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15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3.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한 날로부터 매일 금 50만 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012. 08.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삼군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4일자 6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2

신청인 회사의 택시 주차지가 초등학교로부터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188·1189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운수 주식회사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2. 08. 0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택시의 주차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 하면서, 신청인의 택시 주차지로부터 100m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택시 주차지와 인근 초등학교 간의 거리 및 올림픽대로의 우회 경로 거리 등이 잘못 보도 되었으며, 조정대상보도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었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택시 주차 승인 취소처 분을 받아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담당중재부는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조사를 실시했으며,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 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서울경제에 대해서도 정정·손배청구(2012서울조정1190·1191)를 제기하였고, 심리결과 인터넷 서울경제가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 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서울경제 : 『스쿨존, 안전 사각지대 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일자 16면)

내 용 : 서울 강동구 암사동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박모(41)씨는 얼마 전 학교 인근에 택시 회 사와 함께 택시 주차지가 들어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등하곳길 학부모들의 승용차만 군데군데 눈에 띄던 학교 정문 앞 좁은 길에 택시로 가득 차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스쿨존이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30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택시회사 ○○운수는 지난 2월 강동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4월 초 택시 주차지 공사를 완료했다. 79개의 주차면을 확보한 2,100㎡ 부지는 5월 초부터 ○○운수의 택시 주차지

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주차지로부터 1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바로 옆에는 중 장비와 대형화물차 주차장도 있다. 학부모들과 인근 아파트 부녀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최근 1,000여명의 학부모는 스쿨존 안전을 위해 택시 주차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서명서를 제출했고 부녀회와 함께 구청의 인가 조치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고지 위치를 볼 때 택시가 학교 정문을 거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길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방법뿐이다. ○○운수 측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고 학교 앞으로는 택시가 지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부모들의 생각이다. 유류비를 아껴야 하는 택시들이 강남에서 영업할 때 왕복 6~7km를 돌아야 하는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택시가 지나가는 학교 앞 도로는 정식 2차선 도로가 아닌 1차선 농로를 포장한 것에 불과해 택시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학부모 박씨는 “택시 회사 측에서는 택시 교대시간과 등하교 시간이 겹칠 경우 빙 둘러가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 앞을 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라며 “어떤 강제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택시회사 쪽의 자발적 노력 약속만 믿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 제도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5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 구역 내에서는 등하교시간에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등 제재도 가능하다.

학부모들과 택시 회사 간의 극렬한 대치에 강동구청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당초 택시회사가 아닌 개인이 주차장으로 허가를 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가 취소는 불가능하다”면서도 “CCTV를 통해 택시가 학교 쪽으로 지나가는 게 확인될 경우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3월에는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2009년 535건 ▲2010년 733건 ▲2011년 751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서울경제신문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암사동 ○○초교 100m 거리에 택시 주차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초교 100m 거리에 택시 주차지’ 관련 정정 보도문

2.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1일자 사회면에 ‘스쿨존, 안전 사각지대 되나’라는 제목으로 ○○운수(주) 택시 주차지로부터 1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결과 230m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 “더욱이 바로 옆에는 중장비와 대형화물차 주차장도 있다”고 보도해 택시 주차지가 중장비·대형화물차 주차장 옆에 있어 더욱 위험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중장비·대형화물차 주차장은 택시주차지에서 230m 떨어져 있기에 바로잡습니다.

이어 “유류비를 아껴야 하는 택시들이 강남에서 영업할 때 왕복 6~7km를 돌아야 하는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단정 보도했으나 이 역시 1.9km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초교 인근 ○○운수(주) 택시 주차지” 관련 정정보도

나. 본 문 : 본지는 5월 1일, ‘스쿨존, 안전 사각지대 되나’ 제목의 기사에서 “강동구청이 ○○초교 100m 위치에 택시주차지를 허가하여 안전사고를 우려한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수(주)는 택시들이 학교 앞이 아닌 올림픽대로를 이용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나, 학부모들은 회사 택시들이 학교 정문을 피해 왕복 6~7km를 돌게 되는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다시 확인한 결과, 해당 초등학교 후문으로부터 택시 주차지까지의 거리는 100m가 아닌 약 200m이고, 해당 회사 택시들이 영업을 위해 올림픽대로를 거쳐 암사동 ○○마을까지 우회할 경우 거리는 1.4km이며, 천호대교 남단을 거쳐 ○○사거리까지 우회할 경우의 거리는 4.7km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9월 12일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 면에 제1항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스쿨존, 안전 사각지대 되나)의 부제목인 [“등하교 시간엔 빙 둘러가겠다” 택시 회사서 약속 내놔지만]과 같은 크기의 고딕으로 2단에 걸쳐 보도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은 활자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제1, 2항의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9. 0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서울경제 : 『‘○○초교 인근 ○○운수(주) 택시 주차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8일자 16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3

신청인이 병원 수술장비를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

사 건 : 2012부산조정22, 2012부산조정23(병합)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2. 08. 1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구속 된 아버지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가 1억2천만 원 상당의 병원 수술장비를 훔쳐 판 혐의로 신청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전하면서 신청인이 경찰측에 스스로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실이 없고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바도 없다며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5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국제신문 : 『**빛나간 효심 아들,父公탁금 마련하려 절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3일자 6면)

내 용 :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휴업 중인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훔친 이 모(27)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께 사하구 한 병원에 들어가 엑스레이 촬영기기 등 수술장비 8종류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을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병원을 운영하던 자신의 아버지(51)가 건강보험공단 급여 6,7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되자 법원에 낼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②

인터넷 국제신문 : 『**빛나간 효심 아들,父公탁금 마련하려 절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3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본 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9.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50만 원 지급



사례 24

정부가 2012년 3월 체결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에 ‘일반철도 시설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390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2. 09. 2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정부가 2012년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를 체결하여 철도 경영권 개방 및 민영화 가능성이 커졌으며, 외국자본이 관제권을 확보할 경우 열차 운송 사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기관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가 체결되어 철도 경영권이 조달대상에 포함되거나 개방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고, 철도 관제권은 국가업무로 조달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정 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 : 『정부, 외국자본에 '한국철도 기간망 장악' 길터줬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5일자 8면)

내 용 : 정부가 국내 철도 기간망 산업을 외국 자본 손에 넘길 수 있는 길을 텃다. 지난 3월 체결한 세계 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결서를 통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철도시설의 운용과 감독 등의 문호가 외국 자본에 개방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박원석(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상교섭본부의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 번역 초안을 보면, △일반 철도시설의 건설 및 조달 △일반 철도의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일반 철도시설의 감독 및 경영의 조달 계약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열차 운행을 통한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정도를 제외하고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 운용·유지 및 보수 등 철도 기간망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범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조달 공개 대상 기관도 큰 폭으로 늘렸다. 1997년에 맺었던 정부조달협정의

경우, 철도와 관련해선 한국철도공사만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사용하는 열차의 객실·부품 위주의 조달 계약에만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 협정문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하철 등 기간 선로 산업 기관이 모두 포함됐다. 또 철도시설 건설과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이 정부조달 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협정문의 주석에도 ‘철도시설의 건설·감독·운영’ 등이 공개 대상으로 명시된 것이다.

철도산업 관계자들은 이 가운데서도 ‘일반 철도시설의 경영·감독’에 주목했다. 길만 뚫어놓으면 자동차가 알아서 달리는 도로교통과 달리, 열차는 분·초 단위로 정밀하게 짜인 관제 계획에 따라 제한된 선로 위를 달리게 된다. 철로를 운영하는 관제권을 확보할 경우, 열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은 면허만 따면 언제라도 뛰어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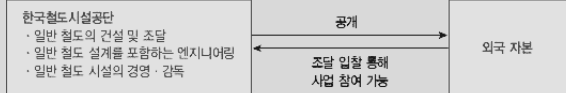
박○○ 철도노조 정책연구팀장은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일환으로 코레일에 있는 각 지역 역사의 소유권과 관제권을 회수하는 일에 골몰했던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협정문을 보면 코레일을 압박해 관제권과 역사 소유권을 철도시설공단에 넘긴 뒤, 이를 외국 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문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철도 분야의 개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정부조달협정을 준용하도록 해두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 철도 기간 산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철도산업의 최강자는 유럽의 철도산업체들이다. 미국에선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한 물류산업이 발달했지만, 유럽 각국의 교역은 일찍이 철도를 따라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해 3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 세계 철도 시장의 50% 정도는 프랑스 알스툼, 독일 지멘스, 독일과 스웨덴의 합작기업인 아드트란츠 등이 차지하고 있다. 또 유럽의 철도산업체들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한반도로 이어, 일본까지 연결하는 대륙횡단 철도물류산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정부조달협정 흐름도

정부조달협정(GPA) 공개대상 명시



※ 기준 17개 기관, 신규 8개 기관

한국에 조달 대상이 되는 사업	한국에 조달 대상이 되는 사업
1. 일반 철도의 건설 및 조달	1. 일반 철도의 건설 및 조달
2. 일반 철도 설계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2. 일반 철도 설계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3. 일반 철도 시설의 경영·감독	3. 일반 철도 시설의 경영·감독
4. 일반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4. 일반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5. 일반 철도 시설의 운영	5. 일반 철도 시설의 운영
6. 일반 철도 시설의 관리	6. 일반 철도 시설의 관리
7. 일반 철도 시설의 개발	7. 일반 철도 시설의 개발
8. 일반 철도 시설의 연구	8. 일반 철도 시설의 연구
9. 일반 철도 시설의 교육	9. 일반 철도 시설의 교육
10. 일반 철도 시설의 홍보	10. 일반 철도 시설의 홍보
11. 일반 철도 시설의 정보	11. 일반 철도 시설의 정보
12. 일반 철도 시설의 통신	12. 일반 철도 시설의 통신
13. 일반 철도 시설의 에너지	13. 일반 철도 시설의 에너지
14. 일반 철도 시설의 환경	14. 일반 철도 시설의 환경
15. 일반 철도 시설의 안전	15. 일반 철도 시설의 안전
16. 일반 철도 시설의 건강	16. 일반 철도 시설의 건강
17. 일반 철도 시설의 복지	17. 일반 철도 시설의 복지

한국 철도 기간망이 외국 자본에 열리게 되면 유럽 철도산업체가 과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김○○ 고려대 연구교수(경제학)는 “이번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철도산업 민영화가 결국 외국 자본을 향해 있음이 명백해졌다”며 “지하철 9호선 논란을 보듯 공공의 영역에 외국 자본이 들어설 경우 부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도 “철도 기간망은 공공성이 가장 강한 교통망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제협정의 특성상 한번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비준 과정에 이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조달은 ‘관세무역 일반협정’(가트·GATT)의 예외사항으로 무역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분야다. 이에 ‘가트 체제’를 확대 계승한 세계무역기구는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을 대상으로만 정부조달 영역에서도 자유무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조달협정의 회원국은 한국, 미국, 유럽연합과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 등으로,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3월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대사급 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채택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한겨레신문 1면 좌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부, 외국자본에 한국철도 기간망 장악 길 터줬다”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25일자 8면에 ①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 통해 경영권 등 개방”, ② “선로·역사·엔지니어링 등 거의 모든 범위 민영화 가능”, ③ “1997년에 맺었던 정부조달협정의 경우, 철도와 관련해선 한국철도공사만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 ④ “철도를 운영하는 관제권을 확보할 경우, 열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은 면허만 따면 언제라도 뛰어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결서 통해 경영권 등 개방은 사실이 아니고, 외교부의 초벌 영문(Management of conventional railroad facilities) 번역과정에서 ‘Management’를 ‘관리’가 아닌 ‘경영’으로 번역해서 발생한 오류고, 현재 ‘관리’로 수정 중에 있으며, ② WTO 조달협정은 “건설공사, 시설 유지관리, 부품, 자재, 장비 조달 등 공공발주에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 건설이 완료된 철도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영화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며,

③ 1997년 정부조달협정 시에는 한국철도공사(‘05년 출범)가 없었고, 철도운영과 철도건설을 모두 수행하고 있었던 철도청이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④ 관제권은 정부조달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철도산업발전기본법)으로 국가업무에 해당하므로 외국기업이 철도 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정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9월 25일자 8면 「정부, 외국자본에 한국철도 기간망 장악 길 터줬다」에서 “WTO 정부 조달협정 개정의결서 통해 경영권 등 개방”과 “선로·역사·엔지니어링 등 거의 모든 범위 민영화 가능”, “철도를 운영하는 관제권을 확보할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1997년에 맺었던 정부조달협정의 경우, 철도와 관련해선 철도청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로 바로 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WTO 정부조달협정 철도 기간망 개방’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본 문 : 본지는 9월 25일자 8면 「정부, 외국자본에 ‘한국철도 기간망 장악’ 길터줬다」 제목으로 1997년 WTO 정부조달협정 체결 시 철도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만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올해 개정의결서 체결로 철도 경영권 개방 및 민영화 가능성이 커졌으며, 외국자본이 관제권을 확보할 경우 열차운송 사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1997년 조달협정 체결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철도청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개정의결서의 초벌번역본에서 ‘Management’를 ‘관리’가 아닌 ‘경영’으로 잘못 해석해 철도 경영권이 조달대상으로 포함된 것처럼 오인된 것이며, 2012년 개정의결서는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면서 양허기관에서 제외되었던 철도시설공단을 다시 추가한 것일 뿐 개방범위를 확대한 것은 아니고, 철도 관제권은 법률상 국가업무로 조달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2년 10월 15일자부터 10월 17일자 사이에 <한겨레> 8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 통해 경영권 등 개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신청인이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 체결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기고문을 2012년 10월 20일까지 피신청인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측은 해당 기고를 2012년 10월 26일까지 오피니언면에 게재한다.

4.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10. 1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WTO 정부조달협정 철도 기간망 개방’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6일자 8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5

초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다른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을 축구부 감독으로 선임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 유혹접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광주조정72·7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호남매일신문사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12. 10. 0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초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축구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인 등에 접대 및 로비를 하고 자질 논란이 있는 사람을 축구부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교내 운영위원회에 유혹접대를 하는 등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축구부 감독 선임은 광주시 교육청의 코치 임용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보로 인해 교육자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향후 학교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호남매일 : 『**'자질 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 말썽**』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2일자 13면)

내 용 :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 A초등학교가 축구선수와 학부모에게 폭언과 코치를 폭행하는 등 불성실한 지도로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축구부 감독의 해임 요구를 수차례 묵살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해당 초등학교장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정치권 언론인 학교운영위원회 등에게 입막음으로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광산구 A초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올 2월 공석이 된 축구부 감독에 박모 씨를 선임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축구부 감독으로서 부도덕하고 자질이 없어 어린 선수들의 장래가 어둡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들은 “A초교 교장은 축구부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축구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감독 선임을 약속했으나 타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박모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또 “감독의 결격사유를 지적하고 계약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2월 광주시교육감과 3월과 8월에 A초등학교장과 서부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감독의 인척이 시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어 선임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들은 축구부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자질 논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들은 “감독 부임 후 어린 선수들에게 폭언과 어깨와 등을 손으로 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6학년 Y학생은 이 충격으로 신경외과 치료를 받고 현재 운동을 그만 둔 상태다”라고 밝혔다.

또 “학부모에게 ‘아줌마 더 이상 할...’라고 폭언하고 김모 코치를 폭행해 광산경찰서에 폭행혐의로 고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은 “감독 선임 이후 학부모와 대화 단절로 감독 따로 축구부 따로 움직이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돼 오다가 올해 대교 눈높이 광주지역 주말리그와 화랑대기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시합당시 어린 선수들의 컨디션 체크도 게을리 하고 학부모에게는 응원을 못하게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런 이면에는 해당 교장이 학부모운영위원 등에게 유혹접대로 학부모를 압박했다”면서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언론인 등 각계각층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으나 교장이 로비활동으로 무산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학교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즉답을 회피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호남매일신문 지역 13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자질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 말썽”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광산 A초교 학교장 축구부 감독 해임요구 묵살 및 로비활동’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또는 ‘광산 A초교 학교장 축구부 감독 해임요구 묵살 및 로비활동’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2일자 지역 13면에 “자질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말썽”이라는 제목으로
1) 특히 해당 초등학교장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 · 언론인 · 학부모 운영위원 등에게 입막음용으로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 학부모들은 “A초교 교장은 축구부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축구부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다른 학교에서 불미스

러운 일을 저질러 그만 둔 박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했다” 3) “감독의 결격사유를 지적하고 계약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2월 광주시교육감과 3월과 8월에 A초등학교장과 서부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이런 이면에는 해당교장이 학부모 운영위원들에게 유흥접대로 학부모를 압박했다”면서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언론인 등 각계각층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으나 교장이 로비활동으로 무산시켰다” 5)이에 대해 A학교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즉답을 회피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교육청·시의회·언론에 확인한 결과, 1) 해당학교장이 여론무마를 위한 정치권·언론인·학부모 운영위원에게 유흥접대를 했다는 것, 2) A초교 교장은 축구부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축구부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 3) 학교 측에서 박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는 것, 4) 감독의 결격사유를 지적하고 계약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2월 광주시교육감과 3월과 8월에 A초등학교장과 서부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5) 이런 이면에는 해당교장이 학부모 운영위원들에게 유흥접대로 학부모를 압박했다면서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언론인 등 각계각층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으나 교장이 로비활동으로 무산시켰다는 것, 6)이에 대해 A학교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즉답을 회피했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2011년 대한축구협회 주관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감독이 부정선수 출전으로 인하여 5년 자격정지를 당하자 축구부 학부모 간담회에서 모 축구부 학부모는 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한 것이라며 학교가 축구부 학부모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임시켰다고 언성을 높였으며, 학교장 직권으로 축구부 학부모가 원하는 감독을 임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체육부장으로부터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의해 선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학교는 광주시축구협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였고, 광주시축구협회에서 축구부 학부모가 원하는 후보가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되자 면접 당일 10여 명의 축구부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추천된 3명의 후보 외에 축구부 학부모가 원하는 추천에서 제외된 후보를 면접하여 감독으로 뽑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추천된 후보 3명을 면접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안된다고 하자 다시 3명 후보 모두를 동점으로 처리하여 감독을 뽑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면접장에 참관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며 면접 후에는 다시 교장실에 와서 3명의 후보에서 선임된 후보를 감독으로 계약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광주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선임된 후보를 승인해주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지도자선정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후에 2012. 01. 10.자로 감독승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축구부 학부모들이 광주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계속적으로 감독승인 철회를 요청하자 감독승인 철회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10여 일간의 여유를 주었고, 다시 지도자선정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2012. 01. 30.자로 재승인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에서는 감독을 계약하게 된 것입니

다.

이후 끊임없이 학교에 감독으로서 부적절하므로 감독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하여 광주시 교육청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당 학교장을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계속적으로 학교와 광주시 교육청에 신입감독 해임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감독해임 사유로 적절하지 않으니 계속적으로 감독 역할을 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축구부 학부모들은 계속적으로 감독으로서 부도덕하고 자질이 부족하니 신입 감독을 해임하고, 축구부 학부모가 원하는 감독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해당 학교장이 축구협회와 협력하여 축구부 학부모가 원하는 감독을 임용해 주지 않았다’, ‘정치권 · 언론인 ·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유흥접대로 포섭하여 축구부 학부모를 고립시켰다’고 주장하며 언론에 제보하여 학교장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는 축구부 학부모들이 원하는 감독을 임용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광주시 교육청 지침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한 행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해당 학교장을 언론으로부터 탄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자질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 말썽”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 용: 본 신문은 지난 8월 22일자 13면 “자질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초등학교장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 · 언론인 · 학부모 운영위원 등에게 입막음용으로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며, 학부모들은 A초교 교장은 축구부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축구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다른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그만 둔 박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언론인 등에 접대 및 로비를 한 사실이 없고, 축구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도 없으며, 축구부 감독 선임은 광주시 교육청의 코치 임용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10월 25일까지 위 반론보도문을 호남매일 13면 우측 하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15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3.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한 날로부터 매일 금 50만 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012. 10. 1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호남매일 : 『“자질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 말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13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6

신청인이 ○○건설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됐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 건 : 2012서울중재43 정정청구

신 청 인 : 문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2. 10. 0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전)부산시장인 신청인이 건설사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수사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이미 보도 이전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알리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2012 서울조정1400)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양 당사자가 관련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신청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정정보도하도록 중재결정을 하였다.

중재대상보도

월간조선 : 『국민검사 심○○의 수사일지-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일자 382~399면)

내 용 : ○○ ‘정치인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로 국민의 눈길이 연일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에 쏠리던 1997년 4월 16일. 아침 일찍 김○○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장실로 전화를 걸어 왔다. 내게는 대학 및 검찰 선배인 그는 일찍이 검사 시절 능력을 인정받아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긴 경력의 인물이다. 그 무렵엔 여당인 신한국당의 전국구 승계후보 상위 순번에 올라 있기도 했다.

– 심 부장, 그래 얼마나 바빠요. 나 김○○이요.

“선배님께서 웬일이십니까.”

– 이거 뭐 아무 것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검사검사 오늘 얼굴이나 좀 볼까 해서….

“저도 뵙고 싶지만 원체 쫓겨서, 괜찮으시면 전화로 말씀하셔도….”

– 아무래도 전화보다는…. 김 의장 일이라….

김○○ 국회의장의 사자(使者)로 연락을 해 온 것이었다. 솔깃했다. 당시 나와 휘하 검사들은 도대체 김 의장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까, 방법을 놓고 고민하던 터였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 3부의 수장(首長)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런 국회의장을 검찰이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세상 사람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불러 놓고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한다면 검찰은 비난과 비웃음을 뒤집어줄 수밖에 없다. 당장 소환이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예우 문제부터 이래저래 신중해야 한다. 어떤 대목에서든 검찰이 헛발을 디디거나 실수라도 한다면… 안 그래도 이미 ○○ 수사로 검찰에 물리면서 잔뜩 독이 올라 있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뭘로 보는 거냐, 나라의 수치다, 국회 모독” 운운하며 여지없이 검찰을 되받아칠 것이었다.

국회의장 수사의 어려움

더욱이 김 의장은 당시 김○○ 신한국당 고문 등과 더불어 정계의 ‘어른’이자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 절친한 지기(知己)이기도 했다. 여기서 하필이면 4월 10일부터 15일 사이 우리 국회가 국제의회 연맹(IPU) 총회를 개최한 터였다. 그러럼 중대한 국제행사를 치르자마자 주최국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범법(犯法)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다? 나라 체면이 어찌 될지는 뻔한 노릇이었다.

특히 우리 검찰을 곤혹스럽게 했던 점은 김 의장이 ○○로부터(그것이 정치후원금이든 뇌물이든) 돈을 받은 것이 그가 재야(在野) 인사이던 1992년 3월이란 점이였다. 그러니 설사 뇌물을 받았다 해도 이미 그것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었다. 앞서 4월 10일 내가 조사하겠다고 밝힌 33명의 정치인 가운데는 김 의장도 분명히 포함돼 있었다. 일단 명단에 올라 있으니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의장실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는 건네 놓은 상태였다. 그레 놓고 시간은 확확 지나가는데 과연 어디서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솔직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이었다. 그런 터에 저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으니 얼핏 반가운 마음도 살짝 들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 변호사에게 “얼른 오시라” 할 수는 없었다. 내 방문 앞에는 자기들 표현으로 ‘뻘치기’라 해서 기자들이 24시간 말뚝처럼 서 있는 상황. 그러면서 내가 총장실을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붙는다. 그런 터에 김 변호사가, 그것도 정치인 수사가 한창이던 민감한 때 나를 찾아온다? 기자들이 그 정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리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방법이야 어떻게 됐든 나는 김 변호사에게 “일단 오후 3시에 밖에서 뵙자”고 했다.

약속시간이 되어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 방을 나와서는 기자들 눈에 띄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얼마 후 미리 약속한 대로 여직원이 내 옷을 들고 그리로 왔다. 그러고는 시커멓게 유리가 코팅된 내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와 약속장소인 인근 팔레스호텔로 향했다. 오후 3시, 호텔 3층의 칵테일 바(Cocktail bar)에 들어서는데 저 앞에 평소 낮익은 기자가 앉아 있었다. 다행히 기자는 나를 못 보았다.

아이고 놀라라, 획 뒤돌아 호텔을 나서면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약속을 잡았다. 그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국립중앙도서관 앞 길가에 내 차를 세웠고 얼마 뒤 김 변호사가 그 차에 올라탔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뒷좌석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

- 의장께서 검찰이 정말 큰일을 한다고 꼭 인사를 전해 달랍니다. 그런데 의장 본인은 ○○ 쪽에서 뭘 받은 적이 없다는데... 언제였는지 한일 국회의원들 모임 있을 때 어디선가 2,000만 원을 주기는 했는데 그것도 받았는지 말았는지 기억이 어렵춧하다시고... 뭐 어디서든 문제가 있다 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검찰에 나가는 건 무리가 있고, 다른 데서 조사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시고...”

이 2,000만 원 운운하는 사실은 나로서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오랜 정치생활 동안 후원금 등 이래저래 받은 봉투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기억에 없는 건지는 모를 일이다. 좌우시간 저쪽에서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만큼 우리 검찰 수사팀의 보안 상황은 철통 같았다.

“○○ 정○○ 쪽에서 5,0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니 어떻게든 한 번 조사받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겁니다. 조사받는 장소야 의장님 생각대로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께서 꼭 한 가지 해 주실 게 있습니다.”

- 5,000만 원이요? 이건 생소한 이야기 같은데, 뭐 어쨌든...

“정○○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자술서(自述書)를 먼저 좀 써 주셔야겠습니다.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뻔한 사실을 놓고 왈가왈부해서 의장께서도 피곤하시면 안 될 테니까요.”

- 그러면 뭐 형식적인 조사 절차가 아니라, 아예 시인하라는 얘긴데... 그건 의장께서도 전혀 원하지 않으실 게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반대 의사가 분명하다. 나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간 ‘정○○ 진술조서’를 김 변호사에게 내 보였다. 물론 거기에는 정○○ 총회장이 김 의장에게 5,000만 원을, 언제 어디서 주었는지 정황이 잘 나타나 있었다.

準품통급 정치인 5명 기소

○○그룹 비리 관련 혐의로 검찰에 구속 수감 중이던 국민의회 권○○ 의원이 1997년 2월 17일 구속적부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이미 돈을 준 쪽에서 이렇게 명백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쪽에서도 시인하지 않으면 피차 더 골치만 아플 겁니다. (시인하는)자술서를 쓰지 않고 (의장께서) 돈 받은 적 없다고 끝내 부인하시면 검찰로서는 언론의 몰매에 피곤하고 해서 부득이 의장님을 이번에는 검찰청으로 정식 소환해 결국 씨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쩔 수 없었는지 김 변호사는 종종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뒤 저쪽에서 예의

자술서를 써서 검찰에 보내 왔다. 그것을 들고 박○○ 중수1과장과 홍○○ 검사가 국회의장 공관을 찾아가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는 조용히 마무리됐다. 국회의장의 ○○ 5,000만 원 수수 사실을 확인한 대목은, 앞서 4월 10일 시작된 ○○ 33명 정치인리스트 수사의 절정이었다.

이제야 밝히는 것이지만, ○○ 정치인리스트 수사는 실로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성사(?)됐다.

앞서 ○○ 제1차 수사팀은 ○○의 부도발표 24일 만에 후닥닥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이때 기소된 9명 가운데 정계 인사는 넓게 보아 김○○·홍○○·황○○·정○○·권○○ 의원 등이었다. 몸통까지는 아니라도 ‘준(準)몸통’은 될 만한 정치권 인사들 가운데 단지 다섯 명만을—국가를 뒤흔든 5조 원 대 사건에서—법정에 세운 것이다. 과연 누가 이 같은 처사를 납득할 수 있었을까.

민심은 들끓었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 정치인 혹은 정치권에 대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내가 2차 수사를 맡은 후에도 여론은 끊임없이 ‘보다 더 큰 몸통을 밝혀 내라’며 김○○ 씨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가는 언론보도에 속았어

이상수 의원이 1997년 4월 7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정○○ ○○ 총회장을 추궁하고 있다.

언론은 연일 ‘정○○리스트 수사 방침’ ‘○○ 정치인 50여 명 수사 임박’ ‘대가성 드러나면 사법처리’ 등등 하나같이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소스로 한 보도들을 내놓았다. 심지어 돈 받은 정치인이 누구누구 운운하며 이니셜이나 실명이 거론되기까지 했다. 엉뚱하게 거명되어 피해를 보는 정치인들도 있었다. 검찰이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내놓지 않자 추측성, 소설성 기사들이 난무한 것이다.

그런 기사들을 매일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던 나와 수사팀은 착잡했다. 사실 검찰이 당장 데려다 조사해야 할 정치인의 이름과 대충의 혐의는 일찌감치 나와 있었다. 앞서 1차 수사 때 정 총회장이 돈을 준 정치인들의 이름을 이미 다 털어놓은 터였다. 전·현직 통틀어 모두 33명, 현역 의원만 20명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이 머뭇거린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솔직히 검찰로서는 정치인들에게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하고 사법처리해야 하는 수사가 가장 부담스럽다. 어찌어찌 돈을 준 쪽의 진술을 받아낸다 해도 받은 쪽에서는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거나,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하게 마련이다. 이런 사건에는 십중팔구 증거도 없다. 나중에 실제로 법원에서 정치자금 쪽으로 결론이 나면 설사 돈이 오갔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 당시 정치자금규제법에는 정치자금의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만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인 한두 명을 수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다. 수사결과가 흐지부지 ‘빈

손'일 때 비난과 비웃음은 여느 사건 때보다 훨씬 더 혹독하다. 한두 명에 대한 수사도 그러한데 정치인 수십 명을 한꺼번에? 설사 천지를 뒤흐드는 검사가 있다 해도 그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 듣기 좋은 말로 둘러대자면, ○○ 정치인 수사를 놓고 검찰로서는 '신중하고 신중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與野 共同戰線 형성, 검찰에 반발

둘째,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그것이 자칫 여야 간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했다. 누구누구가 돈을 받았더라—그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설사 그것이 처벌대상 아닌 정치자금이든 혹은 실제로 범죄성 뇌물이든 간에 여지없이 상대방의 정치적 공격 호재가 될 것이었다.

세 번째로,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었는데,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이에 부응(?)하려는 검찰 쪽 분위기다. 당장 검찰 상부의 분위기가 “(딱 떨어지는 증거 없이) 정○○의 입(주장)에만 의존하는 수사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돈 받은 것은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규제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럴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위에서부터 “정치인들이 ○○에서 설사 돈을 받았다 해도 그것은 범죄 구성요건이 안된다”며 정치인 수사를 반대한 것이다.

물론 정치인들이 ○○로부터 돈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과연 순수한 정치자금이나 혹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하는 것은 조사해 보고 나서 판단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검찰 윗선은 아예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어떤 이유에선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막았다.

당시 그것은 검찰 수뇌부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청와대는 물론 집권여당인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까지, 정치인에 대한 공개수사를 원치 않는 기류가 지배하고 있었다. 음(陰)으로 양(陽)으로 내게도 그런 기류가 확연히 전달됐다.

표면상 이유야 “정치자금 문제는 현행법상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속내는 말할 것도 없이 ○○ 정치인리스트가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정치권 전체에 심각한 타격과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사를 반대하는 ‘그들’은 그저 1차 수사 때처럼 어떻게든 2차 수사도 조기 종결하고 정치인이든 김현철씨든 일단 사법처리 불발 또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사태를 끝내는 것이 최선책이란 분위기였다.

총장, 정치인 수사에 소극적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정 총회장의 진술(정확하게는 자술 메모지)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으로서는 상부에 정치인 수사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려웠다. 나 역시 중수부장이 된 뒤 한두 차례 정치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슬쩍 피력했으나 다만 ‘절대불가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검찰 내부에서뿐 아니라 ‘바깥’에 대해서도 김○○ 총장의 그런 의지는 확고했다. 4월 4일 국회 ○○○ 특별위원회의 대검에 대한 국정조사 때였다.

이날 의원들은 김 총장을 상대로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 묻는 한편 항간에 소문으로 떠돌던 ‘정○○리스트’도 공개하라고 몰아붙이듯 요구했다. 검찰이 과연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칼끝을 마주보고 있는 당사자인 의원들로서는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정치인 수사를 막고 있는 자신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억박지르는 국회의원들이 김 총장으로서의 적잖이 야속하기도 했을 터였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정 총회장의 진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 봐서 내용이 맞는 사람만 공개하되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알듯 모를듯한 대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확인 작업을 거쳐 옳다고 판단되면 공개하겠지만, 이 경우라도 국회 윤리위원회에 통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굳이 덧붙였다.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각이 없다는 뜻을 예둘러 말한 것이었다.

이처럼 총장의 뜻이 너무도 명백한 이상 수사팀은 속수무책 애만 풀이고 있었다. 성역 없이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한다는 대검 7층의 수사팀과 수사 확대는 곤란하다는 8층 수뇌부의 입장이 맞서 정치인 수사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늘은 또 다시 나와 검찰을 도왔다. 뜻밖에도 다름 아닌 정 총회장이 정치인 수사의 돌파구를 열어 주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쓴 채 내내 입을 봉하고 있던 정 총회장이 4월 7일 열린 국회 청문회를 통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먼저 치고 나온 것이다.

정○○ 총회장의 고마운(?) 도발

김○○ 의원이 1997년 4월 12일 ○○○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그 발단은 우연한 것이었다. 이날 신한국당 맹○○ 의원의 질의가 계기였다. 맹 의원은 정 총회장을 향해 “김○○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라며 역(逆)질문을 던졌다.

아마 정 총회장이 이전까지 노상 그랬던 것처럼 “돈을 준 사실이 없다”라거나 “모른다”라거나 침묵하는 식으로 결국 답변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런 역질문을 통해 자기 당 실세 이던 김○○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대변하려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터졌다. 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 총회장이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연합의 김○○ 의원, 새정치국민회의의 김○○ 의원에게도 돈을 주었다”고 묻지 않은 이들의 이름까지 터뜨렸다.

김○○·김○○·김○○. 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 각 당의 실세 중 실세들이었다. 검찰에 의해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사랑하는 아들(○○씨)까지 구속된 상황에, 그렇게 몰릴 대로 몰렸는데 아무도 손을 써 주지 않는 정치권에 대해 정 총회장이 섭섭함의 역공(?)을 취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털어놓기 전에 어서 정치권에서 액션을 취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을까.

그 속내가 무엇이든 각 당의 얼굴 격인 세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는 정 총회장의 이날 진술은 당장 언론의 톱기사가 됐다. 세 명의 김 의원은 하나같이 펄쩍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여론은 들끓었다.

내 사무실에 앉아 TV로 청문회를 지켜보던 나는 정 총회장의 폭탄발언 장면에 깜짝 놀랐다. “저자가 뭔가 지금 심경의 변화가 있구나” 싶었다. 즉시 직원들에게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정 총회장을 구치소 자기 방에 돌려보내지 말고 곧바로 검찰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오늘 당장 정 총회장을 털어야 한다. 마음이 급했다.

정○○, 검찰조사 후 다시 입을 닫아

정○○ 리스트에 올라 있는 정치인 중 처음으로 김○○ 자민련 사무총장이 1997년 4월 11일 저녁 대검청사에 출두하고 있다.

사실 그때까지 검찰이 확보하고 있던 정치인 관련 수사자료는 정 총회장이 1차 수사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술한 내용, 곧 간단한 메모 형식의 ‘자술서’였다. 그것만 가지고는 법정증거로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정 총회장이 심경변화를 보인 오늘 무리가 되더라도 ‘지체없이 진술조서를 받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입을 닫아 버릴지 모른다’고 직감했던 것이다.

이윽고 정 총회장을 검찰로 데려온 뒤 그날 밤을 새워 집중 심문을 해 나갔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의 심경에 모종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다.

심문을 맡은 검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에게서는 간간이 정치인들에 대한 원망이 나타났다. “국회 의원들은 갈만 안 들었지 내게는 다 강도다. 나는 국회의원에게도 뜯기고, 여기저기에 뜯기고, 언론에도 뜯기기만 한다”고 푸념했다. 또 “검사님도 이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을 거요. 돈 없이 지역구 관리가 되나. 결국 나한테 대롱대롱 (매달려야)하지”라고 여유까지 부렸다.

이처럼 개인적인 이야기가 오갈 만큼, 딱딱하기는커녕 화기애애(?)하다 싶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조사가 진행됐다. 그는 이날 검사의 질문에 순순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 총회장은 이튿날 새벽까지 자신이 돈을 준 33명의 정치인들과 액수, 심지어 돈을 주고받을 때 정황까지도 진술했다.

서둘러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던 그날 나의 직감은 들어맞았다. 그렇게 밤새 검찰조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정 총회장은—바로 그날 낮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몸이 아파서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여야 정치 실세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실어증(失語症)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은행장은 놔두고 정치인 수사 합시다”

이날 하룻밤 동안의 조사로 우리 수사팀은 ○○ 리스트에 올라 있던 정치인들의 혐의에 대해 90% 이상 수사를 마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 수사가 이뤄지기 훨씬 전에 우리는 이미

수사에서 이겨 놓고 있었다. 소위 화투판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켜진 셈이었다.

그러나 나는 수사팀 전원에게 정 총회장을 조사한 사실, 또 그것을 통해 검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공식 진술조서를 확보했다는 사실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아직 전쟁, 아니 전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정 총회장의 청문회 돌발발언으로 우리 수사팀은 두 가지 호재를 얻은 셈이 됐다. 하나는 ○○ 정치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그것도 법적 증거력을 가진 진술조서로 확보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검찰 외곽에서 정치인 수사에 대한 여론을 들끓게 했다. 당연히 그 같은 여론은 검찰 내부에서 정치인 수사를 반대하던 수뇌부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 관련 은행장들의 배임 수사 여부를 놓고 내가 김 총장과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4월 8일 아침에 벌어진 것이다. 은행장들 수사마저 머뭇거리던 총장에게 “사표를 내라”며 격앙하고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은행장 수사도 안 되고 정치인 수사도 안 된다.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오후에 대검 차장이 부른다. 용건은 간단하고 선명했다. “은행장들 배임 문제 수사는 일단 보류하고 대신 정치인리스트를 공개하기로 김 총장과 얘기가 됐다”는 것이었다.

밖에서는 ○○ 정치인리스트를 공개하고 수사하라는 여론의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다. 안에서는 내가 은행장들을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김 총장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평소 후덕한 성품의 김 총장으로서 그런 상황이 몹시도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아마도 정치인리스트 공개는 그런 곤혹스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김 총장이 어쩔 수 없이 꺼내 든 카드가 아니었을까.

김 총장, “정치인 형사처벌 대상 없다”

어쨌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로서는 솔깃했다. 정치인리스트 공개는 김 총장과 최 차장이 꺼낸 카드로는 꽤 큰 것이었고 내가 바라기도 하던 것이었다. 생각해 보겠노라, 나는 차장실을 되돌아 나왔다.

이튿날인 4월 9일 아침 정례회의, 여전히 서먹서먹한 나와 김 총장 사이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대검 차장이 어제 운을 뗐던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리스트를 공개하면 아무래도 그 파장이 엄청나기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 그쪽으로 (수사)방향을 잡아 봅시다.”

최 차장의 말을 받아 김 총장이 덧붙였다.

“아무래도 은행장들 쪽 문제는 심 부장이 이해를 좀 해서…, 일단은 연기하는 것으로 좀 하자고.”

역시 김 총장에게는 정치인 수사보다는 어떻게든 은행장들 배임 수사를 보류하는 것이 좀 더 급한 일이었던 모양이다. 지금이다 싶어 내가 그 말꼬리를 잡아챘다.

- 총장님 생각이 정 그러시면 (정치인)리스트 쪽으로 방향을 틀어 보겠습니다.

그런 내 얘기가 ‘은행장 수사를 보류하겠다’는 대답으로 들렸는지 김 총장은 비로소 안도한다는 표

정으로 “리스트? 그쪽 수사야 뭐... 할 수만 있다면 한번 해 보지 뭐”라고 끝을 얼버무렸다. 확답은 아니었다.

나는 정치인 수사를 얼른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이튿날 아침 10시 기자들에게 공식 브리핑을 통해 “○○ 정치인리스트에 올라 있는 33명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튿날 김 총장은 또다시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내놨다. 나와 함께 자리한 한 비공식 석상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공개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형사처벌할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이다. 말하자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자금법 아닌 뇌물수수 쪽이 없게 하라”는 지침(指針)을 내놓은 것이다.

○○ 정치인리스트, 거기 올라 있는 33명에 대한 수사는 이처럼 안팎의 역풍을 뚫고 달려야 했다. 공개수사 방침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나는 몇 가지 원칙을 부연했다.

거물급 정치인부터 소환

1997년 6월 30일 열린 ○○ 2차공판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국회의원의 고문이 입정하고 있다.

“리스트에 올라 있는 정치인 33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반드시 조사한다. 가급적 전원 소환할 것이며 조사장소는 대검 중수부 조사실이 원칙이다. 해당자들은 결국 검찰(대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다만 정치인 자신이 사생활 보호나 인권, 명예 등의 이유로 공개수사를 원치 않는다면 얼굴이 언론에 비치게는 안 하겠다. 기자들이 모르게 비공개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라 해도 그 결과나 내용은 숨기지 않고 밝힐 것이다.”

그러면서 소속정당별 인원수, 현직 국회의원 여부, 자치단체장 여부 등 신상에 관한 부분도 덧붙여 발표했다. 수사대상이 된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중간에 바뀌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운 것이었다.

그러고는 당장 이튿날부터 정치인들의 검찰 소환 및 조사가 시작됐다. 정 총회장이 공개 거명한 김○○·김○○·김○○ 의원을 가장 먼저 불렀다. 상대적으로 거물급인 이들 세 사람부터 불러들인 것은 그 어떤 권력이라 해도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단호한 의지와 기세를 보이려는 것이었다. 이어 박○○·박○○·나○○·서○○·김○○·권○○ 의원 등 중진들, 그리고 원로 정치인인 이○○ 민주당 상임고문도 검찰에 들어왔다. 앞서 본 것처럼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을 거쳐 공판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정 총회장의 구체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진술’을 통해 우리 수사팀은 이미 소환대상 정치인 개개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거의 다 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과 대면한 뒤 조사 과정 자체는 쉽지 않았다. 검찰이 혐의 내용을 들이밀었을 때 소환된 정치인이 “그렇다”고 순순히 시인하는 경우는 없었다. 일단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쩔 수 없이 조사실에서는 검사와 정치인 사이에 치열한 기(氣) 싸움과 두뇌 대결이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은 정치인 쪽에서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던, 돈이 오간 정황은 실로 구체적이었다. 정 총회장이 그만큼 세세하게 기억해서 이야기를 해 준 덕분이었다.

가령 ▲누구는 호텔 몇 층 객실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 ▲누구는 그날 돈을 받고 나가다 계단에서 넘어졌다 ▲누구는 자동차 트렁크에 사과박스로 돈을 담아 실어 주었다 ▲누구는 사람을 시켜서 해당 의원의 집에 직접 돈 상자를 배달해 주었다는 식으로, 잡아떼려야 뗄 수 없는 정황들이 잘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의 정치자금 제공기준

나중에 수사결과를 뜯어보면, ○○ 쪽에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넬 때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였다. 여당 실세들에게는 5,000만 원(1997년 당시 5,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실무 권력을 쥐고 있는 장관급 실세에게는 1억 또는 2억 원을 주었다. 야당 쪽에 대해서는 당시 ‘DJ계의 말형’으로 통하던 권○○ 의원(5,000만 원) 외에는 아무리 실세라 해도 최대 3,000만 원을 주었다.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네거티브한(자신을 흑박지르거나 헐박하는) 정치인에게는 과징죄를 적용(?)해 오히려 액수가 더 적게 1,000만 원, 어쩔 수 없을 때는 마지못해 2,000만 원을 건넸다.

흥미로운 것은 소환대상이 된 정치인들의 거짓말 또는 변명 행태였다. 어떤 이들은 소환되기 전 신문에 이름이 나면 일단 음해다, 음모다 하면서 반발하거나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런 이들 일수록 검찰조사 후 귀가할 때는 “돈을 받기는 받았지만…”이라며 군색한 변명을 내놓기 일쑤였다.

어떤 정치인은 “내가 언제 ‘○○로부터 돈을 안 받았다’고 했느냐. ‘정○○로부터 안 받았다’고 했지”라고 해서 빈축을 샀다. 모 의원은 “(정치생활) 30년 간 정도를 걸어온 나의 명예나 정치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음모설을 제기하며 거센 반발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그의 최측근이 ○○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할 말이 없게도 됐다.

당초 내가 천명했던 그대로 33명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달리고 달려 5월 중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치인 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장관과 총장이 중수부장 통제 못한다”

정치인리스트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수사의 사령관으로서 철저하게 두 가지, 서로 연결된 원칙을 고수했다. 하나는 수사내용의 보안유지, 다른 하나는 외압(外壓)의 차단이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정치인 수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소환 대상자의 이름 혹은 혐의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면 해당 정치인은 당연히 면밀한 ‘준비와

연습’을 하고 검찰조사에 응할 것이다. 수사대상자가 이쪽에서 쥐고 있는 패를 조금이라도 미리 보고 들어오면 수사는 정말 어려워진다. 정치인 공개수사를 발표할 때, 그리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33명의 명단을 결코 한꺼번에 밝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누가, 언제 검찰에 소환될 것인지조차 알리지 않았다. 그날 소환할 정치인은 바로 그날 아침 언론 브리핑 때 공개했다.

검찰총장과 의 아침회의 때 공식 수사보고 외에는 청와대든 국회든 그 어느 곳에도 수사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사 어떤 기자가 소환될 정치인의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어디선가 미리 파악해서 질문을 해 와도 나는 결코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처럼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바람에 4월 10일부터 5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정치는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과연 어떤 쪽으로 될 것인지, 어떤 사태를 몰고 올 것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던 까닭에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도 ‘향후 일정’을 잡을 수가 없었다.

“청와대 수석들이 참모회의에서 검찰과 중수부장에 대해 성토 일색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중수부장 정도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비난이 나온다” 등등 불편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지인 등 ‘안테나’를 통해 속속 전해졌다.

장관이든 총장이든 혹은 나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봤을지도 모를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했다. 그러나 당시 ‘○○ 몸통’을 겨냥한 임무를 부여받은 수사팀으로서는 다른 쪽 사정에는 돌릴 겨를이 없었다.

“소환대상자 안 만난다”

내가 그토록 보안에 신경을 썼던 이유는, 수사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것은 반드시 외압을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정치인 한 사람을 수사한대도 모쳐 혹은 도처에서 ‘연락’이 오게 마련이다. 하물며 30여 명의 정치인을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하는데 외압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전화로 직접, 신문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지인을 통해, 기사를 통해, 검찰 내부인사를 통해 등등, 그 경로도 다양하다. 그러나 누가 됐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든 나는 외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하려 했다.

당장 검찰에 소환되는 인사들과 얼굴조차 마주하려 하지 않았다. 정당의 고위인사, 대통령 측근, 정치권 실세 등 거물급 인사들은 그 지위나 ‘얼굴’ 자체가 외압이 될 수 있다. 나와 평소 친분이 있던 법조계 출신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아예 그들과 대면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거물 정치인들이 검찰에 들어오기 전 그들을 대신한 몇몇 변호사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 와 “누구누구는 심 부장의 앞날에도 크게 도움이 될 터이니 친분도 좀 쌓아 둘 겸 중수부장실에서 먼저 면담하고 차라도 한 잔 하는 등 예우를 갖춰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부탁마저도 분명히 거절했다. 그런 전화가 몇 차례 있고 나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소환대상자는 중수부장실을 거치거나 중수부장이 따로 만나지 않겠다” 선언하고 “소환대상자는 예외 없이 검찰청사 현관에서 조사실로 곧바로 모실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이 맡겨 준 지금 중수부장이 검사의 끝’이라 믿던 나는 ‘앞날’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다.

심지어 내가 모시던 검찰총장 그리고 나와 절친한 검사 동기가 인간적인 부락을 했을 때도 나는 외압 차단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정치인 수사 과정에 문○○ 부산시장이 지역개발 건과 관련해 2억 원대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다. 돈을 받던 당시 문 시장은 부산시장에 취임하기 전이었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먼저 돈을 받고 나서 실제 당선 및 취임 이후 ○○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었다. 즉 사전수뢰(事前收賄)에 해당했다. 게다가 그때는 마침 부산에서 중대한 국제 체육행사인 동아시아대회가 개최되기 직전이기도 했다. 이래저래 문 시장에 대해서는 불구속할 만한 배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배경으로 먼저 김○○ 부산지검장이 “부산 사람들의 현지 의견”이라면서 불구속 이야기를 전해 왔다. 사법시험 동기의 부탁이었지만 나는 “액수로 보나 죄질로 보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거꾸로 그를 설득했다. 문 시장과 절친한 김 총장도 내게 대놓고 불구속 의견을 냈다.

“심 부장, 문 시장하고 내가 고등학교 동기인 거 알지?”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 동기라는 것도?”

– 예.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도...(구속할 거냐?)”

거듭 묻는 김 총장에게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물론 겉으로야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 그 미안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문시장은 결국 불구속기소됐다.

메모지 유출 사건

이처럼 보안유지다, 외압차단이다 하면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도 어쩔 수 없이 실수나 허점은 생겨난다. 정치인리스트 수사 와중에 터져 나온 ‘메모지 유출’ 사건이 그것이다.

황장엽 북한 당비서가 서울로 들어오던 4월 18일 저녁 SBS-TV의 메인 뉴스 시간에 ‘○○ 수사의 축소를 종용하는 외압 메모지가 나왔다’는 소식이 특종 보도됐다. SBS 검찰 출입기자가 입수한 그 메모지에는 ‘전(前) 경제수석과 은행장들 사법처리 안 된다. 은행장들의 경우 불구속 입건도 안 된다. 검찰도 결국 국가의 일부 아니냐. 뜻대로 하려면 검찰 수뇌부가 사표를 낸 다음에 하라. 사표 내고 혼자 스타가 되겠다는 것인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항용 말로만 떠돌다 사그라지기 십상인 외압의 실체가 그렇게 ‘현물’과 함께 뚜렷이 나타난 것은 검찰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당시 검찰의 ○○ 수사에 대해 모처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

연 누가, 왜 이 같은 압력을 가했는가, 또 이 메모가 어디서 나왔는가 등에 대해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어쨌든 이 메모의 노출 및 보도로 인해 가장 곤혹스러워진 것은 검찰, 그중에서도 우리 수사팀이었다.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예의 메모를 누가, 왜 작성했는지, 또 그것이 검찰에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밝히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거꾸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일부러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우선 그 진상 혹은 전말은 이런 것이었다.

앞서 (제2편에서) 자세히 보았던 것처럼, 이 메모는 우리 중수부의 김○○ 수사기획관이 청와대 문○○ 민정수석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것이다. 내가 ○○ 은행장들의 배임 수사를 밀어붙이던 4월 7일 저녁, 리츠 호텔에서 문 수석과 최○○ 법무부장관, 김 총장과 김 수사기획관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여기에 나 대신 참석했던 김 수사기획관이 차후 나에게 보고하기 위해 “은행장들 수사를 하지 말라”는 문 수석의 발언 내용을 꼼꼼히 메모한 것이었다. 마침 수첩을 두고 간 터여서 김 수사기획관은 그 자리에 있던 손바닥보다 작은 메모지에 일단 그 내용을 적어야 했었다.

“언론플레이 하나”

이후 김 수사기획관은 나에게 메모를 보여주고는 자기 방 문서분쇄기에 그것을 넣어 파기하려 했다. 그러나 종이가 원체 작아서 파쇄(破碎)되지 않았고, 김 수사기획관은 그것을 일단 자기 책상 위의 수첩 갈피에 끼워 두고는 잠깐 외출했다. 추측컨대 아마 그 사이에 SBS 기자가 그 방에 들렀다가 우연히 메모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던 김 수사기획관은 그날 저녁 TV 뉴스를 보다 말고는 “어, 어 저거 내 글씨인데…”라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고는 내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것이 유출된 경위나 형식이야 어쨌든 그것은 분명히 SBS가 보도한 것처럼 ‘○○ 수사의 축소를 종용한 외압’이었다.

당장 이튿날 아침부터 여기저기서 “강직한 수사도 좋지만 검찰이 그렇게까지 언론플레이를 해야 하나냐”는 의혹과 원망 섞인 소리들이 들려왔다. 언론에 대한 아침 브리핑 때도 기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집중 요구했다. 나는 “정치적 외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떠한 외압이나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결과를 보면 그런 외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고 대응했다. 사실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뒤집어 보면 이 사건은 오히려 청와대의 외압조차도 내가 얼마나 단호히 차단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정치인 수사가 가져온 두 개의 反轉

돌이켜 보면, 정치인리스트 수사를 통해 검찰은 두 가지 큰 소득이랄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먼저, 1차 수사 이후 줄곧 검찰을 비난하던 민심이 돌아섰다. 무려 30여 명의 정치인들, 그 이름만으로도 당대 권력을 상징하던 인물들이 검찰에 하나하나 소환되는 생생한 중계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검찰이 뭔가 하는구나’ 느꼈을 것이다.

실제로 정치인 수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검찰을 독려하며 따뜻한 인사치레를 담은 편지들이 우리 대검 중수부에 속속 도착했다. 한 편지에는 ‘소환된 정치인들이 ○○에서 얼마얼마를 받았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신문에 보도되는 걸 보면서 우리 검찰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쓰여 있었다. 불과 한 달여 전 ‘마피아 집단’이라고 성토되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란 칭찬을 듣게 된 것이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검찰은 실질적인 업무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씨의 사법처리에 대한 집권세력 내의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었다. 정치인리스 수사 이전,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청와대와 여당, 정부와 국정원 등 힘 있는 사람들과 기관들은 한결같이 ‘김○○ 사법 처리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그러나 33명의 정치인 수사로 적잖은 이들이 사법처리되거나 혹은 명성과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되자 ‘김○○ 때문에 아까운 정치인들 다 죽는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면서 집권세력 여기저기서 “더 이상의 희생 없이 한 큐(김○○)로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인리스 수사를 마무리한 우리 수사팀은 이제 보다 크고 강력한, 또 다른 ‘몸통’을 향해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월간 조선 11월호의 “국민검사 심○○의 수사일지” 첫 면(연재가 없을 경우에는 목차 첫 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월간 조선 9월호의 “국민검사 심○○의 수사일지 ⑨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김○○ 사건(3)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의 제목 중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와 같은 크기로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아래의 정정보도문 본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 제 목** : “문○○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월간 조선은 지난 9월호의 “국민검사 심○○의 수사일지” 기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라는 제목하에 “정치인 수사과정에 문○○ 부산시장의 지역개발건과 관련해 2억 원대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다. (중략) 먼저 돈을 받고 나서 실제 당선 및 취임이후 ○○ 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었다. 즉 사전수뢰에 해당했다. (후략)”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 전 부산시장의 위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서울지법 97고합436, 서울고법 98노193, 대법원 99도 2569)에 따르면 문○○ 전 부산시장은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건설에 특혜를 준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3심 모두 무죄판결이 났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의 목차에 <별지> 정정보도문의 제목(문○○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을 []안에 표시해 게시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300페이지~400페이지 사이에 <별지>의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김○○ 사건”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크기와 같게 한다.

이유

1. 신청이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12년 9월호의 “국민검사 심○○의 수사일지” 중 “국민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 제하의 기사를 통해 신청인이 부산시장 출마 당시 지역개발건과 관련해 ○○건설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수수해 사전수뢰에 해당돼 불구속수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지난 1999년 9월 7일 대법원이 신청인의 ○○건설 정○○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전수뢰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확정판결을 내림으로써 무죄가 밝혀진 바, 신청

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2. 판단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본 사건은 중재대상 기사의 보도된 날이 무죄판결을 받은 날 이후이므로 추후보도가 아닌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이다.

또한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산시장 출마 당시 지역개발건과 관련해 ○○건설로부터 2억 원 대의 뇌물을 수수해 사전수뢰에 해당돼 불구속수사를 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대법원 99도2569, 1999. 9. 7. 선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청인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확정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은 정정보도 등을 통해 중재대상 기사를 접했던 독자들에게 신청인의 무혐의 판결을 알려 명예회복을 도울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 대법원 판결문, 양 당사자의 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중재결정한다.

2012. 10. 15.

<별지>

1. 제 목 : ‘문○○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

2. 본 문 : 월간조선은 지난 9월호 ‘국민검사 심○○의 수사일지’ 기사에서 “정치인 수사과정에 문○○ 부산시장이 지역개발건과 관련해 ○○건설로부터 2억 원대를 뇌물을 수수해 사전수뢰에 해당돼 불구속수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대법원은 문○○ 전 부산시장이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건

설에 특혜를 준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월간조선 : 『**문○○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일자 341면)

내 용 : <중재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27

신청인 기관이 제2대 원장 취임 이후 주요보직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연구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572·1573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피신청인 : 주식회사 코리아메디케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0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제2대 원장이 취임한 후 주요보직자들이 회사를 그만둔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간부를 파면하고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등 연구원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단체는 원장 취임과 주요 간부 퇴사는 관련이 없으며 또한 연구는 차질없이 진행중이고, 연구원의 운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신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코메디닷컴 : 『주요 간부 출사표... 보건연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6일자)

내 용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 출범 3년만에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1월 26일 이○○(이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대 원장 취임 이후 주요 보직자들이 줄줄이 그만둔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장 먼저 떠난 것은 배○○ 임상성과분석실장(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난 1월말 이 원장의 자질 문제를 지적하며 사표를 냈다. 그는 “이 원장은 국가가 임상지침 개발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온 장본인”이라며 “취임 직후 본인의 보건연 운영 방침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해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임용 추천위원회에서 1위 후보에게 상당한 점수차로 2위를 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낙점한 인물”이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연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4월에는 변○○ 경영지원실장이 권고사직을 당했다. 6월에는 이○○ 의료기술분석실장이 사직했다. 그 후임인 권○○실장은 2개월만에 경북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과장 출신이 일하고 있다.

지난 8월말엔 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마저도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사직했다. 그는 허○○ 초대 원장과 함께 보건연 설립과 기반 확충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사업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근거중심 의학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해왔다. 이 전 본부장은 “이 원장이 취임할 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 다수의 무기 계약직 직원들이 2년이라는 정규직 전환 조건을 채웠음에도 보건연이 명확한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줄줄이 그만뒀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 전문가는 “보건연은 근거중심 의학 발전을 위해 어렵사리 설립된 기관”이라며 “주요 직원들이 줄줄이 그만두니 본연의 연구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이 원장 취임 이후 연구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연측은 “이 원장의 취임과 주요 연구 책임자들의 잇단 사퇴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각종 연구 과제들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산 관리 담당자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생긴 공백으로 홈페이지에 연구보고서를 제대로 게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상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데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원장이 취임 이후 공개된 연구보고서는 ‘우울증, 자살 그리고 한국사회 Round-table Conference’ (4월 22일)이 유일했었다. 이후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연구원은 지난 8월 23, 24일 11건의 연구보고서를 무더기로 홈페이지에 올렸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연구실적은 모두 지난해 완료된 것들이었다. 올해 수행된 연구의 보고서는 한 건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배○○ 전 임상성과분석실장은 “통상 연구보고서는 최종 수정일로부터 짧게는 한 달, 최대 두 달 이내에 공개해왔던 것이 관행”이라며 “올해 완료된 연구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보건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보건연은 황○○ 전 경영기획팀장을 파면했으나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연 관계자는 “황 팀장이 자신의 경력을 부풀리고 법인 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의 이유로 파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정했다. 보건연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면서 황 팀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해화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보건연은 파면을 결정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당사자인 황 팀장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코메디닷컴(<http://www.komedi.com>)의 홈페이지 뉴스홈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 목 : “주요 간부 줄사표...보건연에 무슨 일이? - 실장·본부장들 대거 사임으로 연구 차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사에서는 2012년 9월 26일 기사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제2대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주요 보직자들이 연이어 사직하여 연구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실제 올해 수행된 연구결과는 단 한건도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여 비자발적 퇴직하였고, 올해 5월 파면된 황○○ 경영기획팀장의 해고 배경에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 원장 취임 이후 퇴직한 주요보직자라 보도된 6인 중 3인이 배임·횡령 등의 비위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파면’ 등 불명예퇴직하였고, 나머지는 보직자가 아니거나 이직 등 개인희망에 따라 퇴직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올해 수행한 연구결과는 내년에 발표되며 연구 또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원장의 취임 이후 퇴직한 직원들로 인해 연구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의료기술분석실장의 보직에 보건복지부 과장 출신이 일하고 있다”, “다수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퇴직 하였다”, “연구원이 파면된 황○○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황○○을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차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본문: 코메디닷컴은 지난 9월 26일 “주요간부 줄사표... 보건연 무슨 일이” 제목의 보도에서 이 ○○ 2대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취임한 후 주요보직자들이 회사를 그만둔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비위 간부 파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거부 등과 관련한 연구원 운영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연구원이 황○○ 간부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회사를 그만둔 보직자 중 일부는 비위사실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사했고, 나머지는 이직 등 개인희망에 따라 퇴직한 것일 뿐이며, 현재 연구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 그 결과는 내년 초 연구기획관리위원회 심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계약직은 공채를 통해 정규 채용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주)코리아메디케어는 2012년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코메디닷컴 홈페이지 뉴스홈 기사목록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 (주)코리아 메디케어는 제2항과 같이 보도를 이행한 후 계약관계를 맺고있는 포털사에도 보도문이 검색되도록 전송 조치한다.

4.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들이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보도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 교수 관련 보도 해명자료를 삭제한다.

6.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2. 11. 12.

조정정립사항 이행결과

코메디닷컴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치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3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8

신청인단체가 주관하는 순수한 지역축제인 붕어찜축제를 전시성 예산낭비 및 지자체장의 표심모으기 행사라고 폄하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충북조정45·46, 2012충북조정47·48(병합) 각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붕어마을

피신청인 : 주식회사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충북충재부

접 수 일 : 2012. 11. 0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지역의 붕어찜 축제가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무료로 붕어찜을 제공하는 군수 고향마을의 표심을 겨냥한 전시성 예산낭비 행사로 지탄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순수한 지역축제이고, 제2회까지는 홍보 일환으로 붕어찜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으나, 제3회부터는 경로식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료로 판매했으며, 판매수익금 일부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다고 밝히며 반론보도와 손해배상 9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충청투데이 : 『○○ 붕어찜축제 전시·예산낭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8일자 16면)

내 용 : ○○군의 ○○붕어마을 붕어찜 축제가 전시성 예산낭비 행사로 지탄받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고향마을 표심 모으기 행사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군은 오는 20일 ○○면 한국 ○○○○연수원 잔디광장에서 ○○붕어마을 붕어찜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제4회 붕어찜축제'를 개최한다.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축제는 공식행사과 경연대회·부대행사, 상설행사로 나눠 진행한다.

상설행사로는 붕어찜요리 시연과 1,000명 분의 무료 시식회가 마련된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듯 붕어찜 요리에 들어가는 붕어가 ○○저수지에서 잡은 붕어가 아닌 전량 외지에서 구입해 들어오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붕어마을붕어찜축제위원회에 따르면 붕어찜 요리에 들어가는 붕어는 올해도 전량 인근 양식장에서 구입한다.

축제위원회 관계자는 “○○저수지에서 나오는 붕어는 없다”며 “지난해 수준의 물량을 인근 양식장에서 구입한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붕어마을 음식점들은 손님이 없어 울상인데 무슨 경로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2,000만 원씩 들여 무료로 붕어찜을 제공하고 있느냐”며 “군수 고향마을의 표심을 겨냥한 축제가 아니고 뭐냐”고 비아냥 거렸다.

주민 B씨는 “○○붕어마을을 홍보하고 농민수익을 증대시켜주기 위해서는 무료시식 행사를 지양하고 붕어마을 14개 업소에서 음식을 판매토록 해야 한다”며 “이 마을 음식점업소를 대상으로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을 통해 축제가 경쟁력있고 업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돼 치러지고 있는 ○○붕어마을붕어찜축제가 무료시식회와 이벤트성 행사로 지적되고 있어 점검이 요구된다.

②

인터넷 충청투데이 : 『○○ 붕어찜 축제 전시 · 예산낭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8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충청투데이 충북 ○○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아래의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자치단체장 고향마을 표심 모으기 행사”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 붕어찜축제 전시 · 예산낭비”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2012년 10월 18일자 16면 『“○○ 붕어찜 축제 전시 · 예산낭비”』 제목의 기사에서

○○붕어마을 붕어찜 축제가 전시성 예산낭비 행사로 지탄받고 있다며, 2,000만 원씩 들여 무료로 붕어찜을 제공, 군수 고향마을의 표심을 겨냥한 축제이고, 또한 “○○지 붕어 한 마리도 없어…”라며 허위사실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붕어마을은 ○○붕어찜축제는 전시·예산낭비성 행사나 자치단체장 표심 모으기 행사라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순수한 지역축제로서, 제2회까지는 홍보 일환으로 붕어찜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으나, 제3회부터는 경로식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료로 판매했으며, 판매수익금 일부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으며, ○○지는 붕어가 없다는 보도와는 달리 전국에서 유명한 붕어 낚시터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82,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붕어찜축제 전시·예산낭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용: 지난 10월 18일자 16면 “○○ 붕어찜 축제 전시·예산낭비” 제목의 기사에서 ○○붕어마을 붕어찜 축제가 군수 고향마을의 표심을 겨냥하여 2,000만 원씩 들여 무료로 붕어찜을 제공하는 전시성 예산낭비 행사로 지탄받고 있다고 하면서 “○○지 붕어 한 마리도 없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붕어마을은 ○○붕어찜축제는 전시·예산낭비성 행사나 자치단체장 표심 모으기 행사라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순수한 지역축제로서, 제2회까지는 홍보 일환으로 붕어찜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으나, 제3회부터는 경로식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료로 판매했으며, 판매수익금 일부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고, ○○지는 붕어가 없다는 보도와는 달리 전국에서 유명한 붕어 낚시터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투데이 2012년 11월 15일자 16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지 붕어 한 마리도…”)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인터넷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위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012. 11. 15. 09:00~11. 17. 09:00까지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활자크기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붕어찜 축제…”)과 같게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 등)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본 건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11. 1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①

충청투데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16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②

인터넷 충청투데이 : 『**[반론보도문] ○○붕어마을 붕어찜 축제**』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9

신청인이 대중가요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과 관련, 신청인이 표절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피고 김 모 씨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609·1610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진 ○ ○

피신청인 : (주)스타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1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샤방샤방’의 작곡자를 상대로 신청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전 하면서, ‘샤방샤방’ 작곡자와의 인터뷰 및 민사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일방 당사자 측의 입장만을 보도했으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 및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결과,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입장을 반영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손해배상 청구는 취하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스타뉴스 : (1) 『박현빈 ‘샤방샤방’ 작곡자 “표절? 맞고소 검토 중”(단독인터뷰)』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4일자)

내 용 : “비슷한 멜로디 하나도 없다”

트로트 가수 박현빈(29)의 히트곡 ‘샤방샤방’이 표절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샤방샤방’을 만든 작곡자 김○○(24)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입을 열었다.

김○○은 지난 13일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표절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바로 비교해서 들어보니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멜로디가 하나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현빈의 ‘샤방샤방’이 표절 논란이 휩싸인 것은 가수 진○○이 2006년 4월 발매된 자신의 곡 ‘사랑의 포로’를 2008년 7월 정규 2집 앨범 수록곡 ‘샤방샤방’이 표절했다며 김○○과 박현빈의 소속사 ○○프로덕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다. 김○○은 진○○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혐의로 피소까지 당했다.

진○○은 코드 진행, 분위기와 템포 등이 매우 흡사하다며, ‘샤방샤방’ 전체 104소절 중 1절과 2절 앞부분의 30소절이 유사하며 특히 ‘샤방샤방’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창작한 ‘샤바샤바’의 표현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표절 논란에 휘말렸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 하루빨리 저작권위원회의 판별을 통해 억울함을 벗었으면 좋겠다. 경찰 조사에서 감정을 받으려면 고소인이 300만 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돈을 안내고 버티고 있다. 자신이 정작 떼뻗하면 돈을 왜 안내겠느냐.

– 진○○은 코드 진행이나 멜로디, 가사가 유사하다고 하더라.

▶비교한 결과 놀라운 정도로 비슷한 멜로디가 하나도 없었다. ‘샤바샤바’와 ‘샤방샤방’이 비슷하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가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 고소인 진○○과는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았는지.

▶사실 고소를 당하기 전에 진○○씨로부터 먼저 연락을 왔다. 일단 만나자고 하더라. 서로 법적으로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좋게 합의를 보자고 했다. 내가 어리고 만만하니 돈을 노리고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박현빈 씨가 SBS ‘강심장’에서 ‘샤방샤방’을 고등학생이 작곡했다는 말을 듣고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 내가 합의를 안 해주니 고소를 하고 나서는 경찰서에서 슬며시 웃더라. 공동저작권자가 더 있는데 나만 고소했다. 딱 보아도 의도가 불순한지 알겠지 않은가.

–현재의 심경은.

▶대화 과정에서 정말 협박의 위협을 느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 병원도 갔었다. 이제 대학교 3학년인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처음엔 나이도 어린데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정말 그냥 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 박현빈이나 ○○프로덕션하고는 통화를 했는지.

▶○○프로덕션하고는 건너서 접촉을 했는데 그쪽도 나와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며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라.

– 법적으로 맞대응 할 계획이 있는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도 하고 있다. 나도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이름

이 거론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빨리 객관적인 감정을 받아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고소만 당해도 저작권료 지급이 우선 정지된다.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스타뉴스 : (2) 『**‘샤방샤방’ 표절의혹 제기 가수, 무고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3일자)

내 용 : 트로트 가수 박현빈의 히트곡 ‘샤방샤방’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가수 진 모 씨가 경찰에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13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 모 씨는 지난 8일 경찰서에 진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은 ‘샤방샤방’이 자신의 곡 ‘사랑의 포로’를 표절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고소인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명시했다.

진씨는 지난 2008년 7월 발매된 정규 2집 앨범 수록곡 ‘샤방샤방’이 지난 2006년 4월 발매된 자신의 곡 ‘사랑의 포로’를 표절했다며, 지난 6월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또한 김씨와 박현빈의 소속사인 ○○프로덕션을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진씨는 ‘샤방샤방’ 전체 104소절 중 1절과 2절 앞부분의 30소절이 유사하며 특히 ‘샤방샤방’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창작한 ‘샤바샤바’의 표현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당사자 조사와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 의뢰 결과, 진씨가 제기한 코드 진행, 분위기와 템포 등이 매우 다르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상 형사 사건은 종결됐으며, 현재 법원에서 민사 소송만이 진행 중인 상태다.

○○프로덕션 대표는 최근 스타뉴스와 만나 “‘샤방샤방’은 고등학교 시절 아이들과 자주 쓰던 단어들을 위주로 쓴 김씨의 순수 창작물이다”며 “감정 결과 이미 표절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왔는데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샤방샤방’은 2008년 발매된 박현빈의 2집 음반에 수록된 후 각종 음악프로그램과 버라이어티 쇼, 온라인게임, 선거로고송에 활용되며 크게 인기를 끌었다.

스타뉴스 : (3) 『**법원, 원고요청 속 ‘샤방샤방’ 표절논란 재감정 의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6일자)

내 용 :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가수 박현빈의 히트곡 ‘샤방샤방’이 표절 주장과 관련해 전문기관의 감정을 다시 받는다.

‘샤방샤방’의 저작권 소송 심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다시 의뢰하고 싶다”는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샤방샤방’의 표절 감정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수사 기관에서 한 차례 진행한 전문 감정과는 별개로 절차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하지만 같은 기관에 관련 사건을 두 번씩이나 촉탁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방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가사에 대해서는 종전에 나온 감정 결과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가락에 대해서만 의뢰를 할 지 가사도 함께 포함할지는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사성에 대한 주장도 너무 포괄적이다”며 “원고 측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면 감정 의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4일 변론기일을 속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샤방샤방’이 표절 시비가 일어난 것은 진 모 씨가 2006년 4월 발매된 자신의 곡 ‘사랑의 포로’를 2008년 7월 정규 2집 앨범 수록곡 ‘샤방샤방’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진씨는 ‘샤방샤방’ 전체 104소절 중 1절과 2절 앞부분의 30소절이 유사하며 특히 ‘샤방샤방’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창작한 ‘샤바샤바’의 표현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씨는 지난 6월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했고, 박현빈의 소속사인 ○○프로덕션과 김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샤방샤방’의 표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의뢰, 진○○이 제기한 코드 진행, 분위기와 템포 등이 매우 다르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상 형사사건을 종결했다. 현재 민사 소송만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진씨 측은 민사재판에서 “감정 결과가 편파적이었다”며 “감정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샤방샤방’은 2008년 발매된 박현빈의 2집 음반에 수록된 후 각종 음악프로그램과 버라이어티 쇼, 온라인게임, 선거로고송에 활용되며 크게 인기를 끌었다.

스타뉴스 : (4) 『**‘샤방샤방’ 작곡가 “표절누명 씹우려 악보 위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6일자)

내 용 :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수 박현빈의 히트곡 ‘샤방샤방’ 작곡가 김 모 씨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샤방샤방’의 저작권 침해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 김씨는 “피고 진 모 씨가 표절이라고 제기한 부분의 악보가 일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부에 “최근 한국음악저작권위원회의 전화를 받고 확인한 결과, 진씨가 감정기관에 제출한 ‘샤바샤바’의 악보는 실제 원곡의 음과는 다소 다르게 표시 돼 있다”며 “악보가 위조된 것은 아닌지 감정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감정기관에 제출한 악보를 일부 수정했다는 것이 김씨 측 주장. ‘샤바샤바’의 악보에 적힌 음표를 ‘샤방샤방’의 음과 비슷하게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면 향후 결과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14일 변론기일을 속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표절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2006년 4월 발매된 자신의 곡 ‘사랑의 포로’ 속 ‘샤바샤바’ 표현을 2008년 7월 박현빈의 정규 2집 앨범 수록곡 ‘샤방샤방’이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지난 6월 ‘샤방샤방’ 작곡가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했고, 박현빈의 소속사인 ○○프로덕션과 김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샤방샤방’의 표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의뢰, 진○○이 제기한 코드 진행, 분위기와 템포 등이 매우 다르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상 형사사건을 종결했다. 현재 민사 소송만이 진행 중이다.

한편 ‘샤방샤방’은 2008년 발매된 박현빈의 2집 음반에 수록된 후 각종 음악그래프와 버라이어티 쇼, 온라인게임, 선거로고송에 활용되며 크게 인기를 끌었다.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스타뉴스(<http://star.mt.co.kr>)의 홈페이지 음악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1)~(4)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 (1)~(4)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1)~(4)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1. 제 목 : ‘박현빈 ‘샤방샤방’ 작곡자 “표절? 맞고소 검토中”’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6월 14일자에 ‘박현빈 ‘샤방샤방’ 작곡자 “표절? 맞고소 검토中”’라는 제목으로 ① ‘트로트 가수 박현빈(29)의 히트곡 ‘샤방샤방’이 표절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샤방샤방’을 만든 작곡자 김○○(24)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입을 열었다. 김○○은 지난 13일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표절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바로 비교해서 들어보니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멜로디가 하나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올해 4월 초 전화상으로 김○○이 두 곡의 리듬이 같다고 인정하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 작곡 담당 교수님들께 물어보니 교수님들도 두 곡의 분위기가 똑같다고 말했으며, 또한 신청인이 “서로 법적으로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혹여 언론에 알려지면 서로 불명예스럽지 않겠느

냐”고 묻자, 김○○이 “진○○ 작가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의가 되겠냐”고 묻기에, 신청인이 “전화상으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것은 만나서 얘기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하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혀왔습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 감정을 받으려면 고소인이 300만 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자신이 정작 떼뻗하면 돈을 왜 안내겠느냐’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이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받으려 수차에 걸쳐 경찰과 저작권위원회에 돈을 내겠다고 했지만 경찰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이핑계 저핑계를 대고 상대방에 미루며 돈을 받지 않았으며 할 수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도 진행하면서 동시에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도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방송을 하여 언론에 부각되니 그제서야 서둘러 경찰에서 경찰의 수사비용으로 감정비를 냈다고 밝혀왔습니다.

③ 또한 ‘고소를 당하기 전에 진○○씨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 ‘심지어 박현빈 씨가 SBS ‘강심장’에서 ‘샤방샤방’이 고등학생이 작곡했다는 말을 듣고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 내가 합의를 안 해주니 고소를 하고 나서는 경찰서에서 슬며시 웃더라. 공동저작권자가 더 있는데 나만 고소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고소한 후 연락을 한 것이며 강심장 등의 이야기는 한 적도 없고, 현재까지 김○○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공동저작권자와 관련해서는 TV에 저작권자는 김○○으로만 나오고, 신청인이 경찰에 김○○ 이외의 다른 저작권자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라고 경찰에 얘기했지만 경찰에서도 김○○이 대표적인 저작자이므로 다른 사람은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④ ‘대화과정에서 정말 협박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은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얘기한 것일 뿐 협박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김○○의 엄마와 삼촌이 연달아 전화가 와 가만 안 둔다고 수차에 걸쳐 협박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2)>

1. 제 목 : “‘샤방샤방’ 표절의혹 제기 가수, 무고혐의 피소”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10월 13일자에서 “‘샤방샤방’ 표절의혹 제기 가수, 무고혐의 피소”라는 제목으로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 모 씨가 경찰서에 진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 의뢰 결과, 진씨가 제기한 코드 진행 진행, 분위기와 템포 등이 매우 다르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상 형사사건은 종결됐으며, 현재 법원에서 민사 소송만이 진행 중인 상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당해 감정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였고 현재 법원에서도 이러한 제반사항을 알고, 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다시하라는 명령을 한 상태이며 또한 편파적이고 일

방적인 감정을 하지 못하도록 최초 감정위원은 재감정에서 배제하도록 하였고, 감정위원의 이름을 곁고 책임을 다하라고 감정위원을 지정하여 재감정촉탁서까지 보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검찰처분에서 신청인의 고소가 무고가 아님을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고로 고소까지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3)>

- 제 목 :** ‘법원, 원고요청속 ‘사방사방’ 표절논란 재감정 의뢰’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10월 26일자에서 ‘재판부는 “동일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방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가사에 대해서는 종전에 나온 감정결과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가락에 대해서만 의의를 할지 가사도 함께 포함할지는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당해 재판부에서는 가사 정도는 재판부 자체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지, 감정 결과가 충분하여 그것이 사실이라는 말이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4)>

- 제 목 :** “‘사방사방’ 작곡가 표절누명 씌우려 악보 위조”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10월 26일자에서 “‘사방사방’ 작곡가 표절누명 씌우려 악보 위조”라는 제목으로 피고 김씨는 “피고 진 모 씨가 표절이라고 제기한 부분의 악보가 일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피고 김 모 씨가 악보를 위조해서 제출했지 신청인이 악보를 위조한 일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반론청구 - 조정성립

손배청구 - 취 하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오는 2012년 11월 30일(금)까지 [트로트 가요 ‘사방사방’ 표절 논란]에 대해 신청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기사화 해, 2012년 12월 7일(금) 9시부터 24시간 동안 <스타뉴스> 홈페이지(<http://star.mt.co.kr>)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해당 인터뷰 기사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신청인과의 인터뷰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제목 및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스타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기사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며 그 분량은 2012년 6월 14일 자 「박현빈 ‘샤방샤방’ 작곡자 “표절? 맞고소 검토 중”(단독인터뷰)」와 동일한 정도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에 언급된 신청인과의 인터뷰 기사 제목을 모든 조정대상기사들(6월 14일자 「박현빈 ‘샤방샤방’ 작곡자 “표절? 맞고소 검토 중”(단독인터뷰)」, 10월 13일자 「‘샤방샤방’ 표절 의혹 제기 가수, 무고 혐의 피소」, 10월 26일 자 「법원, 원고요청 속 ‘샤방샤방’ 표절 논란 재감정 의뢰」 및 「‘샤방샤방’ 작곡가 “표절누명 씌우려 악보위조”」 하단 ‘이 기사의 관련기사’에 게시해 제목을 누르면 제1항에 언급된 인터뷰 기사가 표시되도록 한다.

2012. 11.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스타뉴스: 『진○○ “‘샤방샤방’ 유사성, 우연일치라 보기 어려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7일자)

내 용: 가수 겸 작곡가 진○○(본명 진○○)이 박현빈의 히트곡 ‘샤방샤방’ 작사 작곡가 김 모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배경 및 현재 심경 등을 직접 밝혔다.

진○○은 지난 2월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 지난 2006년 5월 자신이 작사 작곡해 발표한 1집 수록곡 ‘사랑의 포로’를 김씨가 만든 ‘샤방샤방’이 가사 표현, 코드 진행, 템포, 곡 전체 분위기 등 여러 부분에서 표절했다는 이유에서다. 진○○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김씨와 박현빈 소속사 ○○기획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 소송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등을 바탕으로 지난 9월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도 10월12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감정 결과가 타당해보인다”며 원고인 진○○에 소송 취하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서 진○○측의 재감정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재감정 뒤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시 할 예정이다. 이 사이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씨는 경찰에 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샤방샤방’의 표절 논란과 관련, 진○○은 최근 스타뉴스와 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재감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감정 결과가 왔으면 한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 ‘샤방샤방’에 대한 소송 제기 이유는.

▶ 소송 이유는 사실 다른 것은 없다. 내가 만든 노래(사랑의 포로)를 표절했다고 생각한 작품(샤방샤방)이 부각되고 또 잊을 만 하면 방송에 나와 신경을 건드렸다.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그런 게 좀 컸다. ‘사랑의 포로’는 정말 공을 들여 만든 작품인데 곡만 뺏기고 활동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만 활동 등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고소를 한 이유도 악의적이었던 게 아니다. ‘샤방샤방’을 만든 김씨를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를 했던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을 당하기 전에는 그쪽 입장들도 있었을텐데 제가 고소한 게 선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고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무고와 명예훼손을 당해 실제로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니 그런 마음이 싹 가시더라.

‘샤방샤방’ 작곡가 김씨와는 언제 처음 연락이 닿았나.

▶저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사랑의 포로’와 ‘샤방샤방’이 흡사하다고 느껴 김씨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지난 2008년 4월께 처음 문의했다. 그랬더니 원칙상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해 일단 음저협에 제 연락처를 남겨 놓았다. 이후 두 달이 지난 2008년 6월이 되어서야 김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첫 통화에서 김씨에게 제가 가사나 곡의 리듬 구성 분위기 등이 유사하지 않느냐, 누가 봐도 문제가 아니냐, 제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차근차근 이야기 했다. 그랬더니 김씨는 자기 주변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했다. 또 자신은 며칠 후에 곧 군대를 간다고 했다. 문제 해결도 안한 상황에서 이해가 안 갔다. 이후에는 김씨와 연락이 안됐다. 제가 유추를 해보니 군대에 갔던 것 같다.

이후 지난 4년 사이 저도 힘든 일이 있었다. 또 당사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소송은 아예 생각도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어려운 일이 끝났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 초까지 온 것 같다. 올 초에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해결을 짓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씨와는 연락이 안 돼 올 2월에 음저협에 다시 연락을 한 뒤 제가 포기를 하든 그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든 해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음저협에서는 다시 한 번 원칙상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며 인터넷을 검색하면 혹시 김씨의 연락처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란 말을 해줬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느 실용음악학원 사이트에 김씨의 전화번호가 있었고 올 4월 초에 제가 전화를 걸어 김씨와 통화를 했다. 그 때 김씨는 4년 전에 저와 통화한 뒤 자신과 ○○기획과 그 사안에 대해 검토했고 모두 문제없다고 판단돼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김씨와 통화하거나 직접 만난 적은 없다.

– 현재 심정은.

▶저는 김씨를 헐박하거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갖고 있던 증거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

제가 첫 감정 때 감정료 300만 원을 안내고 버텼다는 김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월 초에 감정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감정 받기 위해서 300만 원을 내겠다고 경찰에 말했다. 그랬더니 이 건은 저작권위원회에 내야하는 거라고 했다. 이후 저작권위원회에 내겠다고 했더니 그 쪽에서는 경찰에 내야 한다고 했다. 서로 미뤄 진척이 안됐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 감정이 진척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문의했고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하면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진행하게 돼 감정료 낼 곳도 정해진다고 했다. 그래서 곧바로 감정료를 냈다.

김씨가 합의를 안 해주니 제가 경찰서에서 슬며시 웃었다라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저는 김씨를 경찰서에서 만난 적도 없을 뿐더러, 김씨가 설령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을지라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면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 내려 한 번, 이후 자료 내려 한 번 총 2번 갔을 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료를 내려 갔을 때는 담당 경찰이 휴무일이라 동료 경찰에게 자료를 주고 왔는데, 제가 경찰서에서 합의를 안 해주니 웃었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가장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외에 박현빈씨가 SBS ‘강심장’에서 ‘사방사방’이 고등학생이 작곡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표절 생각을 했다는 말, 제가 악보를 위조했다는 김씨의 말들 모두 사실이 아니다. 저는 4월 초 김씨와 통화 뒤 2달 정도 있다 ‘강심장’을 인터넷에서 봤다. 이런 주장들을 보면서 명예훼손도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또 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했던 말 중 재감정과 관련 “가락에 대해서만 의뢰를 할지 가사도 함께 포함할지는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가사 정도는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지, 가사가 표절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 계획은.

▶저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이제 저 혼자의 의사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쪽 입장도 있으니 모든 것은 재감정서에 달려 있는 것 같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재감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감정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사례30

학교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이 도리어 학우들에게 흉기나 하키채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일삼았으며, 신청인의 가족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부산조정41·42·43, 2012부산조정44·45·46(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주)광역매일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2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에서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전하면서 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이 서울에서 전학온 첫날부터 학우들에게 흉기를 집어던져 오히려 일부 학생들이 폭력을 당했고, 신청인이 다른 학생을 하키채 등으로 때리고, 심지어 연필로 이마를 찔렀다는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보도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병력 등 확인되지 않은 신상을 공개한 사실이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본인임에도 학우들을 폭행한 가해자로 잘못 보도되었으며, 개인 병력 등 신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비롯해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으나 피신청인이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개인 병력 등 신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보도를 게재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울산광역매일 : 『**피해자·가해자 폭력사건 두고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1면)

내 용 : 울산 ○○군의 한 초등학교에 전학 온 학생이 2개월 동안 학우들에게 집단폭행 등을 당한 것과 관련, 피해 학생 가족이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토록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울산시 교육청과 해당학교 등에 따르면 A군은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적응하

지 못해 지난 8월 27일께 울산 울주군의 모 초등학교로 전학 왔다.

피해 학생 A군은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4학년 중반까지 다니다가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해 내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내과 의사가 정신과 치료를 권해, 정신과 의사는 자연생태 공원이 있는 시골로 가서 병을 치료를 권장해 대안학교에서 다니던 중 지난 8월 27일 이 학교로 전학왔다는 학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서 전학 온 A군(11·4년)은 지난 8월 말경부터 같은 학급 남학생 7명으로부터 복부, 머리를 발로 차이고 뺨을 맞는 등 매일같이 욕설과 폭력에 시달려왔다는 것.

이에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A군의 가족(남·2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50분께(4교시) 수업을 받고 있던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A군 맞은 거 본 사람, A군에게 한대로 당하게 해주겠다. 거짓말하면 콩밥을 먹이겠다. 밖에 경찰차가 와있다”며 “A군이 맞은 것을 쓰라”고 A4용지를 학생들에게 배부, 작성토록 강요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가족이 학교 측에다 연락도 없이 4학년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시간에 건장한 남성 2명이 교실에 들어와 “거짓말하면 콩밥을 먹이겠다. 밖에 경찰차가 와있다” 등 어린 초등생들의 볼모로 진술서 작성토록 강요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생들은 공포 속에서 울면서 진술서를 작성했고, 또한 담임교사(여·59) 역시 몸을 떨며 위협을 느낀 교사는 진술서 작성 후 해당학교 교감에게 보고한 후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모자를 눌러쓴 남자 1명과 A군의 형이 다리를 빼딴한 자세로 쏙고 있는 상태라 교사는 제지했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족은 지난달 26일 학생들을 볼모로 작성한 진술서를 정리해 28일 한 포털 사이트에 “집단 폭력에 인생이 꺾인 동생을 도와주세요. 집단폭력피해로 정신장애증상 … 모든 걸 알면서도 묵인한 교사”라며 인터넷에 해당학교 ‘실명’과 ‘학급 반’까지 유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밀착 취재한 결과 피해학생 A군은 지난 8월 27일 서울서 울산으로 전학 온 첫 날부터 학우들에게 뽀족한 ‘젠가’ 등의 도구로 집어 던져 일부 학생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이 전학 온 날부터 ‘젠가’ 등의 도구로 폭력과 욕설을 일삼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달래고 A군의 행동에 참아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가해학생 B군을 하키채 등의 도구로 때리고 욕설은 기본이며 심지어 연필로 이마를 찌르는 등 초등학생 4학년 보기에 드문 도구 등을 이용해 폭력을 일삼아, 일부 학부모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B군은 A군한테 폭행을 당하다가 넘어져 반대편 벽에 부딪쳐 머리가 들기까지 했다.

심지어 한 학생은 A군의 폭행으로 “무서워 학교를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을 학부모가 “지금 A군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학교에 오지 않아 ‘좋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학생은 A군이 휘두른 하키채의 도구에 맞아 지금까지 오른쪽 아래 다리부분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학생 C군의 경우 체조 후 시합할 때 D군이 floor ball채를 가지고 왔는데 경기 도중 A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C군을 폭행하고 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 학급 일부 학생들에게 젠가와 하키채 · 연필 등의 흉기로 학우에게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전해져, 일부 가해 학부모가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처럼 일부 학생들은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A군도 피해자 이전에 가해학생들 또한 피해자라며, 원인제공은 A군이 도구를 이용해 폭력이 시작된 점에서 볼거져 A군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제2, 3의 가 · 피해학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 학생안전 강화학교로 선정돼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현관문과 각 출입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이번 사태로 외부인이 수업 중에 침입하는 등 당초 사업 취지에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학교폭력 등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업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해학생의 한 학부모는 “평상시에 활발한 아이가 이번 사건 이후 예전에 비해 폭식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호소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가 · 피해자가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향후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철저히 해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②

인터넷 울산광역시매일 : 『**피해자 · 가해자 폭력사건 두고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4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울산광역시매일 1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인 “피해자 · 가해자 폭력사건 두고 진실공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 울산광역시매일 홈페이지 초기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클릭하면 전문이 나타나도록 한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48시간 동안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저장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토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 목 : ‘피해자 · 가해자 폭력사건 두고 진실공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5일자 1면에 “피해자 · 가해자 폭력사건 두고 진실공방”이라는 제목으로 울산 ○○군의 한 초등학교의 폭력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피해학생 가족이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볼모로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면서 “A군 맞은 거 본 사람, A군에게 한대로 당하게 해 주겠다. 거짓말 하면 콩밥을 먹이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가족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A군은 지난 8월 27일 서울시 울산으로 전학 온 첫 날부터 학우들에게 흥기를 집어 던져 일부 학생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했고, A군이 가해학생 B군을 하키채 등의 도구로 때리고 욕설은 기본이며 심지어 연필로 이마를 찔렀다는 등의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군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집단으로 맞은 것은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체육시간의 하키채 폭행 이야기는 체육선생님도 사실을 모르는 일이며, A군과 같은 반 친구의 한 학부모께서 피해학생의 집에 찾아와 이런 기사를 보고 자신의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A군이 가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필로 아이들을 찌르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A군이 전학 온 날부터 폭력과 욕설을 일삼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을 달래고 A군의 행동을 참아왔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A군의 부모는 해당 담임교사는 A군이 가해학생들에게 맞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A군이 피해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A군이 폭력을 일삼는 문제아인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사과문>

나. 부제목 : - 울산 초등학교 A군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다. 본 문 : 저희 울산광역매일은 지난 11월 5일자 1면 “피해자 · 가해자 폭력사건 두고 진실공방”이라는 제목으로 울산 ○○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다루면서, 미성년자인 A군의 개인 신상(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본인 및 가족에게 확인하지 않고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큰 피해를 입으신 A군과 A군의 가족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을 표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울산광역매일 2012. 12. 6.자 1면에 2단 상자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부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전학 온 초등생 집단폭행...)과 같은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2012년 12월 6일 9시부터 72시간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울산광역매일 홈페이지(<http://www.kyilbo.com>)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HOT 코너 바로 밑)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에 넣어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전체 내용이 뜨도록 하고, 제목, 부제목 및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부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한다.

4.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일자, 게재조건, 활자크기 등)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 및 해당 일자의 PDF 기사, 포털사이트에 매개된 모든 조정대상 기사를 2012년 12월 6일 9시 이전에 삭제 조치한다.

6.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인 송○○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12.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조정대상보도 삭제, 사과보도,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①

울산광역시매일 : 『**울산 초등학교 A군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1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②

인터넷 울산광역시매일 : 『**[사과문] 울산 초등학교 A군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탈런트인 신청인이 호화 전원주택에서 직원들을 포함한 20여명과 함께 거주하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셔틀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685 · 1686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2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유명 연예인인 신청인이 양평에 180평에 이르는 초호화 전원주택을 짓고 직원들을 포함, 20여 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위한 셔틀버스도 따로 운행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위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보도를 게재한 MBC를 대상으로 정정 · 손해청구(2012서울조정1687 · 1688)하였고, 1차 조정심리 전 양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 '부모와 경비원까지... 20명 이상 대가족? 이○○ 부부, 셔틀버스까지 운영?'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6일자 09:50)

내 용 : ▷ 리포터 : 그런가하면 올 봄 이○○씨 부부가 경기도 양평에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씨가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이 전원주택을 지었다고 합니다.

▷ 기자 : 저 뒷집이 이○○씨 집이라는데.

▷ 주민 : 네. 맞습니다.

▷ 기자 : 이○○씨 보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 주민 : 많이 봤죠. 옆집이니까. 집지을 때부터... 쌍둥이를 낳았는데 개들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어서 집을 지었노라 처음에 말뚝 박을 때부터 와서 이야기를 했죠.

▷ 기자 : 맨 처음 시공 들어간 게 언제였어요?

▷ 주민 : 시공이 작년 10월 초였어요. 우리랑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저거 150평 넘을 텐데... 거의 180평 될걸.

▷ 기자 : 요즘도 자주 오시나요?

▷ 주민 : 여기서 살죠. 무슨 소리야 지금 ... 여기 와서 살죠. 전부.

▷ 기자 : 이미 이○○씨 가족이 한 달 전쯤에 이사를 들어와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주민. 쌍둥이를 키우는 이○○씨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고 하네요.

▷ 기자 : 이○○의 가족만 살고 있는지?

▷ 주민 : 내가 볼 땐 대가족이야. 무슨 집을 저렇게 크게 짓나 했더니 대단하더라고요. 경비원이라든가. 보모들 ... 쌍둥이 보모가 두 명인가 되고, 한 20명 사는것 같아요. 셔틀버스 운영하다시피 출퇴근하고 있나 봐요.

▷ 기자 : 이 집에서요?

▷ 주민 : 네 이 집에서. 일사불란하게 셔틀버스도 운영하는거 같고 우리 아내가 7시에 차 타고 나가는데, 셔틀버스가 같은 시간에 나가고 ... 쌍둥이도 보모들이 항상 전통식으로 사랑 주면서 키우더라고요.

▷ 기자 : 쌍둥이 키우면서 잘 지내는 거네요?

▷ 주민 : 그럼요. 저렇게 키우는 사람이 없는데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같은 부모로서 존경합니다. 양육자제부터. 나중에 같이 집들이하기로 했는데 갔다 와서 이야기해줄게요.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MBC의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이○○ 초호화 전원주택’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또는 ‘이○○ 초호화 전원주택’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26일에 이○○ 씨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이○○ 씨가 건평만 180평에 이르는 초호화 전원주택에서 직원들을 포함한 20여명과 함께 거주하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셔틀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씨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의 요양과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

하여 대지 구입대금, 공사비용 등 총 9억 원의 비용을 들여 2층의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초호화 전원주택이라고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은 이○○ 씨의 전원주택에 직원들을 포함하여 2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고, 이○○ 씨는 현재 촬영장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크라이슬러 미니밴 차량(시가 3,500만 원 상당)과 기아 모하비 SUV 차량(시가 2,5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을 뿐, 직원들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이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방송을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MBC-TV :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 '1532회'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4일자 09:50)

내 용 : 2012. 11. 26. 방송한 <기분좋은 날 - 연예플러스> 프로그램에서, 이○○ 씨가 약 595㎡ (180평)에 이르는 전원주택에서 직원들을 포함한 20여 명과 함께 거주하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인터뷰를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장면은 인근 주민의 추측에 따른 인터뷰였을 뿐,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문화방송은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내용만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사례 32

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 후보와 인사를 나누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477, 2012서울조정478(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이데일리 주식회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2. 04. 0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4·11 총선 승부처로 김해 을을 다루면서 신청인이 김해 을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태호 새누리당 후보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진이 찍힐 당시 촬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신문에 사진이 게재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나 주위의 오해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에 자동소제기가 되었으나, 피신청인이 2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자 신청인은 소송을 취하하였다.
- 한편, 신청인은 인터넷 이데일리로부터 동일한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버(2012서울조정479), 모네타뉴스(2012서울조정480)에도 각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네이버와 모네타뉴스 모두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각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제도

①

이데일리 : 『“경륜 보고 뽑아야제” vs “새누리 안 좋아해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일자 2면)

내 용: 두 차례 도지사 경력과 함께 끈끈한 스킨십으로 밀바닥 민심을 파고 드는 김태호(49)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으로 겸손함을 갖춘 성실함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김경수(44) 후보가 경남 김해 읍에서 팽팽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김해는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진영읍 봉하마을을 끼고 있어 ‘상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낙동강 벨트’와 맞닿아 있어 전략적 거점이다. 부산·경남(PK) 지역의 총선 승패가 12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2일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김해 ○○ 스포츠센터에서 만난 김태호 후보는 이장협의회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넸다. 그는 “욕됩니다. 식사는 하셨습니다”라고 친숙함을 드러내며 ‘눈높이 유세’를 이어갔다. ○○면 주민인 강○○(62)씨는 “김 후보는 경륜도 있고, 인사성도 바른기라. 내는 이번에 꼭 김후보 찍을란다”라고 말했다.



‘경남의 아들, 김해의 일꾼’이라는 선거 구호를 사용하는 김 후보는 힘있는 지역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 차례 경남도지사를 지냈을 만큼 풍부한 국정 운영 경험을 갖췄고, 지난해 4월의 김해 읍 국회의원 재보궐에서 당선돼 현역 의원으로서의 이점도 지니고 있다.

김 후보는 “김해는 야당 성향이 강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도 많아 결코 쉽지 않은 곳”이라며 “하지만 지역 주민은 여야를 떠나 일 잘하는 지역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같은 날 오전 10시쯤 김경수 후보는 대형할인점 롯데마트 장유점에서 열린 노래교실에 참석, 주부들과 율동을 섞어가며 애창곡인 ‘무조건’을 열창했다. 투표일을 채 열흘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스스로 없이 다가가기 위해 직접 마이크를 들었다.

김 후보는 “노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가 녹아있는 김해를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해에서 풀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주통합당 소속인) 김해시장·경남도지사와 함께 열심히 일 할 후보를 뽑아달라. 대통령 옆에서 배운 대로 똑박똑박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선거 명함과 어깨띠는 ‘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김 후

보는 ‘정치를 바꿔라. 김해를 바꿔라’를 선거 구호로 내세우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책임자로 자처하고 있다.

주민 김○○(25)씨는 “또래 가운데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취업도 안되고, 경제 살리기에다 실패한 현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 올 여론조사 결과는 앞치락뒤치락하며 ‘오리무중’ 판세를 보이고 있다. 최종 결과는 선거날까지 가봐야 한다는 평가다. KBS 조사결과는 김태호 후보(42.9%)가 김경수 후보(34.9%)를 큰 차이로 앞섰으며, MBC와 리얼미터의 조사는 김경수 후보(46.0%)가 김태호 후보(42.7%)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인터넷 이데일리 : 『4·11 총선 승부처(12) 김해 올 김태호 대 김경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05. 0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기되었다가, 피신청인이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소송이 취하됨



사례 33

교정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673·674, 2012서울조정675·676(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강 ○ ○, 2. 장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매일방송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2. 05. 0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교정직 9급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문제점과 공무원 선발의 투명성이 의심된다고 전하면서 수험생들과의 인터뷰 장면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해당 인터뷰 장면은 1년여 전에 촬영된 것으로 교정직 공무원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 자신들은 교정직 시험을 준비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교정직 경력시험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 한 것처럼 피신청인이 편집,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각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 MBN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들에게 각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인터넷 MBN으로부터 동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버(2012서울조정677·678), 네이트(2012서울조정679·680), 다음(2012서울조정681·682)을 대상으로도 조정을 신청했고, 심리결과 네이버, 네이트와 다음의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MBN: 「MBN 뉴스8」 프로그램 ‘이상한 경력 경쟁’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20:00)

내 용 : ▷ 앵커: 일반적으로 경력직 채용이라고 하면, 특정 분야의 경력이나 학력 또는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경력도 없이, 더구나 시험을 덜 치르고도 똑같은 9급 공무원에 채용될 수 있는 이상한 시험이 있습니다. 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 9일 공고된 교정직 9급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입니다. 임상심리사와 간호사, 중국어 우수자와 함께 일반직도 141명을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심리사나 간호사 면허증 등의 자격요건과 달리 일반직은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20살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월 공고된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계획입니다. 역시 학력과 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다

만, 경력경쟁은 형사소송법과 교정학, 9급 공채는 여기에서 국어와 영어, 한국사 3과목을 더 봐야 합니다. 경력이 없어도 경력경쟁에 응시할 수 있고, 오히려 9급 공채보다 시험 부담도 덜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당연히 경력경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교정직 9급 공채 경쟁률은 17대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한 지방교정청 경력공채, 즉 특채 경쟁률은 무려 91대1에 달했습니다. 9급 공채 수험생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 교정직 9급 공채 수험생 인터뷰 : “진짜 2년, 3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그 기간뿐만 아니라 거기서 드는 허탈감이 굉장히 정말 큼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한 교도소에 두 시험의 차이점을 물어봤지만, 똑같은 답만 돌아옵니다.

▷ ○○지방교정청 교도소 관계자 인터뷰 : “(일반 경력이나 9급 공채나 똑같은 거 아닌가?) 9급 공채 같은 경우는 5과목을 쳐야 하고요, 이거는 2과목만 치면 됩니다.”

더구나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9급 공채와 달리 경력경쟁은 출제 문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력 없이, 시험을 덜 치르고도 똑같은 9급 교도관이 될 수 있는 이상한 경력경쟁, 공무원 선발의 투명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같○○입니다.



②

인터넷 MBN : 『**‘경력 없는’ 경력시험…이상한 공무원 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을 MBN-TV <MBN 뉴스8>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 (1)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MBN(<http://www.mbn.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2)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1. 제 목 : ‘경력 없는 경력시험…이상한 공무원 선발’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23일 뉴스프로그램에서 “‘경력 없는’ 경력시험…이상한 공무원 선발”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중 교정직 공무원 공채 수험생의 인터뷰를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영상취재하고 삽입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터뷰는 과거 1년 전 위 보도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의 인터뷰의 미방송분을 마치 위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영상취재한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하여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인터뷰 내용임을 밝힙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2)>

1. 제 목 : ‘경력 없는 경력시험…이상한 공무원 선발’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5일자 사회면에 “‘경력 없는’ 경력시험…이상한 공무원 선발”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중 교정직 공무원 공채 수험생의 인터뷰를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영상취재하고 삽입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터뷰는 과거 1년 전 위 보도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의 인터뷰의 미방송분을 마치 위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영상취재한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하여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인터뷰 내용임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1.과 신청인2.에게 각각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경력 없는 경력시험…이상한 공무원 선발’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25일자 사회면에 “경력 없는 경력시험…이상한 공무원 선발”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중 교정직 공무원 공채 수험생의 인터뷰를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영상 취재하고 삽입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터뷰는 과거 1년 전 위 보도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의 인터뷰의 미방송분을 마치 위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영상취재한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하여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인터뷰 내용임을 밝힙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6월 8일 이내에 MBN(<http://www.mbn.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위 1항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1항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2012년 6월 8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각각 일백만 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1~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5. 1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인터넷 MBN에 정정보도, 손해배상금 각 100만 원 지급

인터넷 MBN : 『**경력 없는 경력시험… 이상한 공무원 선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7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34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직원인 신청인이 은행고객을 안심시키는 장면을 동의 없이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710, 2012서울조정711(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2. 05. 15.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저축은행 영업장 장면을 촬영, 보도하였는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직원인 신청인의 초상(신청인을 포함한 저축은행 직원들이 고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을 약 3초간 방송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방송사 취재 당시, 촬영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안면 등이 모자이크 등의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초상이 공개된 탓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직원인 점이 지인 등 주위에 알려지게 되어 고객들로부터 시비나 분풀이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초상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의 피해 정도나 보호가치가 보도의 공익성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①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저축銀 계열사 예금인출 줄었다'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7일자 21:00)

내 용 : ▷ 앵커 : 어제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후 첫 영업일인 오늘, 다행히 우려했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는 없었습니다. 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어제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의 계열이어서 불똥이 우려된 서울의 한 저축은행. 아침 9시

문을 열자 수십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부는 예금을 해약했습니다.

▷ 저축은행 예금자 : “불안하게 사느니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려고...”

▷ 기자 : 하지만 대부분은 은행 창구의 분위기를 살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자 : “(오늘 인출 안 하셨어요?)” “인출 안했어요.” “(그러면 불안해서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나왔어요.”

▷ 기자 : 많은 사람들은 5천만 원 이하 예금은 법으로 보호되고, 중간에 해약하면 약정된 이자를 못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발길을 집으로 돌렸습니다. 예금 인출은 오후 들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개 계열 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모두 4백억 원. 영업정지 발표 전인 지난 금요일 인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 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예금인출 사태는 완전히 진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 한 때 영업정지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한 대형 저축은행은 오늘 오히려 예금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는 오는 10일부터 가급급금을 지급한다는 설명회가 차분하게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MBC뉴스 서○○입니다.

②

iMBC : 『저축銀 계열사 예금인출 줄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7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주) 문화방송은 MBC-TV 2012. 5. 7. 21:00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계열사 예금인출 줄었다’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의 4개 저축 은행 영업정지 발표 이후 첫 영업일인 2012. 5. 7.의 저축은행 영업장의 상황을 관련 화면과 함께 보도(이하 ‘이 사건보도’라 한다)하였고, 피신청인 (주)아이엠비씨는 아이엠비씨의 뉴스홈페이지(<http://imnews.imbc.com>)를 통하여 ‘저축銀 계열사 예금인출 줄었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보도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나. 피신청인 (주) 문화방송은 이 사건보도에서 저축은행 영업장 장면을 촬영, 보도하였는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직원인 신청인의 초상(신청인을 포함한 저축은행 직원들이 고객들을 안내하는 모습)은 보도분량 총 1분 33초 중 후반부의 ‘어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는 오는 10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는 설명회가 차분하게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6, 70대 노인들이었습니다.’라는 기자멘트와 함께 약 3초간 노출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 문화방송의 취재 당시, 촬영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안면 등이 모자이크 등의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초상이 공개된 탓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직원인 점이 지인 등 주위에 알려지게 되고, 고객들로부터 시비나 분풀이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0. 제5조 (인격권 보장 등)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

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0. 제18조(조정신청)

②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0.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나. 초상권의 침해 여부

1)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해 살펴건대, 신청인의 초상이 비교적 짧은 시간이나마 방송에 노출된 점은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조정신청서의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촬영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나 명시적으로 촬영 및 공표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 판단되나, 이 사건보도의 주된 내용

이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게 된 예금자들의 대응과 축은행 등의 후속조치 등을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서 공익 목적이 있고, 초상이 노출된 해당 화면이 저축은행 영업장을 단순 촬영한 것일 뿐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비록 신청인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직원임이 지인들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피해의 정도와 피해 이익의 보호가치가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장면을 촬영, 방영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012. 05. 25.



사례 35

무분별한 음주문화 실태를 방영하면서, 지하철에서 잠이 든 신청인을 무단으로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976 손해청구

신 청 인 : 안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2. 06. 2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음주폭력에 관해 보도하면서 술로 인해 인사불성이 된 지하철 승객의 모습으로 지하철에서 잠들어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방송에 내보낸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취재 당시에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고 해당 영상의 방송 보도에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보도는 '주폭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음주 후의 폭력성 등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러한 내용의 방송에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신청인의 모습을 방영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도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KBS-2TV : 「VJ특공대」 프로그램 '622회 - 실태보고! 주폭과의 전쟁'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2일자 21:50)

내 용 : ▷ 리포트 : 그만큼 술로 얼룩진 현장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매일 취객과의 전쟁을 치룬다는 서울의 한 지하철 역.

▷ 녹취 : “일어나세요”

▷ 리포트 : 밤 열한시가 넘으면 자기 집 안방인양 객차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 하느라 역무원들 진땀을



뻔다.

- ▷ 녹취 : “내리세요! 종착역이에요. 내리세요.”
- ▷ 리포트 : 인사불성 취객들 그나마 순순히 따라주면 고마운 일.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 후 경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함



사례 36

음악적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자녀 선발을 위한 오디션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충북조정31, 2012충북조정32(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충청리뷰사, 2. 주식회사 충북인뉴스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12. 05. 2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청주 음악인들이 재능기부단체에서 재능있는 저소득가정 아이를 선발하기 위한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하여 게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되었고 그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피신청인들에게 각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각 5십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충청리뷰: 『**꿈과 열정 있는 아이들 모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4일자 B2면)

내 용 : ‘꿈과 열정이 있는 아이들 모두 모여라’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단체 ○○○은 말 그대로 ‘나눠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뜻한다.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음악인들이 모여 올해 1월 창립총회를 가졌다. 앞으로 미술인들의 참여도 확대해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단체로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바로 이 ○○○이 지난 3월 출범식에 이어 4월 오리엔테이션까지 가졌다. 꿈을 펼치고 싶어하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 32명의 신청서를 받은뒤 청주를 6대 권역으로 나눠 5~7명씩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다. 꿈과 열정, 재능있는 아이들을 선발해 피아노, 성악, 현악기(바이올린·첼로), 관악기(플루트),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다.

멘토로 선정되는 꿈나무는 앞으로 멘토로부터 무료로 지도를 받게 된다. 지난달 29일 ○○동의 한

학원을 찾았을 때에도 주말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레슨 오디션을 받기 위해 초중학생 5명이 어머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은 재능기부단체 ○○○을 총괄기획한 임○○(임○○ 피아노 학원장) 실장이 피아노 레슨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친목모임이 정식기부단체로 성장

러시아상트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증평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 실장은 청주에서 젊은 음악인들로 구성된 라포르짜 오페라단을 총괄기획하기도 했다. ○○○은 지난해 10월 예술인들의 친목모임으로 첫 출발을 했다. 본래 청주보호관찰소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음악치료, 재능기부도 해 왔다.



그러다 청주아동복지관을 만나면 서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1대1 맞춤형 음악 레슨을 기획하게 됐다. ○○○ 회원은 등록된 음악인만 53명에 이른다. 이들은 앞으로 재능기부를 받겠다고 신청한 32명의 오디션을 진행해 재능과 열정이 보이는 멘티들을 선정한 뒤 멘토가 되어 개인레슨을 하게 된다.

○○○ 임○○ 실장은 “이번에 진행되는 오디션은 재능있는 멘티를 선정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열정이 있는 학생을 면접을 통해 가려내는 것이다”며 “○○○ 선생님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음악공부를 한 자신의 경험에 비쳐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어 꿈을 펼치지 못하는 후학을 양성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악기 사주려 자선음악회 계획

○○○의 앞으로 계획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멘티들에게 가을 전에 악기를 사주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여는 것이다. 또 올해가 가기 전에 겨울에는 멘티들이 ○○○ 후원을 해주고 있는 운영진과 부모들을 모셔놓고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음악회도 계획하고 있다. 임 실장은 “꿈과 열정이 있는 멘티를 선정하기 위해 일일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락없이 오디션에 빠지거나 음악레슨에 빠지는 학생들도 제명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학원에 다녔던 아이들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전제 아래 무료레슨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며 “○○○ 재능 기부는 1년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다만 ○○○ 재능기부단체가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라가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최소의 경비를 받고 개인레슨도 할 예정이다. 이는 더 많은 멘티들에게 재능기부도 하고 음악인들의 최소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 실장은 “기왕이면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단체 ○○○의 활동이 많이 전파되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기업인들이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악기 등을 후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 같은 후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멘티들의 실력을 끌어 올려 각종 자선음악회를 여는 기회를 앞당길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②

충북인뉴스 : 『꿈과 열정 있는 아이들 모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2012년 7월 31일까지 각 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임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7.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각 50만 원 지급



사례 37

백화점 장기 세일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물건을 구경하는 신청인들(예비 신랑신부)의 모습을 몰래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중재26 손배청구

신 청 인 : 1. 이 ○ ○, 2.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인터넷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2. 02. 03.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영가판매를 하고 있는 백화점 판매대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신청인들의 상반신 초상을 게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사진이 촬영·게재됨에 따라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고 보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2012서울조정975)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 전에 양 당사자가 관련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들에게 각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하였다.

중재대상보도

인터넷 서울경제 : 『대한민국은 지금 세일중』 백화점 역대 최장기 세일…마트도 50% · 최저가 할인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4일자)

내 용 : 백화점 · 대형마트 · TV홈쇼핑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사실상 ‘연중 세일’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신장세를 기록한 마트 업계에서는 가격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백화점 식 ‘세일 판매’가 보편화됐다. ‘상시 저가’를



앞세운 마트는 ‘세일’ 문구의 사용 자체를 극히 꺼려왔지만 이달 들어 반값 세일마저 일상화된 것.

롯데마트는 다음달 4일까지 총 400여개 인기 품목의 가격을 최대 반값까지 내리는 할인전을 2주간 진행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 5월 할인가용 사용 비중이 30%로 지난해보다 2배나 늘어나는 등 가격인하 상품에만 고객이 몰려 시장점유율 1~2위 상품만 골라 유례없는 할인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도 개당 700원인 초밥을 400원으로 일시 할인하는 등 전매장을 ‘50%’ ‘1+1’ ‘최저가’ 등으로 도배한 사실상의 할인전을 6~13일 진행했다.

연 4회 세일을 정례화하는 백화점도 5월부터 시작된 일부 브랜드 세일이 오는 7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부터 정기세일에 앞서 7일간의 ‘브랜드 세일’에 돌입한 백화점들은 통상 7월 중순 마무리해온 세일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로 2배가량 연장해 총 38일이라는 역대 최장기 세일전에 나선다. 수입 고가 브랜드의 경우 6월 정기 세일에 앞서 ‘노세일 시즌’으로 꼽히는 5월부터 할인에 돌입하는 브랜드가 속출했고 세일 참여 브랜드 수도 역대 최대였다. 할인율을 50%로 높인 브랜드가 나오다가 하면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할인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불황에 강한 업태로 지목됐던 홈쇼핑업계는 지난달 역대 최대의 사은품 공세에도 ‘이름값’이 무색할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되자 이달 들어 ‘가격 파괴’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GS샵·CJ오쇼핑 등은 ‘상반기 세일전’을 통해 인기 상품 가격을 상반기 최저가로 내놓고 있다.

가격에 가장 덜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편의점 업계도 가격 인하를 단행한 업체가 나왔다. 미니스톱은 불황으로 편의점 고객들도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함에 따라 21일부터 소주·콜라·라면 등 인기 품목 9종의 가격을 평균 17% 인하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염가 판매 전략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정상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돼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기뻐하기 힘들다”면서도 “하지만 유통업계가 견뎌내기 힘든 수준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문

피신청인은 2012년 8월 3일까지 신청인 1.에게 금 1,000,000원을, 신청인 2.에게 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터넷한국일보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서울경제 2012. 6. 24. 자 경제면「[대한민국은 지금 세일중] 백화점 역대 최장기 세일… 마트도 50% · 최저가 할인전」제목의 기사(이하 ‘조정대상기사’라고 한다)를 통해 신청인의 초상을 보도하였다.

나.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보도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2012서울조정975)을 하였다가,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중재신청으로 전환하였다.

다. 이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도 역시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중재전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권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 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살피건대, 조정대상기사는 정보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신청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긴급성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장면이 비록 신청인들의 사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고 촬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표될 정도로 중대한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초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등 심한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 내용 및 신청인의 나이 · 직업, 피신청인측 인터넷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신청인 1.과 신청인 2.에게 각각 금 1,000,000원으로 한다.

3. 결 론

해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07. 24.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각 100만 원 지급



사례 38

알루미늄 호일의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알루미늄 호일 생산 업체의 대표인 신청인에게 제작 의도를 숨기고 취재,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507, 2012서울조정1508(병합)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매일방송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2. 10. 1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알루미늄 호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근무중인 신청인과의 인터뷰 장면을 방영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가 알루미늄 호일에 대한 정보 방송 인줄로 알고 있었고,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제품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의 취재라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동의를 벗어난 초상의 사용'이라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MBN : 「생활의 재발견」 프로그램 '알루미늄 호일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일자 23:00)

내 용 : ▷ 기자 : 그렇다면 알루미늄 호일은 언제 처음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것일까. 1910년 스위스에 한 입연 공장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 자막 : 초기에는 담배와 과자 포장지로 사용되다가 1940년대 한 호일 제조자 영업이사가 추수 감사절 칠면조 포장에 호일을 사용하며



미국 전역의 가정에 보급됨

- ▷ 인터뷰 (신○○) : 저희 사업장에서는 15m 기준으로 (하루) 평균 1만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 ▷ 기자 : 공기와 빛을 차단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뛰어난 알루미늄 호일
- ▷ 자막 : 차단성이 높아 박테리아 성장 억제에 효과가 뛰어난 호일
- ▷ 기자 : “그런데 알루미늄이 문제다”

②

인터넷 MBN : 『2회 - 사골국 그 불편한 진실, 알루미늄 호일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년 11월 9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해당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영상 중 신청인을 알 수 있는 부분(초상, 회사주소, 성명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11. 0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사례 39

신청인이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669, 2012서울조정1678(병합)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1. (주)뉴스1, 2.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2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환경미화원 선발 실기시험 개최 사실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모래주머니를 메고 달리기하는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촬영되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신문이나 포털사이트 등에 신청인의 사진이 게재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바가 없다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뉴스1 코리아: 『**힘찬 출발**』 및 『**젖먹던 힘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내 용 :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근린공원에
서 열린 환경미화원 선발 실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25kg 모래
주머니를 메고 25m 왕복 달리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노원구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6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134명
이 응시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②

e머니투데이 : 『**‘힘찬 출발’**』 및 『**‘젓먹던 힘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고>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2.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0.

조정예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동의

조정예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사례 40

신원 비공개를 전제로 신청인의 주택담보 대출 사례를 인터뷰 했는데, 실명과 초상을 그대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중재56, 2012서울중재57(병합)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2.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26.

사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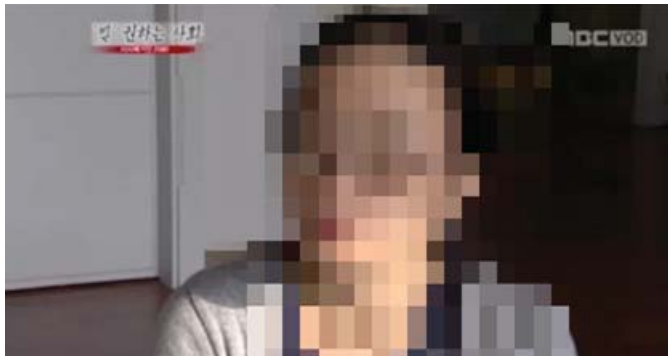
- 피신청인들은 2012. 11. 25.자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과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빚'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의 초상 및 실명 등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과 실명 등 신상을 보도하지 말 것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내보내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3천만 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12서울조정1679, 1680(병합))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양 당사자가 관련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중재대상보도

①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835회 - **빚 권하는 사회**'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5일자 23:15)

내 용 : ▷ 기자 : 서울 ○○동에 사는 김○○씨. 4년 전인 2008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4억5천만 원에 샀습니다. 은행에서 2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3년 동안 한달 70만 원씩 이자를 내고 그 이후 10년 만기로 원금과 이자를 매달 150만 원씩



값는 조건이었습니다. 큰 빛이었지만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 별로 망설이지 않고 매입하였습니다.

▷ 인터뷰 (김○○) : 아이들이(커서) 왜냐하면 싸게 나왔었고 그때 집을 넓혀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음 먹었을때 하자고 그래 가지고.

▷ 기자 : 그런데 불과 몇 달 후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에 김씨 가정은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 인터뷰 (김○○) : 남편직업이 경기를 타는 그런 직종이에요. ○○대리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지니까 맨 먼저 살림이 쪼들리니 보험 해약하고 가입안하고..

▷ 기자 :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 김씨는 생활자금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기 위해 주택금융 공사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탔고 이자는 130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이후 몇 년간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김씨는 이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나마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집을 내놓은지 1년이 넘어서야 팔았는데 처분가격 3억6천만 원. 1억 가까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동안 이자 만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 인터뷰 (김○○) : 은행에 비싼 월세 내고 산거예요. 집을 사면 은행만 배불리게 먹이는 것밖에 안 되고 집이 있음으로 더 빈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 기자 : 결국 김씨는 다음달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근처 다세대주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②

iMBC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다시보기**』 835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5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일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일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012년 12월 14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주식회사 아이엠비씨는 2012. 11. 25.자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과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서「'빔'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의 초상 및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과 실명 등 신상을 보도하지 말 것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2012. 11. 27.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각 금 30,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12서울조정 1679, 2012서울조정1680)을 하였다가, 2012. 12. 7.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인격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 음성, 성명 및 사생활에 대하여 갖는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권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격권 특히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

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기사가 신청인의 초상 등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표될 정도로 중대한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초상과 실명, 나아가 사생활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등 심한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 내용 및 신청인의 직업, 피신청인측 인터넷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 3,000,000원으로 한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0.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만 원 지급



제3장

성명권 침해 사례

사례 41

농협캐피탈 사칭 사기대출 관련 기사에 농협캐피탈 직원인 신청인의 광고 전단지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대구조정8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북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12. 04. 0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NH농협캐피탈을 사칭한 불법사기대출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농협캐피탈 직원인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가 적시된 광고 전단지를 게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은 여신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NH농협캐피탈 상담사로서 불법대출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광고전단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십만 원을 주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경북일보 : 『'농협캐피탈' 사칭 사기대출 극성』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4면)

내 용 : 이 모(33·영양읍) 씨는 21일 신문, 잡지에 난 NH농협캐피탈 전단지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으려고 마음먹고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 목소리가 농협캐피탈 직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뒤 금리가 맞지 않으면 다른 대부업체나 비제도권 금융기관과 연계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 이상한 생각이 든 이씨는 가까운 농협에 확인해보니 NH농협 상표를 사칭한 사기대출이었다.

이씨는 “전단지만 보면 누구라도 NH농협캐피탈 전단지로 오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경북 북부 일대 NH농협 상표와 NH농협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대출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주로 노인과 서민층을 노리고 광고문구가 전송돼 피해확산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작 이에 적극 대처하고 실상을 알려야 할 농협중앙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듯 판전이다.

21일 경북 북부 주민들에 따르면 주로 휴대전화, 팩스 등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전단지 형태로 일반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 사무실과 가게 등에 전송되는 사기대출 광고가 주로 NH농협 상표와 NH농협캐피탈을 사칭하고 있다는 것.

문자와 팩스내용은 NH농협캐피탈이라고 소개한 뒤 수신자가 현혹될 만한 대출금리를 제시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 특히 의혹을 갖고 전화를 걸거나 걸려온 전화에 응대하면 농협이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캐피탈로 출범했다고 속이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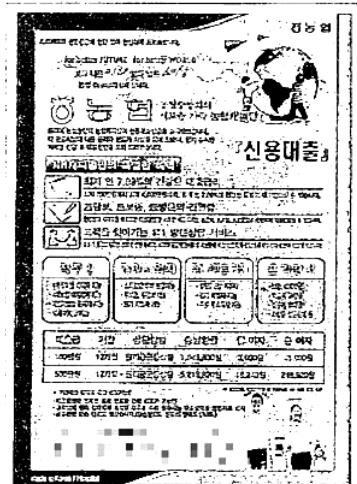
여기다 대출금리가 맞지 않으면 다른 대부업체나 비제도권 금융기관에 연계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마저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광고 여부 확인을 위해 NH농협캐피탈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ARS자동응답기는 신규고객과 기존고객만 응대가능하고 사기성 여부 또한 확인할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이처럼 NH농협을 사칭한 사기대출 광고가 극성을 부리지만 NH농협은 캐피탈은 '팩스나 문자 등을 이용한 대출은 하지 않고 NH농협을 사칭한 사기대출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대처해 비난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H농협 경북본부 여신담당 권○○ 차장은 "NH농협이나 캐피탈은 070 전화번호로 발송되는 전화 문자나 팩스, 전단지영업은 하지 않는다"며 "NH농협은행만이 아닌 농협 로고에 쉽게 현혹돼 아직까지 농협본부나 지역농협은 별다른 대책이 없고 중앙회나 캐피탈에서 사기대출 예방안내공지를 강화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농협을 믿고 사는 농촌 어르신이나 서민들에게 피해우려가 있는데도 자기 일이 아니라는 식의 책임회피는 1천만 농협고객을 무시한 처사"라며 "보이스피싱처럼 대대적인 안내홍보와 사법기관과 연계한 추적단속으로 단 1명의 피해자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NH농협을 사칭한 사기대출이 전단지까지 만들어 배포되고 있지만, 정작 NH농협은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4. 20.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사례 42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 혐의로 검찰이 당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인 신청인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656, 2012서울조정1657(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외 3인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2. 주식회사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 혐의로 4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하면서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신청인 4인의 실명을 언급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피의자인 신청인들의 신분을 공개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함께 피신청들이 연대하여 각 신청인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각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자동소제기 간주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동아일보 : 『**통진당 부정선거 45명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4일자 14면)

내 용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는 13일 4·11총선 전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 혐의(업무방해)로 45명의 당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는 구당권파 이석기 의원을 위한 대리투표 혐의자가 24명으로 가장 많다.

이 중엔 고○○, 김○○, 최○○, 강○○ 씨 등 인터넷언론 ‘○○의 ○○’의 현직 기자 4명도 포함돼 있다. ‘○○의 ○○’는 구당권파의 기관지로 알려져 있다. 고 씨는 통진당 국고 횡령 사건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4명은 모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되기도 했다.

또 이 의원이 운영해 왔던 ○○○전략그룹(현 ○○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인 ‘○○투어’와 ‘주식회사 문화기획 ○○’의 직원들도 포함돼 있다. 구당권파 조○○, 황○ 후보를 위한 대리투표 혐의로도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통진당 청년비례대표 후보였던 유○○ 씨는 5촌 당숙과 숙모, 외사촌형과 그 부인 등 친인척 4명의 선거권을 넘겨받아 이 의원을 위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구당권파 김재연 의원의 비서다.

비당권파 나○○ 후보를 위한 대리투표 혐의로는 1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김기태 후보와 강기갑계로 알려진 윤○○ 후보를 위해서도 1건씩 대리투표가 있었고 관련자 3명 모두 기소됐다.

②

동아닷컴 : 『**통진당 부정선거 45명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4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1은 해당 기사의 같은 면,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아래의 사과문을 게재한다.
- 피신청인2는 메인 초기화면에 팝업창으로 아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기사를 삭제해 포털사이트 및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과문>

1. **제 목** : [사과문] ○○의○○ 기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2. **내 용** : 동아일보는 지난 11월 14일 A14면 ‘통진당 부정선거 45명 기소’ 제하의 2단 기사에서 ○○의 ○○ 기자 4명의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개인의 실명은 인권과 직결된 것으로 공공의 알권리를 위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하는 것이 언론보도의 기본 수칙이자 윤리강령입니다. 이에 반해 해당보도의 실명 거론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의○○ 기자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여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피신청인 1과 2는 연대하여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청인마다 1인당 금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0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이의신청



제4장

사생활 침해 사례

사례 43

신용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부당공개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제보를 한 신청인의 파산 사실을 함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558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2. 04.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카드사가 회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과거 파산 이력과 그 이유 및 회사 내에서의 직무에 관한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파산 이력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여,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보도를 게재한 인터넷 한국일보(2012서울조정559)와 인터넷 한국일보로부터 동일한 기사를 전송받아 게시한 네이버(2012서울조정560)와 네이트(2012서울조정561), 다음(2012서울조정562)을 대상으로도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이후 인터넷 한국일보가 기사를 수정하여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였으며, 네이버, 네이트, 다음 역시 인터넷 한국일보의 후속보도를 송고받아 게재함에 따라 신청인은 각 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한국일보 : 『카드사기 정보 유출… 모든 걸 잃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2일자 24면)

내 용 : ○○계 생활용품 전문업체에 다니고 있는 정 모(34) 씨.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꽤 잘 나가는 ○○○○이었다. 사장의 총애를 받으며 사장 비서 업무까지 1인 2역을 맡을 정도였다.

업무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정씨에게서 그 행복을 앗아간 건 카드회사였다. 작년 8월 회사측이 A카드사에 정씨 명의의 법인개별카드를 신청한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다. 총무팀장 역할을 하려면 법인카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2006년 가족이 잘못 선 보증 탓에 파산 경험이 있던 정씨는 혹시 과거 파산 이력이 알려지지 않을까 난감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정씨는 “설마 카드사가 개인 신용정보를 동의도 없이 회사측에 알려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정씨의 파산 경력 때문에 법인카드 발급이 거절됐다. 회사측이 카드사에 거절 사유를 캐물었고, 카드사 직원이 회사측에 카드 발급 거절 사유를 알려줬다.

한때 ‘파산자’였다는 낙인은 정씨가 8년여 간 회사에서 쌓아 올린 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이미 파산 면책도 받았고, 지금은 대출 한 건, 연체 한 건도 없지만 회사는 그런 세세한 사정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회사 내에 소문이 급속히 번졌고, ○○ 본사에도 이 사실이 통보됐다. 그의 업무가 하나 둘 줄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 관련 업무를 내놓게 했고, 최근엔 ○○○○ 직책까지 박탈됐다. ○○의 일정을 관리하는 단순 ○○ 업무가 남긴 했지만 이조차도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단지 업무만 빼앗긴 게 아니었다. 파산자라는 이력 때문에 정씨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이보다 훨씬 더 심했다. “업무상 택시를 탔는데 평소보다 좀 비용이 많이 나왔나 봐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왔느냐고 일일이 따지더라고요. 심지어 직원들과 같이 마시는 커피 비용까지 추궁을 당해야 했어요. 파산자니까 회사 비용을 착복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정씨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추가적인 신용 조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정씨는 8월 이후 두 차례 본인의 신용정보가 조회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본인 요청으로 조회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정씨는 휴가 중이었다.

카드사에서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A카드 관계자는 “직원이 실수로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회사측에 전했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서도 가장 최근 조회 건에 관해서는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회사에서 직원의 법인카드 발급 불가 이유를 물었을 때 답해주지 않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는 신용정보를 해당 회사에 알려줄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 김○○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법상으로는 개인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발급 불가 이유를 물어본 회사나 그것을 알려준 카드사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기사수정, 유감표명



사례 44

여성 재소자인 신청인이 수감 중 출산한 자녀를 친정으로 보낸 사연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혼사실 등 사생활까지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787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2. 12. 17.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법무부 교화방송센터가 재소자들을 상대로 내보내고 있는 라디오 방송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두 아이의 엄마로 복역중인 신청인의 사연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사에서 가명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죄명, 구체적 사건 내용, 형량, 부모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게재되었고 기사에 실린 사진에 신청인 자녀의 실명이 적힌 원고가 찍혀있는 등 주변에서 알게 되어 피해가 크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한편 신청인은 동일한 기사를 전재한 조선닷컴(2013서울조정1788)을 대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한 2차 조정기일 심리에서 양 당사자가 관련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중구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2013서울중재1, 2013서울중재2(병합))를 하였다.
- 담당중재부는 법무부 교화방송 측의 사실조회를 거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보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심리결과,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조선일보 : 『감옥서 18개월 기른 둘째와 헤어지던 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못난 엄마 되지말자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4일자 11면)

내 용 :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엄마입니다.”

13일 낮 12기 40분쯤 전국 50여개 교도소·구치소의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 이렇게 시작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작년 ○월 지인들에게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첸 죄(사기)로 징역 ○년 ○개월을 선고받고, ○○여자교도소에서 1년 8개월 동안 복역 중인 ‘○○이 엄마’ 박○○(34·가명)씨가 쓴 편지였다.

법무부 교화방송센터가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각 교도소·구치소에 내보내고 있는 라디오 방송에 재소자 이야기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직접 사연을 보낸 것이다.

박씨는 교도소에서 낳아 18개월간 길러온 둘째 아들 ○○이를 지난달 12일 경기도 ○○○시 친정으로 떠나보냈다. 그는 작년 ○월형이 확정되자마자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고, 두 살배기 큰 아들 ○○를 친정 부모에게 맡겼다. 그리고 임신 상태로 ○○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지 한 달 만인 작년 4월 낳은 둘째가 바로 ○○이다.

‘여성 재소자가 출산하는 경우, 18개월까지 아이와 함께 교도소에서 지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박씨는 수형 생활을 하면서 ○○이를 길렀다.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매일 잠도 함께 잤다. 교도소의 갇난아이는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엄마 품에서 한시도 떠날 줄 몰랐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배웠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1년 6개월이 흘렀다. 전국 각 교도소에서 크던 12명의 ‘양육 유아’ 중 하나였던 아들 ○○이는 지난달 12일 교도소를 떠나야 했다.

박씨는 자신의 편지에서 “마음속으로 수십 번 준비했던 그날, 18개월 된 아들 ○○이를 보내야 했던 그날, 울지 말아야지 몇 번을 다짐했는데 그제 안됐습니다”라고 했다.

○○이가 떠나기 전날, 박씨 모자(母子)는 교도소 측의 배려로 교도소 내 ‘가족 만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를 데려가려고 온 박씨의 부모, 큰아들 ○○도 함께였다.

다섯 가족은 저녁밥을 지어먹고, 같이 TV도 보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이는 “형아 형아”하면서 ○○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떨어져 지내던 두 아이는 서로 과자를 먹여주고, 함께 장난감을 갖고 놀았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미소가 절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헤어짐을 알기라도 하듯 두 아이는 그날 밤부터 엄마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는 “엄마 나랑 같이 집에 가자, 난 엄마만 좋아”라는 말만 수십 번 반복했다.

“응, 내일 다 같이 가자”라는 말로 안심시켰지만, 아이는 자면서도 박씨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튿날 ○○는 박씨 품에 안긴 채 “엄마도 같이 가게 옷 입어, 엄마가 양말 안 신으면 나도 안 신어”라며 떼를 썼다. 아무것도 모르는 둘째 ○○이는 옆에서 생글생글 웃기만 했다. 평소에도 양말만 신으면 어디 밖에라도 나가는 줄 알고 좋아하던 아이였다. 저만치 떨어져 이들을 지켜보던 박씨의 부모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박씨는 “엄마가 여기 청소하고 따라갈게”하고 약속한 뒤에야 두 아이를 떼어낼 수 있었다. ○○이는 할머니 등에 업혔다. 그렇게 이별이었다. 박씨는 아이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다 가족 만남의 집을 빠져나왔다. 다른 재소자들처럼 가족들을 출구까지 배웅할 자신이 없었다.

박씨가 두 아들을 떠나보내던 그날 밤 직접 쓴 이 편지 말미에는 지나날 자신의 죄를 후회하는 심정과 아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겼다.

“교도소 건물로 돌아가는 길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감정, 이 순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두 번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면서... 이젠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못난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애들아 엄마 빨리 곁에. 아프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한다 아기들아, 사랑한다 내 새끼들.”

박씨는 만기 출소(2014년 1월)를 1년2개월 앞두고 있지만, 사기 피해자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

박씨는 “쉽지 않겠지만, 출소하면 남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 것”이라고 했다.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힘이예요. 두 아이를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후 중재합의가 이루어져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내림



제3부

주요 언론조정 · 중재사례 색인

제3부

주요 언론조정 · 증재사례 색인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사례번호	면
(ㄱ)							
1. 강○○, 2. 장○○	1. MBN, 2. 인터넷 MBN	2012서울조정673·674, 2012서울조정675·676(병합)	각 정정· 손배	조정성립		33	259
강○○	네이버	2012서울조정756·757	정정·손배	조정성립		12	152
고용노동부	노컷뉴스	2012서울조정1151, 2012서울조정1156(병합)	각 정정	조정성립		20	185
고○○ 외 3인	1. 동아일보, 2. 동아닷컴	2012서울조정1656, 2012서울조정1657(병합)	각 손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당사자 이의신청	42	290
국토해양부	한겨레	2012서울조정1390	정정	조정성립		24	200
권○○	KBS-1TV	2012서울조정262·263 · 264	정정· 반론·손배	조정성립		6	126
김○○	1. MBC-TV, 2. iMBC	2012서울증재56, 2012서울조정57(병합)	각 손배	증재결정		40	283
김○○	1. 뉴스1 코리아 2. 어머니투데이	2012서울조정1669, 2012서울조정1678(병합)	각 손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9	280
김○○	경북일보	2012대구조정8	손배	조정성립		41	287
김○○	1. 이데일리, 2. 인터넷 이데일리	2012서울조정477, 2012서울조정478(병합)	각 손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32	255
(ㄴ)							
남○○	연합뉴스	2012서울증재15	추후	증재결정		11	148
(ㄷ)							
○○운수 주식회사	서울경제	2012서울조정1188· 1189	정정·손배	조정성립		22	194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사례번호	면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	대전시디지털	2012대전조정2, 2012대전조정3(병합)	각 정정	조정성립		7	129
문○○	월간조선	2012서울중재43	정정	중재결정		26	210
(ㄱ)							
박○○	조선일보	2012서울조정1787	손배	취하		44	296
박○○	1. MBC-TV, 2. iMBC	2012서울조정710, 2012서울조정711(병합)	각 손배	기각결정		34	263
박원순	TV조선	2012서울조정27	정정	조정성립		1	70
(ㄴ)							
사○○	1. 조선일보, 2. 조선닷컴	2012서울조정986·987, 2012서울조정988·989(병합)	각 정정· 손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6	167
1.(사)대한치과의사협회 2. 최○○	MBC-TV	2012서울조정937·938	반론·손배	조정성립		14	158
송○○	1. 울산광역매일, 2. 인터넷 울산광역매일	2012부산조정41·42·43, 2012부산조정44·45·46	각 정정· 반론·손배	조정성립		30	246
신○○	1. MBN, 2. 인터넷 MBN	2012서울조정1507, 2012서울조정1508(병합)	각 손배	조정성립		38	277
(ㄷ)							
안○○	KBS-2TV	2012서울조정976	손배	취하		35	268
영암군	삼군신문	2012광주조정55	정정	조정성립		21	191
이○○	1. 충청리뷰 2. 충북인뉴스	2012충북조정31, 2012충북조정32(병합)	각 손배	조정성립		36	270
이○○	헤럴드경제	2012서울조정350·351	정정·손배	조정성립		8	134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사례번호	면
1. 이○○, 2. 김○○	인터넷 서울경제	2012서울중재26	손배	중재결정		37	273
이○○	MBC-TV	2012서울조정1685·1686	정정·손배	취하		31	252
이○○	jtbc	2012서울조정42·43	정정·손배	기각결정		2	74
이○○	1. 국제신문, 2. 인터넷 국제신문	2012부산조정22 2012부산조정23(병합)	각 손배	조정성립		23	198
(ㄴ)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2012부산조정11	반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78
정○○	한국일보	2012서울조정558	손배	취하		43	293
주식회사 ○○○○○	KBS-2TV	2012서울조정967·968· 969	정정·반론· 손배	조정성립		15	163
(주)제이티비씨	오마이뉴스	2012서울조정1096	정정	조정성립		18	177
(주)○○○	1. 중앙일보, 2. 온라인 중앙일보	2012서울조정556, 2012서울조정557(병합)	각 정정	취하		9	138
주식회사 ○○○	한겨레	2012서울조정241·242	정정·반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	119
진○○	스타뉴스	2012서울조정1609·1610	반론·손배	▷반론-조정성립, ▷손배-취하		29	236
(ㄹ)							
채○○	1. MBC-TV, 2. iMBC	2012서울조정1021·1022, 2012서울조정1023·1024(병합)	각 정정· 손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7	174
○○붕어마을	1. 충청투데이, 2. 인터넷 충청투데이	2012충북조정45·46, 2012충북조정47·48(병합)	각 반론· 손배	조정성립		28	232
최○○	호남매일	2012광주조정72·73	정정·손배	조정성립		25	205
1. 최○○, 2. 임○○	춘천KBS-1TV	2012강원조정5·6	정정·손배	조정성립		19	182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사례번호	면
(표)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이북도민연합신문	2012서울조정239	정정	기각결정		4	115
(중)							
한국방송공사	경향신문	2012서울조정890·891	정정·손배	조정성립		13	155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코메디닷컴	2012서울조정1572·1573	정정·반론	조정성립		27	227
허○○	1. jtbc, 2. 인터넷 jtbc	2012서울조정691·692, 2012서울조정693·694(병합)	각정정·손배	조정성립		10	142

제4부

주요 시정권고사례

※ 제4부에는 2012년 한해 동안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권고사례 일부를 수록합니다. 유사한 사건의 경우 한 건으로 묶어서 게재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4부

주요 시정권고사례

1.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사례

의결번호 : 제2012-5호

언론사 : 노컷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1월 3일자 연예면

기사제목 : 박○○ 양은이파 재건에 연루? “나 아냐… 억울해”

1. 보도내용

「... 1월 2일 서울중앙지검강력부에 따르면 강남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수익금을 챙기고 성매매, 폭행,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양은이파 재건을 노리던 후계자 김 모 씨와 간부 등 조직원 6명의 추종 세력이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유명 그룹 멤버였던 박 모 씨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성을 가진 트로트가수 박○○이의 심받게 됐던 것. ... (중략) ... 한편 연루자는 1980년대 유명 그룹 ○○○○ ○○○의 멤버인 박○○ 씨로 알려졌다.」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폭력조직 ‘양은이파’에 연루된 형사사건 피의자인 1980년대 유명그룹 ‘○○○○○○’ 멤버의 실명과 나이를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26호

언론사 : 시정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2월 29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 슈퍼 폭행녀 동영상 파문, 폭행뒤 도주 왜 ?

1. 보도내용

「수퍼 폭행녀 동영상 파문, 폭행뒤 도주 왜 ?」 제하의 보도 사진

대한민국이 보합니다
cijung

시정뉴스·시정TV

수퍼 폭행녀 동영상 파문, 폭행뒤 도주 왜 ?

시정뉴스 hubien@hubion.com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비록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피의자가 찍힌 CCTV 화면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사례

의결번호 : 제2012-201호

언론사 : 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9월 1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 범인은 술·게임·야동에 찌들어... '성범죄 공식' 예외는 없었다.

1. 보도내용

「범인은 술·게임·야동에 찌들어... '성범죄 공식' 예외는 없었다」 제하의 보도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범죄 사건 보도 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현재 게재되어 있는 기사에서 피해자의 거주지 사진을 삭제 또는 모자이크처리하기를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거주지 사진을 공개함

으로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와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선 안 된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3. 사생활 침해 사례

의결번호 : 제2012-199호

언 론 사 : 조선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9월 1일자 1면

기 사 제 목 : 범인 고○○의 얼굴

1. 보도내용

「범인 고○○의 얼굴」 제하의 보도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사건·사고를 보도할 때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초상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하며,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 초등생 성폭행



성폭행범 고충석(왼쪽), 지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의 이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 있던 것이다.



법원 사흘전 PC방 CCTV에 찍힌 모습 그는 거구였다.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범 고충석의 범행 사흘 전 모습이다. 지난 27일 저녁 8시쯤 한 PC방의 CCTV에 찍힌 장면(동그라미 안). 175cm의 키에 몸무게가 8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고충석은 구레나룻과 뒷머리를 짧게 잘라 친 머리 스타일에 민소매 셔츠를 입고 PC방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사진을 피의자의 사진으로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언론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보도 당시에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진을 성급하게 게재함으로써 제3자가 피의자로 오인 받아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또한 헌법 제21조 제4항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언론사가 즉시 사과문을 게재하고 온라인판의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 피해의 확산을 방지한 노력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미 오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점과 향후의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위와 같이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제2항과 제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105호

언론사 : 투데이코리아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5월 24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 여고생 교통사고 낸 후
성폭행...파렴치범들 징역선고

1. 보도내용

「여고생 교통사고 낸 후 성폭행...파렴치범들 징역선고」 제하의 보도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사건·사고를 보도할 때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초상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여고생 교통사고 낸 후 성폭행...파렴치범들 징역선고

2012-05-24 16:52:57

세소영 기자 | dw184@todaykorea.co.kr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여학생의 사진을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언론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104호

언 론 사 : 투데이코리아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5월 11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어린이집서 잠자던 4개월 영아 숨져…경찰 수사

1. 보도내용

「어린이집서 잠자던 4개월 영아 숨져…경찰 수사」 제하의 보도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사건·사고를 보도할 때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초상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어린이의 사진을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언론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어린이집서 잠자던 4개월 영아 숨져…경찰 수사

2012-05-11 17:29:53

서소영 기자 | dwf84@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4. 마약 용량 용법 등 공개 사례

의결번호 : 제2012-54호

언론사 : 한국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3월 10일자 20면

기사 제목 : ○○ ○○ml 50만 원에 판매 · 사제 폭탄 원료 즉시 배송

1. 보도내용

「... .운영자 A씨는 “○○○는 ○○ml 병에 담겨 있고 한 번에 ○ 방울씩 ○이나 ○○에 타서 마시면 된다”며 “○~○방울 정도 휴대용 병에 넣어 들고 다니다가 ‘작업’ 중인 여성의 ○○○에 타서 먹이면 ○○분 안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귀띔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 ○○ml(○○회분)를 ○○만 원에 팔고 있었다. A씨는 “○○버스 ○○○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2시간 만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며 “○○○ 외에 ‘○○○○’, ‘○○○○’라 불리는 ○○○ ○○○도 ○○만~○○만 원에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내에서 쉽게 배출되고 기억상실 구토 등 부작용이 덜한 ○○○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강조했다. ... (중략) ... 안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서 ○○○ 제조법을 보고 ○○○○○○○(○○○) 등 원료 물질을 구입, 석 달에 걸쳐 ○○○를 직접 만들었다. ... (중략) ... 안씨가 제조한 ○○○ ○○Og은 시가 ○○○원어치로 2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 (중략) ... 사제 마약 제조 · 구입법은 국내 포털사이트는 물론 단속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글 야후 등 외국 포털사이트에 더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대부분 “○○○에 ○○○○○○ 또는 ○○○○○ 적당량을 섞어 가열하면 ○○○를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방식을 알려준다. ○○○은 현재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물질로 지정돼 일반인은 구매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은 일반인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주원료 삼아 만든 ○○○ 또한 불법 물질”이라면서도 “인터넷에 올라온 제조법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고 우려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

입경로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 ○○○)의 제조원료인 ○○○의 명칭 및 제조방법뿐 아니라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가격, 사용량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해당 마약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101호

언 론 사 : 인터넷 경향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3월 22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흥대 클럽에서 신종마약 판매한 미군 검거

1. 보도내용

「... 서울 용산 경찰서는 신종 마약인 일명 ‘○○○○(○○○-○○○)’를 클럽 출입자에게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ㄱ씨(24)등 미군 3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 ... (중략) ... 이후 ㄱ씨는 강씨에게 소개받은 내국인 들에게 마약 ○개비 당 ○○~○○원을 받고 팔았다. 벌어들인 돈은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백색가루로 되어 있는 마약을 ○에 녹인 뒤 ○○○○에 뿌려 ○○처럼 피우는 가 하면, ○○○○을 태운 연기가 ○○○으로 들어가게 한 뒤 이를 집단으로 마시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는 강도가 ○○○의 6배 정도인 신종 마약”이라며 “정확한 밀반입 경로와 추가 흡연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신종마약(○○○○, ○○○-○○○)의 명칭뿐 아니라 사용량, 구입가격, 복용 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해당 마약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159호

언 론 사 : 호남매일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6월 14일자 15면

기 사 제 목 : 신종수법 마약사범 4명 구속

1. 보도내용

「○○를 ○○하는 신종수법으로 ○○○을 상습 투약한 40~50대 유흥업소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 중략 … 특히 원씨는 주사기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투약자를 위해 일명 ‘○○○○’ 수법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신종수법은 ○○○을 ○○○위에 놓고 ○○한 후 이를 ○○이 담긴 ○으로 보내 미세한○○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 방식이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을 투약하는 신종수법의 명칭(○○○○○)을 적시하고, 투약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5. 자살관련 상세묘사 사례

의결번호 : 제2012-17호

언 론 사 : 인천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1월 3일자 4면

기 사 제 목 : 시청 ○○부 입단 예정 선수 숙소에서 목 매 숨진채 발견

1. 보도내용

「... 2일 ○○경찰서와 체육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10분쯤 ○○구 ○○동 ○○시청 선수 숙소에서 ○○시청 ○○부 입단을 앞두고있던 오모(21)씨가 창틀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후배 A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중략) ... ○○체고를 졸업하고 ○○ 소속으로 지내며 지난해 ○○○ ○○올림픽 ○○○급 대표로 출전하는 등 유망주였던 오씨는 2일 ○○시청 복싱부 입단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뿐만 아니라 입단 예정 기관명, 경력사항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112호

언 론 사 : 스포츠한국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4월 18일자 29면

기 사 제 목 : 1년 만에 또 자살... 여전히 숨막히는 ○○○○

1. 보도내용

「지난해 4명의 학생과 1명의 교수가 잇달아 자살해 큰 충격을 던졌던 ○○○○○○○(○○○○)에서 또 1명의 학생이 학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중략) … 17일 오전 5시 40분쯤 ○○ ○○구 ○○동 ○○○○교내에서 이 학교 ○○○과 4학년 김 모 군이 기숙사 앞 잔디밭에 쓰러져있는 것을 지나가던 학생이 발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 (중략) … ○○에서 ○○고를 나와 ○○○○년 ○○○○에 입학한 김군은 2010년 군복무를 위해 휴학했다 올해 2월 복학했으며 평소 학교 성적도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모 대학교 학생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나이와 소속 학과 등을 밝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출신고교, 성적, 군복무 여부 등을 기술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127호

언 론 사 : 인터넷 한겨레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5월 21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대 신입생 기숙사에서 투신 사망

1. 보도내용

「○○대 신입생이 21일 오전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부 1학년 하아무개 씨가 ○○캠퍼스 기숙사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모 대학교 학생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성과 나이뿐 아니라 소속 학교·학부·학년 등을 밝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6. 범죄수법 상세묘사 사례

의결번호 : 2012-159호

언론사 : 문화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2월 28일자 22면

기사제목 : ‘마약 ○○○’ 먹인 뒤 내기골프 1,000만 원 탄 일당 ‘덜미’

1. 보도내용

「... 홍씨 등은 지난해 4월과 7월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유 모(51) 씨와 내기 골프를 치며 신경안정제 ○○○○와 마약인 ○○○ 등을 섞은 ○○○를 유씨가 마시게 해 총 1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탄 혐의를 받고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구입경로,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범죄 수법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141호

언 론 사 : 메디컬투데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6월 19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 판매한 현역군인-구매자 적발

1. 보도내용

「... 지난해 12월경부터 개인·단체 블로그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 판매, 간단하게 ○에 타 먹이면 끝, ○○·○○, 몇 ○○에 강력한 효과, 당일배송·전국배송” 등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들에게 가짜 ○○(○○○)를 ○통에 ○○~○○만원을 받고 판매해 약 9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을 이용해 구매자와 통화를 하고 의심하는 구매자들에게는 ○○을 배송한 ○○○○ ○○를 통해 판매대금을 ○○로 지불케 하는 방법으로 안심시킨 후 ○○○○으로 입금케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또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가짜 마약 판매 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약(○○)의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판매 과정 및 방법 등을 필요 이상으로 기술하여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5부

언론조정 · 중재사건 전체 목록

※ 제5부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 · 처리한 언론조정 · 중재사건의 전체 목록을 게재합니다. 전체목록은 언론조정 · 중재사건이 접수된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포함)을 제외하고 익명으로(○○표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처리결과 내 '이행방법'은 방송이나 인터넷매체 대상사건 중 조정조서(조정성립의 경우)나 결정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중재결정의 경우)에 적시된 이행방법을 의미합니다. 편집자 주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2012부산조정1~2		(정정·손배청구) 홍○○ 對 한국기독신문
조 정 대 상	『목회자 사례비 안준다고 시회법에 호소한 H목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5일자 26면)	
신청인주장	교회 담임목사인 신청인이 장로 6명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당회에 사임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손배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이 행 결 과	『검찰에 정식 고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10면)	
2012서울조정1		(정정청구) ○○제약 주식회사 對 컨슈머타임스
조 정 대 상	『○○제약 ‘○○○’ 1년에 12cm 안 크면 책임보상 ‘뽕’』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성장보조식품의 효능을 과장 광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제약 ‘○○○’ 1년에 12cm 안 크면 책임보상 ‘뽕’』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9일자)	
2012서울조정2~3		(매체별 정정청구) 금융위원회 對 The Korea Herald, 인터넷 The Korea Herald
조 정 대 상	『FSC staff opposed chief on Lone Star ruling』 제하의 기사 (The Korea Herald 2011년 11월 30일자 1면, 인터넷 The Korea Herald 1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을 한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주식처분 명령이 아닌 단순매각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금융위원회 내부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Correction of the article ‘FSC staff opposed chief on Lone Star ruling’』 제하의 기사 (The Korea Herald 2012년 2월 3일자 6면, 인터넷 The Korea Herald 2월 3일자)	
2012서울조정4~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최시중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최시중 방통위원장측 역대 수뢰』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3일자 A1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청인이 EBS 이사 선임과정에 개입했고, 그 대가로 측근을 통해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6~7		(정정·손배청구) 이○○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인권위 조사관이 성희롱』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30일자 21:00)	
신청인주장	국가인권위원회 간부인 신청인이 모 방송사 여기자를 성희롱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인터넷 TV조선 기사삭제, 후속보도 금지, 부제소)	
2012서울조정8		(정정청구) (주)○○ 외 5인 對 인터넷 한국섬유신문
조 정 대 상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신청인주장	지식경제부 지원을 받아 신청인 회사들이 연구하고 있는 '메탈사를 이용한 자동차용 발열 시트 및 내장재 개발'에 대해, 직물에 신축성 부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라고 잘못 보도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섬유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48시간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메탈사 이용 자동차용 발열시트 개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6일자)	
2012광주조정1		(손배청구) 1. 이○○, 2. 현○○ 對 인터넷 광남일보
조 정 대 상	『가정불화 겪던 70대 노인의 '쓸쓸한 죽음'』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의 가족이 자살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유족인 신청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9		(정정청구) 의료법인 ○○병원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다른 장례식장 못 가" ... 운구차 가로막기 '추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하려 하자, 신청인 병원의 직원이 시신운구를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사건에 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다툼이 있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은 후속 보도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2012경남조정1~3		(매체별 정정청구) 박완수 對 경남도민일보⁽¹⁾, 인터넷 경남도민일보⁽²⁾, 다음⁽³⁾
조 정 대 상	『박완수 창원시장 마음 속엔 '리모델링'?』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2년 1월 3일자 1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다음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창원시장인 신청인이 기자회견회에서 통합청사 문제와 관련해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결과	(1) 『박완수 시장 ‘리모델링’ 발언 “현 임시청사 생각한 것 아냐”』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2년 1월 4일자 2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다음 1월 4일자) (2) 『[사설] 청사위치 선정 후 리모델링 고민해야』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2년 1월 5일자 11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다음 1월 5일자)

2012서울조정10~16	(매체별 반론청구) 사단법인 대한배구협회 對 경향신문 ⁽¹⁰⁾ , 인터넷 경향신문 ^(11, 10과 병합) , 네이버 ⁽¹²⁾ , 네이트 ⁽¹³⁾ , 다음 ⁽¹⁴⁾ , 드림위즈 ⁽¹⁵⁾ , 야후 ⁽¹⁶⁾
조정대상	『무리한 회관 매입, 배구협회 파산 위기』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1년 12월 30일자 27면, 인터넷 경향신문·네이버·네이트·다음·드림위즈·야후 12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배구협회가 문화부나 대한체육회의 승인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배구회관을 매입,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 경향신문·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네이트·다음·드림위즈·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9~13 참조)] ※ 이행방법 • 인터넷 경향신문 : 홈페이지 스포츠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48시간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일자 스포츠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무리한 회관, 배구협회 파산 위기” 보도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2012서울조정17	(정정청구) 방송통신위원회 對 TV조선
조정대상	(1)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최시중 측근 ○○서 3억 수수』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3일자 21:00) (2) 마감뉴스 프로그램 『최시중 측근, 이통사서 역대 수수』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3일자 24:00) (3) 모닝뉴스쇼 ‘깨’ 프로그램 『“최시중 측근, 이통사서 역대 수수”』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4일자 06:00)
신청인주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 과정에서 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이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TV조선 <9시뉴스 ‘날’>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낭독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 자료화면으로 함
이행결과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방통위 “주파수 경매 공정했다” 알려와』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20일자 21:00)

2012경기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 주식회사 對 인천일보,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 인천일보 : 『인지세 미납 과태료 징수 '뒷짐'』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7일자 19면) • 경기신문 : 『현수막 게시대 위 · 수탁 해지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1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시에서 과태료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 인천일보 : 조정불성립결정 • 경기신문 : 조정성립 (내용:반론보도, 인터넷 경기신문에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경기신문 : 인터넷 경기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하되,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경기신문 : 『‘현수막 게시대 위 · 수탁 해지 촉구’』에 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2년 1월 18일자 8면, 인터넷 경기신문 1월 18일자)

2012서울조정18 (정정청구) 김○○ 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새터민은 感이 달라 ... 김정일 사망도 예측했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33면)
신청인주장	탈북지식인 모임의 대표인 신청인이 “국가 정보기관에 전문성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9~20 (매체별 반론청구) 이낙연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호등제’ 로비에 밀렸나 ... 의원-기업 同주 장』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4일자 21:00) • iMBC : 『‘신호등제’ 로비에 밀렸나 ... 의원-기업 同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제과업체의 로비를 받아 ‘어린이 식품 신호등제’를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2~3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나주뉴스	
조 정 대 상	『[여성칼럼] 세상에 이런 일이』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8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21~24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노○○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동 개발지구 조합장마다 횡령 ... 조합원 '울상'』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5일자 21:00) • iMBC : 『[다시보기] ○○○동 개발지구 조합장마다 횡령 ... 조합원 '울상'』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지역주택조합장인 신청인이 무허가 주택 철거민들과 공모하여, 보상비를 과다 지급함으로써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25~26	(매체별 정정청구) 최시중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김○○ 매입 ‘EBS 사옥 후보지’ 방통위 연루 의혹』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1월 4일자 14면, 인터넷 경향신문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청인이 EBS 신사옥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경향신문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EBS 사옥 후보지 방통위 연루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1월 27일자 A2면, 인터넷 경향신문 1월 26일자)

2012서울조정27	(정정청구) 박원순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현역에서 ‘공익’으로』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5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회피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TV조선에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조정성립 후 최초로 방송되는 <9시뉴스 ‘날’>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앵커로 하여금 다른 기사들과 같은 형식으로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되 “박 시장 아들 병역 회피한 적 없어”로 하여 계속해서 자막을 표시함. 인터넷 TV조선의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박 시장 아들 병역 회피한 적 없어』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27일자 21:00)

2012서울조정28~37	(매체별 반론 · 손해청구) (주)코리아○○○ 對 조선일보 ^(28~29) , 조선닷컴 ^(30~31) , 네이버 ^(32~33) , 네이트 ^(34~35) , 다음 ^(36~37)
조 정 대 상	『대학까지 점령한 불법 SAT학원』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월 6일자 14면, 조선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1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대학에 고객의 돈을 주고 불법적인 SAT 캠프를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조선닷컴 : 각 조정불성립결정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2012경남조정4~5	(정정 · 손해청구) 박○○ 對 더함안신문
조 정 대 상	『○○리 자이아파트 ○리 이장선거 '잡음'』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1면)
신청인주장	이장인 신청인의 유임의결 과정이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손해청구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리 자이아파트 ○리 이장선거 '잡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1면)

2012서울조정38~41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한국교육방송공사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EBS 교재값 내리기는커녕 올랐다』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7일자 21:00), (2)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EBS교재 가격 거품 ... "지적했지만 오히려 올라"』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8일자 06:00) • iMBC : (1) 『[다시보기] EBS 교재값 내리기는커녕 올랐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2) 『[다시보기] EBS교재 가격 거품 ... "지적했지만 오히려 올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신청인주장	EBS가 감사원으로부터 수능 교재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오히려 교재 가격을 더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부산조정3~4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텔레콤 對 울산신문, 인터넷 울산신문
조 정 대 상	(1) 『택시 블랙박스 설치 업체 유착 의혹』 제하의 기사 (울산신문 2011년 12월 26일자 5면, 인터넷 울산신문 12월 25일자) (2) 『'택시 블랙박스' 갈수록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울산신문 2011년 12월 27일자 5면, 인터넷 울산신문 1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와 울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의 택시 블랙박스 납품 입찰 과정에 유착 의혹이 있으며, 신청인 회사 제품의 질과 가격 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울산신문에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택시 블랙박스 설치 업체 유착 의혹'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울산신문 2012년 1월 31일자 6면)

2012서울조정42~43	(정정·손배청구) 이○○ 對 jbc
조 정 대 상	뉴스10 프로그램 『[탐사추적] 주유소협회 국회의원 불법후원금 줬다』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6일자 22: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유소협회의 국회의원 불법후원 관련 내부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와 신청인간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2서울조정44	(손배청구) 전○○ 對 jbc
조 정 대 상	뉴스10 프로그램 『[탐사추적] 주유소협회 국회의원 불법후원금 줬다』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6일자 22: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주유소협회의 국회의원 불법후원 관련 내부고발자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와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2서울조정45	(정정청구) 주식회사 ○○테크 對 한국취업신문
조 정 대 상	『[르포] 돈있고 친구없는 루저들의 모임 ○○테크』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법 피라미드 업체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테크 르포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7일자)

2012서울조정46~49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아시아경제닷컴 ⁽⁴⁶⁾ , 네이버 ⁽⁴⁷⁾ , 모네타뉴스 ⁽⁴⁸⁾ , 동아닷컴 ⁽⁴⁹⁾
조 정 대 상	『[포토] '전세 구해야 하는데 ...'』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대학생 전세자금대출에 관련된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아시아경제닷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유감표명 메일발송) • 네이버 · 모네타뉴스 · 동아닷컴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50~51, 61~64	(매체별 반론청구) 사단법인 ○○○○○○ 對 중앙일보 ⁽⁵⁰⁾ , 온라인 중앙일보 ⁽⁵¹⁾ , 네이버 ⁽⁶¹⁾ , 네이트 ⁽⁶²⁾ , 다음 ⁽⁶³⁾ , 야후 ⁽⁶⁴⁾
조 정 대 상	『소화제 먹고 1년2개월 총 한 방 못 쏘는 강○○』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12월 23일자 28면, 온라인 중앙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모 사격선수가 반하사심탕을 복용한 후 도핑 테스트에 걸려 자격정지를 당한 사건은 반하사심탕에 도핑 금지약물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약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처방인 반하사심탕 자체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중앙일보 · 온라인 중앙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2~5 참조)]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 : 홈페이지 스포츠면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게재, 제목을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한약 처방 ‘반하사심탕’, 도핑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1월 26일자 24면, 온라인 중앙일보 1월 27일자)

2012서울조정52	(반론청구) 박○○ 對 양주 · 동두천닷컴
조 정 대 상	『J어린이집 불법 천지, 보육교사들 폭로』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아동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표시하고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함, 이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J어린이집 불법 천지, 보육교사들 폭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9일자)

2012서울조정53~56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리얼에스테이트코리아○○ 對 오마이뉴스 ⁽⁵³⁾ , 네이버 ⁽⁵⁴⁾ , 네이트 ⁽⁵⁵⁾ , 다음 ⁽⁵⁶⁾
조 정 대 상	『○○○도 도시개발 가능, 특혜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신청인주장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신청인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오마이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6~8 참조)] ※ 이행방법 • 오마이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체 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특혜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7일자)

2012서울조정57~5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국토해양부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4대강 이포보서도 6~7m 균열 발견』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1월 4일자 15면, 인터넷 경향신문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4대강 사업 구간인 이포보에서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9~60	(정정 · 손해청구) 경상남도교육청 對 에이블뉴스
조 정 대 상	『경남교육청 찾은 여교사 성추행 봉변』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4일자)
신청인주장	경남교육청을 찾은 경남○○○평생학교협의회 소속 여성 교사가 교육청 남성 직원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경남교육청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일자)

2012광주조정4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무등일보
조 정 대 상	『청정마을서 공포의 마을로』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4일자 1면)
신청인주장	폐기물 처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환경을 오염시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대구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박○○ 외 2인 對 경안일보, 인터넷 경안일보
조 정 대 상	『조폭과의 전쟁선포 하면 뭐하나?』 제하의 기사 (경안일보 2011년 11월 14일자 4면, 인터넷 경안일보 1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대구대학교 구 재단의 이사인 신청인들을 이사회에서 보호한 청년들이 조직폭력배나 용역이고, 이들이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경안일보에 정정보도, 인터넷 경안일보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안일보 2012년 2월 28일자 4면)

2012서울조정65~74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유○○ 對 동아일보 ^(65~66) , 동아닷컴 ^(67~68, 65~66과 병합) , 네이버 ^(69~70) , 네이트 ^(71~72) , 다음 ^(73~74)
조 정 대 상	『前부장판사 전 부인 16억대 보석사기』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1월 12일자 A12면, 동아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동아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前 부장판사 전 부인 보석사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2월 6일자 A14면, 동아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2월 6일자)

2012서울조정75~84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유○○ 對 서울신문 ^(75~76) , 인터넷 서울신문 ^(77~78, 75~76과 병합) , 네이버 ^(79~80) , 네이트 ^(81~82) , 다음 ^(83~84)
조 정 대 상	『판사출신 변호사의 부인 ‘보석王’ 자칭 16억 사기』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2년 1월 11일자 9면, 인터넷 서울신문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서울신문 · 인터넷 서울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서울신문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前 부장판사 전 부인 보석사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2년 2월 7일자 11면, 인터넷 서울신문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2월 7일자)

2012서울조정85~94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유○○ 對 조선일보 ^(85~86) , 조선닷컴 ^(87~88, 85~86과 병합) , 네이버 ^(89~90) , 네이트 ^(91~92) , 다음 ^(93~94)
조 정 대 상	『“남편이 前官... 서초동 돈 끌어모은다”던 사모님이...』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월 12일자 A12면, 조선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조선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前 부장판사 부인 보석사기 사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2월 3일자 사회면, 조선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2월 3일자)

2012서울조정95~104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유○○ 對 중앙일보 ^(95~96) , 온라인 중앙일보 ^(97~98) , 네이버 ^(99~100) , 네이트 ^(101~102) , 다음 ^(103~104)
조 정 대 상	『“내 남편이 부장판사였는데...” 다이아로 16억 사기』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1월 12일자 18면, 온라인 중앙일보·네이버·네이트·다음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05~112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유○○ 對 매경닷컴 ^(105~106) , 네이버 ^(107~108) , 네이트 ^(109~110) , 다음 ^(111~112)
조 정 대 상	『판사출신 변호사 부인이 보석 사기』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13~120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유○○ 對 e머니투데이 ^(113~114) , 네이버 ^(115~116) , 네이트 ^(117~118) , 다음 ^(119~120)
조 정 대 상	(1) 『판사출신 변호사 남편 내세워 10억대 보석 사기』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2)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前부인, 10억대 보석사기 혐의 재판 중』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21~124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유○○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6시 뉴스매거진 프로그램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전 부인 사기 피소』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1일자 18:00) • IMBC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부인 사기혐의 피소』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25~134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유○○ 對 YTN ^(125~126) , 인터넷 YTN ^(127~128, 125~126과 병합) , 네이버 ^(129~130) , 네이트 ^(131~132) , 다음 ^(133~134)
조 정 대 상	• YTN : (1) 뉴스&이슈 프로그램 『부장판사 남편 내세워 희대의 보석 사기』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1일자 12:58, 13:58) (2) YTN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내 남편이 부장판사”...

조 정 대 상	대담한 보석 사기』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1일자 17:58) • 인터넷 YTN : (1) 『[스크립트] 부장판사 남편 내세워 희대의 보석 사기』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2) 『[스크립트] “내 남편이 부장판사”...대담한 보석 사기』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부장판사 남편 내세워 희대의 보석 사기』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인 남편의 직함을 내세우며 보석사기 행각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YTN · 인터넷 YTN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YTN : 인터넷 YTN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조정대상보도 동영상 및 스크립트 삭제

2012서울조정135~136	(정정 · 손해청구) (주)○○○닥터 對 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밀착취재>화장품은 먹고 세정제는잇몸에? 할머니 울리는 수상한 다단계』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7일자 08:3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회사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7~138	(정정 · 손해청구) 김○○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박희태 돈봉투 출처는 청와대? 대선잔금 가능성도』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박희태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을 보도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인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39~142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원○○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범종 제작 ‘제2 민○○ 사태’ 일어나나』 (세계일보 2011년 10월 27일자 8면, 세계닷컴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국세 사기사건의 민○○ 사태와 비교하면서 무형문화재인 신청인의 범종 복원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세계닷컴의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세계닷컴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대체목(“범종 제작 ‘제2 민○○ 사태’ 일어나나”)을 삭제하고 부제목(“전통 범종 제작기법 싸고 논란 확산”)을 대체목으로 대체, 각 포털사에 제공한 각 기사의 제목도 수정되도록 조치
이 행 결 과	『전통 범종 제작기법 싸고 논란 확산』제하의 기사 (세계닷컴 2012년 2월 10일자)

2012서울조정143	(정정청구) ○○○○○○○ 주식회사 對 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내부 고발자 해고한 버스회사 … “정당 vs 보복”』 제하의 보도 (2011년 12월 28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임직원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들을 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44~14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 ○○○ 對 더벨,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더벨 : 『종로 ‘○○○’ 다시 팔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5일자) • e머니투데이 : 『[○○] 最古영화관 ‘○○○’ 다시 팔리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소유의 영화관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1서울조정148~15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재)사랑의장기기중운동본부 對 청년의사, 인터넷 청년의사
조 정 대 상	• 청년의사 : (1) 『혈액투석 과열경쟁, 한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1면), (2) 『[무법지대 혈액투석병원] 정부도 의료계도 관리감독 포기?』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14~15면) • 인터넷 청년의사 : 『[커버스토리] 혈액투석 과열경쟁, 한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제주도 L요양병원이 수용소에 가까운 비인간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청년의사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청년의사의 모바일 웹에도 게재
이 행 결 과	• 청년의사 : (1)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2일자 1면), (2) 『제주 ○○의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2일자 11면) • 인터넷 청년의사 : 『제주 ○○의 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2일자)

2012서울조정152~153	(매체별 정정청구) 세계기독교○○○○협회 對 주간동아, 인터넷 주간동아
조 정 대 상	『‘○○교 왕자’ 는 또 다툰다?』 제하의 기사 (주간동아 2012년 1월 20일자 44~47면, 인터넷 주간동아 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종교단체가 총재 가족간의 갈등으로 교단이 분열되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인터넷 주간동아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교 갈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동아 2012년 3월 6일자 46면, 인터넷 주간동아 2월 27일자)

2012서울조정154~157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전○○ 對 KBS-2TV, KBSi
조 정 대 상	• KBS-2TV : 해피 선데이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 남자, 그리고 중년의 사춘기』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8일자 17:10) • KBSi : 『[다시보기] 368회 (1) 남자의 자격 - 남자, 그리고 중년의 사춘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8일자)
신청인주장	과거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알림기사 게재, KBSi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KBS-2TV : 해피 선데이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 남자, 그리고 가족여행』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5일자 17:10) • KBSi : 『[다시보기] 372회 (1) 남자의 자격 - 남자, 그리고 가족여행 ②』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5일자)

2012경남조정6~9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 對 경남일보, 인터넷 경남일보
조 정 대 상	• 경남일보 : 『진주지역 선거 여론조사 예비후보자들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면) • 인터넷 경남일보 : 『무분별한 여론조사 예비후보자도 반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신문사의 여론조사 보도로 진주지역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모 예비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인용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5	(정정청구) 영광군 對 전남희망신문
조 정 대 상	『기득권만의 특권 - 동원을 고발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7면)
신청인주장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영광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득권만의 특권 - 동원을 고발한다’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7면)

2012서울조정158	(정정청구) 박근혜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단독] 2007년 박근혜 캠프관계자 수억원대 불법모금』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홍모씨 등이 신청인 캠프의 자금담당이었으며, 홍모씨가 불법 모금한 돈이 캠프 경비로 사용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2012서울조정159~161	(매체별 정정청구) 위○○ 외 3인 對 CBS-TV ⁽¹⁵⁹⁾ , CBS ⁽¹⁶⁰⁾ , 노컷뉴스 ⁽¹⁶¹⁾
조 정 대 상	• CBS-TV : CBS교계뉴스 프로그램 『‘노회장 협박’ 파문』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3일자 21:40) • CBS·노컷뉴스 : 『○○교회 갈등 계속...노회장 협박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신청인들이 노회장을 감금, 협박하여 소속교회의 당회장을 특정하는 확인서를 받아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62	(정정청구) 강○○ 對 주간한국
조 정 대 상	『총선 예비후보들 관계에선 누가 뛰나 - 일부 후보들 비리의혹으로 제동』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8면)
신청인주장	국무총리실 기획관인 신청인에 대하여 근무시간 무단결근·횡령 등의 비리 정황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3일자 6면)

2012서울조정163	(정정청구) 지식경제부 對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1) 『해외 자원개발 뿌리가 흔들린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A01면) (2) 『개발역량 걸음마...사업진출 10년 “실속은 없고 소리만 요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A03면)
신청인주장	정부(지식경제부)가 민간기업이 자원탐사권만 확보해도 즉시 가채매장량을 발표하는 등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1일자 A09면)

2012서울조정164~165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현장추적> ‘○○○ 설치 후엔 나 몰라라’』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6일자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생산, 시공한 태양열 시설에 성애가 발생해 난방이 안되며,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SBS에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SBS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2012광주조정6	(정정청구) 담양군 對 담양신문
조 정 대 상	(1) 『담양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공고 파장』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일자 1면) (2) 『담양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에 대한 토지소유자 이의서』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2일자 4면) (3) 『학동리 주민들 연판장 제출하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9일자 1면) (4) 『강력 반발한 마을은 빼주겠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6일자 1면)
신청인주장	담양군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결 청구공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잇따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담양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4일자 7면)

2012서울조정166~16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안○○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취업 스펙 쌓기 ‘필수과목’ 돼버린 해외 봉사』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월 26일자 A11면, 조선닷컴 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고교생·대학생들의 해외 자원봉사가 진학,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용이 돼버렸다는 보도와 함께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손해배상 1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취업 스펙 쌓기 해외 봉사’ 사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2월 25일자 A2면)

2012서울조정170~175	(매체별 반론청구) 주식회사 ○○○○○○○○ 對 KBS-1·2TV ⁽¹⁷⁰⁾ , MBC-TV ⁽¹⁷¹⁾ , SBS-TV ⁽¹⁷²⁾ , YTN ⁽¹⁷³⁾ , 인터넷 경향신문 ⁽¹⁷⁴⁾ , 연합뉴스 ⁽¹⁷⁵⁾
조 정 대 상	• KBS-1·2TV : (1) KBS 뉴스12 프로그램 『‘가짜 원적외선 방출기’ 다단계 사기 적발』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2:00), (2) KBS 뉴스7 프로그램 『‘원적외선 제품 사기’ 55억 행간 다단계 적발』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9:00), (3) KBS 뉴스9 프로그램 『‘만병통치 전기제품?’ 원가 3만 원 99만 원 판매』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21:00), (4) KBS 뉴스9(경인) 프로그램 『‘가짜 원적외선 방출기’ 55억 사기 판매』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21:00), (5)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만병통치 전기제품’ 속여 55억 사기』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9일자 08:00) • MBC-TV : (1) MBC 정오 뉴스 프로그램 『3만 원짜리 99만 원에 ...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2: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종플루 막는 첨단제품? 뜯어보니 ‘석회반죽’』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21:00) • SBS-TV : (1) SBS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99만 원짜리 신종플루 예방제품, 원가 ‘기막

조 정 대 상	혀'』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7:00), (2) SBS 8 뉴스 프로그램 『황당한 '만병통치' 제품...거짓말로 33배 폭리』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20:00), (3)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황당한 만병통치 전자제품...수천대 판매 '폭리'』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9일자 06:00) • YTN : YTN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싸구려 전자제품, 원적외선 방출 장치로 둔갑』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8일자 17:53) • 인터넷 경향신문 : 『건강웰빙제품 3만 원짜리 99만 원에 팔아』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 연합뉴스 : 『싸구려 전기제품 효능있다 속여 다단계사기』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가짜 원적외선 제품을 고급 건강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KBS-1 · 2TV · MBC-TV · SBS-TV · YTN · 연합뉴스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후속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후속보도문의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 이행방법 • 인터넷 경향신문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후속보도문 게재

2012전북조정1~2		(정정 · 손해청구) 김○○ 對 군산신문
조 정 대 상	『○○중 · 고 폐교사태 전말은?』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7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군산 모 중 · 고등학교 경영권을 특정대학에 넘기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군산 ○○중 · 고 폐교사태...' 관련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8면)	

2012광주조정7~8		(정정 · 손해청구) 유○○ 對 데일리안광주전라
조 정 대 상	(1) 『광양시 산림자원과, ○○○지키기 단체에 편법 지원 '의혹'』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2) 『광양시 "백운산 지키기가 요구해 편법 예산편성"』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신청인주장	광양시 산림자원과 공무원인 신청인이 예산 편법 지원과 관련해 특정 시민단체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76~177 (정정·손배청구) 1. 최○○, 2. 홍○○ 對 뉴스타운	
조 정 대 상	『조현우 경찰청장님! 한 번 들어보실래요?』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사건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대구 수성署’ 관련 기사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2012서울조정178~179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주)○○교육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500일의 눈물 보이지 않나요』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28일자 9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28일자)
신청인주장	학습지 교사들의 해고·사망 등을 보도하면서 마치 그 책임이 신청인 회사에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10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알려왔습니다] 1월 26일자 9면 ‘1500일의 눈물 보이지 않나요’ 제하 기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2012서울조정180~181 (정정·손배청구)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2. 농업회사법인 순천○○○ 제과(주) 對 KB방송	
조 정 대 상	(1) 『순천○○○제과 공장 폐쇄?...○○○생협에 ‘음모?’』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8일자) (2) 『순천○○○제과 경영? ○○○생협 진정성 ‘의문’ ②』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9일자) (3) 『순천시, ○○○생협 ‘특혜 의혹’ ③』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필요없게 된 순천공장을 폐쇄하려고 고의로 영업정지 사건을 만들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82~183 (매체별 정정청구) ○○○코리아(주)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1) 『KTX 2구간(동대구~부산) 레일 ‘위험 징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일자 1면), (2) 『탄성패드 대부분 불량... 설계기준 안지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일자 10면) • 조선닷컴 : 『KTX 2구간(동대구~부산) 레일 ‘위험 징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납품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체결장치 속 탄성패드가 대부분 불량이며 설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84	(정정청구) 강운태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8시뉴스 '날' 프로그램 『검찰, 강운태 시장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6일자 20:02)
신청인주장	광주시장인 신청인의 아내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발견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됐으나, 이 자금은 신청인의 부인이 상속받은 재산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8시뉴스 '날' 프로그램 『검찰, “강운태 내사 종결…일부 위법 확인”』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8일자 20:00)

2012경기조정3	(정정청구) 김○○ 對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1) 『광명 공무원 길들이기나 특정한 보복성 칼날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일자 5면) (2) 『시의원 신분 감추고 불법 녹취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9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견인 요청을 거절당하자 담당 부서에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85~186	(정정·손배청구) 김○○ 對 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대 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학대 교수인 신청인이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전북조정3	(정정청구) 군산경찰서 對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학교폭력이 아들 범죄자로 몰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6면)
신청인주장	군산경찰서가 절도 혐의 피의자 부모의 재조사 요청에 조사 불가 방침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부산조정5	(정정청구) 부산북부경찰서 對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교사에 압수 스마트폰 훔쳤다-고교생 무리한 수사에 입건』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스마트폰을 훔친 고교생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87	(정정청구) 1. (사)한국○○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2. (사)대한○○중고등학교장회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6000만 원 내면 강북, 1억 내면 강남 교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A10면)
신청인주장	돈 받고 사립학교 교직을 매매하는 불법 알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선닷컴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조선닷컴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며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6000만 원 내면 강북, 1억 내면 강남 교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3월 2일자 2면, 조선닷컴 3월 2일자)

2012서울조정188	(손배청구) 이○○ 對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배달’의 기사들 이젠 천천히 오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9일자 22면)
신청인주장	배달원들의 난폭 운전 등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4~5	(정정·손배청구) 유한회사 ○○○○건설 對 서해타임즈
조 정 대 상	『정상시공? 계속되는 ‘부실시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일자 2~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공사한 건물이 부실 시공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89~19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김○○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호주 가면 용접으로 연봉 1억” 학원 말 믿었다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A10면) • 조선닷컴 : 『연봉 5000만 원 대기업 용접공, “호주선 1억 준다”는 말에 혹해서 결국』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용접학원이 “호주에 용접공으로 갈 경우 1억 원을 보장한다”고 광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호주서 용접사로 제2인생” 30·40대 늘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30·40대들, “연봉 1억 준다”는 말에 매일 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2012서울조정193~20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193~194), 네이트(195~196), 조인스엠에스엔(197~198), MBC(199~200), 동아닷컴(201~202), 매경닷컴(203~204)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네이트·조인스엠에스엔·매경닷컴 : (1) 『교원노조 단협 적용 앞둔 교장들

조 정 대 상	우려』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2) 『교원노조 단협 적용 앞둔 교장들 우려(종합)』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 MBC·동아닷컴 : 『교원노조 단협 적용 앞둔 교장들 우려』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신청인주장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고교 교장인 신청인이 우려를 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2부산조정6 (정정청구) 김○○ 對 UBC	
조 정 대 상	(1) ubc프라임뉴스 프로그램 『학생인건비 ‘주물럭’』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9일자 20:15) (2) ubc굿모닝울산 프로그램 『학생인건비 ‘주물럭’』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0일자 07:15)
신청인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의 외부강사 인건비를 유용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프라임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함
이 행 결 과	프라임뉴스 프로그램 『학생 인건비 ‘주물럭’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일자 20:25)

2012경기조정4~5 (정정·손배청구) 김○○ 對 e수원뉴스	
조 정 대 상	『교원노조 단협 적용 앞둔 교장들 우려』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신청인주장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고교 교장인 신청인이 우려를 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광주조정9~1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 對 CNBNEWS 광주전남본부 ^(9~10) , 뉴스웨이 호남본부 ^(11~12) , 브레이크뉴스 ^(13~14)	
조 정 대 상	• CNBNEWS 광주전남본부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선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 뉴스웨이 호남본부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병원장 친구 추천 왜?』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 브레이크뉴스 : 『전남대병원 상임 감사 병원장 측근 내정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후보자였던 신청인이 병원장과 초등학교 동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CNBNEWS 광주전남본부·뉴스웨이 호남본부·브레이크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

처 리 결 과	중앙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120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
이 행 결 과	• CNBNEWS 광주전남본부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선정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 뉴스웨이 호남본부 : 『[정정보도]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병원장 친구 추천 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8일자) • 브레이크뉴스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병원장 측근 내정 ‘논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2012광주조정15~16 (정정·손배청구) 김 ○ 對 프리임경제	
조 정 대 상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후보 학연, 경력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전남대병원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신청인이 병원 상임감사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120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이 행 결 과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병원장 친구 추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2012서울조정205~219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신○○○對 조선일보 ^(205~207) , 조선닷컴 ^(208~210) , 네이버 ^(211~213) , 데일리안 ^(214~216) , 쿠키뉴스 ^(217~219)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조선닷컴·네이버 : 『“통일후 처단” 살생부 만든 종북카페』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2월 15일자 10면, 조선닷컴·네이버 2월 15일자) • 데일리안 : 『‘언론인 살생부 작성’ 종북카페 운영자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 쿠키뉴스 : 『[사설] ‘살생부’ 만든 종북세력 보안법으로 엄단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종북(從北)’ 카페를 운영해 검찰에 검거됐다고 보도됐으나, ‘애북(愛北)’ 카페를 운영한 것이며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에 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조선닷컴·네이버 : 각 취하 • 데일리안·쿠키뉴스 :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반론보도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2012서울조정220~22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김 ○ 對 빅뉴스 ^(220~221) , 아시아투데이닷컴 ^(222~223) , MBN ^(224~225) , 인터넷 MBN ^(226~227)	
조 정 대 상	• 빅뉴스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병원장 친구 추천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

조 정 대 상	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후보 2명 병원장 동창』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 MBN : MBN 뉴스 10 프로그램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선출 ... ‘측근인사 의혹’』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9일자 22:00) • 인터넷 MBN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선출 ... ‘측근인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전남대병원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신청인이 병원 상임감사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빅뉴스 :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병원장 친구 추천 맞나’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3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정정 보도]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후보 2명 병원장 동창』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 인터넷 MBN : 『[정정보도]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측근인사 의혹’...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3일자)

2012대구조정3	(정정청구) 배○○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1) 『평화롭던 산골 소송 회오리 “쑥대밭”』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일자 사회/교육면) (2) 『기자 노트』 편중보도 일삼는 어리석은 언론』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9일자 경북북부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광산업체가 중장비를 동원해 농로로 진입을 하는 등의 횡포로 평화롭던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민심이 흉흉해졌으며, 광산업체 측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광주조정17~19	(정정·반론·손배청구) 이낙연 對 장성군민신문
조 정 대 상	(1) 『이낙연 의원 공약이행 ‘거짓과 부풀리기’』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3일자 2면) (2) 『이낙연 의원 공약이행사항 홈페이지서 삭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2면)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공약 이행을 거짓으로 부풀리기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이낙연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5일자 2면)

2012대구조정4	(정정청구) 배○○ 對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취재수첩] 실종된 관광개발업체의 도덕성』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관광개발업체가 주민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으며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갖 편법과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등 최소한의 도덕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광산업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7일자 10면)

2012부산조정7~8	(매체별 정정청구) ○○초등학교 對 KNN, iKNN
조 정 대 상	• KNN : (1)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초등 ‘짱’ 폭력, 학교는 모른척』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4일자 20:25), (2) KNN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초등 ‘짱’ 폭력, 학교는 모른척』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5일자 07:40) • iKNN : 『[다시보기] 초등 짱의 폭행, 학교도 외면』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학교폭력을 방관하고, 상부기관에 축소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유감표명 공문발송)

2012서울조정228~229	(매체별 손해청구) 김○○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유아 스마트폰 중독 심각…뇌균형 깨뜨린다』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8일자 20:00) • SBSi : 『[다시보기] 유아 스마트폰 중독 심각…뇌균형 깨뜨린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아기에게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며,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이행(모자이크처리 · 음성변조 등)하였다)

2012서울조정230~233	(매체별 반론 · 손해청구) 이○○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조폭 · 주폭(酒暴 · 술먹고 행패)보다 무섭다…官街 울리는 ‘블랙민원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월 21일자 B03면, 조선닷컴 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일삼는 ‘블랙 민원인’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부산조정9~10	(매체별 반론청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對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 부산일보 :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1면) (2) 『총선 · 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2면)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1면) (4) 『경영진 “노조 주장 게재 안 된다” 발행 중단』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면) (5)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면) (6)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1면) (7)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1면) (8) 『부산일보 노조, 사태 해결 ‘비대위’ 제안』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1면)

조 정 대 상	(9) 『독자와 약속 내팽개친 사측 뚫고 사원들이 윤전기 돌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3면) (10)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①] 김지태 씨 ‘박정희 혁명자금’ 거부하다 결국…』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3면) (11) 『88년 뜨거웠던 ‘6일간 전면파업’ 한국 언론사 ‘큰 획’』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12)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②] 군사정권, 김지태 씨 개인재산 강탈』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13) 『당시 파업, 6월 항쟁 · 언론자유 정신 계승』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14) 『편집권 위협 소유주 압력 맞서 자사 치부까지 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4면) (15)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④]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4면) (16) 『때론 본지 논조 비판…진정한 언론자유 실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4면) (17)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31면) (18)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대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23면) (19)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5일자 1면) (20)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2면) (21)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면) (22) 『사유재산 강탈 비난 피하고 군부정권 치부 숨기려는 의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6면) (23) 『잘못된 것 없다며 자진 사퇴 ‘이율배반적 행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6면) (24) 『불투명한 이사장 · 이사 선임 구조, 공익재단 역할 못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6면) (25) 『‘박정희 사람들’ 두루 돌아가며 부산일보 · MBC 등 ‘요직’ 역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6면) (26) 『재단-부산일보 소유관계 개선이 진정한 편집권 독립』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8면) (27) 『‘공정보도 사수’ 권력과 싸움, MBC · YTN 등 ‘현재 진행형’』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8면) (28) 『장학금 수혜자 모임 청오회 · 상청회는 박근혜 지지세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6면) (29) 『매년 박 위원장에 후원금 내지만 그냥 친목단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6면) (30) 『정수재단 사회 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면) (31) 『이사장 연봉이 1억 7천여만 원이라니, 공익재단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6면) (32) 『정수재단 반한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면) (3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면) (34) 『정수재단 일방적 사장 임명 강행, 부산일보 노조 “출근 저지 투쟁”』 제하의 기사

조 정 대 상	(2012년 1월 20일자 2면) (35) 『친박,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5면) (36)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2면) • 인터넷 부산일보 :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회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8일자) (2) 『총선 · 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4)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6)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7)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1. 기자들, 운전실로 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8)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2. 88년 파업은 현재진행형』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9)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④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10)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11)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답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12)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5일자) (13)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14) 『부산일보 노조원 ‘정수장학회 사회회원’ 상경 투쟁,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5) 『박근혜,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정치 꿈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16)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3. 정수장학회, 누가 지배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7) 『정수장학회 역대 이사장 · 이사 면면 살펴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8)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4. 겉으로 소유뿐, 속으로 편집 영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19)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5. 정수장학회는 거대한 집단』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20) 『정수재단 사회 회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1)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6. 장학재단은 공공의 자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4) 『박근혜 의원,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25)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단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처 리 결 과	에 네이버 뉴스홈의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고, 조정대상기사(1)~(25)의 각 하단에 <이 기사에 대한 정수장학회의 반론보도문이 네이버 뉴스홈의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 있습니다. 클릭> 문구를 표시하고,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링크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수장학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4일자)

2012서울조정235~238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한국○○연합회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밀착취재] 사라진 상조업체! 고객들의 돈은?』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4일자 08:30) • iMBC : 『[다시보기] [밀착취재] 사라진 상조업체! 고객들의 돈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4일자)
신청인주장	2012년 3월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부도 및 파산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부산조정11~12	(매체별 반론청구)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對 부산일보,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 부산일보 :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1면) (2) 『총선·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2면)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1면) (4)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2면)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1면) (6)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 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1면) (7) 『독자와 약속 내팽개친 사측 뚫고 사원들이 윤전기 돌렸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3면) (8) 『88년 뜨거웠던 '6일간 전면파업' 한국 언론사 '큰 획'』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9)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②] 군사정권, 김지태 씨 개인재산 강탈』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5면) (10)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31면) (11)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답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23면) (12)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5일자 1면) (13)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2면) (14)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면) (15) 『잘못된 것 없다며 자진 사퇴 '이율배반적 행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6면) (16) 『불투명한 이사장·이사 선임 구조, 공익재단 역할 못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6면) (17) 『“박정희 사람들” 두루 돌아가며 부산일보·MBC 등 '요직' 역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6면)

조 정 대 상	년 1월 11일자 6면) (18) 『재단-부산일보 소유관계 개선이 진정한 편집권 독립』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8면) (19) 『장학금 수혜자 모임 청오회·상청회는 박근혜 지지세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6면) (20) 『정수재단 사회 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면) (21) 『이사장 연봉이 1억 7천여만 원이라니, 공익재단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6면) (2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면) (2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면) (24) 『친박,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5면) (25)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2면) • 인터넷 부산일보 : (1)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8일자) (2) 『총선·대선 앞두고 “언론 공정성 확립 필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18일자) (3)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 운동』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4) 『부산일보 사태 박근혜 의원이 해명해야』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일자), (5) 『박근혜 의원, 정수재단 이사장 직접 지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5일자) (6)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 ‘범시민운동’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7)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1. 기자들, 윤전실로 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7일자) (8) 『[부산일보 제2 편집권 독립 운동] 2. 88년 파업은 현재진행형』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8일자) (9) 『[정수장학회를 말한다] ④ ‘부정축재’ 유산, 박근혜 의원 승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3일자) (10) 『[부일 읽기] 부산일보가 자랑스러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11) 『[데스크 칼럼] 애독자의 항의에 답하여』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12) 『“박근혜 의원 의혹 해소하라”, “정수장학회는 강탈한 재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5일자) (13) 『부산 의원 절반 이상 “박근혜 정수장학회 손떼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14) 『부산일보 노조원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상경 투쟁, “박근혜 의원, 상식 이행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9일자) (15) 『박근혜,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정치 꼼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0일자) (16)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3. 정수장학회, 누가 지배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7) 『정수장학회 역대 이사장·이사면면 살펴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18)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4. 겉으론 소유뿐, 속으론 편집 영향』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19)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5. 정수장학회는 거대한 집단』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20) 『정수재단 사회 환원 박근혜 적극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21) 『[정수장학회를 공공의 자산으로] 6. 장학재단은 공공의 자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6일자)

조 정 대 상	(22) 『정수재단 반환 시민연대 발족』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8일자) (23) 『박근혜 또 '앵무새 발언' 시민단체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24) 『박근혜 의원, 정수장학회 노골적 편들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25) 『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티즌 호응 폭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단의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부산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가장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수장학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2년 5월 4일자 2면, 인터넷 부산일보 5월 4일자)

2012부산조정13~15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여○○ 외 3인 對 부산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부산 프로그램 『악덕 사채, '피해 속출'』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4일자 21:30)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연루된 채권채무관계를 왜곡하여 신청인들이 악덕 사채업자인 것으로 보도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반론 · 손해청구 - 각 취하 ※ 이행방법 : MBC 뉴스데스크 부산 프로그램 말미에 2012년 3월 15일까지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
이 행 결 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악덕사채, '피해 속출'』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5일자 21:30)

2012서울조정239	(정정청구) ○○○○ 중앙도민회 對 이북도민연합신문
조 정 대 상	『중국정부는 탈북자 강제복송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1면)
신청인주장	탈북자 복송을 반대하는 성명서에 신청인 단체 회장의 이름이 누락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성명서이자 광고에 해당하므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2012서울조정240	(정정청구) 서귀포경찰서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설 자리 잃은 '제주해군기지', 경찰력 남용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서귀포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주민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연행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2012년 3월 12일(월) 9시부터 24시간 동안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강정마을 섹션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제주해군기지 경찰력 남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2일자)

2012서울조정241~242	(정정·반론청구) 주식회사○○○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 수상한 부동산 매각 ‘흑자 꿈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1면) (2) 『[○○ ‘수상한 부동산 매각’ 왜?] 내달 회장연임 승인 주총 예정, 고배당 통한 ‘주가관리’에 신경』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전국의 지사와 전화국 등 부동산을 자신이 최대주주인 부동산개발 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려쓰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한겨레에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동일기간 안에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1)~(2)의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4월 10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4월 9일자)

2012대구조정5	(정정청구) 배○○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잡음 많은 ○○광산 진입로, 새부지 물색』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사회/경제면 (경북))
신청인주장	광산 개발업체 대표인 신청인이 광산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에 실패해 우회도로 개설을 포기하고 제3의 진입로를 물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광주조정21~22	이낙연 對 전남희망신문 ^(21 손배청구) , 인터넷 전남희망신문(호남뉴스일번지) ^(21~22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전남희망신문 : 『기득권만의 특권-동원을 고발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7면) • 인터넷 전남희망신문(호남뉴스일번지) : 『<기고> 기득권만의 특권』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0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출판기념회에 영광군청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전남희망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비보도 사과표시) • 인터넷 전남희망신문(호남뉴스 일번지)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243~248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김○○ 對 동아일보 ^(243~244) , 조선일보 ^(245~246) , 중앙일보 ^(247~248)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1) 『온라인선 ‘붉은 마우스’로 從北』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1면), (2) 『대한항공 기장, “직장은 北찬양 위한 돈벌이 수단”』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3면) • 조선일보 : 『연봉 1억4000 좌파경력 없는 그, 김정일을 찬미하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A03면) • 중앙일보 : 『종북 조종사 “직장은 주체사상 실현 위한 재정 지원자”』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과학사이트를 위장한 종북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 · 중앙일보 : 각 각하결정 (사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법하다) • 조선일보 :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경찰청 보안국 등 수사기관의 공식 브리핑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2012서울조정249	(정정청구)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 對 뉴스웨이
조 정 대 상	(1) 『[진단 1보] 총선 · 대선 앞둔 ‘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 “눈치 보이네”』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8일자) (2) 『[진단 2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뛰어들면 “박근혜가 웃을까?”』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0일자) (3) 『[단독 3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추천서’… “왜, 지○○가 도왔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4) 『[단독 4보] 유정복-지○○, 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 답합’… “부정선거 딱 걸렸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일자) (5) 『[단독 7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떠받든 “정신나간 종목회장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일자) (6) 『[단독 9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사실상 후보 등록’… “박탈시켜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4일자) (7) 『[기자수첩] 유정복이 “국민생활체육회장 포기 해야 하는 사유 6가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6일자) (8) 『[13보] 문광부,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대필문서면… “무효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6일자)

조 정 대 상	(9) 『[단독 14보]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등록… “누가 대행 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7일자) (10) 『[단독 15보] 규정도 모른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자격 미달 확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8일자) (11) 『[집중분석] 뒤끝이 째뼉한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당선’』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12) 『[특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정복 국민생활체육회장 위임장, 문제있으면 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13) 『[종합특집] 짜여진 각본에 놀아난 ‘국민생활체육회장 선거’』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 신청인 단체를 정치적으로 오염된 ‘구태 체육회’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선출’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2012충북조정1~4	(매체별 정정청구) 진보신당충북도당 對 중부매일 ⁽¹⁾ , 인터넷 중부매일 ⁽²⁾ , 충청타임즈 ⁽³⁾ , 인터넷 충청타임즈 ⁽⁴⁾
조 정 대 상	• 중부매일 : 『연대 파열음… “제 갈 길 가자”』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1면) • 인터넷 중부매일 : (1) 『진보당 지분 흥덕갑? 충주?…아권연대 속앓이』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2) 『총선연대 파열음… “제 갈 길 가자”』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6일자) • 충청타임즈 · 인터넷 충청타임즈 : 『여야, 선거연대 가능성 ‘희박’』 제하의 기사 (충청타임즈 2012년 2월 27일자 1면, 인터넷 충청타임즈 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을 진보당이라는 약칭으로 보도함으로써 정당 명칭이 유사한 신청인 정당이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중부매일 · 인터넷 중부매일 : 『‘통합진보당’ 약칭 ‘진보당’ 사용에 따른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2년 3월 2일자 2면, 인터넷 중부매일 3월 1일자) • 충청타임즈 : 『<바로잡습니다> ‘통합진보당’ 약칭 ‘진보당’ 사용에 따른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2면) • 인터넷 충청타임즈 : 『NG 바로잡습니다 - ‘통합진보당’ 약칭 ‘진보당’ 사용에 따른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일자)

2012서울조정250~251	(조정·손배청구) 유○○對 인터넷 아시아일보
조 정 대 상	『○○, 남교사 여고생 체벌 문제 확산』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6일자)
신청인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여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252	(손배청구) 김○○對 TN
조 정 대 상	화성인 X-파일 프로그램 『64화 - 이중생활녀 VS 얼음킬러녀』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9일자 24: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과거 모 클럽 댄스팀원으로 활동했을 때의 사진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253~254	(매체별 정정청구) 김○○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1) 『진단서 발급한 의사 “그 체형에서 나오기 힘든 MRI”, 병무청 징병 전담의 “본인 재검 장면 CCTV로 확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2일자 A01면), (2) 『차시장 아들, 치료기록 없어… 디스크 처음 안 것처럼 행동』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A03면) • 동아닷컴 :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진단서를 발급한 신청인이, “공개된 MRI 사진을 다시 보니 박 시장 아들의 체형에서는 나오기 힘든 사진”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4일자 A03면) • 동아닷컴 : 『[반론보도문] 2월 22일자 A1 · 3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4일자)

2012서울조정255~258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이성현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비대위 親朴 면저 내치기?』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1년 12월 28일자 3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새누리당 공천 개혁을 위한 탈당 권유 대상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259~260	(반론 · 손해청구) (병합) 이성현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1) 『朴, 이성현 의원 사법처리 수위 검토』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5일자) (2) 『이화영 · 정형근 등 4명 이르면 금주 기소할 듯』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검찰이 국회의원인 신청인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261	(반론청구) 이성현 對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박근혜 최대 외곽 조직 ‘국민희망포럼’의 사본오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검찰이 국회의원인 신청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중에 있고, 친박계에서 신청인의 총선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262~267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권○○ 對 KBS-1TV, KBSi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현직 경찰총경, ‘비리수사’ 무마 압력?』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22일자 21:00) • KBSi : 『[단독] 현직 경찰 총경, ‘비리수사’ 무마 압력?』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철거업체 대표인 고향 후배의 청탁을 받고 뉴타운 관련 비리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KBS-1TV : 경찰 수사 결과 신청인이 내사종결 또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이 7일 이내에 요청하면 7일 이내에 KBS 뉴스9 프로그램에 후속보도함 • KBSi : 경찰 수사 결과 신청인이 내사종결 또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이 7일 이내에 요청하면 7일 이내에 KBSi 홈페이지에 후속보도함

2012서울조정268~270	(병합) 장병완 對 노컷뉴스 (268 정정청구, 269~270 정정 · 손해청구)
조 정 대 상	(1) 『민주, 호남에서 ‘자동 물갈이’ 추진... 역풍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8일자) (2) 『‘광주 남구’ 장병완, 고교후배 회사 주식 투자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민주통합당의 호남지역 공천개혁 관련 기사에서 신청인이 출마한 광주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달리 보도해 피해를 입었으며, 신청인이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획득한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장병완 의원, 부적절한 주식 투자한 사실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3일자)

2012서울조정271~274	(매체별 정정청구) (주)경기방송 對 일요서울 ⁽²⁷¹⁾ , 인터넷 일요서울 ⁽²⁷²⁾ , 네이버 ⁽²⁷³⁾ , 다음 ⁽²⁷⁴⁾
조 정 대 상	• 일요서울 : 『심○○ 회장의 경기방송, 코바코 직원에 성접대 제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20~21면) • 인터넷 일요서울 · 네이버 · 다음 : 『경기방송, 코바코 직원에 성접대 제공 의혹』 제하의 기사 (인터넷 일요서울 2012년 2월 28일자, 네이버 · 다음 2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광고 수주를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직원에게 향응 및 성접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일요서울 · 인터넷 일요서울 : 각 조정불성립결정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

2012전북조정6~7	(정정 · 반론청구) 전북지방경찰청 對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1) 『여행사 대표 'X파일' 삭제 충격』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6면) (2) 『경찰, 총선 예비후보 출석 통보』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일자 1면) (3) 『총선에 휘둘린 여행사 비리 수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6면)
신청인주장	전북경찰청이 정관계 로비를 한 혐의자를 수사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전북경찰 여행사 수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5일자 2면)

2012부산조정16	(정정청구) 동아대학교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병원 수입 5년간 빼돌린 동아대재단 감사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6일자 1면)
신청인주장	동아대의료원 시설 사용료를 교비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가중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275~277	(매체별 정정청구) 이종걸 對 동아일보 ⁽²⁷⁵⁾ , 동아닷컴 ⁽²⁷⁶⁾ , 채널A ⁽²⁷⁷⁾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민주, 안양서도 “불법모집” 충돌』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3월 2일자 A03면, 동아닷컴 3월 2일자) •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 『3선 중진의원까지...민주 선거인단 대리등록 장면 포착』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일자 22:00)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동아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처 리 결 과	•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이종걸 후보 “불법 없었다” 반박)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반론보도문의 본문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반론보도문: 이종걸 후보 “불법 없었다” 반박』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3월 19일자 A03면, 동아닷컴 3월 19일자) •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 『이종걸 후보 “불법없었다” 반박』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7일자 20:00)

2012경기조정6	(정정청구) 의료법인 ○○의료재단 對 인천신문
조 정 대 상	『○○병원 비리의혹 · 추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 운영비리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분쟁 중인 전 병원장의 고발장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대전조정1	(정정청구) 대전둔산경찰서 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대전 일부 경찰,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사전에 업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2012년 3월 19일 09:00부터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게재, 이로부터 3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별도의 배너형태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이 계속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단 배너 위치와 크기 등은 피신청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 행 결 과	『둔산경찰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2012서울조정278~279	(정정 · 손해청구) 정○○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93만 원 유산 때문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A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어머니가 남긴 유산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 흥기로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내용 : 반론보도, 조선닷컴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선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고, 조선닷컴 홈페이지 및 조정대상기사가 매개된 모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함
이 행 결 과	『‘93만 원 유산 때문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A12면)

2012서울조정280~28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어버이들, 2. 신○○對 조선일보 ^(280~281) , 조선닷컴 ^(282~283) , 네이버 ^(284~285)
조 정 대 상	『“구속영장 발부하면 또 때리겠다” 反FTA 시위대, 종로쪽 2시간 소란』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12월 17일자 1면, 조선닷컴·네이버 1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회원들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286	(정정청구) 진안경찰서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전북 진안경찰서, 봐주기 수사 비난 일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진안군수의 도박사건과 관련, 도박자금 등을 축소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 잡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 도박 수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2012서울조정287~288	(정정·반론청구) 이○○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전북 진안경찰서, 봐주기 수사 비난 일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4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진안군수 도박사건과 관련, 단정적인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 도박 수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2012광주조정23	(정정청구) 담양군對 담양신문
조 정 대 상	『“베꼈다” “전혀 참조하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일자 1면)
신청인주장	담양군이 군민이 제출한 제안서를 표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24~25	(정정·손배청구) 전○○對 전광일보
조 정 대 상	『농지 오염 폐기물 천지된 함평천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7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지령이 양식 농장에서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농지 오염 폐기물 천지된 함평천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6일자 5면)

2012서울조정289~298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전) ○○對TV조선(289~290), 인터넷일요시사(291~292), 인터넷TV조선(293~294), 조선일보(295~296), 조선닷컴(297~298)

조정대상	• TV조선 : 8시뉴스 '날' 프로그램 『[단독] 대통령 조카사위, 먹튀?』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일자 20:00) • 인터넷 일요시사 : 『MB조카사위 전○○의 꿈수』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6일자) • 인터넷 TV조선 : (1) 『3월 1일 8시뉴스 '날' 헤드라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일자), (2) 『[단독] 대통령 조카사위 공장 애물단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일자), (3) 『전○○, 주식 팔아 70억 차익』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일자) • 조선일보·조선닷컴 : 『180억 투자받은李大통령 조카사위, 주식 시세차익 70억 올리고 사업 접어』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3월 2일자 A10면, 조선닷컴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신청인이 회사를 차린 후 주식 매도 등으로 70억의 시세차익을 얻고 소위 '먹튀'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 TV조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500만 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진실하며,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인터넷 일요시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TV조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진실하므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선일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선닷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TV조선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8시 뉴스 '날' 프로그램에서 시작 후 20분 내에 정정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낭독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함 • 인터넷 일요시사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TV조선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특별취재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1)~(3)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조선닷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처 리 결 과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일요시사 : 『‘MB조카사위 전○○ 주식매각’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2012서울조정299~306, 366~367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주)조선방송 對 한겨레(299~300), 인터넷 한겨레(301~302, 299~300과 병합), 전기신문(303~304), 인터넷 전기신문(305~306, 303~304와 병합), 뉴스엔뉴스(366~367)
조 정 대 상	• 한겨레 : (1) 『여당의원이 TV조선 ‘한반도’ 협찬 압력』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8일자 9면), (2) 『이제 여당 의원까지 종편 영업맨으로 나서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8일자 23면) • 인터넷 한겨레 : (1) 『[사설] 이제 여당 의원까지 종편 영업맨으로 나서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2) 『새누리당 의원 “조선종편 협찬해라” 압박』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 전기신문 · 인터넷 전기신문 : (1) 『발전6사 종편드라마에 거액 협찬』 제하의 기사 (전기신문 2012년 2월 13일자 2면, 인터넷 전기신문 2월 9일자), (2) 『현장 취재』 드라마 협찬과 권언유착』 제하의 기사 (전기신문 2012년 2월 13일자 19면, 인터넷 전기신문 2월 9일자) • 뉴스엔뉴스 : (1) 『정치인, 공기업들에 조선종편 <한반도> 협찬강요』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2) 『협찬 강요 의원은 권○○』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의 창사특집 드라마에 한전 및 발전사들이 협찬한 것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압력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전기신문 · 인터넷 전기신문 :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각 신청인 이익신청 (사유 :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으나 반론보도 결정만이 내려졌고, 신청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한다) • 뉴스엔뉴스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 한겨레 경제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전기신문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 전기신문 홈페이지 초기 화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2012서울조정307~311	(매체별 조정청구) 한국수자원공사 對 오마이뉴스(307), 네이버(308), 네이트(309), 다음(310), 야후(311)
조 정 대 상	『물고기도 녹이는 ‘독극물’, 식수에 풀었다. 낙동강 8개보에 들어붓는 시멘트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진행한 4대강 사업과 관련, 낙동강 8개보에 사용한 시멘트가 독극물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오마이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오마이뉴스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36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낙동강 8개보에 들어붓는 시멘트의 진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2012서울조정312~317 (매체별 조정 · 반론 · 손해청구) (병합) 김○○ 對 한겨레21, 인터넷 한겨레21	
조 정 대 상	『물 만난 인터넷 안전위대』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2년 1월 30일자 48~49면, 인터넷 한겨레21 1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언론사 대표인 신청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분단의 원흉이다” 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21 : 홈페이지 하단 「알립니다」 코너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하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인터넷 ○○신문’ 김○○ 대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2년 4월 16일자 목차, 10면, 인터넷 한겨레21 4월 13일자)

2012부산조정17~18 (정정 · 손해청구) 노○○ 對 부산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부산 프로그램 『악덕 사채, ‘피해 속출’』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4일자 21:30)
신청인주장	악덕사채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318 (정정청구) 인천광역시 ○○○○○ 협동조합 對 로컬세계닷컴	
조 정 대 상	『인천시 LPG판매점 가격 담합, 탈세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인천시 LPG가스판매점들이 가격담합과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319~320	
(매체별 정정청구) 홍○○對 연합뉴스, 인터넷 The Korea Herald	
조 정 대 상	『○○○ Group head sentenced to 3-year prison term over slush funds』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그룹의 비자금 은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Gallery ○○ and its head Hong acquitted of stashing slush funds』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4일자) • 인터넷 The Korea Herald : 『Gallery ○○ head Hong acquitted of stashing slush funds』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2012서울조정321~324	
(매체별 정정청구) (사단)국○○○○○협회對 노컷뉴스 ⁽³²¹⁾ , 네이버 ⁽³²²⁾ , 네이트 ⁽³²³⁾ , 다음 ⁽³²⁴⁾	
조 정 대 상	(1) 『내신 1등급 정범이가 '전과 7범' 된 사연』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2) 『○○○ ○○ 뛰쳐나온 15살 소녀 … 로데오거리 '무법자' 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가 청소년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노컷뉴스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청소년쉼터 운영 실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7일자)
2012대전조정2~3	
(기사별 정정청구) (병합)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1)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상상초월'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2) 『대전 경찰 불법 오락실 유착 없다면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7일자)
신청인주장	대전 지역 일부 경찰과 지역 내 불법 오락실이 유착 관계에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게재, 3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별도의 배너형태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이 계속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배너 위치와 크기 등은 피신청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 행 결 과	『대전지방경찰청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2012서울조정325	
(반론청구) 관악경찰서對 채널A	
조 정 대 상	뉴스A 프로그램 『보복 두려워한 거짓 진술에…경찰, 쿨하게 '훈방'』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10일자 22:00)

신청인주장	관악경찰서가 학교 폭력수사를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도 하지 않고 조사했고, 간단한 진술만으로 가해학생을 훈방조치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사실 보도로써 신청인의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A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함

2012서울조정326~327	(정정·손배청구) 황○○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강제北送으로 만신창이…그때 날 도운건 한국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8일자 A10면)
신청인주장	탈북자인 신청인이 한국에 오기 전 조선족 남자에게 몸을 팔면서 노예처럼 살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300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탈북동포 황○○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1일자 A10면)

2012서울조정328~33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의)○○○의료재단 ○○○○병원對 내외일보, 인터넷 내외일보
조 정 대 상	『수술 도중 황급히 외부반출한 물건이 무엇인가』 제하의 기사 (내외일보 2012년 2월 29일자 7면, 인터넷 내외일보 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이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수술기구를 대여했다가 반납한 것이 불법인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내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내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내외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중간 이상)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즉시 계약 관계 포털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게재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전문병원, 수술기구 불법 반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일자)

2012서울조정332~334	(매체별 정정청구) ○○○○교육(주)對 KBS-1TV ⁽³³²⁾ , KBS ⁽³³³⁾ , 네이버 ⁽³³⁴⁾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무등록·부실 영어캠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25일자 21:30) • KBSI·네이버 : 『무등록 사설 영어캠프…애꿎은 학생만 골탕』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어캠프가 원어민 강사도 없이 광고한 것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KBS-1TV·KBSI : 각 조정불성립결정 • 네이버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335~336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주)○○○하우징 對 도시재생신문, 인터넷 도시재생신문
조 정 대 상	『상계5구역 정비업체 ‘비리’ 따로 ‘정비사업’ 따로?』 제하의 기사 (도시재생신문 2012년 2월 29일자 8면, 인터넷 도시재생신문 2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상계5구역 재개발 정비업체인 신청인 회사의 대표와 임직원 대부분이 구속되어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도시재생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이 행 결 과	『‘상계5구역 정비업체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도시재생신문 2012년 4월 30일자 8면, 인터넷 도시재생신문 4월 16일자)

2012서울조정337	(정정청구) 1. ○○생명보험 주식회사, 2.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檢, 골드만삭스 ‘CDO 사기판매’ 의혹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들이 부채담보부증권(CDO) 사기판매 혐의로 골드만삭스 직원 9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골드만삭스 CDO사기판매 의혹 무혐의’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30일자)

2012서울조정338	(손배청구) 이성현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조 정 대 상	『격전지 출마의원, 입법 활동 들여다봤더니』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8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면서 수정가결된 건수 등은 반영하지 않고, 대표발의건(98건) 중 4건만 통과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339~344	(매체별 손배청구) 하○○ 對 중앙일보 ⁽³³⁹⁾ , 온라인 중앙일보 ⁽³⁴⁰⁾ , 네이버 ⁽³⁴¹⁾ , 네이트 ⁽³⁴²⁾ , 다음 ⁽³⁴³⁾ , 인터넷 jbc ⁽³⁴⁴⁾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학원 없어 토요일·방학에서 수준별 수업, 선생님마다 학생 7~9명씩 맡아 멘토링, 올해 103명 중 96명 대학 진학』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2면) • 온라인 중앙일보·네이버·네이트·다음·인터넷 jbc : 『폐교 위기서 지역 명문고로 거듭난 경남 ○○○고』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신청인주장	폐교위기였던 고교가 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지역명문고로 거듭났다고 소개하면서,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신청인이 재학시절 자폐증세가 있었고, 입학 때 최하위권이었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대구조정6~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손흥섭 對 서울일보, 인터넷 서울일보
조 정 대 상	• 서울일보 : 『구미시의원 운영 주유소 ‘말썽’』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9일자 13면) • 인터넷 서울일보 : 『“구미 ○○주유소 중장비에 경유 대신 등유 주입, 엔진고장 말썽”』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9일자)
신청인주장	구미시 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직원이 대형 크레인에 등유를 주입해 장비고장을 일으키고 난 후, “나 몰라라” 식의 안하무인식 대처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서울일보에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서울일보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구미시의원 주유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일보 2012년 3월 28일자 10면)

2012서울조정345~346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KBS 라디오의 ‘어이없는’ 실상, 부끄럽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3일자)
신청인주장	KBS 현 사장 부임 이후, 불공정 방송과 ‘막장 인사’로 인해 KBS 라디오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347~349	(정정·반론·손배청구) 서울○○○○연구소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1억2천만 원이면 돼요” 교사직 매매 현장 가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국책사업기관임을 표방하면서 교사 채용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전북조정8~9	(정정·손배청구) 나병문 對 전북매일신문
조 정 대 상	『미성년자 고용 최규성 공천배제 위기』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3면)
신청인주장	김제시 시의원인 신청인의 딸과 부인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고용해 일당을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전북매일신문에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전북매일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 삭제,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 행 결 과	『미성년자 고용 최규성 공천배제 위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북매일신문 2012년 4월 5일자 2면, 인터넷 전북매일신문 4월 4일자)

2012서울조정350~35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헤럴드경제,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 헤럴드경제 : 『이○○ 부친이 고소·고발당한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6일자 13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새누리 이○○ 비대위원 父親, 사기혐의 피소…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재생에너지업체의 법정관리인인 신청인이 ‘대주주 협박 및 주가조작 등을 통해 수백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소액주주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헤럴드경제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헤럴드경제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중간이상)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즉시 계약 관계 포털사에 이 내용을 통보하여 게재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이○○ 부친 수백억 포탈 소액주주 주장' 관련 정정 보도』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2년 4월 13일자 19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13일자)

2012서울조정354~357	김○○ 對 YTN ^(354~356 정정·반론·손배청구) , 다음 ^(357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YTN : (1) 뉴스오늘 (1부) 프로그램 『청와대 근무 공무원 술값 시비 끝에 체포』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7일자 08:09), (2) 뉴스&이슈 (1부) 프로그램 『청와대 근무 공무원 술값 시비 끝에 체포』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7일자 13:52) • 다음 : 『청와대 근무 공무원 술값 시비 끝에 체포』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7일자)
신청인주장	청와대 파견공무원인 신청인이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YTN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다음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2서울중재14 참조)] ※ 이행방법 • YTN : 뉴스7 프로그램에서 1회 정정보도, 뉴스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정정보도문의 본문을 낭독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
이 행 결 과	• YTN : 뉴스7 프로그램 『청와대 행정관 사칭 소방공무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4일자 07:00)

2012제주조정1	(정정청구) 서귀포경찰서 對 제주의회소리
조 정 대 상	『망치로 내려치고, 기자내쫓고, 변호사 막고...』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구럼비 폭파 저지를 위해 시위를 하던 활동가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취재기자를 쫓아내고 변호사 접근을 막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358~359	(매체별 정정청구) ○○○ 미술회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봉화군 주민 눈치보기 행정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13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13일자) (2) 『봉화군 ‘눈치보기 행정’에 주민만 피해』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30일자 14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30일자) (3) 『[취재파일] 봉화군 ‘눈치행정’ ... 들어온 기업도 내쫓는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31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31일자)

조 정 대 상	(4) 『봉화군 운모광산개발 제동 명분없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2월 14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14일자) (5) 『봉화군 ‘복지부동’ 지역갈등 부추긴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2월 24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광산개발사업자인 K사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7일자 12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1월 13일자 ‘봉화군 주민 눈치보기 행정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7일자)

2012서울조정360~361	(매체별 반론청구) 권○○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1) 『아이들이 읽을까 겁나는 다문화 ‘인식 개선’ 동화』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일자 A01면), (2) 『동화저자 “표현 순화 애썼지만 미처 다 못 살펴”』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일자 A02면) • 동아닷컴 : 『아이들이 읽을까 겁나는 다문화 ‘인식 개선’ 동화』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쓴 동화(‘까만 한국인’)의 곳곳에 아프리카 비하내용이 담겨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362~363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MB 낙하산 김인규, 청와대 청탁받고 함○○ 임명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3일자)
신청인주장	KBS 김인규 사장이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KBS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임명했고, KBS의 교향악단 관련 부서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임원이나 직원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364~365	(반론·손배청구) 장○○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사람잡는 층간소음』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4일자 20:00)
신청인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웃의 해결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충북조정5~8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정우택 對 충청리뷰, 충북인뉴스
조 정 대 상	『파경으로 끝난 정우택과 청년의 밀월』 제하의 기사 (충청리뷰 2012년 3월 23일자 A06면, 충북인뉴스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충북도지사 재임시절 충북청년경제포럼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368~369	(매체별 정정청구) 강용석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이○○ 칼럼] BBK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A34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이○○ 칼럼/12월 29일] BBK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2008년 18대 총선에서 상대후보가 초등학교 교장에게 폭언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2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12월29일자 34면 'BBK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칼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5일자)

2012서울조정370~371	(조정·손배청구) (주)○○플랜 對 주간한국
조 정 대 상	『검찰 정권실세 A씨 조사 - 4~6개 기업 뒤통스 댄 정황 파악』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업이 정권 실세에게 뒤통스를 대주고 4대강 관련 공사 수주를 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검찰 정권실세 A씨 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4면)

2012서울조정372~377, 481~483, 535~540, 544~549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對 조선일보(372~374), 조선닷컴(375~377, 372~374과 병합), 연합뉴스(481~483), 한겨레(535~537), 인터넷 한겨레(538~540, 535~537과 병합), 머니투데이(544~546), e머니투데이(547~549)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소주 ‘○○○○’이 근육통 유발” 루머에 ○○주류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A10면) • 조선닷컴 : 『○○주류, 소주 ‘○○○○’ 관련 악의적 루머에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A10면)

조 정 대 상	년 3월 19일자) • 연합뉴스 : 『〇〇주류, “〇〇〇〇 음해 행위 못 참겠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 한겨레 : 『소주 〇〇〇〇 ‘물’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20면) • 인터넷 한겨레 : 『‘알칼리 환원수’ 소주 인체유해?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 머니투데이 : 『‘〇〇〇〇’ 악의적 루머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13면) • e머니투데이 : 『〇〇주류, ‘〇〇〇〇’ 악의적 루머..강력 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특정 소주가 근육통을 유발한다는 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 · 조선닷컴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머니투데이 · e머니투데이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연합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연합뉴스 :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〇〇주류 ‘〇〇〇〇’ 루머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2012서울조정378~380, 383~384, 392, 398~404	(매체별 조정청구) 서〇〇 對 뉴시스 ⁽³⁷⁸⁾ , 이뉴스투데이 ⁽³⁷⁹⁾ , 인터넷 중앙Sunday ⁽³⁸⁰⁾ , 중앙Sunday ⁽³⁸³⁾ , e머니투데이 ⁽³⁸⁴⁾ , YTN ⁽³⁹²⁾ , 동아닷컴 ⁽³⁹⁸⁾ , 인터넷 서울신문 ⁽³⁹⁹⁾ , 세계일보 ⁽⁴⁰⁰⁾ , 세계닷컴 ⁽⁴⁰¹⁾ , 한국일보 ⁽⁴⁰²⁾ , 인터넷 한국일보 ⁽⁴⁰³⁾ , 뉴스핌 ⁽⁴⁰⁴⁾
조 정 대 상	• 뉴시스 : 『[4·11총선] 비례대표 후보 183명…3.4대 1 경쟁률』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4일자) • 이뉴스투데이 : 『재산 박근혜 21억8천만 원, 한명숙 6천만 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 인터넷 중앙Sunday · 중앙Sunday : 『비례대표 후보 188명 42%인 79명이 여성』 제하의 기사 (인터넷 중앙Sunday 2012년 3월 25일자, 중앙Sunday 3월 25일자 1면) • e머니투데이 : 『[후보 분석] 비례대표 후보 20개 정당 188명…경쟁률 3.48대1』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4일자) • YTN :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D-16 비례대표 후보 점검』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6일자 15:41) • 동아닷컴 : 『[4·11총선 D-16] 20개정당 비례대표 후보 188명 확정… 23%가 병역 미필 稅체납 경력 26명』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 인터넷 서울신문 : 『[선택 2012 총선 D-16 비례대표 후보 분석] 총 20개 정당 188명 확정… 경쟁률 3.48대 1』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5일자) • 세계일보 : 『5명중 1명꼴 軍미필 · 전과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5면) • 세계닷컴 : 『비례대표 후보자 5명중 1명꼴 軍미필 · 전과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 한국일보 : 『비례대표 후보 188명 병역 · 전과 · 납세 · 재산 분석 - 22%가 군 면제 · 9명은 5년간 세금 0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A08면)

조 정 대 상	• 인터넷 한국일보 : 『[총선] 22%가 군 면제 · 9명은 5년간 세금 0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 뉴스핌 : 『19대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쟁률 3.48대 1』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신청인의 재산 신고액이 부채만 5억 원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실제 재산 신고액은 1억9천만 원이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이뉴스투데이 · 인터넷 중앙Sunday · 중앙Sunday · e머니투데이 · YTN · 동아닷컴 · 인터넷 서울신문 · 세계일보 · 세계닷컴 · 한국일보 · 인터넷 한국일보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뉴스핌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뉴시스 : 『“[4 · 11총선]비례대표 후보 183명…3.4대 1 경쟁률”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30일자) • 이뉴스투데이 : 『[정정보도] 새누리당 서○○ 후보 재산신고액 정정 알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30일자) • 인터넷 중앙Sunday : 『“[비례대표 후보 188명42%인 79명이 여성”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9일자) • 중앙Sunday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일자 정치면) • e머니투데이 : 『서○○ 새누리당 비례대표후보 재산 관련 보도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 YTN : 뉴스Q (1~2부) 프로그램 『선관위, 새누리당 서○○ 후보 재산 정정』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4일자 16:00) • 동아닷컴 : 『[바로잡습니다] 3월 26일자 A10면』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 인터넷 서울신문 : 『알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 세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8일자 5면) • 세계닷컴 : 『[정정보도문] 선관위, 새누리 서○○ 비례대표 후보 재산 정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8일자 6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5일자)
2012서울조정381~382 (매체별 정정청구) 노○○ 對 KBS-1TV, KBSI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수상한 영업 허가』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3일자 21:00) • KBSI : 『강남 불법학원 영업 허가… ‘봐주기 행정’ 시비』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적법한 허가없이 학원을 운영한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385~386 (매체별 반론청구) (주)○○○○○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뒤편’ 중 · 고 참고서값… ‘타는’ 학부모 속』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3월 26일자 13면, 인터넷 경향신문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국사 참고서가 타 출판사에 비해 비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387~39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주)○○○○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채널A’ 취재차 운전노동자 ‘묻지마 해고’』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1년 12월 29일자 12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채널A 취재차량 하청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운전기사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채널A 취재차 운전자 해고’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4월 17일자 12면, 인터넷 한겨레 4월 17일자)

2012서울조정391	(정정청구) 부천시 對 함께걸음
조 정 대 상	『일률적인 복지가 위기 가정 방치하고 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호 20~21면)
신청인주장	부천시가 운영하는 무한돌봄센터의 관계자가 정신질환 어머니 밑에서 감금·방치되고 있는 장애우 사례를 ‘함께걸음’에 제보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함께걸음에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에 넣어 함께 걸음 2012년 5월 호 목차란에 정정보도문 게재 지면과 함께 표시, 인터넷 함께걸음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호 목차, 29면)

2012광주조정26	(정정청구) 담양군 對 담양신문
조 정 대 상	『예산 없으면서 민가 사들여 주막집 짓겠다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4일자 1면)
신청인주장	담양군이 죽녹원 내에 주막집을 건축하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원주민의 사유재산인 민가를 매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담양군, 죽녹원 주택 구입 주막집 건축 추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일자 2면)

2012경기조정7~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안산도시공사 對 안산타임스, 인터넷 안산타임스
조 정 대 상	『도시공사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2년 3월 2일자 2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뚜렷한 성과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특정 임원이 인사의 전횡을 휘두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안산타임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안산도시공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안산타임스 2012년 4월 26일자 2면, 인터넷 안산타임스 4월 26일자)

2012서울조정393~39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 주식회사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1) 『기상청 ‘특정업체 납품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10면), (2) 『2차례나 ‘부적격’ 판정 업체가 최종 낙찰』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12면), (3) 『기상진흥원, 납품 심사위원 평가 직전 교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8일자 14면) • 인터넷 경향신문 : (1) 『기상청 ‘특정업체 납품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2) 『기상청 ‘장비납품 특혜 의혹’ 갈수록 커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3) 『기상진흥원, 납품 심사위원 평가 직전 교체』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기상청의 라이더(LIDAR) 장비 도입과 관련, 신청인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기상장비 도입’ 관련, ○○○○ 측 “특혜 없었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4월 19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19일자)

2012경남조정10	(손배청구) 김○○ 對 통영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1) 『○○사 대첩 ... ‘물러나라’에 ‘버티겠다’ - 이사장이 경남서 음란사진 보관 ‘폭로’』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7일자) (2) 『○○사 감사진 “제대로 밝혀 달라” - 사법 당국에 고발, 경남도 감사 청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2일자) (3) 『끝 없이 불거지는 ○○사 이사장 횡포 - 부당하고, 월급 삭감에 ‘1인 천하’ 세상』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4) 『도둑잡은 경찰을 제명?..이상한 ○○사 - 직인 강탈해간 이사장 횡포 ‘漸入佳境’, “추종세력 떠나라” 이○○이사 ‘단식’』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5일자) (5) 『○○사 평의회, 박○○ 이사장 사임 승인 - 버티다 버티다 만신창이로 퇴장』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임진왜란 순국선열 제향소의 이사장인 신청인의 비리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사건의 핵심과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나체사진을 수차례 언급하여 사생활을 침해당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기사삭제)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2전북조정10~11		(정정·손배청구) 함○○對 군산신문
조 정 대 상	(1) 『괴 유인물 유포 배후 ‘드러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1면) (2) 『[사설] 흑색선전 등 구태정치는 끝장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0일자 2면) (3) 『국회의원 선거 혼탁 양상』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3면)	
신청인주장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신청인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괴 유인물 유포의 배후세력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괴 유인물 유포 배후 ‘드러나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2면)	
2012서울조정395		(정정청구) 1. ○○캐피탈(주), 2. 박○○對 뉴스핌
조 정 대 상	『[기자수첩] ○○그룹에 ○○손보 매각? 업계는 ‘물음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매물로 나온 손해보험사를 인수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 회사의 회장이 상가 사기분양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그룹, ○○손보 인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9일자)	
2012광주조정27		(정정청구) 토지영농조합법인對 전광일보
조 정 대 상	『함평군, 국고 보조금 논문 돈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5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영농조합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건설한 자원화시설센터 시설물에서 악취가 발생해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396~397		(정정·손배청구) 권○○對 시사IN
조 정 대 상	『수사 책임자가 조○○로부터 9억 원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4일자 14~18면)	
신청인주장	경찰 수사 책임자인 신청인이 단단계 사기 피의자로부터 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후, 소극적인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남조정11		(정정청구) 주식회사 ○○주택건설對 거제타임즈
조 정 대 상	『사람 목숨 달렸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거 맞나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보강토 옹벽에서 물과 함께 흙이나 다른 입자까지 새어 나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속보] “물만 나왔지 흙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2012대전조정4~5, 16~1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이○○對 인터넷 놀외신문, 논산투데이
조 정 대 상	『논산경찰서 ‘계룡 모 신문사 대표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언론사 대표가 구속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계룡 모 신문사 대표’라고 표현하여 계룡신문사 대표인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놀외신문 및 논산투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7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2012서울조정405~411	이○○對 국민일보(405~406 추후·손배청구), 쿠키뉴스(407~408 추후·손배청구), 네이버(409 추후청구), 네이트(410 추후청구), 다음(411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 국민일보 : 『초상권 사용료 횡령 의혹 가수노조 지부장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10면) • 쿠키뉴스·네이버·네이트·다음 : 『경찰, 초상권 사용료 횡령 의혹 가수지부장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前가수노조 지부장 횡령 의혹 ‘무혐의’』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2년 4월 11일자 8면, 쿠키뉴스·네이버·네이트·다음 4월 10일자)

2012서울조정412~415	이○○對 조선닷컴(412~413 추후·손배청구), 네이버(414 추후청구), 다음(415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가수노조 전 지부장 초상권 사용료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檢, 횡령혐의 전직 가수노조위원장 이○○씨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2012대구조정8	(손배청구) 김○○對 경북일보
조 정 대 상	『‘농협캐피탈’ 사칭 사기대출 극성』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4면)
신청인주장	농협캐피탈 사칭 사기대출 관련 기사에 농협캐피탈 직원인 신청인의 광고 전단지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2012대구조정9~10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 마을회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봉화군 주민 눈치보기 행정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13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13일자) (2) 『봉화군 ‘눈치보기 행정’에 주민만 피해』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30일자 14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30일자) (3) 『[취재파일] 봉화군 ‘눈치행정’ ... 들어온 기업도 내쫓는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1월 31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1월 31일자) (4) 『봉화군 운모광산개발 제동 명분없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2월 14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14일자) (5) 『봉화군 ‘복지부동’ 지역갈등 부추긴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2월 24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24일자)
신청인주장	광산개발사업자 K사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홈페이지 사회면 지역소식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7일자 12면) • 인터넷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1월13일자 ‘봉화군 주민 눈치보기 행정 “도 넘었다”’, 제하기사』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7일자)
2012서울조정416~428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이○○ 對 KBS-1TV ^(416~417 추후·손배청구) , KBS ^(418~419 추후·손배청구) , MBC ^(420~421 추후·손배청구) , SBS ^(422~423 추후·손배청구) , 인터넷 MBN ^(424~425 추후·손배청구) , 네이버 ^(426 추후청구) , 네이트 ^(427 추후청구) , 다음 ^(428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 KBS-1TV : (1) KBS 뉴스9 프로그램 『억대 합의금 어디로?』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2일자 21:00), (2)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억대 합의금 ‘꿀꺽?’』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3일자 06:00), (3) KBS 뉴스 프로그램 『억대 합의금 ‘꿀꺽?’』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3일자 09:30) • KBSi : (1) 『경찰, 가수노조 ‘억대 초상권 합의금’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2) 『가수노조 ‘노래방 초상권료’ 횡령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 iMBC : (1) 『‘노래방 초상권료’ 횡령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2) 『노래방 반주기 초상권료 횡령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 SBSi : 『‘노래방 초상권료’ 횡령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 인터넷 MBN·네이버·네이트·다음 : 『경찰, 노래방 초상권료 횡령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KBS-1TV :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2년

이 행 결 과	4월 18일자 06:00) • KBS1 : 『가수 노조위원장 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7일자) • iMBC : 『※ 알립니다 -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3일자) • SBS1 : 『[추후 보도문]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3일자) • 인터넷 MBN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검찰, 전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무혐의’ 결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2012서울조정429~433	이○○對 인터넷YTN(429~430 추후 · 손배청구), 네이버(431 추후청구), 네이트(432 추후청구), 다음(433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노래방 초상권료’ 횡령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전 가수노조 지부장 횡령 무혐의 결론』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012서울조정434~438	이○○對 뉴시스(434~435 추후 · 손배청구), 네이버(436 추후청구), 네이트(437 추후청구), 다음(438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경찰, 노래방 초상권 사용료 횡령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前가수노조 지부장 횡령의혹 무혐의 결론』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2012서울조정439~443	이○○對 연합뉴스(439~440 추후 · 손배청구), 네이버(441 추후청구), 네이트(442 추후청구), 다음(443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노래방 초상권료’ 횡령 의혹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前 가수노조 지부장 횡령 무혐의 결론』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012서울조정444~449	이○○對 데일리인(444~445 추후 · 손배청구), 네이트(446 추후청구), 다음(447 추후청구), 야후(448 추후청구), 파란(449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가수노조위원장, 가수 초상권 합의금 꿀꺽? 경찰소환』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검찰, 전 가수노조위원장 사기 횡령 ‘무혐의 판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2012서울조정450~454	이○○ 對 마이데일리(450~451 추후 · 손배청구), 네이버(452 추후청구), 네이트(453 추후청구), 다음(454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가수노조 前지부장, 초상권 사용료 1억8천만 원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가수노조 前지부장, 가수 초상권 사용료 횡령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012서울조정455~459	이○○ 對 e머니투데이(455~456 추후 · 손배청구), 네이버(457 추후청구), 네이트(458 추후청구), 다음(459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예술인노조 가수지부장 초상권료 횡령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전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012서울조정460~463	이○○ 對 인터넷 스포츠경향(460~461 추후 · 손배청구), 네이버(462 추후청구), 다음(463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가수노조위원장 이모씨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중』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전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2012서울조정464~468	이○○ 對 인터넷 스포츠조선(464~465 추후 · 손배청구), 네이버(466 추후청구), 네이트(467 추후청구), 다음(468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가수노조위원장, 가수 초상권 합의금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가수노조위원장 횡령혐의,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1일자)

2012서울조정469~474	이○○對 오마이뉴스 ^(469~470 추후 · 손해청구) , 네이버 ^(471 추후청구) , 네이트 ^(472 추후청구) , 다음 ^(473 추후청구) , 야후 ^(474 추후청구)
조 정 대 상	『가수 노조 전 위원장, 초상권 사용료 횡령 혐의』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예술인노조 가수지부 위원장 재직 당시, 노래방기업체로부터 받은 가수들의 초상권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전 가수노조 위원장 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012서울조정475~476	(매체별 정정청구) 김영환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2003년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집권당 김영환 의원 사찰』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4월 2일자 4면, 온라인 중앙일보 4월 2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2003년 주유소 업자의 세무청탁과 관련해 정부의 사찰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대전조정6~15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중도일보사對 중앙매일 ^(6~7) , 충민일보 ^(8~9) , 충청신문 ^(10~11) , 대전투데이 ^(12~13) , 충남일보 ^(14~15)
조 정 대 상	• 중앙매일 : 『예산벚꽃마라톤대회 비리얼록, 수년간 감사한번 않고 눈감아줘, 전형적인 공직 간의 토착비리, 검찰조사의뢰 귀추주목...』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2면) • 충민일보 : 『예산군, 벚꽃축제 공동주최社 수년간 감사 ‘無’ ...뒤 봐주기(?)』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1면) • 충청신문 : 『예산벚꽃 마라톤대회 비리 얼록』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14면) • 대전투데이 : 『예산 벚꽃마라톤대회 특정업체 봐주기 행사 ‘눈총’』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3면) • 충남일보 : 『예산 벚꽃마라톤대회, 비리로 얼룩』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챙겨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중앙매일 · 충민일보 · 대전투데이 · 충남일보 : 각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고발 취하 노력) – 각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원한다)

처 리 결 과	• 충청신문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고발 취하 노력) – 양 당사자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정정보도 외에 손해배상을 원하며, 피신청인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정정보도문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광주조정28~29	(정정·반론청구) 정○○ 對 CNN21
조 정 대 상	『강진군 수협, 금융실거래법 나몰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수협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예금주 허락없이 예금을 인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477~480	(매체별 손해청구) 김○○ 對 이데일리 ⁽⁴⁷⁷⁾ , 인터넷 이데일리 ^(478, 477과 병합) , 네이버 ⁽⁴⁷⁹⁾ , 모네타뉴스 ⁽⁴⁸⁰⁾
조 정 대 상	• 이데일리 : 『“경륜 보고 뽑아야제” vs “새누리 안 좋아해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일자 2면) • 인터넷 이데일리·네이버·모네타뉴스 : 『4·11 총선 승부처(12) 김해 을 김태호 대 김경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 후보와 인사를 나누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이데일리·인터넷 이데일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의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네이버·모네타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충북조정9~1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충도일보사 對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조 정 대 상	• 충청일보 : 『예산군 특검업체 봐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2면) • 충청타임즈 : 『예산벚꽃전국마라톤대회 후원금 말썽』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1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대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챙겨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484	(반론청구) (주)○○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 60분 프로그램 『기적의 ‘암 치료제’ 인가 ‘○○’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1일자 23:05)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건강보조식품에 항암효과가 없고, 이 제품을 신뢰한 난소암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추적 60분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진행자의 멘트로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을 이용
이 행 결 과	추적 60분 프로그램 『“기적의 암 치료제인가? ○○의 진실(2012.3.21.)”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7일자 23:15)

2012서울조정485~50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중앙일보(485~486), 온라인 중앙일보(487~488, 485~486과 병합), 네이버(489~490), 네이트(491~492), 줌닷컴(493~494), 인터넷 jbc(495~496, 485~486과 병합), 매경닷컴(497~498), 다음(499~500), 야후(501~502)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인터넷 jbc : 『여교수와 바람피우다 전역도 못하는 중령』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4월 2일자 17면, 인터넷 jbc 4월 2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줌닷컴 : 『女교수와 바람피우다 걸린 50대 중령, 전역하려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일자) • 매경닷컴 · 다음 · 야후 : 『50대 중령, 불륜 女교수 이메일 훔쳐보다 ‘그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일자)
신청인주장	장교인 신청인의 전역 신청이 거부된 것은 모 여 교수의 음해성 고소 때문이었는데, 여 교수와의 외도가 원인이었다고 잘못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 중앙일보 · 온라인 중앙일보 · 인터넷 jbc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네이버 · 네이트 · 줌닷컴 · 매경닷컴 · 다음 · 야후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 · 인터넷 jbc : 온라인 중앙일보와 인터넷 jbc 홈페이지 사회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 네이버 · 네이트 · 줌닷컴 : 기사제공언론사(온라인 중앙일보)가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 후 2일 이내로 조정대상기사를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검색되지 않도록 함 • 매경닷컴 · 다음 · 야후 : 조정대상기사를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검색되지 않도록 함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온라인 중앙일보 · 인터넷 jbc : 『‘전역도 못하는 중령’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4월 24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 인터넷 jbc 4월 24일자)

2012서울조정503~504, 507~508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1. 환경부, 2. 국토해양부 對 경향신문(503, 507), 인터넷 경향신문(504, 508)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흙탕물 된 남한강』 제하의 사진 (2012년 4월 6일자 13면) • 인터넷 경향신문 : 『[포토뉴스] 흙탕물 된 남한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신청인주장	한강 일대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전북조정12	(추후청구) 박○○ 對 전주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마약에 리베이트 ‘비리종합병원’』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2일자 21:00)
신청인주장	병원장인 신청인이 항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복용하고, 제약회사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505~506, 509~510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1. 환경부, 2. 국토해양부 對 한겨레(505, 509), 인터넷 한겨레(506, 510)

조 정 대 상	• 한겨레 : 『4대강 공사 뒤 '흙탕물 남한강'』 제하의 사진 (2012년 4월 6일자 12면) • 인터넷 한겨레 : 『4대강 공사 뒤 '흙탕물 남한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신청인주장	남한강 일대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4월 26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4월 26일자)

2012서울조정511~514, 552~553	1. ○○○시장노점연합회, 2. 김○○ 對 KBS-1TV ^(511~514) 개별 조정·손배청구, 중앙일보 ^(552~553) 조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KBS-1TV : (1) KBS 뉴스9 프로그램 『○○○시장 노점상 손수레 강매·폭리 '비리'』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8일자 21:00), (2)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 『○○○시장의 '마피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8일자 22:30) • 중앙일보 : 『자릿세 150만·통행세 8만 원 왕 노릇한 ○○○상가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2일자 2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시장 노점상들에게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신형 손수레를 강매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15~520, 554~555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시장노점연합회 외 2인 對 뉴스1 코리아 ^(515~516) , 뉴시스 ^(517~518) , 온라인 중앙일보 ^(519~520) , e머니투데이 ^(554~555)
조 정 대 상	• 뉴스1 코리아·온라인 중앙일보·e머니투데이 : 『○○○시장 노점상 등친 91명 무더기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 뉴시스·온라인 중앙일보 : 『보호비·자릿세뜯고... 손수레 팔고... ○○○시장 노점갈취 백태』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시장 노점상들에게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신형 손수레를 강매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부산조정19	(정정청구) 주식회사○○테크 對 부산KBS-1TV
조 정 대 상	(1) KBS 뉴스9 프로그램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린다』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3일자 21:00) (2) KBS 뉴스9 프로그램 『조직적으로 결탁해 대출 유도』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4일자 21:00)
신청인주장	서울시 송파구 지역에서 성행하던 불법 피라미드업체들이 부산에서 세를 늘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 부산지점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KBS 뉴스9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 함
이 행 결 과	KBS 뉴스9 프로그램 『○○테크, ‘거마 대학생’ 과 무관』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21:00)

2012서울조정521	(손배청구) 민○○ 對 TVN
조 정 대 상	TVN 화성인 X-파일 프로그램 『64화 - 이중생활녀 VS 얼음킬러녀』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9일자 24:00)
신청인주장	‘낮과 밤이 다른 이중생활 여자’ 라는 타이틀로 모 클럽 댄스팀을 소개하면서 이와 상관없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5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522	(정정청구) 1. 대구○○초등학교, 2. 황○ 對 KBS-2TV
조 정 대 상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초등교사 엽기체벌 논란』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일자 08: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 소속 교사가 점심 배식 후 남은 음식을 비빔밥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강제로 먹이고, 학생들에게 발마시지를 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 멘트 중 배경화면은 진행자의 낭독 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초등교사 엽기 체벌 논란’ 반론 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30일자 08:00)

2012서울조정523~524	(정정 · 반론청구) 심○○ 對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방송 심의 하는 사람이 방송국 자문위원?』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7일자 4면)
신청인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별위원인 신청인이 KBS총선방송 자문단장을 맡은 것에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위원회 규정 상 겸직에 문제가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525~52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정진후 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無자격자를 비례대표 명부에 올린 통합진보당』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2년 4월 3일자 33면, 인터넷 문화일보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공립학교 교사직에 대한사직원이 반려되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자격(통합민주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직원이 접수된 이상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29~530, 587 박○○ 對 뉴스앤조이(529~530 정정 · 반론청구, 587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유명 목사 이름 내걸고 사기 행각?』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유명 목사의 명의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31~534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주)○○○ 對 KBS-1TV, KBSI	
조 정 대 상	(1) KBS 뉴스9 프로그램 『○○○시장 노점상 손수레 강매 · 폭리 ‘비리’』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8일자 21:00) (2)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 『○○○ 시장의 ‘마피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8일자 22:3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시장 상인에게 공급한 손수레가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의 제품과 기성제품은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고)

2012서울조정541, 550 (매체별 정정청구) ○○노동조합연맹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사찰 변호사비 4,000만 원 임태희 “제3노총이 준 돈”』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2일자 21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사찰 변호사비 4,000만 원, 임태희 “제3노총 인사 돈”』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맹(제3노총)에 참여한 인사들이 민간인 사찰의 피의자들을 위해 변호사비를 지원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향신문 : 경향신문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함,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제3노총 인사 사찰 변호사비 지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4월 30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29일자)

2012서울조정542, 551, 610	(매체별 정정청구) ○○노동조합연맹 對 한겨레 ⁽⁵⁴²⁾ , 인터넷 한겨레 ⁽⁵⁵¹⁾ , 노컷뉴스 ⁽⁶¹⁰⁾
조 정 대 상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1) 『제3노총 출범, 이○○ 전 비서관 관여 ‘쫓불시위’ 잡고자 지원관실 만들어』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4월 11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4월 11일자), (2) 『제3노총 출범에 ‘정부 개입’…한국노총 대신 파트너로』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4월 11일자 11면, 인터넷 한겨레 4월 11일자) • 노컷뉴스 : 『고용노동부, 낯뜨거운 ‘일감몰아주기’』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맹(제3노총) 설립에 정부측 인사가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각 조정불성립결정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노총 설립 법적효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2012경기조정9	(정정청구) 김현문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자유선진당 김현문(청주상당) 출당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5일자) (2) 『자유선진당 김현문 출당조치…정우택 ‘환호’ 홍재형 ‘당혹’』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유선진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충북조정13, 16~17	(매체별 정정청구) 김현문 對 뉴시스 ⁽¹³⁾ , 청주MBC-TV ⁽¹⁶⁾ , CJB-TV ⁽¹⁷⁾
조 정 대 상	• 뉴시스 : (1) 『선진당, 공천장 반납 김현문 ‘출당 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5일자), (2) 『선진당, 청주 상당 김○○ · 김○○ 공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7일자) • 청주MBC-TV :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시끄러운 정치1번지』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5일자 21:20), (2)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시끄러운 정치1번지』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6일자 07:30) • CJB-TV : (1) 프로그램 CJB 8 뉴스 프로그램 『정우택 후보 고발』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5일자 20:25), (2) 출발 모닝와이드 (2부) 프로그램 『정우택 후보 고발』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16일자 07: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유선진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시스 : 조정불성립결정 • 청주MBC-TV · CJB-TV : 각 취하

2012충북조정14~15	(정정·손배청구) 김현문 對 동양일보
조 정 대 상	『[오늘의 주장] 퇴출과 은퇴를 구분 못하는 정치인』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유선진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되었고, 직지찾기운동본부장 재임시절 직지상 표권을 몰래 등록해 사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43	(정정청구) 김현문 對 네이트
조 정 대 상	(1) 『선진당, 공천장 반납 김현문 '출당 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5일자) (2) 『선진당, 청주 상당 김○○·김○○ 공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유선진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제주조정2	(정정청구) 이○○ 對 제주소리
조 정 대 상	『시행사가 3.3㎡당 750만 원 평가 요구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아파트 건설부지 ○○○○에 시행사의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보도하여 평가사인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위 기사에 대해 ○○○○감정의 이 모 평가사 측이 수정보도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 평가사 측의 주장 내용을 아래와 같이 씁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2012대전조정18~19	(반론·손배청구) 남○○ 對 중도일보
조 정 대 상	『교수 학위에 의문제기 졸업생 제보편지 '곤혹'』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6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재직 중인 학과 졸업생이 신청인의 학위취득 의혹에 대해 제보했는데, 신청인이 이와 관련한 언론사의 취재 요구를 거부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인터넷 중도일보에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인터넷 중도일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교수 학위에 의문 제기 졸업생 제보편지 '곤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2년 4월 26일자 6면, 인터넷 중도일보 4월 26일자)

2012서울조정556~55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주)○○○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1) 『가입자 4200만 ○○○○이 뚫렸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1면), (2) 『악성코드 심은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면 원격 해킹에 당할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18면) • 온라인 중앙일보 : (1) 『“○○○○ 뚫렸다” 600만 원 보낸 후 전화기 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2) 『악성코드 심은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면 원격 해킹에 당할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의 보안이 ‘메신저피싱’에 뚫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600만 원 송금 사기 친구사칭 사건으로 수사』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5월 25일자 사회면, 온라인 중앙일보 5월 25일자)

2012서울조정558~562	(매체별 손배청구) 정○○ 對 한국일보 ⁽⁵⁵⁸⁾ , 인터넷 한국일보 ⁽⁵⁵⁹⁾ , 네이버 ⁽⁵⁶⁰⁾ , 네이트 ⁽⁵⁶¹⁾ , 다음 ⁽⁵⁶²⁾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카드사기 정보 유출… 모든 걸 잃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2일자 24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카드사의 정보 유출 때문에 다 잃었다… 어느 여직원의 절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2일자)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과거’ 때문에… 총애받던 직장인의 몰락』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용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무단공개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제보를 한 신청인의 파산 사실을 함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한국일보 · 인터넷 한국일보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유감표명)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563~564	(매체별 정정청구) 전주완산경찰서 외 2인 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국제 사기 앞에서 경찰은 ‘우왕좌왕’』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2년 4월 11일자 32~34면, 인터넷 시사저널 4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베트남 카지노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등 수사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저널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시사저널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9일자 7면) • 인터넷 시사저널 : 『‘베트남 호텔 카지노 사기사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0일자)

2012충북조정18~23	(매체별 정정청구) ○○○○빌리지입주자대표회의의 對 동양일보 ⁽¹⁸⁾ , 인터넷 동양일보 ^(19, 18과 병합) , 충청일보 ⁽²⁰⁾ , 인터넷 충청일보 ^(21, 20과 병합) , 충청투데이 ⁽²²⁾ , 인터넷 충청투데이 ^(23, 22와 병합)
조 정 대 상	• 동양일보 · 인터넷 동양일보 : 『“특정업체 염두 자격 제한” 충북건설업체 반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2면) • 인터넷 동양일보 : 『충북 전문건설업계, ○○○○빌리지 보수공사 입찰자격을 반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5일자) • 충청일보 · 인터넷 충청일보 : 『‘이상한 입찰제한’ 지역업체 반발』 제하의 기사 (충청일보 2012년 3월 26일자 12면, 인터넷 충청일보 3월 25일자) • 충청투데이 · 인터넷 충청투데이 : 『청주 ○○○○빌리지 재도장 입찰자격 논란』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2년 3월 26일자 9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3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동양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충청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충청투데이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동양일보 · 인터넷 동양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2년 4월 30일자 4면, 인터넷 동양일보 4월 30일자) • 충청일보 : 『청주 ○○○○빌리지 보수공사 입찰자격에 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0일자 12면) • 인터넷 충청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9일자) • 충청투데이 · 인터넷 충청투데이 : 『청주 ○○○○빌리지 보수공사 입찰자격에 관한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2년 5월 21일자 7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5월 21일자)

2012경남조정12~15	(매체별 추후·손배청구)(병합)이○○對 경남매일, 인터넷 경남매일
조 정 대 상	(1) 『“우리 이장님 왜 이러세요”』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7월 26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7월 25일자) (2) 『의령 ○○ 마을이장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8월 5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8월 4일자) (3) 『이장 아들, 타지 단감 불법거래』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8월 8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8월 7일자) (4) 『녹차단감 둔갑 시킨 마을 이장 검거』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11월 24일자 6면, 인터넷 경남매일 11월 23일자) (5) 『[현장에서] 뽀뽀한 국고 보조금 착복자들』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12월 12일자 15면, 인터넷 경남매일 12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마을 이장인 신청인이 국고보조금 사업인 녹색 농촌마을 체험장을 설치하면서 시공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매일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통상의 제목크기로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의령 ○○마을 A이장』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2년 4월 27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4월 26일자)

2012서울조정565	(정정청구) 한국○○중개사협회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부동산중개 공제금 유명무실... 운영비로 '탕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23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중개업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제금을 운영비 등으로 탕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66	(손배청구) 임○○對 MBN
조 정 대 상	MBN 뉴스8 프로그램 『시흥 여성 살해사건... “평소 부부싸움 잦아”』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17일자 20:00)
신청인주장	토막살인사건이 일어난 동네 주민인 신청인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약속과 달리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변조 없이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를 이미 삭제하였고,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하였으며 심리중에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손해배상 할 수 없다)

2012서울조정567~568	(매체별 정정청구) 1. 환경부, 2. 국립환경과학원 對 경향신문, 한겨레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1) 『방사성물질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폐기』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8일자 10면), (2) 『환경과학원의 ‘거짓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9일자 14면) • 한겨레 : (1) 『국정원 ‘후쿠시마 방사능 유입 경고’ 막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8일자 1면), (2) 『MB 원전세일즈 탈날까봐? 국정원 ‘일 방사능 경고등’ 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8일자 4면), (3) 『국정원, 방사능 위험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8일자 31면)
신청인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방사성물질 유입보고서가 국정원의 외압으로 폐기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환경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69~570	(반론·손배청구) 최○○ 對 CTS기독교TV
조 정 대 상	CTS 뉴스 프로그램 『CTS음해, 지난 3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6일자 21:50)
신청인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CTS(기독교TV)와 CTS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71~572	(정정·반론청구) 1. ○○○ 어촌계, 2. 정○○ 對 MBN
조 정 대 상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18억 미스터리, 어촌마을의 불편한 진실』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30일자 22:00)
신청인주장	어촌계와 비대위의 갈등과 관련, 어촌계장이 마을주민을 감금했다는 등 비대위측의 사실 아닌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고,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 프로그램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바지락 어촌 마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4일자 22:00)

2012경기조정10	(정정청구) 1. ○○○○ 주식회사, 2. 주식회사○○○○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1) 『‘인천 폐석회 피해 담보’ 수천억 타지에 투자』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7일자 1면) (2) 『3천억 출자한 ○○○ “세금 낼 돈은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9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2.회사의 모기업인 신청인1.회사가 부동산 가치를 올려 대출받을 목적으로 기업분할을 실행하였고, 신청인2.회사는 세금징수예고 통지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모기업의 추가 출자를 받은 후에야 징수유예신청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9일자 3면)

2012광주조정30~31	(매체별 정정청구) 이○○ 외 5인 對 남도일보, 인터넷 남도일보
조 정 대 상	『○구 세무2과 직원, 구청장 행동 본받나』 제하의 기사 (남도일보 2012년 4월 20일자 8면, 인터넷 남도일보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인 신청인들이 취재 기자의 취재를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573	(정정청구) (주)○○○○○○○ 對 티브로드 서울뉴스
조 정 대 상	티브로드 서울뉴스 프로그램 『대형 학원 교재 강매... 공정위 조사』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8일자 17:47)
신청인주장	프렌차이즈 학원을 운영하는 신청인 회사가 가맹 학원에게 수업 진도와 관계없이 매달 교재를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인터넷 티브로드 서울뉴스에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인터넷 티브로드 서울뉴스 : 『‘대형학원 교재 강매’ 관련 후속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7일자)

2012서울조정574~579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서울경제, 인터넷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코레일 사장님, 이거 아십니까』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2년 4월 16일자 39면, 인터넷 서울경제 4월 15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철도공사가 구미복합역사 인근에 지하주차장을 짓겠다고 약속한 후,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미준공 구미복합역사 조만간 정상화』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2년 5월 4일자 27면, 인터넷 서울경제 5월 3일자)

2012서울조정580	(정정청구) 성무용 對 티브로드 중부방송
조 정 대 상	(1) 천안뉴스 심층취재 프로그램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3파전’』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18일자 18:00) (2) 천안뉴스 심층취재 프로그램 프로그램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3파전’』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19일자 07:00)
신청인주장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서 천안시장인 신청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천안뉴스 심층취재 프로그램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7일자 07:00)

2012서울조정581~582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무주군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평생 모은 자료 6,000여 점 기증 … 이○○ 씨, 공예정보센터 설립』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4일자 27면, 온라인 중앙일보 4월 4일자)
신청인주장	무주군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예정보센터를 민간 주도로 설립한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온라인 중앙일보에 알림기사, 부제소)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 홈페이지 뉴스 문화면 기사 중앙 목록에 알림기사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 클릭 시 알림기사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알림기사문은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무주군 공예정보센터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온라인 중앙일보 2012년 5월 7일자)

2012서울조정583~58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이○○ 對 헤럴드경제,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1) 『무상보육 어린이집만 배불렀다』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2년 4월 18일자 1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18일자) (2) 『이중장부 쓰고 현금만 받고…원장 손에서 놀아난 정부』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2년 4월 18일자 3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18일자) (3) 『양질의 교육위한 최소한의 편법』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2년 4월 18일자 3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정부보조금 지원 이후, 교육비를 올려 받고 이중장부를 관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헤럴드경제 홈페이지 경제면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1)~(3)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서울 방배동 Y유치원 교육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2년 5월 23일자 2면, 인터넷 헤럴드경제 5월 23일자)

2012경기조정11	(정정청구) 1. ○○○○ 주식회사, 2. 주식회사 ○○○○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1) 『납부연기 허용때 ‘매월 수십억’ 또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1면) (2) 『유전무세 무전유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1면) (3) 『소송패배때 가산금 안내려는 ‘꼼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3면) (4) 『연수구도 2억 원 지방세 과세 고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3면) (5) 『결국 ○○○ 뜻대로 되려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1.의 회사가 받은 세금 감면과 신청인 2.의 회사가 받은 지방세 ‘징수유예’ 결정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9일자 3면)

2012서울조정587	(정정청구) 박○○對 뉴스앤조이
조 정 대 상	『유명 목사 이름 내걸고 사기 행각?』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유명 목사의 명의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88~59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1. 심○○, 2. 이○○對 YTN,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 YTN : (1) 뉴스출발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04:50) (2) 뉴스7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06:58) (3) 뉴스오늘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07:58) (4) 뉴스현장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09:58) (5) 뉴스12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11:58) (6) 뉴스&이슈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12:58) (7)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14:58) (8) 뉴스Q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15:58) (9) YTN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17:58) (10)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19:58) • 인터넷 YTN : 『위험천만 모의총기…단속 시급』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안전 인증을 거친 완구류만을 판매하는 신청인들을 위험한 모의총기 판매업자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신청인의 사업장 화면을 방송하면서,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함, YTN의 반론보도 후 2일 이내에 이행한 보도내용을 인터넷 뉴스에 게재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YTN :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모의총기’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6일 14:58) • 인터넷 YTN : 『‘모의총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6일자)

2012서울조정592	(정정청구) 국가정보원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북한인권운동’에 ‘국내 탈북자 인권’은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4일자 4면)
신청인주장	국가정보원의 탈북자 합동신문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6일자 2면)

2012서울조정593	(정정청구) 담양군 對 KBS-1TV
조 정 대 상	(1)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프로그램 『방송 그 후1 - 행정대집행은 군청 마음대로?』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6일자 18:55) (2)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프로그램 『방송 그 후2 - 터무니없는 행정대집행비?』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7일자 18:55)
신청인주장	담양군이 야생화 농원과 공예품 전시판매장의 철거가 시급하다며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후 방치하고, 대집행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594~595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이○○ 對 jbc, 인터넷 jbc
조 정 대 상	• jbc : 미각스캔들 프로그램 『9회 - 대창 사르르 녹는 미각편』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2일자 23:00) • 인터넷 jbc : 『대창 사르르 녹는 미각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양 · 대창납품업자인 신청인의 창업 상담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596~597	(매체별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비리 군납업체들, 올해도 낙찰... 건빵 먹는 장병들 목이 멘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4월 21일자 B3면, 조선닷컴 4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군납비리로 입찰 참여가 제한된 업체들이 법원 가처분 신청을 이용해 편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위사업청이 이를 방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12~13	(정정 · 손배청구) 고○○ 외 9인 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OBS 뉴스 M 프로그램 『실종 마사지 女 수사...업주 · 경찰 유착?』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19일자 20:20)
신청인주장	출장마사지 업소 여종업원 실종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해당 업소 주인과 유착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OBS 뉴스 M 프로그램 『전방위 단속』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1일자 19:45)

2012경기조정14~15	(매체별 정정청구) 이○○ 외 4인 對 경인일보,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경경경찰청 ‘학교폭력 소탕’ 대대적 홍보하더니… ‘묵은 사건’ 무리한 수사 물의』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2년 4월 23일자 23면, 인터넷 경인일보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고교생 피의자의 과거 혐의까지 추가하는 등 무리한 수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고)

2012서울조정598, 709, 719~724	(매체별 추후청구) 남○○ 對 중앙일보 ⁽⁵⁹⁸⁾ , 연합뉴스 ⁽⁷⁰⁹⁾ , 노컷뉴스 ⁽⁷¹⁹⁾ , 네이트 ^(720, 724) , YTN ⁽⁷²¹⁾ , 인터넷 YTN ⁽⁷²²⁾ , 네이버 ⁽⁷²³⁾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안티사이트 운영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4일자 8면) • 연합뉴스 : 『안티사이트 폐쇄 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3일자) • 노컷뉴스 · 네이트 : 『‘안티사이트 폐쇄’ 기업체에 댓가 요구했다 구속』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4일자) • YTN : YTN24 프로그램 『안티사이트 폐쇄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보도 (2004년 2월 4일자 07:00, 08:00) • 인터넷 YTN · 네이버 · 네이트 : 『안티사이트 폐쇄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았다.
처 리 결 과	• 중앙일보 :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 연합뉴스 · 노컷뉴스 · 네이트 · YTN · 인터넷 YTN · 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2서울중재15~21 참조)]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안티사이트 운영자 남모씨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0일자 22면)

2012대전조정20~21	(매체별 반론청구) 당진경찰서 對 금강일보, 인터넷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당진경찰 가해자 편들기 수사 ‘시끌’』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2년 3월 26일자 7면, 인터넷 금강일보 3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교통사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에 대해 음주사실을 빼고 조사하는 등 가해자 편들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당진경찰 가해자 편들기 수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2년 5월 4일자 7면, 인터넷 금강일보 5월 4일자)

2012서울조정599~600	(정정 · 반론청구) 김○○ 對 인터넷 청년의사
조 정 대 상	『노○○ 지지자들, 박 윤리위원장 · 부인 · 직원까지 협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의 지지자들이 윤리위원회 징계에 반발, 윤리위원장을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신청인을 직접 언급한 바 없고, 신청인을 유추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 또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2서울조정601~606	
조정대상	(매체별 조정·반론·손배청구)(병합) (주)씨비에스노컷뉴스 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신청인주장	『기자들 잇따라 사직서...데일리노컷뉴스에서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2년 4월 25일자 4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발행하는 무가지 데일리노컷뉴스가 효율성,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 방침이 바뀌면서 이에 반발한 편집국 기자 10명이 회사를 떠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성립 (내용: 조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인터넷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중상단에 조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조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데일리노컷뉴스에서 무슨 일이?” 기사 관련 조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2년 5월 30일자 4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5월 28일자)

2012서울조정607	
조정대상	(정정청구) (주)○○○○컨트리클럽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조정대상	『회원제골프장 입회금반환 ‘발등의 불’ 됐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골프장의 연매출을 상회하는 입회금 반환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608~609	
조정대상	(정정·손배청구) 최재천 對 주간동아
조정대상	『용산 김○○ 경찰청장 내정자 도덕성 검증, 서장 때 최재천 의원 집 찾아가 양주 마시며 인사청탁』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0일자 12~15면)
신청인주장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인 신청인이 경찰청장 내정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13~14	
조정대상	(정정·손배청구) 전북개발공사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정대상	『(단독)전북개발공사 직원 E-메일 불법 검열 의혹 - 해임 직원, 사장 지시로 전직원 개인메일 불법 열람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검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남조정16~19	
조정대상	(매체별 조정·손배청구)(병합) 노○○ 對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조정대상	『“일 잘 처리되게 해주겠다” 돈 받은 일간지 기자 구속』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2년 2월 2일자 6면, 인터넷 경남신문 2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모 일간지 기자의 범행 현장에 동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15~16	(정정·손배청구)이○○對 전북타임즈
조 정 대 상	『주민반발 예상 속 군 고발 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산 소유자인 신청인이 산림을 훼손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땅주인 '산림훼손' 주민 반발예상 속 군 고발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1면)

2012경남조정20~23	(정정·손배청구)(병합) 하○○對 경남매일, 인터넷 경남매일
조 정 대 상	『[신호 위반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 의령군 ○○○ 여직원 내맘대로 행정』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2년 4월 16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4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교통사고의 가해자인데도 피해자로 주장하여 직장장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매일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통상의 제목크기로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 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의령군 보건소 여직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2년 5월 11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5월 10일자)

2012서울조정611~666, 669~672, 683~68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윤○○對 중앙일보(611~612), 온라인 중앙일보(613~614, 611~612와병합), 한국일보(615~616), 한국경제(617~618), 한경닷컴(619~620), 데일리노컷뉴스(621~622), 노컷뉴스(623~624, 621~622와병합), 뉴스엔(625~626), 뉴스웨이(627~628), 뉴스포스트(629~630), 데일리인(631~632), 동아닷컴(633~634), 매경닷컴(635~636), 민주일보(637~638), 민중의 소리(639~640), 세계닷컴(641~642), 시티데일리(Citydaily)(643~644), 아시아투데이닷컴(645~646), 이데일리(647~648), 인터넷 일요시사(649~650), 인터넷 헤럴드경제(651~652), CBC뉴스(653~654), CNBNEWS(655~656), 컨슈머타임즈(657~658), 쿠키뉴스(659~660), 프로슈머(661~662), 인터넷 엠티엔(MTN)(663~664), 채널A(665~666), 아이(이)-이투데이(669~670), 조선닷컴(671~672), 인터넷 기독교일보(683~684)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푸틴 막내딸, 한국인과 5월 결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1일자 3면) • 온라인 중앙일보 : 『푸틴 막내딸, 한국인과 5월 결혼? 2년 전부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1일자) • 한국일보 : 『푸틴 딸·한국인 또 결혼설 - 남성·부친 "사실 무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1일자 9면) • 한국경제 : 『'푸틴 한국인 사위' 해프닝』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1일자 17면) • 한경닷컴 : 『푸틴, 한국인 사위 맞는다... 취임 직후 결혼 예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데일리 노컷뉴스 : 『푸틴, 5월에 한국인 사위 맞는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1면) • 노컷뉴스 : 『푸틴 곧 한국인 사위 맞아...윤○○ 전 해군 제독 아들』 제하의 기사

조정 대상

- (2012년 4월 20일자)
- **뉴스엔** : 『푸틴 한국인사위, 예카테리나 푸티나 ‘13년 사랑’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0일자)
 - **뉴스웨이** : 『윤○○ 전 제독 아들, 러시아 푸틴 막내 사위 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뉴스포스트** : 『푸틴 러시아 총리, 한국인 사위 맞는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데일리안** : 『푸틴 막내 딸과 결혼 임박설 윤○○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동아닷컴** : 『윤○○父 “푸틴 내 사돈 된다고? 사실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1일자)
 - **매경닷컴** : 『윤○○父, 푸틴 딸과 아들 결혼? “사실 무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민주일보** : 『푸틴 막내딸, 윤○○씨와 내달 결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민중의 소리** : (1) 『푸틴 한국인사위, 대선승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2) 『푸틴 한국인 사위 맞는다? 예카테리나 푸티나 블로그 살펴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3) 『푸틴 사위, 정치·경제적 의미 만만치 않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4) 『‘푸틴 곧 한국인사위 맞아’ 최초 보도 기사삭제, 이번에도 오보?』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5) 『푸틴 한국인사위, 러시아언론 조용한 이유 “푸틴 사생활은 국가기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세계닷컴** : 『‘푸틴 딸과 결혼설’ 윤○○ “지금은 가끔 연락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시티데일리(Citydaily)** : 『푸틴, 한국인 사위 맞이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푸틴 딸, 한국인과 13년 열애 ‘웨딩마치’ ... “윤○○씨는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이데일리** : 『푸틴,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인 윤○○ 사위 맞는다 ... ‘결혼설’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인터넷 일요시사** : 『푸틴, 윤○○ 전 제독 차남 사위로 맞이할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푸틴 막내딸, 윤○○씨와 내달 결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CBC뉴스** : 『푸틴 한국인사위 드디어 허락, 예카테리나 푸티나-윤○○ 열애설 이후 2년만 결혼골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CNBNEWS** : 『푸틴 한국인 사위 맞을 전망 “윤○○ 전 해군 제독 차...”』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컨슈머타임즈** : 『푸틴 한국인 사위 맞아...윤○○씨와 사돈 맺는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쿠키뉴스** : 『한국인 윤○○씨, 푸틴 대통령 막내 사위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프로슈머** : 『푸틴,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인 사위’ 윤○○씨 들이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1일자)
 - **인터넷 엠티엔(MTN)** : 『푸틴, 막내딸 예카테리나 푸티나 결혼 ‘한국인 사위 맞는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조 정 대 상	• 채널A : 채널A 종합뉴스 프로그램 『전 해군제독 “아들과 푸틴 딸 결혼설 사실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0일자 21:50) • 아이(이)-이투뉴스 : 『푸틴 예비사위 한국인 윤○○씨는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조선닷컴 : 『푸틴, 한국인 사위 맞나...윤○○씨父는 ‘부인’』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 인터넷 기독교일보 : 『푸틴 한국인사위, 결혼 날짜까지 제기된 것은 처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중앙일보 · 온라인 중앙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유감표명, 기사삭제, 조건부 후속보도 금지, 부제소, 이행강제금) • 한국일보 · 한국경제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한경닷컴 · 뉴스엔 · 뉴스웨이 · 뉴스포스트 · 데일리안 · 동아닷컴 · 매경닷컴 · 민주일보 · 민중의소리 · 세계닷컴 · 시티데일리(Citydaily) · 아시아투데이닷컴 · 이데일리 · 인터넷 일요시사 · 인터넷 헤럴드경제 · CBC뉴스 · CNBNEWS · 컨슈머타임즈 · 쿠키뉴스 · 프로슈머 · 인터넷 엠티엔(MTN) · 아이(이)-이투뉴스 · 조선닷컴 · 인터넷 기독교일보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데일리 노컷뉴스 · 노컷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0만원, 부제소) • 채널A : ▷ 정정청구 : 취하 ▷ 손해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원, 피신청인 사과,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데일리 노컷뉴스 · 노컷뉴스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컷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국일보 : 『알려왔습니다 - 결혼설 사실무근 거듭 밝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2면) • 한국경제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A33면) • 데일리 노컷뉴스 · 노컷뉴스 : 『“푸틴 딸 한국인과 결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데일리 노컷뉴스 2012년 6월 12일자 1면, 노컷뉴스 6월 12일자)

2012서울조정667~668 (정정 · 손해청구) 윤○○對 채널A	
조 정 대 상	채널A 종합뉴스 프로그램 『전 해군제독 “아들과 푸틴 딸 결혼설 사실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0일자 21:50)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아들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취하 ▷ 손해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원, 피신청인 사과,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673~68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강○○, 2. 장○○ 對 MBN ^(673~674) , 인터넷 MBN ^(675~676, 673~674와 병합) , 네이버 ^(677~678) , 네이트 ^(679~680) , 다음 ^(681~682)
조 정 대 상	• MBN : MBN 뉴스 8 프로그램 『이상한 경력 경쟁』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3일자 20:00) • 인터넷 MBN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단독] '경력 없는' 경력 시험... 이상한 공무원 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교정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MBN · 인터넷 MBN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신청인별 손해배상 각 100만 원,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인터넷 MBN : 인터넷 MBN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MBN)가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 후 2일 이내로 조정대상 기사를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검색되지 않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MBN : 『'경력 없는 경력시험... 이상한 공무원 선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7일자)

2012서울조정685	(반론청구) 1. 윤○○, 2. 임○○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경찰 아저씨 현장 떠나면 살인사건 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서 순찰요원인 신청인들이 초기대응을 잘못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경찰 아저씨 현장 떠나면 살인사건 난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6일자)

2012서울조정686~688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채널A ⁽⁶⁸⁶⁾ , 인터넷 채널A ⁽⁶⁸⁷⁾ , 동아닷컴 ⁽⁶⁸⁸⁾
조 정 대 상	•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 『접대연예인 기획사 강요로 립살롱에 나가』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7일자 22:00) • 인터넷 채널A · 동아닷컴 : 『[뉴스A] 단독/접대 연예인 "기획사 강요로 립살롱에 나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7일자)
신청인주장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인 신청인이 소속 연예인으로 하여금 립살롱 접대를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각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 보도는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채널A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널A 뉴스A 프로그램 말미 정정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처 리 결 과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 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 프로그램의 자료화면으로 함 • 인터넷 채널A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의 기사목 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동아닷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 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 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2012경기조정16	(반론청구) 사단법인 세계○○○협회 對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1) 『세계○○○협회, ‘친족 운영’』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9일자 1면) (2) 『세계○○○ 협회가 어쩌다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일자 1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경영난과 예산부족으로 활동이 전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회장 아들을 사무총장에 임명하고, 사무국을 회장 사업체로 옮기는 등 ‘친족 운영’ 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경기조정17~19	(정정·반론·손배청구) 1. 용인동부경찰서, 2. 박○○ 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경찰 끼워맞추기 수사에 ‘주동자’ 누명”』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4일자 1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와 소속 경찰관이 폭행사건을 수사하면서 회유와 유도심문을 하는 등 ‘끼워맞추기 수사’ 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2면)

2012대구조정11	(정정청구) 이○○ 對 고흥신문
조 정 대 상	『○○군의회 여행 보고서 안 올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0일자 1면)
신청인주장	군의회 부의장인 신청인이 지난 해 해외연수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군의회 연수보고서 관련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2면)

2012서울조정689~690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이○○ 對 jbc, 인터넷 jbc
조 정 대 상	• jbc : JTBC NEWS 9 프로그램 『“90도 인사 안했다”...무용과 여대생, 후배들 ‘집단폭 행’』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0일자 22:10) • 인터넷 jbc : 『“90도 인사 안했다”...무용과 여대생, 후배들 ‘집단폭행’』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서울 모 대학 무용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 인터뷰를 거절한 신청인을 몰래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2012서울조정691~69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어○○對jbc, 인터넷 jbc
조 정 대 상	• jbc : 미각스캔들 프로그램 『9회 - 중국 관광객 전용 최악의 식당』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9일자 23:10) • 인터넷 jbc : 『[다시보기] 9회 - 중국 관광객 전용 최악의 식당』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한 음식을 중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사과공문 발송,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제주조정3	(정정청구) 송○○對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대응매뉴얼 무용지물』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0일자 21:00)
신청인주장	학교폭력사태를 보도하면서 동급생간 상호 주먹다짐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KBS 뉴스9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 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KBS 뉴스9 프로그램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다짐한 것』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9일자 21:00)

2012서울조정695~698, 707~708	(병합) 농림수산식품부對경향신문(695 정정청구, 697 반론청구, 707 정정청구), 인터넷 경향신문(696 정정청구, 698 반론청구, 708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1) 『미국 파견 검역관, 4년 실적 전무』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4월 28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28일자) (2) 『육골분 수입량의 97%가 미국산... 광우병 발생 후도 유입』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5월 1일자 7면, 인터넷 경향신문 5월 1일자)
신청인주장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현지에서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파견검역관제도가 유명무실해 4년간 실적이 전무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박기고, 부제소)
이 행 결 과	(1) 『[경향마당] 파견 수의검역관 논쟁 이제 그만』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6월 19일자 오피니언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19일자) (2) 『[경향마당] BES에 대한 오해와 바로 알기』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6월 25일자 오피니언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25일자)

2012서울조정699~700	(정정·손배청구) 이○○ 對 로이십사(LAW24)
조 정 대 상	『여교수와 바람난 50대 중령, 전역 못해 찢찢매 …』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4일자)
신청인주장	육군 중령인 신청인이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 상대방의 이메일을 몰래 훑쳐봤으며, 이로 인해 전역지원서가 반려됐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경남조정24~32	(매체별 정정청구) 1. 창원시, 2. 박완수 對 일간뉴스경남 ⁽²⁴⁾ ,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²⁵⁾ , 뉴시스 ⁽²⁶⁾ , 내외일보 ⁽²⁷⁾ , 인터넷 내외일보 ^(28, 27과 병합) , 아시아뉴스통신(경남) ⁽²⁹⁾ , 다음 ^(30~32) (병합)
조 정 대 상	• 일간뉴스경남·인터넷 일간뉴스경남 : 『창원시장 부인 ‘공무원 동원’』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2년 5월 7일자 5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5월 6일자) • 뉴시스·다음 : 『창원시장 부인, 공무원 동원해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6일자) • 내외일보·인터넷 내외일보·다음 : 『창원시장 부인, 국회의원 당선자 부인 초청자리에 공무원 대동 ‘빈축’』 제하의 기사 (내외일보 2012년 5월 7일자 13면, 인터넷 내외일보·다음 5월 6일자) • 아시아뉴스통신(경남)·다음 : 『퇴근 후 창원시장, 국회의원 당선자 부인모임에 ‘웬 공무원’』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6일자)
신청인주장	창원시장 부인이 국회의원 당선자 부인들을 초청하는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했으며, 이 행사가 박완수 창원시장의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공천을 위한 자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일간뉴스경남·인터넷 일간뉴스경남·다음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뉴시스·내외일보·인터넷 내외일보·아시아뉴스통신(경남)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시스·인터넷 내외일보·아시아뉴스통신(경남)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통상의 제목크기로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즉시 이를 다음에도 송고함
이 행 결 과	• 일간뉴스경남·인터넷 일간뉴스경남 : 『정정보도문 – ‘창원시장 부인 공무원 동원’ 관련』 제하의 기사 (일간뉴스경남 2012년 5월 17일자 5면,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5월 16일자) • 뉴시스·다음 : 『[‘창원시장 부인, 공무원 동원해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 내외일보·인터넷 내외일보·다음 : 『[‘창원시장 부인, 공무원 대동 ‘빈축’]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내외일보 2012년 5월 21일자 13면, 인터넷 내외일보·다음 5월 21일자) • 아시아뉴스통신(경남)·다음 : 『‘퇴근 후 창원시장, 국회의원 당선자 부인모임에 ‘웬 공무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2012서울조정701~702	(정정·반론청구) (주)한국○○○○○협회 對 아이(이)티뉴스
조 정 대 상	『‘태양광주택 1만호 보급사업?’ …협회 사칭 자부담업자 ‘활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중앙부처나 관련기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아님에도 정부사업과 유사한 업무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종합뉴스 이슈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태양광주택 1만호 보급 캠페인』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2012전북조정17~18	(정정·손배청구)○○순창(주)對순창신문
조 정 대 상	(1) 『강천산 탐방로 조성 놓고 ‘잡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4일자 1면) (2) 『[기자수첩] 지역발전사업에 지역언론이 힘을 보태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4일자 11면)
신청인주장	강천산 탐방로 조성과 관련하여 신청인 언론사가 근거없는 선동적인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강천산 탐방로 조성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0일자 2면)

2012서울조정703~70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축산업협동조합對한국농정, 인터넷 한국농정
조 정 대 상	『조합장 입맛 따라 이사회 임원 구성』 제하의 기사 (한국농정 2012년 4월 9일자 6면, 인터넷 한국농정 4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특별감사를 피하기 위해 조합 감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적 보복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19~2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지역주택조합對새전북신문, 인터넷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새전북신문 : 『[기자의 눈] ○○ 지역조합 조합원 신뢰부터 회복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11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 (1) 『○○주택조합 아파트 좌초위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일자), (2) 『사업 중도포기 확률 높아 피해 우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3) 『‘젓밥에만 관심’ 조합운영 분쟁 잇따라』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4일자), (4) 『○○ 주택조합 복마전 속 운영』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6일자), (5) 『[기자의 눈] ○○ 지역조합 조합원 신뢰부터 회복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주택조합 집행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20~21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화성서부경찰서對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경기일보 : 『“허위진술 강요… 손발 묶고 안정제 투여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조 정 대 상	9일자 6면) • 인터넷 경기일보 : 『가족들은 미친놈 취급, 병원은 짐승대접』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폭력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광주조정32~33 (정정·손배청구) 윤○○ 對 더한국타임즈	
조 정 대 상	『푸틴 막내 사위 한국인 청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경기조정22~23 (정정·손배청구) 윤○○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푸틴 러시아 총리 여식 광주 머느리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710~711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박○○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저축銀 계열사 예금인출 줄었다』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7일자 21:00) • iMBC : 『저축銀 계열사 예금인출 줄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7일자)
신청인주장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직원인 신청인이 은행고객을 안심시키는 장면을 동의 없이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의 주된 내용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된 해당 화면은 저축은행 영업장을 단순 촬영한 것일 뿐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012부산조정20 (정정청구) ○○대학교 對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1) 『등록금 내린 대학들 꿈수 썼다』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1면) (2) 『학과 수석해도 전액 장학금 안줘』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5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교 장학금 1억 8천만 원을 축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대학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2면)
2012서울조정712~71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국토해양부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항공기 비행안전구역내 4대강 대형 구조물 논란』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2년 5월

조 정 대 상	14일자 1면, 세계닷컴 5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원주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인근에 설치한 옹벽 구조물은 공군부대가 소하천 역류 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인데, 4대강 사업과 관련돼 건설된 것으로 잘못 보도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세계닷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항공기 비행안전구역내 구조물 ‘4대강’ 과 무관』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2년 6월 5일자 2면, 세계닷컴 6월 4일자)

2012경기조정24~25 (정정 · 손배청구) 광명시 생활체육회 對 아이컬처뉴스	
조 정 대 상	(1) 『[취재수첩] 광명시생활체육회 꼬라지가 이래서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2) 『[1보] 광명시생활체육회, 정보 부재 폐쇄적 단체?』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4일자) (3) 『[2보] 광명시생활체육회 사무국은 뭐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0일자) (4) 『[3보, 속보] 광명시 생활체육회, 공인 폭력 단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일자) (5) 『[말말뉴스1] 광명시생활체육회 무서워요... 같아 마신대요』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홀대하고 언론사에 취재협조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경기조정26 (정정청구) 평택시 對 평택시사신문	
조 정 대 상	『평택시, ‘예산 낭비 사업 빈번’』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8일자 1면)
신청인주장	평택시가 남부문화회관 및 안중현화공원에 대한 불필요한 공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평택시사신문에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평택시사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평택시 예산낭비사업 빈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평택시사신문 2012년 6월 6일자 2면, 인터넷 평택시사신문 5월 24일자)

2012경기조정27 (정정청구) 평택시 對 평택시사신문	
조 정 대 상	『포승 석정6리, 시민 무시 행정에 ‘뿔났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8일자 1면)
신청인주장	평택시가 중증장애인수용시설 건축 허가 시 선행돼야 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714~715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농림수산식품부 對 내일신문, 인터넷 내일신문
조 정 대 상	『광우병 현지조사단, 혈세 쓰고 ‘빈손 귀국’』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2년 5월 11일자 1면, 인터넷 내일신문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정부가 광우병 현지조사단이 미국 농장주를 만났다고 발표한 적이 없으며, 가축방역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수의대 교수 등 국내 광우병 전문가들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내일신문 홈페이지 산업면 최신기사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 기사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가축방역협의회’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내일신문 2012년 5월 29일자 2면, 인터넷 내일신문 5월 29일자)

2012전북조정23~24	(정정·손배청구) ○○○○지역주택조합 對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 지역주택조합 폭로기사 청탁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
신청인주장	신청인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제3자에게 권한 위임장을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716	(정정청구)(재)○○산업진흥재단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이○○ 성남시장 前선대본부장 아들 낙하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장 전 선대본부장의 아들이 신청인 재단에 낙하산 입사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채용은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717~718	(매체별 정정청구) 한국수력원자력(주)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비리 얼룩 ○○○, 뽀뽀한 ‘상근고문직 추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5월 15일자 A6면, 동아닷컴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고리원전 사건으로 사임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퇴임 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신청인 회사가 상근고문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경기조정28~29	(정정·반론청구) 용인동부경찰서 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민원 났다 개인정보 줄줄 샜 판』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서류를 소각하거나 파쇄하지 않은 채 쓰레기장에 무단기로 버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725	(정정청구) 주식회사○○○○○투자증권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사무금융노조, ○○○○○금융 이○○회장 ‘5대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노조로부터 고발될 경우, 상장폐지 실질검사 대상에 오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證 ‘상장폐지 실질실사’ 보도,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2012서울조정726~727	(매체별 정정청구) 21세기○○○○○연합 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이○○ 기획사 · ○○○ 학생회장 ‘수상한 거래’』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5월 16일자 10면, 인터넷 경향신문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건국대 문과대가 신청인 단체 소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대전조정22~25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읍번영회 對 놀외신문, e논산신문
조 정 대 상	『특정보지 지지 의혹 경찰 수사』 제하의 기사 (놀외신문 2012년 2월 20일자 1면, e논산신문 2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특정 국회의원 후보를 초청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놀외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놀외신문에 반론보도, 부제소) • e논산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e논산신문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3일간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뜨도록 하며,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배치 함
이 행 결 과	『“특정보지 지지 의혹 경찰 수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놀외신문 2012년 6월 4일자 1면, 인터넷 놀외신문 · e논산신문 6월 4일자)

2012서울조정728~731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농림수산물부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어제 먹은 대창이 미국산?...대기업, SRM 의심부위 들여왔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10면, 인터넷 한겨레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유럽연합 과학위원회가 미국산 소의 내장과 족을 기타특정위험물질로 추가 지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한겨레에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6월 4일자 2면)

2012대구조정12	(정정청구) 1. 대한불교조계종 ○○사, 2. 김○○ 對 올인코리아
조 정 대 상	『○○사, 빗더미에, 불상까지 압류당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사찰의 주지가 사찰 소유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건설업체에 서준 보증으로 인해 법당의 불상까지 압류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732~733	(매체별 정정청구) 이○○ 對 노컷뉴스, 인터넷 내일신문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1) 『경찰 왜 이러나...칼 들고 위협해도 '무사통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2) 『누구를 위한 '압수수색' 인가...피해자 두 번 올린 경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 인터넷 내일신문 : 『청장이 "위기" 외쳐도... 경찰 '한심작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피해자를 흥기로 위협한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불성립결정 • 인터넷 내일신문 : 취하

2012서울조정734~735	(정정 · 반론청구) 1. (주)○엔터테인먼트, 2. 김○○ 對 KBS-2TV
조 정 대 상	(1) 김승우의 승승장구 프로그램 『승승장구 100회 특집! : ○○○편』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21일자 23:00) (2)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 『연예인 노예계약 여전』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24일자 21:15)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예기획사 대표가 모 연예인과 노예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제하려는 해당 연예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두 예능프로그램의 보도로써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들이 수 없다)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방영되는 김승우의 승승장구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되,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하여 반론보도의 제목은 별도의 자막으로 표시하지 아니함, 한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함

2012서울조정736~737, 742~743, 746~747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1. 대한불교조계종 ○○사, 2. 김○○ 對 jbc ^(736~737) , 인터넷 jbc ^(742~743) , 온라인 중앙일보 ^(746~747)
조 정 대 상	• jbc : 정오의 현장 프로그램 『○○사가 어쩌다가... 불상까지 압류』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6일자 12:00) • 인터넷 jbc : 『○○사, 100억대 빚더미에... 불상까지 압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6일자), (2) 『○○사 어쩌다! 100억대 빚더미에 불상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사 어쩌다! 100억대 빚더미에 불상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사찰의 주지가 사찰 소유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건설업체에 서준 보증으로 인해 법당의 불상까지 압류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738~741, 744~745, 748~75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투어주식회사 對 연합뉴스 ^(738~739) , 온라인 중앙일보 ^(740~741) , 인터넷 메트로 ^(744~745) , 인터넷 헤럴드경제 ^(748~749) , 한경닷컴 ^(750~751)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온라인 중앙일보 : 『주유소·영화관 경품응모권 문제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 인터넷 메트로 : 『237만명 당첨된 '제주 여행권'』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공짜 응모권 주의보 발령, "무료 여행 밋지 마세요"』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 한경닷컴 : 『공정위, 여행사 경품이벤트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주도 무료여행 당첨권을 허위로 발행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온라인 중앙일보 : 『○○투어(주) 당첨권 뺑뺑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 인터넷 메트로 : 『○○투어(주)는 당첨권 '뺑뺑기'와 관련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투어(주) 뺑뺑기 경품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 한경닷컴 : 『○○투어(주) 뺑뺑기 경품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2012서울조정752~76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강○○ 對 조선일보 ^(752~753) , 조선닷컴 ^(754~755) , 네이버 ^(756~757) , 네이트 ^(758~759) , 다음 ^(760~761)
조 정 대 상	『다섯살짜리도 진보당 진성당원』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5월 12일자 A5면, 조선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 5월 12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원인 신청인이, 5살 때부터 당원이었던 딸을 대신해 10년 동안 대리투표를 했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조선닷컴 : 각 조정불성립결정 •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762	(정정청구) KBS교향악단 비상대책위원회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1) 『KBS 교향악단, 31년 만에 정기공연 취소 사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8일자 23면) (2) 『KBS 교향악단 서로 “네 탓”... 그럴수록 국민은 등 돌린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9일자 8면) (3) 『폭언 악단』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6일자 25면)
신청인주장	KBS교향악단의 단원들과 지휘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기공연 취소가 단원들의 엘리트 주의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763	(정정청구) KBS교향악단 비상대책위원회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1) 『KBS교향악단 불협화음 바로잡아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34면) (2) 『정기연주회 또 취소하나, KBS교향악단 끝없는 파행, 정명훈에게 부탁하면 어떨까』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39면) (3) 『[노○○ 칼럼] TV 시청료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1일자 43면)
신청인주장	KBS교향악단 단원들이 공적 책임감이 결여돼 있고, 상임 지휘자에게 반발해 정기연주회가 취소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764	(정정청구) KBS교향악단 비상대책위원회 對 중앙Sunday
조 정 대 상	『“오디션 제대로 하면 단원 중 20명도 못 살아남을 것”』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8일자 4면)
신청인주장	KBS 객원 연주자들이 KBS 교향악단 단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악단에서 연습을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대전조정26	(정정청구) 한국자유총연맹○○광역시지부 對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국유지를 병원 주차장으로... 주민들 성토』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지부가 관리하는 주차장 용도의 국유지가 인근 대형병원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충청투데이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투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3일 동안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뜨도록 하며,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말미에 배치함
이 행 결 과	처리결과 미이행

2012서울조정765	(정정청구) 주식회사문화방송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김○○ ‘특혜 의혹’ ㅈ무용가 출연료 한류스타보다 더 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0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일본 공연에 참여한 모 무용단에게 출연료로 8,18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항공, 숙박료를 포함한 것으로서 순수 출연료는 3,400만 원에 불과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한겨레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6월 1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6월 2일자)

2012서울조정766~787, 921~92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對 동아일보(766~767), 중앙일보(768~769), 한겨레(770~771), 한국경제(772~773), 한경닷컴(774~775), KBS-1TV(776~777), 뉴스앤뉴스(778~779), 오마이뉴스(780~781), 인터넷 한국일보(782~783), 조선닷컴(784~785), 프레시안(786~787), 한국일보(921~922)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쌀직불금-업무추진비 의혹' 못넘어...이○○ 공천 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6면) • 중앙일보 : (1) 『새누리 비례대표 논란...국민배심원단 '이○○ 부적격'』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2면) (2) 『비례후보 취소된 이○○.. “청와대 뒤편으로 배려한 인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5면) • 한겨레 : 『새누리 비례대표 15번 이○○ 직원들한테 돈받은 혐의 수사』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1면) • 한국경제 : 『새누리, 이○○ 비례대표 공천 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6면) • 한경닷컴 : 『이○○ 직원들에게서 2,000만 원 받은 혐의』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 KBS-1TV : KBS뉴스 7 프로그램 『새누리, 선대위 발족...이○○ 후보 공천 취소』 제하의 보도 (2012년 3월 21일자 19:00) • 뉴스앤뉴스 : 『새누리 비례 이○○, 쌀 직불금 파동 주역』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 오마이뉴스 : 『새누리당 비례15번 이○○, 결국 공천 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새누리, 이○○ 비례대표 공천 취소 당·청책임싸고 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 조선닷컴 : 『이○○ 직원들에게서 업무추진비 2,000만 원 걷은 혐의』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1일자) • 프레시안 : 『새누리당 이○○ 후보, 소속기관서 '접대비모금' 의혹 제기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 한국일보 : 『새누리, 이○○ 비례대표 공천 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A0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 : 기각결정 (사유 :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고 모자이크처리 · 음성변조 등 주 의의무를 이행하였다) • 중앙일보 · 오마이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한겨레 · 프레시안 : 각 조정불성립결정 • 한국경제 · 한경닷컴 · 인터넷 한국일보 · 조선닷컴 · 한국일보 : 각 취하 (정정 및 반론보 도 게재) • KBS-1TV : 조정성립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뉴스앤뉴스 : 조정성립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KBS-1TV : KBS뉴스 7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된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되,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 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함 • 뉴스앤뉴스 :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오마이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 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 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이○○ 공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2일자 2면) • 한국경제 : 『‘이○○ 공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5일자 5면) • 한경닷컴 : 『‘이○○ 공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4일자 뉴스면) • KBS-1TV : KBS뉴스 7 프로그램 『‘이○○ 공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5일자 7시뉴스) • 뉴스앤뉴스 : 『‘이○○ 공천’ 관련 정정보도』 - “이○○ 원장 남편 실제 농사 지은 것으로 확인”』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5일자 경제면) • 오마이뉴스 : 『‘이○○ 공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4일자 정 치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후보’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정치면) • 조선닷컴 :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후보’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뉴스면) • 한국일보 : 『‘이○○ 공천’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9일자 2면)

2012서울조정788~799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병합) 김○○ 對 동아일보(788~790, 794~796), 동아닷컴(791~793, 797~799)
조 정 대 상	(1) 『SNS 루머에 기업들 피멍 든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3월 21일자 A31면, 동아닷컴 3월 21일자) (2) 『먹거리 과담, 블랙컨슈머 황포 뿌리 뽑아야』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3월 22일자 B6면, 동아닷컴 3월 22일자)

신청인주장	특정 소주의 제조방법 승인에 불법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신청인을 ‘블랙컨슈머’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동아닷컴 홈페이지 뉴스 경제면 최신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소주 ○○○○ 악성루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6월 15일자 2면, 동아닷컴 6월 15일자)

2012서울조정800~820	(매체별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김○○ 對 파이낸셜뉴스(800~802), 인터넷 파이낸셜뉴스(803~805, 800~802와 병합), 인터넷 소비자TV(806~808), 뉴시스(815~817), 와우넷(818~820)
조 정 대 상	• 파이낸셜뉴스 : 『“○○○○ 안전성 이미 입증, 악의적 루머 법적대응할 것”』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19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주류 “○○○○ 안전.. 악의적 루머 법적대응할 것”』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 인터넷 소비자TV : 『“○○주류, 소주 ‘○○○○’ 관련 악의적 루머에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3일자) • 뉴시스 : 『“○○주류 “○○○○ 악성루머, 법적대응 할 것”』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9일자) • 와우넷 : 『“○○주류 ‘○○○○’ 유해 루머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0일자)
신청인주장	특정 소주의 제조방법 승인에 불법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신청인을 ‘블랙컨슈머’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파이낸셜뉴스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조정성립 (사유 : 후속보도, 부제소) • 인터넷 소비자TV :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뉴시스 · 와우넷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파이낸셜뉴스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생활경제면 기사 목록 상단에 후속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후속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후속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소비자TV : 소비자TV 정직한 목격자 ‘시선’ 프로그램의 조정대상보도에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을 담아 후속보도, 인터넷 소비자TV 홈페이지 VOD서비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조치함 • 뉴시스 : 홈페이지 경제면 최근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와우넷 : 와우넷 홈페이지 뉴스란 기사목록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파이낸셜뉴스·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김○○대표, ○○주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제하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2012년 6월 5일자 19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6월 4일자) •인터넷 소비자TV : 『[방송다시보기 VOD] 정직한 목격자 '시선' - 충격! ○○○○ 불법제조 술인가 독인가』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뉴스스 : 『'○○○○ 루머 법적대응' 관련 반론보도』제하의기사 (2012년 6월 13일자) •와우넷 : 『'소주 ○○○○ 논란' 끝나지 않아』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2일자)

2012경기조정30~31	(정정·손배청구) 1. 주식회사○○○제과, 2. ○○제과식품 주식회사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 ○○, 부동산 '가로채기' 구설』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들이 기존 계약자가 지으려 한 추모관의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 계약해지를 유발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09~810, 821~82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 한국○○○카드 對 노컷뉴스, 데일리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서울 택시카드 단말기 '특혜시비' 논란 예상』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2년 5월22일자, 데일리 노컷뉴스 5월 22일자 1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서울시의 특혜로 택시 카드사업을 독점하고, 결제 수수료 등 부담을 택시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택시카드 단말기 특혜 논란 정정보도문』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2년 6월 1일자, 데일리 노컷뉴스 6월 1일자 10면)

2012서울조정811	(정정청구) 김○○ 對 뉴스스
조 정 대 상	『이○○ 성남시장 前 선대본부장 아들 낙하산?』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성남시장의 전 선대본부장)의 아들이 마치 낙하산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임용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용되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12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총연합회 ○○○교육협의회 對 프레스인
조 정 대 상	『영어유치원 10곳 생기면 소아정신과 1곳 생긴다』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영어유치원 10곳 생기면 소아정신과 1곳 생긴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게재해 마치 영어유치부에 다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과 조정대상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2012서울조정813	(정정청구) 사외단체 포항○○회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이○○, ○○○ 회장처럼 행세』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한 대기업의 각종 외주사업을 독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2면)

2012서울조정814	(정정청구)사회단체○○○○회對시사저널
조 정 대 상	『또 다른 포항권력 ‘○○회’는 어떤 단체인가』 (2012년 5월 8일자 24~2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정권 실세와 지역 토호세력 및 한 대기업과 연계하여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회, ○○○ 이권 개입한 적 없는 순수 애향봉사단체』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7일자 7면)

2012경기조정32~33	(정정·손배청구)이○○對인터넷부천신문
조 정 대 상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자살소동 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6일자) (2) 『“부사모 실체도 없고, 인사도 문제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소동을 벌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천신문에 반론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인터넷 부천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자살소동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부천신문 2012년 6월 27일자, 부천신문 6월 28일자 2면)

2012경기조정34	(손배청구)김○○對한인의힘
조 정 대 상	『우리학교 김모군, 동국대 직원에게 부상입혀』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학과 통·폐합 반대시위 과정에서 동국대 교직원이 올라 서 있는 의자를 발로차 넘어뜨려 부상을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손해배상 50만 원, 기사삭제, 신청인에 대한 상담 등 심리치료 적극 지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강원조정1~2	(정정·손배청구)(주)강원방송 외2인對G1-TV
조 정 대 상	G1 뉴스820 프로그램 『IPTV, 케이블 TV 위협』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일자 20:20)
신청인주장	케이블TV는 원하는 시간대에 최신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VOD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G1 뉴스820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보도, 진행자의 멘트로 정정보도하되 멘트

처 리 결 과	가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함
이 행 결 과	G1 뉴스820 프로그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5일자 20:20)

2012서울조정823~824	(정정·손배청구) 변○○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1) 『정치 팟캐스트(나꼼수 등 인터넷 방송) 주장, 86%는 사실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1면) (2) 『정치 팟캐스트..사실 왜곡·거짓 40%, 근거없는 주장 46%』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8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 팟캐스트의 방송 내용중 41개가 부적합한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 혹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825~826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나주시 對 경향매일, 인터넷 경향매일
조 정 대 상	(1) 『실적 위주 혈세 낭비한 기업유치』 제하의 기사 (경향매일 2012년 4월 2일자 15면, 인터넷 경향매일 4월 1일자) (2) 『기업검증 없이 예산 낭비 '지적'』 제하의 기사 (경향매일 2012년 4월 16일자 15면, 인터넷 경향매일 4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지자체가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부적절하게 기업유치의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인터넷 경향매일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각각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나주시 실적위주 기업유치’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향매일 2012년 6월 13일자, 인터넷 경향매일 6월 13일자)

2012경남조정33~3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함안군 對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 뉴시스 : (1) 『함안군, 토석채취 불법 연장허가 의혹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2) 『불법 토취장 실제 주인은...경찰 간부등으로 구성?』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 아시아뉴스통신 :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토석채취 허가' 위조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토목설계사무소와 짜고 불법으로 토석채취 기간연장을 허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35~37		1. 화성시사격연맹, 2. 이○○ 對 경인일보 ^(35~36 조정·손배청구) , 중부일보 ^(37 조정청구)
조 정 대 상		• 경인일보 : 『무자격자에 총 쥐어준 화성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20면) • 중부일보 : 『화성시사격연맹 선발선수 4명중 3명 총기없는 ‘부적격자’』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2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경기도체육대회 사격종목(클레이)에 무자격자를 출전시키려다 제지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경인일보에 반론보도, 부제소) • 중부일보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경인일보 : 인터넷 경인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화성시 사격 연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2년 6월 15일자 2면, 인터넷 경인일보 6월 15일자)
2012서울조정827~828		(조정·손배청구) 박○○외 139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안내』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7일자 21:00)
신청인주장		권재홍 앵커가 MBC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34~35		(매체별 조정청구)(병합) 나주시 對 나주투데이, 인터넷 나주투데이
조 정 대 상		『감사원 ‘기업유치 입주지원·보조금’ 감사』 제하의 기사 (나주투데이 2012년 4월 23일자 1면, 인터넷 나주투데이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나주시의 기업 유치와 관련해 부도처리로 인해 회수해야 할 지원금의 규모가 60억 원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나주투데이 홈페이지 자치·행정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0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보조금 60억 원 손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나주투데이 2012년 6월 11일 2면, 인터넷 나주투데이 6월 11일자)
2012전북조정25~26		(매체별 조정청구)(병합) 전주완산경찰서 對 새전북신문, 인터넷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불법게임방 배정영업 “노살”』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2년 5월 23일자 6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5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전주완산경찰서가 관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인터넷 새전북신문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위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을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새전북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5일자 2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 『전주완산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4일자)

2012서울조정829~830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YTN,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YTN : YTN24 프로그램 『라면 봉지에 달려 밀반출』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3일자 21:00) •인터넷 YTN : 『‘라면봉지’에 달려 160억 원어치 숨겨 밀반출』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3일자)
신청인주장	라면 봉지에 달려를 숨겨 해외로 밀반출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충북조정24~25 (조정·손배청구) 신○○ 對 CJB-TV	
조 정 대 상	CJB 8뉴스 프로그램 『떠도는 ‘학교 밖 청소년’』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3일자 20:25)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학교 자퇴이유가 친구들의 왕따와 가정불화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CJB 8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신청인의 초상(모자이크 처리)을 배경화면(정지화면)으로 하여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함
이 행 결 과	CJB 8뉴스 프로그램 『“떠도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7일자 20:00)

2012서울조정831~832 (매체별 정당청구) (병합) 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이○○ 對 매일경제, 매경닷컴	
조 정 대 상	『○○뉴타운 믿었던 3구역 마저...』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2년 5월 22일자 A29면, 매경닷컴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위원회의 조합장 등 임원진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정정 및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1) 『고침』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2년 6월 7일자 A29면, 매경닷컴 6월 7일자) (2) 『목 좋은 한남뉴타운은 역시 달라』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2년 6월 11일자 A28면, 매경닷컴 6월 10일자)

2012서울조정833~83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윤○○ 對 레이디경향 ^(833~834) , 인터넷 레이디경향 ^(835~836, 833~834와 병합) , 네이버 ⁽⁸³⁷⁾ , 다음 ⁽⁸³⁸⁾
조 정 대 상	『푸틴의 막내딸과 결혼설에 휩싸인 한국인 윤○○씨는 누구』 제하의 기사 (레이디경향 2012년 5월 1일자 110면, 인터넷 레이디경향·네이버·다음 5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레이디경향·인터넷 레이디경향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300만 원, 조건부 후속보도 금지,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인터넷 레이디 경향 : 홈페이지 초기화면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레이디경향 : 『[정정]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막내딸과 한국인 결혼설 기사 관련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사죄하며』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5일자 114면) • 인터넷 레이디경향 : 『‘푸틴 딸과 한국인 결혼설’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5일자)
2012서울조정847	(반론청구) 김○○ 對 데일리서울파이낸스
조 정 대 상	『‘급등주 탐색기’ 확산…피해사례 속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 중인 ‘급등주 탐색기’로 인해 피해사례가 속출한다거나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급등주탐색기’ 확산… 피해사례 속출』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7일자)
2012서울조정848, 850, 912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주)○○○항공 對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조 정 대 상	(1) 『예보, ○○○항공 현 경영진의 ‘정기주총 연기’ 책임 물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1일자) (2) 『○○○항공, ‘지상조업료 체불’ 등 항공기 운항중단 위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3) 『○○○항공, 우발 채무 46억 발목 잡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항공사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급여인상과 퇴직금의 신설 및 규정개정, 감사의 급여 인상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파산한 전 직원의 고용승계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기업 회생 인가를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849	(정정청구) (주)○○○항공 對 네이버
조 정 대 상	『예보, ○○○항공 현 경영진의 ‘정기주총 연기’ 책임 물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항공사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급여인상과 퇴직금의 신설 및 규정개정, 감사의 급여 인상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851~852 (매체별 정정청구) (주)○○○항공 對 네이버, 다음	
조 정 대 상	『○○○항공, '지상조업료 체불' 등 항공기 운항중단 위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항공사가 재취항을 하면서 20억 원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지상조업 업체와 장기 계약을 맺었고, 지상조업료 체불로 인해 항공운항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853 (정정청구) ○○○○○ 골프앤리조트홀딩스주식회사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부실 한국저축銀 회장 日유명골프장 차명소유』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1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저축은행 회장이 신청인 회사 소유의 골프장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 보도문의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골프장' 차명 소유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2일자)

2012서울조정854~859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박○○ 對 채널A ^(854~856) , 인터넷 채널A ^(856~857) , 더사이언스 (THE SCIENCE) ^(858~859)	
조 정 대 상	• 채널A : 뉴스A 프로그램 『연구진끼리 공로 다툼』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1일자 22:00) • 인터넷 채널A · 더사이언스 (THE SCIENCE) : 『[뉴스A] '네이처' 표지 장식한 논문 놓고 공로 싸움』 제하의 기사 (인터넷 채널A 2012년 5월 11일자, 더사이언스 (THE SCIENCE) 5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네이처 표지에 실린 논문의 저자와 관련해 신청인이 교신저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로 다툼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860 (정정청구) 연천경찰서 對 뉴스1	
조 정 대 상	『연천署, 전의경 폭행 · 수사과장 뇌물혐의 '곤혹'』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에서 전 · 의경 구타가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이를 자체징계로 전의경들이 불복해 상급 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861~862 (정정 · 반론청구) 분당경찰서 對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1) 『[단독] 성남경찰-성매매업자 결탁 단속정보 흘려...경찰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조 정 대 상	(2) 『성남경찰-성매매업자 유착의혹 수사 경기경찰청으로 확대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6일자) (3) 『성남경찰-성매매업소 유착의혹... “업주 A씨 휴대폰 4대로 뭐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 (2)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조정대상기사 (1)이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 조치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9일자)

2012경남조정37~38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김○○ 對 경남매일, 인터넷 경남매일	
조 정 대 상	『김해을 선거구 금품제공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2년 3월 20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3월 19일자)
신청인주장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 및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공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63~864 (정정·손배청구) 방○○ 對 MBC	
조 정 대 상	『무명가수 일본에 접대부로 송출한 가수 방○○씨등 구속』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20여년 전 무혐의로 종결된 신청인의 직업안정법 위반 사건을 다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2서울조정865~866 (정정·손배청구) 황○○ 외 2인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30대 남성 모텔서 숨진채 발견』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동생이 여성과의 성관계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30대 남성, 모텔서 사망”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0일자)

2012서울조정867~868 (매체별 반론청구) (주)○○○종합건설 對 SBS-TV, SBSi	
조 정 대 상	•SBS-TV : SBS 12뉴스 프로그램 『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한 건설사·대표 고발』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5일자 12:00) •SBSi : 『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한 건설사·대표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건설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69~870	(정정·손배청구) 한국○○○○공제조합 對 마케팅경제신문
조 정 대 상	(1) 『“못받은 이익잉여금 달라” 특판조합 상대 또 소송』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8일자 1면) (2) 『실제는 지난해 지출액보다 많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8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예산규모를 늘려놓고도 7% 줄여 예산편성을 했다고 정기총회에서 거짓 보고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71	(정정청구) 1. 한국광물자원공사, 2. 김○○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1) 『빛 갸우라고... 광물公社가 대기업에 1500억 원 빌려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A01면) (2) 『“광물公社 1500억, 김○○ 사장 뒤에 누군가 있다”』 제하의 기사(2012년 5월 24일자 A01면) (3) 『광물公사장 “결재만 했다” 직원은 “사장이 주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A0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사가 특정 대기업에 1,500억을 빌려주는 등 특혜성 지원을 하였고, 이를 메우기 위해 해외광산 지분을 싸게 매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72~876	(매체별 손배청구) 유○○ 對 조선일보 ⁽⁸⁷²⁾ , 조선닷컴 ^(873, 872와 병합) , 네이버 ⁽⁸⁷⁴⁾ , 네이트 ⁽⁸⁷⁵⁾ , 다음 ⁽⁸⁷⁶⁾
조 정 대 상	『선생님의 끈질긴 求愛, 꺾 단친 일진 마음을 열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5월 21일자 12면, 조선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딸이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 문제가아 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조선닷컴 : 조정성립 (사과 메일 발송, 기사삭제) •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네이버·네이트·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조선닷컴)이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 날로부터 2일 이내로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삭제된 이후로는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함

2012경기조정38	(정정청구) 주식회사○○산업개발 對 경기방송-R
조 정 대 상	6시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 『평택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 잡음』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3일자 18:00)
신청인주장	생활폐기물처리업체인 신청인 업체가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흙과 뒤섞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경기방송-R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6시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진행자의 멘트로 보도하되,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함, 인터넷 경기방송-R 홈페이지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6시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 『평택시 생활폐기물처리업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4일자 18:00)

2012서울조정877~879 (정정·반론·손배청구)사단법인대한○○○협회對대한급식신문	
조 정 대 상	(1) 『‘영양사 취업신고’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1면) (2) 『제도 신설보다 고용불안, 낮은 임금 등 처우개선이 선행…』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5면)
신청인주장	‘영양사 취업신고제’를 도입하는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이 대한○○○협회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인터넷 대한급식신문에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급식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신청인협회 회장의 인터뷰 기사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결과 미이행

2012충북조정26~2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황○○對 중부매일, 인터넷 중부매일	
조 정 대 상	• 중부매일 : (1) 『심사부터 의혹 묵살·상식밖 점수차…‘짜고 친 공모?’』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8일자 6면), (2) 『표절작품 3개로 늘어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1일자 4면), (3) 『[사설] 청원군 조형물 표절의혹 작품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일자 19면) • 인터넷 중부매일 : (1) 『심사부터 의혹 묵살·상식밖 점수차…‘짜고 친 공모?’』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7일자), (2) 『청원군 조형물공모 당선팀 표절작품 더 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0일자), (3) 『창원군 조형물 표절의혹 작품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청원군 조형물 공모사업에 출품한 신청인의 작품이 표절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편향된 심사로 당선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80 (정정청구)(주)○○○○○저축은행對 문화저널21	
조 정 대 상	『투감 “○○○○○ 이○○ 회장 업무상 배임혐의 짚어졌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은행의 감사 결정은 회장의 불법 경영이 초래한 결과이며, 부실금융기관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39~42	(매체별 정정청구) 반월신문 주식회사 對 인천일보 ⁽³⁹⁾ , 안산신문 ⁽⁴⁰⁾ , 안산미래신문 ⁽⁴¹⁾ , 안산정론신문 ⁽⁴²⁾
조 정 대 상	• 인천일보 : 『안산 B신문 부정행위 철저히 수사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19면) • 안산신문 :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모지역신문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3면) • 안산미래신문 :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B신문, 관련 유착 문제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1면) • 안산정론신문 : 『지역신문 불법선거개입 의혹 철저한 수사 통해 진상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신문사가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81~882	(정정·손배청구) 윤○○ 對 월간중앙
조 정 대 상	『주인 없는 ○○○의 비애 “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0일자 40~44면)
신청인주장	모대기업의 전 사장인 신청인이 이전 회장을 중도 사임시키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83	(정정청구) 용산경찰서 對 채널A
조 정 대 상	뉴스A 프로그램 『보복 단속? 적법 단속?』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8일자 22:00)
신청인주장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의 클럽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보복성 단속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신청인과 조정대상기사 간에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2대구조정13	(반론청구) 대구시○○협회 對 대구일보
조 정 대 상	『대구시, ‘내부분열’ ○○협회 몰아주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회원사간의 내부 파행으로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경기조정43~45	(정정·반론·손배청구) 주식회사○○○○ 영농법인 對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1) 『농경지로 임대한 국유지 불법 전용』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1면) (2) 『▶1면 ‘영농법인’ 서 계속』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1면) (3) 『국유 농경지 훼손 멋대로 승마장·연못·주차장 조성』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9일자 1면) (4) 『임대 국유지, 불법 재임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0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농경지로 임대받은 국유지를 영리목적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경기신문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기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1)~(4)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국유지 무단전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신문 2012년 6월 27일자 2면, 인터넷 경기신문 6월 27일자)

2012서울조정884~886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수도권매립지공사 對 조선일보 ⁽⁸⁸⁴⁾ , 조선닷컴 ^(885~886)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폐기물 4년째 불법매립 … 악취 아시안 게임 될 판』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일자 A08면) • 조선닷컴 : (1) 『폐기물 4년째 불법매립…악취 아시안 게임 될 판』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일자), (2) 『“지반 약화 우려 … 하수폐기물 하루 500t 넘게 묻지 말라” 매립지공사 측에 통보』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일자)
신청인주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09년부터 수십만톤 규모의 하수 침전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887 (반론청구) 관악경찰서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경찰 “더워서 종종 성추행” 황당 발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관악 경찰서가 서울대생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수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경찰 “더워서 종종 성추행” 황당 발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5일자)

2012광주조정36~37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광주광역시 교육청 對 광주일보, 인터넷 광주일보	
조 정 대 상	『“정규수업외 학생 가르치면 징계”』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2년 6월 4일자 6면, 인터넷 광주일보 6월 4일자)
신청인주장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 시내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방과 후 교과지도를 금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유: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광주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규수업외 학생 가르치면 징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2년 6월 29일자 2면, 인터넷 광주일보 6월 29일자)

2012경남조정39~41	
조 정 대 상	『‘양산시 언론탄압 피소사건’ 재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2년 6월 1일자, 경남도민신문 6월 4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6월 3일자)
신청인주장	모 기자가 신청인 시 소속 공보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치 신청인 시가 부당하게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뉴시스(경남) : 홈페이지 경남면 기사목록 상단에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전체 정정보도문이 나오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 홈페이지 기사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 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 전문을 함께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양산시 언론탄압 피소사건’ 재수사 착수>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권고문』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2년 6월 25일자, 경남도민신문 6월 25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6월 24일자)

2012서울조정888~889	
조 정 대 상	『음주운전 일반 공무원은 해임 등 중징계 받는데 ... 경찰은 ‘계급강등’ 보호막』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2년 5월 22일자 9면, 쿠키뉴스 5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음주운전 경찰관 처벌에 대해 “계급강등”이라는 제도 신설로 징계 수위를 완화해 경찰관 음주운전이 더 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쿠키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이 행 결 과	• 국민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2면) • 쿠키뉴스 : 『경찰, “강등제도로 경찰 음주운전 늘어난 것 아니다.” 밝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2012서울조정890~891	
조 정 대 상	『MB 라디오 주례 연설 사라진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8일자 1면)
신청인주장	KBS노사가 파업철회 합의를 하면서, ‘대통령 라디오 연설 폐지’를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KBS 파업철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2면)

2012서울조정892~893	(정정·손배청구)한국방송공사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KBS파업 95일만에 종료 ... “제2의 투쟁 시작”』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국방송공사가 노조와 파업철폐 합의를 하면서, 징계최소화, 비판 프로그램 부활 등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894~89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윤○○對서울파이낸스, 네이버
조 정 대 상	『윤○○父, “푸틴 딸과 아들 결혼설 사실무근”』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898~899	(매체별 정정청구)○○○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재개발 총회서 따졌더니 ... 검은 양복 어깨들이 말을 막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7일자 17면) • 온라인 중앙일보 : 『뉴타운 39억 횡령 따지니 검은 양복 어깨들이』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횡령 비리를 저질렀고,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들을 조합측 경호원들이 제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또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제4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7월 23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7월 13일자)

2012서울조정900~90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윤○○對소비자만드는신문, 네이버
조 정 대 상	『푸틴 한국인 사위 윤○○ “대통령 취임 직후 결혼식 예정”』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904~90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윤○○對이투데이, 네이버
조 정 대 상	『윤○○父, “푸틴 딸과의 결혼설 ‘NO!’”』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908~911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윤○○對 헬스코리아뉴스, 네이버
조 정 대 상	『윤○○ 전 제독 아들 윤○○씨, 푸틴 한국인 사위 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913~914	(매체별 정정청구) (주)○○○항공對 네이버, 다음
조 정 대 상	『○○○항공, 우발 채무 46억 발목 잡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파산한 전 직원의 고용승계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기업회생 인가를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충북조정30	(손배청구) 반○○對 현대HCN 충북방송
조 정 대 상	현대HCN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 『“新집행부는 유명단체”』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8일자 19:00)
신청인주장	충북○○○○○○연맹의 신 · 구 집행부간 갈등에 대한 신청인과의 통화 내용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15	(손배청구) 최○○외2인對 채널A
조 정 대 상	이○○PD의 먹거리 X파일 프로그램 『18회 - 당신이 모르는 진실, 당신이 먹는 환경 호르몬』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8일자 23:00)
신청인주장	다른 프로그램에 보도됐던 신청인들의 모습을, 환경호르몬 젓병 관련 보도에 동의 없이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916	(정정청구) 이종화對 뉴스마토
조 정 대 상	『(단독)시의회 부의장이 관내서 단란주점 운영?』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8일자)
신청인주장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인 신청인이 관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6월8일자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5일자)

2012서울조정917~918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민중언론 참세상	
조 정 대 상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 『수원교구 사제의 ‘해군기지 찬성’ 중학생 폭행에 대한 <조선일보> 등의 보도,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4일자) • 민중언론 참세상 : 『“신부 ‘해군기지 찬성’ 중학생 폭력,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제주도 해군기지를 찬성한 중학생(신청인)이 가톨릭 신부에게 폭행당했다는 보도는 정의 구현사제단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시도라고 허위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 민중언론 참세상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제주 해군기지 찬성’ 중학생 폭행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2년 6월 26일자, 민중언론 참세상 6월 27일자)

2012서울조정919~920 (매체별 반론청구) (병합) 이○○ 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국제 사기 앞에서 경찰은 ‘우왕좌왕’』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2년 4월 10일자 32~34면, 인터넷 시사저널 4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베트남 카지노 투자 사기사건’과 관련, 신청인이 사업투자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등 피해자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저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베트남 한인 사업가 이모씨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2년 7월 11일자 7면, 인터넷 시사저널 7월 11일자)

2012서울조정923~926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황○○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육의전, 종로2가 빌딩밀 에 깔려 통곡한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5월 25일자 A10면, 조선닷컴 5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건축주의 약속불이행으로 건립이 지체되고 있는 종로 육의전박물관 문제와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신청인이 박물관 건립을 주도한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27	(정정청구) 변○○對 대일리팜
조 정 대 상	『문전약국 호객 ‘위험수위’ …발레파킹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약국이 지나친 호객행위로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28	(손배청구) 이○○對 대일리팜
조 정 대 상	『문전약국 호객 ‘위험수위’ …발레파킹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대학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의 호객 행위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29~9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對 조선일보(929~930 정정·손배청구), 조선닷컴(931~932 정정·손배청구, 929~930과 병합), 네이버(933 정정청구), 다음(934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김두관 정무부지사 출신 강병기 진보당 黨대표 후보로 급부상』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6월 13일자 A04면, 조선닷컴·네이버·다음 6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통합진보당 당대표 선거에서 강병기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 22~23참조))] ※ 이행방법 • 조선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민주노총 ○○본부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7월 3일자 A02면, 조선닷컴 7월 2일자)

2012서울조정935~936	(매체별 반론청구) 박○○對 jbc, 다음
조 정 대 상	• jbc : JTBC 주말뉴스 프로그램 『공무원 인기 비결은?』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9일자 19:00) • 다음 : 『공무원 ‘무늬만 박봉’ …좀처럼 식지 않는 인기 비결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9일자)
신청인주장	공무원 급여가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박봉으로 볼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937~938	(반론·손배청구) 1. (사)○○○○○○○○협회, 2. 최○○對MBC-TV
조 정 대 상	세상보기 시사각각 프로그램 『천차만별 임플란트 가격의 진실은?』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17일자 21:40)
신청인주장	대부분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가를 부풀려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모 네트워크 치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협회 직원인 신청인 2.와의 전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 발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공감 특별한 세상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아나운서 또는 성우의 멘트로 보도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공감 특별한 세상 프로그램 『세상보기 시사각각』 ‘치과 임플란트 가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1일자 18:50)

2012서울조정939	(정정청구) 외국인○○○○○연대對주간경향
조 정 대 상	『온라인 극우파 결집 코드는 ‘혐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14~1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진입과 체류를 반대하는 우파 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1) 『반론보도』 ‘온라인 극우파’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0일자 목차) (2) 『외국인범죄척결연대, ‘온라인 극우파’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0일자 18면)

2012서울조정940~95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사단법인○○○○○○○사업회對 국민일보(940~941), 쿠키뉴스(942~943), 동아일보(944~945), 동아닷컴(946~947), 문화일보(948~949), 서울신문(950~951), 조선닷컴(952~953)
조 정 대 상	• 국민일보·쿠키뉴스 : 『대안교육 빙자해 좌편향 주입하는 ‘학교’』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2년 5월 18일자 23면, 쿠키뉴스 5월 17일자) • 동아일보 : (1) 『졸업식장서 北축사 읽고 간첩죄 8년 복역 교사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1면), (2)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에선...』 진로탐방한다며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석, 평화기행한다며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4면), (3) 『[광화문에서] 시위하며 진로를 찾는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8일자 30면), (4) 『[사설] “이념의 시대 갔다”던 MB, 지금 사태 보고 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8일자 31면) • 동아닷컴 : (1) 『전남강진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에선...』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2) 『[광화문에서/송○○] 시위하며 진로를 찾는다?』 (2012년 5월 18일자), (3) 『[사설] “이념의 시대 갔다”던 MB, 지금 사태 보고 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8일자) • 문화일보 : 『從北씨앗 키우는 ○○○ 학교, 방치해선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31면)

조 정 대 상	• 서울신문 : 『종북좌파의 국회 ‘진지’ 구축 막아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9일자 27면) • 조선닷컴 : 『북한이 보낸 졸업축사 낭독… 좌편향 교육하는 학교』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종북 성향의 교사가 있으며, 좌편향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국민일보 · 키키뉴스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문화일보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서울신문 : 기각결정 (사유 : 이 사건 보도는 신청인학교의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표명한 것일 뿐,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다) • 조선닷컴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조선닷컴 : 『○○○○○학교 종북성향 교육’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4일자)

2012서울조정954~957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홍○○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1) 『경찰은 ‘룸살롱 황제’ 돈 받고… 서장은 그 경찰한테 돈 받은 혐의』 (조선일보 2012년 4월 13일자 12면, 조선닷컴 4월 13일자) (2) 『‘룸살롱 황제’ 돈 받은 경찰들, 다른 업소 80곳서도 상납받아』 (조선일보 2012년 6월 12일자 8면, 조선닷컴 6월 12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서장인 신청인이 룸살롱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들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58~959 (정정 · 손배청구) (주) 한국○○○카드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MB 시장 시절,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서 물먹은 이유』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청인 회사가 특별히 교통카드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총선선수금을 편취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대전조정27~28 (매체별 정정청구) 염홍철對 디트뉴스24	
조 정 대 상	(1) 『설마 염시장의 지시는 아니겠죠?』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2) 『염홍철시장의 ‘자해(自害)인사’』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꿈돌이랜드’ 매입 계획안 심의 의결을 위한 대전마케팅공사 이사회 개최과정에 시장인 신청인이 개입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60~961	(정정·손배청구) 김○○ 對 주간짜주신문
조 정 대 상	『파주시, 공장허가 3억쪘더니 OK!』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6일자 1면)
신청인주장	공인중개사인 신청인이 대가성 돈을 받고, 불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하게 해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62~963	(정정·손배청구) 김○○ 對 주간짜주신문
조 정 대 상	『공인중개사 K씨, 불법전매로 5억 차익?』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1면)
신청인주장	공인중개사인 신청인이 부동산 불법전매를 이용한 투기로 5억5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64~965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협회 對 오마이건설뉴스,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조 정 대 상	『시설물관리協, 공제조합 설립 난항 '왜?'』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2년 6월 11일자 1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6월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공제조합을 설립하면서, 운영위원 구성과 설립 시기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시설물관리협회 “공제조합 설립 추진 중”』 제하의 기사 (오마이건설뉴스 2012년 7월 9일자 1면, 인터넷 오마이건설뉴스 7월 9일자)

2012서울조정966	(정정청구) 박근혜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전두환 “오빠” 박근혜에 불법통치자금 수백억 건넸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오빠’라고 호칭하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27	(정정청구) 익산시 對 익산시민뉴스
조 정 대 상	『익산시 비리, 판도라 상자 (대검중수부 진정서) 열린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익산시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범죄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을 좌천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67~969	(정정·반론·손배청구) 주식회사○○○○○ 對 KBS-2TV
조 정 대 상	스펀지 프로그램 『엄마가 모르는 아이의 비밀 - 전자담배』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일자 20:50)
신청인주장	흡연억제용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보다 해롭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회사명이 찍혀있는 전자담배를 화면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스펀지프로그램 클로징 멘트 직전에 메인진행자인 김○○ 아나운서의 낭독 으로 반론보도, 낭독속도는 동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 KBSi 홈페이지에서 반론보 도문을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함
이 행 결 과	스펀지 프로그램 『전자담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3일자 20:50)

2012대구조정14	(정정청구) (주)○○○○○ 對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브레인의 신○○ 안경도 우리 제품, 기술력 일취월장·獨 업체와 경쟁”』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5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업체가 협찬을 제공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착용한 안경을 다른 업체가 제공했다 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일자 14면)

2012서울조정971	(정정청구) 남○○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애 낳을 때 무통주사 없다더라 ...과담에 임신부 좌불안석』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 일자)
신청인주장	병원의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전문 알바를 고용하여 인터넷 여론전을 주도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신청인과 조정대상기사 간 에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2서울조정972	(정정청구) 국가정보원 對 주한한국
조 정 대 상	『현정권 기독교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8일자 8~9면)
신청인주장	국가정보원이 진보성향의 불교 인사들을 불법 사찰하고, 불교계 비자금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불교계 사찰’ 기사와 관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3일자 10면)

2012서울조정973~974	(정정·손배청구) (주)한국○○○카드 對 프레스이안
조 정 대 상	『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 모델’ 』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교통카드 티머니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교통정보를 독점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75	(손배청구) 1. 이○○, 2. 김○○ 對 인터넷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대한민국은 지금 세일중] 백화점 역대 최장기 세일...마트도 50% · 최저가 할인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백화점 장기 세일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물건을 구경하는 신청인들(예비 신랑신부)의 모습을 몰래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손해배상 각 100만 원 (2012서울중재26 참조)]

2012서울조정976	(정정청구) 안○○ 對 KBS-2TV
조 정 대 상	VJ특공대 프로그램 『622회 - 실태보고! 주폭과의 전쟁』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2일자 21:50)
신청인주장	무분별한 음주문화 실태를 방영하면서, 지하철에서 잠이 든 신청인을 무단으로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2012서울조정977~978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방위사업청 對 주간한국, 인터넷 주간한국
조 정 대 상	『방사청 간부 잇단 교체에 뒷말 무성』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2년 6월 22일자 10면, 인터넷 주간한국 6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성능에 의문이 제기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내정되었으며, 이 과정에 청와대 개입과 커미션 수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주간한국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주간한국 : (1)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목차), (2)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8면) • 인터넷 주간한국 :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4일자)

2012광주조정38~39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최○○ 對 담양신문, 인터넷 담양신문
조 정 대 상	『[사실] 이낙연 의원이 앞장서야 한다』 제하의 기사 (담양신문 2012년 4월 18일자 5면, 인터넷 담양신문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담양군수인 신청인이 후보자 시절 담양군의 광주편입을 역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 기사는 신청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홍보물(공약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중재부의 반론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인터넷 담양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2012서울조정979~980 (정정·손배청구) ○○중앙교회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대형교회 '막장' 싸움...원인은 재정장부』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5일 20:00)
신청인주장	신청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돈을 펀드 투자와 자녀 교육비로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81~982 (매체별 정정청구) 천안동남경찰서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살려주세요” 위치추적하고도 1300가구 문 두드린 경찰』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6월 6일자 13A면, 동아닷컴 6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휴대폰으로 구조를 요청한 여성의 위치 확인만 하고, 신원 조회를 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천안동남경찰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1일자 5면) • 동아닷컴 : 『[대전/충남] 천안동남경찰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1일자)

2012경기조정46~47 (정정·손배청구) 김○○ 對 경기방송-R	
조 정 대 상	(1) 12시 낮 종합뉴스 프로그램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파업, 정치 이념 갈등이 원인?』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23일자 12:00) (2) 6시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파업, 정치 이념 갈등이 원인?』 제하의 보도 (2012년 2월 23일자 18:00)
신청인주장	공단 노조의 파업이 이사장인 신청인과 진보 성향인 구청장 간의 정치 이념 갈등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983~984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시스템 對 CNBNEWS	
조 정 대 상	『○○시스템 남○○-○○ 형제 부도덕성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기업사냥·횡령 등 부도덕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 24~25참조)]

2012서울조정985 (정정청구) 주식회사○○○○○투자증권 對 이투데이	
조 정 대 상	(1) 『사무금융노조, “이○○ 회장 5대의혹 해명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2) 『○○○○○ ‘흑자서 적자’ 재공시…노조원 100여 명 해고 노림수』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노조로부터 고발될 경우, 상장폐지 실질검사 대상에 오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가 제시한 정정보도문은 조정대상기사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간단해 독자들로서는 그 정정보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조정대상기사 별로 정정보도문이 별도로 게재되길 원한다)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뉴스목록 좌측 중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2012서울조정986~98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사○○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증권, 인턴사원에 영업 압박, 주식투자금 2,600억 원 끌어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A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턴사원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증권사가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제보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선닷컴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게재함
이 행 결 과	『 ‘○○증권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7월 26일자 A2면, 조선닷컴 7월 25일자)

2012서울조정990~991 (정정·손배청구) (병합) 유○○ 對 신아일보, 인터넷 신아일보	
조 정 대 상	『경찰 ‘초심찾기’ 교육 무색』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2년 6월 27일자 1면, 인터넷 신아일보 6월 26일자)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수 년간 경마도박을 하고, 구속된 피의자와 금전관계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40~4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송○○ 對 전국매일, 인터넷 전국매일	
조 정 대 상	(1) 『순천시 낙안읍성 체험장 운영자 부정선정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전국매일 2012년 4월 2일자 11면, 인터넷 전국매일 4월 2일자) (2) 『노인 노동착취·수천만 원 보조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전국매일 2012년 4월 11일자 16면, 인터넷 전국매일 4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낙안읍성 보존회장인 신청인이 읍성장과 찌고 체험장 운영자를 특정인으로 부정선정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신청인의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2012광주조정42~43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1. 승○○, 2. 승△△ 對 전국매일, 인터넷 전국매일	
조 정 대 상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무허가 식품 판매마을?』 제하의 기사 (전국매일 2012년 4월 9일자 11면, 인터넷 전국매일 4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무허가식품을 판매하고 불법영업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전국매일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무허가 식품 판매마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전국매일 2012년 7월 20일자 11면, 인터넷 전국매일 7월 20일자)

2012광주조정44~45 (매체별 정정청구) 장성군 對 장성사람들, 인터넷 장성사람들	
조 정 대 상	『[기자의 눈] 뻔한 인사? 알다가도 모를 인사』 제하의 기사 (장성사람들 2012년 5월 24일자 2면, 인터넷 장성사람들 5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장성군이 운영하는 직소민원실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992~998 (매체별 정정청구) 정○○ 對 인터넷 경향신문 ⁽⁹⁹²⁾ , 인터넷 기자협회보 ⁽⁹⁹³⁾ , 노컷뉴스 ⁽⁹⁹⁴⁾ , 미디어스 ⁽⁹⁹⁵⁾ , 인터넷 미디어오늘 ⁽⁹⁹⁶⁾ , 뉴스앤뉴스 ⁽⁹⁹⁷⁾ , 프레시안 ⁽⁹⁹⁸⁾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MBC 노조 “김재철 사장, 女무용수 오빠 ‘사장님’ 만들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 인터넷 기자협회보 : 『김재철 사장, J씨 오빠에게도 특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 노컷뉴스 : 『MBC 노조 “김재철 사장, 무용수 J씨의 오빠까지 특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 미디어스 : 『김재철, 무용가 J씨 오빠에게도 ‘특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출연시켜줘라’ 지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 뉴스앤뉴스 : 『MBC노조 “김재철, 무용수 오빠까지 특혜 채용”』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 프레시안 :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오빠에게도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MBC 김재철 사장의 특혜로 MBC 해외지사장에 채용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경향신문 : 취하 • 인터넷 기자협회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노컷뉴스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미디어스 :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뉴스앤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프레스시안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기자협회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미디어오늘 : 홈페이지 뉴스면 사회섹션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뉴스앤뉴스 : 홈페이지 미디어섹션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프레스시안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전체 목록 중간 이상)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기자협회보 : 『 '김재철 사장, J씨 오빠에게도 특혜?'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 노컷뉴스 : 『 '김재철 사장, 무용수 J씨의 오빠까지 특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 미디어스 : 『 '김재철, 무용가 J씨 오빠에게도 특혜' 관련 반론보도 및 알람』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출연시켜 줘라' 기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9일자) • 뉴스앤뉴스 : 『 '김재철 사장, 무용수 오빠까지 특혜 채용'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9일자) • 프레스시안 : 『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오빠에게도 특혜 의혹'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2012서울조정999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 8 뉴스 프로그램 『가격협상 없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8일자 20:00)

신청인주장	차세대 전투기 기종 결정 과정에 가격 협상이 전혀 없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SBS 8 뉴스 프로그램 『방위사업청,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일정』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7일자 20:00)

2012서울조정1000~100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노○○對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총파업특보 ^(1000~1001) , 스타뉴스 ^(1002~1003) , 오마이뉴스 ^(1004~1005) , 프레시안 ^(1006~1007)
조 정 대 상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총파업특보 : 『‘막장 채용’의 인사 스캔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2면) • 스타뉴스 : 『MBC, 성추행 전력 기자 채용했다 번복』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 오마이뉴스 : 『MBC ‘성추행 의혹 인물’ 임시기자 채용 물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 프레시안 : 『MBC, ‘성추행 전력자’ 뽑아 리포팅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신청인주장	MBC 계약직 기자에 응시했던 신청인이 과거 금품수수 등으로 평판이 나빴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이 행 결 과	• 스타뉴스 : 『‘MBC 성추행 전력 기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0일자)

2012서울조정1008~100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문재인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1) 『문재인, 靑서 대주주 앞에 두고 금감원에 전화』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A01면), (2) 『文 두드린 檢… ‘저축銀’ 대선정국 흔드나』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A06면) • 동아닷컴 : (1) 『“문재인 전화, 청탁 아깝다” 대선판도 어떻게?』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2) 『“문재인, 靑서 대주주 앞에 두고 금감원에 전화”』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2003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남조정42~4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최○○對 한남일보, 인터넷 한남일보
조 정 대 상	『[현장취재] 지금 구천댐 상류지역에서는 무허가 식당에 불법 건축물까지』 제하의 기사 (한남일보 2012년 4월 4일자 3면, 인터넷 한남일보 4월 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하고 있고, 불법 건축물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손배청구 : 취하 ※ 이행방법 : 인터넷 한남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전체 정정보도문이 나오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

처 리 결 과	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지금 구천담 상류지역에는 무허가 식당에 불법 건축물까지’ 기사관련 정정보도』제하의 기사 (한남일보 2012년 7월 13일자 3면, 인터넷 한남일보 7월 13일자)

2012전북조정28	(반론청구) 박○○ 對 전주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판매점 요금납부 안돼』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5일자 21:00)
신청인주장	이동통신사 대리점 요금 수납 문제에 대해 인터뷰한 신청인의 발언 내용이 편집되어 일부만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2서울조정1010~1013	(매체별 정정청구) 국토해양부 對 경향신문 ⁽¹⁰¹⁰⁾ , 인터넷 경향신문 ^(1011, 1010과 병합) , 한겨레 ⁽¹⁰¹²⁾ , 인터넷한겨레 ^(1013, 1012와 병합)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인터넷 경향신문 : 『하늘에서 본 ‘4대강의 후폭풍’ ②지천 오염 가속』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6월 25일자 9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25일자)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4대강 사업 후유증 ‘낙동강 녹조’』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6월 25일자 9면, 인터넷 한겨레 6월 25일자)
신청인주장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지천 하류에 오염물질이 침전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향신문 · 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취하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2면) • 인터넷 경향신문 : 『‘4대강 사업 후유증 낙동강 녹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7일자)

2012서울조정1014~1015, 1018~1019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환경부 對 경향신문 ⁽¹⁰¹⁴⁾ , 인터넷 경향신문 ^(1015, 1014와 병합) , 한겨레 ⁽¹⁰¹⁸⁾ , 인터넷한겨레 ⁽¹⁰¹⁹⁾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인터넷 경향신문 : 『하늘에서 본 ‘4대강의 후폭풍’ ②지천 오염 가속』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6월 25일자 9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25일자)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4대강 사업 후유증 ‘낙동강 녹조’』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6월 25일자 9면, 인터넷 한겨레 6월 25일자)
신청인주장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지천 하류에 오염물질이 침전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향신문 · 인터넷 경향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각 취하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2면) • 인터넷 경향신문 : 『‘4대강 사업 후유증 낙동강 녹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7일자)

2012서울조정1016~1017, 1051~1052, 1054, 1074~1075	(매체별 정정청구) 김○○ 외 1인 對 인터넷 BBS불교방송 ⁽¹⁰¹⁶⁾ , 프레시안 ⁽¹⁰¹⁷⁾ , 미디어스 ⁽¹⁰⁵¹⁾ , 인터넷 미디어오늘 ⁽¹⁰⁵²⁾ , 아이피디저널 ⁽¹⁰⁵⁴⁾ , 노컷뉴스 ⁽¹⁰⁷⁴⁾ , 아시아투데이닷컴 ⁽¹⁰⁷⁵⁾
조 정 대 상	• 인터넷 BBS불교방송 : (1) 『YTN 노조, ‘불법사찰’ 회사간부 연루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 『YTN 노조, 배○○ 사장 등 6명 고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6일자) • 프레시안 : 『YTN 간부들, ‘불법사찰 증거인멸’ 당시 ‘사찰자 원○○’ 과 집중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 미디어스 : (1) 『YTN 노조, “YTN 주요 간부들, 불법 사찰에 연루”』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8일자), (2) 『YTN 노조, ‘불법사찰’ 관련 배○○ 등 간부 4명 고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7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1) 『YTN 간부들, 원○○과 통화…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관여했나』 제하의 기사(2012년 4월 8일자), (2) 『YTN 법무팀장, 총리실 증거인멸 직전 통화한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3) 『불법사찰 수사 직전, YTN과 총리실 무슨 일 있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0일자), (4) 『YTN 노조, 불법사찰 개입정황 간부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6일자) • 아이피디저널 : (1) 『YTN 간부 ‘불법사찰’ 원○○과 직접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 『YTN 노조, 배○○ 사장 등 간부 4명 고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6일자) • 노컷뉴스 : 『YTN 노조, ‘불법 사찰’ 관련자 고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6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YTN 노조, ‘불법사찰’ 배○○ 대표이사 등 6명 검찰에 고소』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6일자)
신청인주장	YTN 간부인 신청인들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BBS불교방송 · 미디어스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아이피디저널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프레시안 : 조정불성립결정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 아시아투데이닷컴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인터넷 BBS불교방송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1)~(2)의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신청인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청인들은 무혐의 처분 통지서나 무죄를 입증하는 판결문을 인터넷 BBS불교방송에 송부하고, 인터넷 BBS불교방송은 이 통지 또는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추후보도문을 24시간동안 게재하며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미디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신청인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신청인들은 무혐의 처분 통지서나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문을 미디어스에게

처 리 결 과	송부하고, 미디어스는 위 통지 또는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혐의 없음’ 내지 ‘무죄 선고’에 대해서 추후보도문을 24시간동안 게재, 조정대상기사 (1)~(2)의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인터넷 미디어오늘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1)~(4)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신청인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신청인들은 무혐의 처분 통지서나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문을 인터넷 미디어오늘에게 송부하고, 인터넷 미디어오늘은 위 통지 또는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혐의 없음’ 내지 ‘무죄 선고’에 대해서 추후보도문을 24시간동안 게재, 조정대상기사 (1)~(4)의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아이피디저널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1)~(2)의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신청인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신청인들은 무혐의 처분 통지서나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아이피디저널은 위 통지 또는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혐의 없음’ 내지 ‘무죄선고’에 대해서 추후보도문을 24시간동안 게재, 조정대상기사 (1)~(2)의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각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노컷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신청인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청인들은 무혐의 처분 통지서나 무죄를 입증하는 판결문을 노컷뉴스에게 송부하고, 노컷뉴스는 이 통지 또는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추후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BBS불교방송 : 『YTN 간부들 불법사찰 연루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일자) • 미디어스 : 『YTN 간부들, 불법 사찰에 연루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6일자) • 인터넷 미디어오늘 : 『“YTN 간부들 불법 사찰 연루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6일자) • 아이피디저널 : 『“YTN 간부들, 불법 사찰에 연루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6일자) • 노컷뉴스 : 『“YTN 노조, ‘불법 사찰’ 관련자 고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7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YTN 노조, ‘불법 사찰’ 관련자 고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2012서울조정1020		(정정청구) 박○○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1조원대 ○○그룹 임○○ 사건도 기획·표적 수사였나』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그룹 기업비리에 대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정치적인 표적수사로 매도해,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대검중수부 ○○그룹 수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2012서울조정1021~1025, 1053		채○○ 對 MBC-TV^(1021~1022 정정·손배청구), iMBC^(1023~1024 정정·손배청구, 1021~1022와 병합), 네이버^(1025 정정청구), 다음^(1053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소비자 등친 펜션』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8일자 21:00) • iMBC·네이버·다음 : 『소비자 등친 펜션·렌터카 ... '꼼수 할인'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소비자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펜션 사례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펜션 전경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MBC-TV·iMBC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 네이버·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026~1027		(매체별 정정청구) 김○○ 외 1인 對 민중의소리,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 민중의소리 : 『YTN 노조, “불법사찰·은폐에 사측 주요간부 3명 연루됐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 오마이뉴스 : 『민간인 사찰 주역과 YTN 간부들의 '수상한 통화내역'』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신청인주장	YTN 간부인 신청인들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48~5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노○○ 對 경도신문, 경인종합일보
조 정 대 상	• 경도신문 : 『영업장 미관 보호한다며 가로수 훼손』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11면) • 경인종합일보 : 『전 시의원 ‘영업장 미관보호’ 가로수 절단 특혜시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처가 운영하는 영업장 주변의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전직 시의원인 신청인에 대한 특혜조치라고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경도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경인종합일보 : 취하 (내용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경도신문 : 『‘영업장 미관 보호한다며 가로수 훼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2면) • 경인종합일보 : 『‘전 시의원 영업장 미관보호 가로수 절단 특혜시비’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2면)	

2012강원조정3~4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산업 외2인 對 강원신문
조 정 대 상	(1) 『폐기물업체 회장, 부도덕한 경영 도마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1면) (2) 『기업 오너의 부도덕한 사생활 충격』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2면) (3) 『의혹과 파문으로 성장해온 기업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들이 산림훼손, 폐기물 불법매립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기업주인 신청인은 세금포탈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028	(정정청구) (사)한국프로골프협회 對 포커스인아시아
조 정 대 상	『‘막가파’ 한국프로골프협회 끝은 어디?』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협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충북조정31~32	(매체별 손배청구) (병합) 이○○ 對 충청리뷰, 충북인뉴스
조 정 대 상	『꿈과 열정 있는 아이들 모여라』 제하의 기사 (충청리뷰 2012년 5월 4일자 B2면, 충북인뉴스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음악적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자녀 선발을 위한 오디션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각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2012충북조정33~3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송○○ 對 보은신문, 인터넷 보은신문
조 정 대 상	『대형마트 납품 놓고 우유대리점 간 ‘과당경쟁’』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2년 6월 28일자 1면, 인터넷 보은신문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신규 우유대리점의 대형마트 납품을 저지하기 위해 타 대리점과 담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보은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사과보도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게재,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사과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사과 및 정정보도문』 ‘우유대리점 과당경쟁’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보은신문 2012년 7월 19일자 1면, 인터넷 보은신문 7월 19일자)

2012서울조정1029~103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장○○ 對 서울신문(1029~1030), 인터넷 서울신문(1031~1032), 네이버(1033~1034), 네이트(1035~1036), 다음(1037~1038)
조 정 대 상	• 서울신문 : 『국내 최대 공시족 커뮤니티의 횡포』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25면) • 인터넷 서울신문·네이버·네이트·다음 : 『국내 최대 공시족 커뮤니티의 ‘횡포’』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무원 시험 커뮤니티가 학원과 출판사에 고액의 광고를 강요하여 수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039~1044	(매체별 반론청구) 김○○ 對 jbc ⁽¹⁰³⁹⁾ , 인터넷 jbc ⁽¹⁰⁴⁰⁾ , 온라인 중앙일보 ⁽¹⁰⁴¹⁾ , 네이버 ⁽¹⁰⁴²⁾ , 네이트 ⁽¹⁰⁴³⁾ , 다음 ⁽¹⁰⁴⁴⁾
조 정 대 상	• jbc : jbc 뉴스10 프로그램 『‘뜨쟁이’에게 한 수 배우는 요즘 의사들…문신 아이러니』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6일자 22:00) • 인터넷 jbc · 온라인 중앙일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뜨쟁이’에게 한 수 배우는 요즘 의사들…문신 아이러니』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요즘 의사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타투이스트에게 문신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마치 신청인이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045~1050	(매체별 반론청구) ○○○○(주) 對 뉴시스 ⁽¹⁰⁴⁵⁾ , 네이버 ⁽¹⁰⁴⁶⁾ , 네이트 ⁽¹⁰⁴⁷⁾ , 다음 ⁽¹⁰⁴⁸⁾ , 야후 ⁽¹⁰⁴⁹⁾ , 줌닷컴 ⁽¹⁰⁵⁰⁾
조 정 대 상	『나도 모르게 돈 인출…사칭 전화번호부 업체 횡포』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전화번호부 발행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KT를 사칭하여 돈을 인출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대전조정29~30	(매체별 반론청구) 김○○ 對 금강일보, 인터넷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1) 『[포커스]공주시 영 · 유아 보육조례 부결 무엇이 문제였나』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2년 6월 14일자 17면, 인터넷 금강일보 6월 13일자) (2) 『<기자수첩> 과유불급이 부른 망신살』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2년 6월 19일자 17면, 인터넷 금강일보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기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공을 돌리기 위해 새로운 영유아보육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인근 지자체의 조례안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포커스] 공주시 영 · 유아 보육조례 부결 무엇이 문제였나』와 ‘<기자수첩> 과유불급이 부른 망신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금강일보 2012년 7월 27일자 7면, 인터넷 금강일보 7월 27일자)

2012제주조정4~5	(정정 · 손해청구) ○○○○학교(주)○○월드 對 KCTV
조 정 대 상	KCTV 종합뉴스 프로그램 『도내 한 보육시설에서 ‘결핵’ 감염 논란』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0일자 19:00)
신청인주장	신청인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이 결핵에 감염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을 조정대상보도의 자료 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KCTV 종합뉴스 프로그램 『도내 한 보육시설 결핵 감염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7일자 19:00)

2012광주조정46~47	(매체별 반론청구) ○○지구지역주택조합 對 전남매일, 인터넷 전남매일
조 정 대 상	(1) 『비인가 주택조합 회원가입 '말썽'』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2년 6월 1일자 9면, 인터넷 전남매일 6월 1일자) (2) 『비인가 주택조합 회원가입 문제없나』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2년 6월 4일자 19면, 인터넷 전남매일 6월 4일자) (3) 『광주 비인가 주택조합 난립』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2년 6월 5일자 6면, 인터넷 전남매일 6월 5일자) (4) 『서구청, 비인가 주택조합 봐주기(?)』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2년 6월 8일자 8면, 인터넷 전남매일 6월 8일자) (5)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횡포 두고 볼텐가』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2년 6월 13일자 15면, 인터넷 전남매일 6월 13일자) (6)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위기'』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2년 6월 14일자 7면, 인터넷 전남매일 6월 14일자) (7) 『○○지구 조합아파트 부지 건축권리 논란』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2년 6월 28일자 7면, 인터넷 전남매일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불법으로 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1055	(정정청구) 통합진보당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조중동에 전달한건 송○○ … 혁신비대위, 내부 '협조자'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 선거인 명부 유출과 관련, 혁신비대위의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056~1057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주)다음세계상조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 TV조선 : 뉴스와이드 참 프로그램 『상조업체 선정시 유의점은?』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21일자 14:00) • 인터넷 TV조선 : 『상조업체 선정시 유의점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상조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업체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알림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와이드 참 프로그램 『“상조업체 선정시 유의점은?” 보도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10일자 14:00)
2012서울조정1058~1060, 1063	(매체별 반론청구) 광명소하○○○○○단지 입주자대표회의 對 아시아경제닷컴⁽¹⁰⁵⁸⁾, 조선닷컴⁽¹⁰⁵⁹⁾, 연합뉴스⁽¹⁰⁶⁰⁾, 다음⁽¹⁰⁶³⁾
조 정 대 상	• 아시아경제닷컴 : 『○○○ 소하리공장 소음 때문에 조업 중단될까?』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일자) • 조선닷컴 : 『○○○ 광명공장 야간조업 중단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 연합뉴스·다음 : 『광명시 “○○○ 소하리공장 소음개선 보고서 제출”』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일자)
신청인주장	거주중인 아파트 인근 공장의 공장의 야간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신청인이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 기사를 통해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 없어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12충북조정37~38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김○○ 對 충청매일, 인터넷 충청매일
조 정 대 상	『충북경찰, 대전 사이버기차 수사』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2년 4월 9일자 3면, 인터넷 충청매일 4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어린이집 원장 및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061~106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박○○ 사장 취임 5개월, 어수선한 세종문화회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6월 11일자 14면, 인터넷 한국일보 6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의 사장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정책자문위원회 문화환경분과 위원장이었으며, 현 사장 취임 이후 각종 현안 사업이 개점휴업 상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국일보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세종문화회관 박○○ 사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8월 21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21일자)
2012충북조정39~40	(매체별 정정청구) 박○○ 對 보은신문, 인터넷 보은신문
조 정 대 상	『대형마트 납품 놓고 우유대리점 간 ‘과당경쟁’』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2년 6월 28일자 1면, 인터넷 보은신문 6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신규 우유대리점의 대형마트 납품을 저지하기 위해 타 대리점과 담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우유대리점 과당경쟁” 제하 기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보은신문 2012년 7월 19일자 1면, 인터넷 보은신문 7월 19일자)

2012경기조정52	(반론청구) 광명소하○○○○○단지입주자대표회의對 인터넷 증부일보
조 정 대 상	『○○○ 광명 공장 소음 때문에 가동중단 위기』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거주중인 아파트 인근 공장의 야간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신청인이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광명시, ○○○ 뵈주기 의혹” 감사청구』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2012서울조정1064~1065	(정정·손배청구) 윤○○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1) 『윤○○, 윤○○에 저축銀 퇴출무마 청탁 함께 돈 줬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0일자 1면) (2) 『개국공신 이어 ‘MB맨’ 까지 박지원 소환조사 명분쌓기?』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0일자 3면)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0일자 2면)

2012서울조정1066~106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회노동조합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복수노조 1년… 기존 노조 교묘한 탄압, 되레 노동 3권 위협”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2년 7월 2일자 12면, 인터넷 경향신문 7월 1일자)
신청인주장	대학 내 경비원들로 구성된 신청인 노동조합을 사측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어용노조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070~107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이○○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 MBN :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재앙의 전주곡? 기이한 소리의 정체』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0일자 20:00) • 인터넷 MBN : 『재앙의 전주곡? 기이한 소리의 정체』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역술가인 신청인이 오래된 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 ‘주된 원인은 주민들이 나무를 무시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MBN :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기이한 소리의 정체>편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8일자 22:00) • 인터넷 MBN : 『<기이한 소리의 정체>편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7일자)

2012광주조정48	
(정정청구)○○중학교 對 뉴스1코리아(광주전남)	
조 정 대 상	『‘니키킨’ 피해 학생에 책임 물은 ‘황당’ 중학교』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교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피해 학생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니키킨’ 피해 학생에 책임 물은 ‘황당’ 중학교” 관련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2012대전조정31	
(정정청구) ○○○○○○주식회사 對 tjb-tv	
조 정 대 상	(1) tjb 아침뉴스 프로그램 『안일한 지자체...독점 의혹』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0일자 07:30) (2) tjb 아침뉴스 프로그램 『공정위, 급식카드 가맹편의점 독점의혹 조사 착수』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0일자 07:30)
신청인주장	특정 대기업의 급식전자카드 가맹점 독점이 신청인 회사 때문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신청인 회사는 지정된 가맹점의 카드승인망을 구성, 관리하는 업체일 뿐 가맹점 모집 권한이 없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1076~1077	
(매체별 정정청구)(병합)○○석유회사설립준비위원회 對 머니투데이,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안갯속 ‘○○석유회사’ 실체는?』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2년 6월 29일자 9면, e머니투데이 6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신청인 단체가 싼 값에 석유를 공급하겠다고며 투자자들로부터 정유사 설립자금을 모으고 있어 금융사고가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078~108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정○○ 對 덴탈포커스, 인터넷 덴탈포커스	
조 정 대 상	『77만 원 임플란트가 ‘양심’ 이라고?』 제하의 기사 (덴탈포커스 2012년 6월 25일자 1면, 인터넷 덴탈포커스 6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저렴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겠다는 신청인(치과의사)의 광고를 환자를 속이는 과장된 것으로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지하철 역사의 대중광고를 자료사진으로 활용하였고 신청인의 연락처와 사진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였다. 또한 해당광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며, 신청인 측을 대상으로 충분한 반론 취재를 거쳤다)

2012서울조정1082~108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 외 1인 對 매일경제(1082~1083), 인터넷 매일경제(1084~1085), 네이버(1086~1087), 다음(1088~1089)	
조 정 대 상	• 매일경제 : 『서울시 공무원 공연장 추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0일자 A31면)

조 정 대 상	• 인터넷 매일경제 · 네이버 · 다음 : 『서울시 공무원 공연장 추태 … 관객들 눈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 공무원인 신청인들이 연극공연 관람에 지각해 입장이 불가능해지자 검찰공무원을 사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경기조정53	(손배청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지부 對 경기도민일보
조 정 대 상	『○○구 ○○○○소 파업 2라운드』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9일자 1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조가 정규직의 일반직 전환,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지불 등 과도한 요구를 한 것처럼 허위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090~1091	(매체별 조정청구) (병합) 대전지방국도관리청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가뭄 걱정 안해도 된다더니... 4대강 공사 주변논밭 물 끌어쓰기 더 어렵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6월 14일자 12면, 인터넷 한겨레 6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두 지역이 4대강 공사에도 불구하고 물 끌어쓰기가 어렵다고 보도했으나, 한 곳은 4대강과 관련이 없고, 한 곳은 충분한 수량이 확보되고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 사회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처 리 결 과	『4대강 공사 주변 농경지 취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7월 31일자 12면, 인터넷 한겨레 7월 30일자)

2012서울조정1092~1093	(조정 · 손배청구) 주식회사문화방송 對 KBS-1TV
조 정 대 상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2012 노동자의 삶』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0일자 22:00)
신청인주장	신청인 방송사 대표가 낙하산으로 임명되었고, 노조파업에 대해 대화가 아닌 강경 일변도의 태도로 응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094	(반론청구) 김○○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성남시, 감사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성남광고협회 회장인 신청인이 수익금의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095	(정정청구) (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다음날 노조사무실에 대못질...MB정부 뿌리깊은 반노(反勞)』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하는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0일자)

2012경남조정46~51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홍어성초 영농조합법인 對 창원일보 ^(46~47) , 인터넷 창원일보 ^(48~49) , 다음 ^(50~51)
조 정 대 상	『홍어성초(약모밀) 화재를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창원일보 2012년 7월 13일자 15면, 인터넷 창원일보 · 다음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영농조합법인이 두 번의 화재로 인해 도산한 것처럼 보도해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096	(정정청구) (주)제이티비씨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도독 인터뷰’ 해야 하는 중앙종편의 굴욕』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jbc방송이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후보들을 취재하면서, 기자의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도독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8시간 동안 게재, 제목을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도독 인터뷰’ 해야 하는 중앙종편의 굴욕>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7일자)

2012경기조정54	(정정청구) 최윤길 對 성남도시신문
조 정 대 상	『후반기 의장선거, 민주당 손잡고 (새)최윤길의원 당선』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민주당 출신 시장의 중점추진사업에 협조해준다고 서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남조정52~53	(정정 · 손배청구) ○○홍어성초 영농조합법인 對 서경신문
조 정 대 상	『홍어성초(약모밀) 화재를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영농조합법인이 두 번의 화재로 인해 도산한 것처럼 보도해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경기조정55	(반론청구) ○○중학교 對 아이컬처뉴스
조 정 대 상	(1) 『학교폭력 속 감춰진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6일자) (2) 『○○중학교, 4개월 동안 학폭회의 7차례 열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3) 『시 관계자 ‘○○중학교 교사가 문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학생들의 사소한 장난과 다툼까지도 학교폭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3)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중학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6일자)

2012서울조정1097	(반론청구) 김○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항당사건〉 티눈 제거하려다 손가락 절단한 병원』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신청인주장	피부과 의사인 신청인이 티눈 치료 중 실수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후, 환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098	(정정청구) 김○○ 對 채널A
조 정 대 상	굿모닝! 채널A입니다 프로그램 『단독/저축은행 ‘뒷돈’ 받은 인사 또 있다』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7일자 06:50)
신청인주장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청인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굿모닝! 채널A입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정정보도,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함
이 행 결 과	굿모닝! 채널A입니다 프로그램 『K 전 비서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3일자 06:50)

2012강원조정5~6	(정정·손배청구) 최○○ 외 1인 對 춘천KBS-1TV
조 정 대 상	KBS 뉴스9 프로그램 『보조금 횡령 의혹 연루 노인회 직원 ‘면직’』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4일자 21:00)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보조금을 횡령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됐으나 요금횡령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복직 판정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뉴스> 및 <뉴스9>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멘트로 후속보도, 멘트가 진행

처 리 결 과	되는 동안 후속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도록 하며,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1) KBS 뉴스7 프로그램 『‘보조금 횡령 의혹 노인회 직원’ 일부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16일자 19:00) (2) KBS 뉴스9 프로그램 『‘보조금 횡령 의혹 노인회 직원’ 일부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16일자 21:00)

2012서울조정1099~1104, 1108~1111	전국금속노동조합 對 조선일보(1099~1101 정정·반론·손배청구), 조선닷컴(1102~1104 정정·반론·손배청구, 1099~1101과 병합), 네이버(1108~1109 정정·반론청구), 다음(1110~1101 정정·반론청구)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차 노조, 파업 찬반 ‘공개 투표’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A8면) • 조선닷컴·네이버·다음 : 『○○차 노조, 파업 찬반 ‘공개 투표’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금속노조 모 자동차지부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독립된 기표 공간 없이 투표를 진행해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조선닷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피신청인 사과,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다음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조선닷컴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조선닷컴)가 2012서울조정1102·1103·1104 사건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하는 즉시 홈페이지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인링크)하도록 하고, 별도로 뉴스홈에 마련된 ‘e움브즈맨’ 코너 중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 모음에 게재함, 기사제공언론사(조선닷컴)가 2012서울조정1102·1103·1104 사건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전송해오는 시점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에 이를 반영하여 노출(인링크)하도록 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조선닷컴)가 2012서울조정1102·1103·1104 사건에 대한 정정 및 반론의 보도문을 전송하는 즉시 홈페이지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인링크)하도록 하고, 별도로 뉴스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코너에 게재함, 기사제공언론사(조선닷컴)가 2012서울조정1102·1103·1104 사건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전송해오는 시점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에 이를 반영하여 노출(인링크)함
이 행 결 과	『‘○○차 노조, 파업 찬반 공개 투표 파문’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8월 13일자 A8면, 조선닷컴·네이버·다음 8월 13일자)

2012서울조정1105~1106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TV조선, 인터넷TV조선
조 정 대 상	• TV조선 :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프로그램 『키 크는 값 700만 원?』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8일자 23:00) • 인터넷 TV조선 : 『키 크는 값 700만 원?』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한의원이 성장장애 환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한약을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107	(정정청구) 박근혜 對 월간중앙
조 정 대 상	『박근혜 대선가도 최대 적은 자신의 그림자』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호 48~56면)
신청인주장	박근혜 의원이 낳은 아이가 일본에서 살고 있고,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가 박 의원 집을 몰래 드나들고 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인터넷 월간중앙에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박근혜 출산설은 근거 없는 음해성 유언비어』 제하의 기사 (인터넷 월간중앙 2012년 7월 18일자)

2012서울조정1112~1114	(정정·반론·손배청구) 홍○○ 對 데일리안
조 정 대 상	『민주당 낙천자 “탈북자 받지말자” 황당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4일자)
신청인주장	민주통합당원인 신청인이 트위터를 통해 ‘탈북자를 받지 말자’ 고 했다는 보도는 ‘탈북자를 가려서 받자’는 신청인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50만 원,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정치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민주당 낙천자 “탈북자 받지말자” 황당 주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7일자)

2012서울조정1115~1116	(정정·손배청구) ○○○ 자산운용 주식회사 對 시사IN
조 정 대 상	(1) 『○○○의 9호선 민영화의 민낯』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8일자 14~28면) (2) 『○○○는 자본을 ‘통째’ 잠식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6일자 32~36면)
신청인주장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신청인이 대주주 지위를 이용, 민자사업 기업에 고금리대출로 고수익을 챙겼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이 적자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고문, 부제소)
이 행 결 과	『민자사업 보도에 대한 ○○○인프라펀드 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8일자 32면)

2012경남조정54~55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남해군 對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조 정 대 상	『정현태 남해군수 거센 사퇴압박』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2년 6월 26일자 2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6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정현태 남해군수가 남해출신 향우회 및 군민들로부터 거센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제주조정6~17	허○○對 한라일보(6~7 반론·손배청구), 인터넷 한라일보(8~9 반론·손배청구, 6~7과병합), 제주의소리(10~11 정정·손배청구), 제주투데이(12~13 정정·손배청구), 이슈제주(14~15 정정·손배청구), 제주인터넷뉴스(16~17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 한라일보·인터넷 한라일보 : 『경마장 기수들이 사라지고 있다』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2년 4월 26일자 4면, 인터넷 한라일보 4월 25일자) • 제주의소리 : 『6명 구속! 도대체 제주경마장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 제주투데이 : 『승부조작 가담 제주 경마본부 기수 등 3명 추가 구속』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 이슈제주 : 『설마하던 경마 승부조작, 실체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 제주인터넷뉴스 : 『승부조작 기수와 조교사 등 줄줄이 구속』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경마 승부조작으로 구속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한라일보·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이슈제주·제주인터넷뉴스 : 홈페이지 사 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목을 [] 안에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라일보·인터넷 한라일보 : 『경마장 기수 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2년 8월 17일자 4면, 인터넷 한라일보 8월 17일자) • 제주의소리 : 『[정정보도문]경마 승부조작 가담, 기수 허모씨 무관』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6일자) • 제주투데이 : 『[정정보도문]경마 승부조작 가담, 기수 허모씨 무관』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3일자) • 이슈제주 : 『[정정보도]경마장 승부조작, 허모 기수는 무관』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3일자) • 제주인터넷뉴스 : 『[정정보도문]경마 승부조작 가담, 기수 허모씨 무관』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0일자)

2012경남조정56~57	(정정·손배청구) 허○○對 MBC 경남(진주)

조 정 대 상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소나무 굴취’ ... 지역정서 해친다』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1일자 21: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5년 전에도 반출 시도 무산』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2일자 21:00)

신청인주장	조경업자인 신청인의 적법한 소나무 굴취행위를 불법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제주조정18~21	허○○對 KBS-1TV ^{18~19반론·손배청구} , 다음 ^{20~21 정정·손배청구}
조 정 대 상	•KBS-1TV : KBS 뉴스 7 프로그램 『제주 경마 승부조작 의혹 수사확대』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5일자 21:00) •다음 : 『6명 구속! 도대체 제주경마장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경마 승부조작으로 구속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KBS-1TV : 조정불성립결정 •다음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2제주중재1~2 참조)]

2012전북조정29	(정정청구) (주)○○리아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1) 『꿈수 논란 빚은 ○○○○○○ 웨딩홀 오늘 22일 교통영향평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4일자) (2) 『현실과 거리면 교통영향평가... 이번엔 잘될까』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5일자) (3) 『○○○○○○ 웨딩홀 22일 교통영향평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4) 『○○○○○○ 웨딩홀 교통영향평가 연기』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5) 『교통영향평가 논란 ○○○○○○ 웨딩홀 ‘노석만 도의원 사과해라’』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웨딩홀이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건축 사용 승인을 컨벤션으로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117	(정정청구) 1. 서울특별시2. 정○○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市 소송 싸움이 ○○, 서울시 와 밀월?』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27면)
신청인주장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건설 사업 등 소송 사건을 특정 법무법인에 위임해 특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환경닷컴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국경제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된 날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환경닷컴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특별대우 안해” 서울시 밝혀』 제하의 보도 (한국경제 2012년 8월 25일자 27면, 환경닷컴 8월 25일자)

2012대구조정15	(정정청구) 광○○對 인터넷 경북매일신문
조 정 대 상	『포항서 사제간 폭행 ‘맞고소’』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고등학생인 신청인이 교사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행동했으며, 신청인이 교사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한 후 학교 측에서 학부모와 면담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2서울조정1118~1122	
(매체별 정정청구) 전라북도교육청 對 동아일보 ⁽¹¹¹⁸⁾ , 동아닷컴 ^(1119, 1118과 병합) , 네이버 ⁽¹¹²⁰⁾ , 네이트 ⁽¹¹²¹⁾ , 다음 ⁽¹¹²²⁾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공문까지 변조한 전북교육청』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A2면) • 동아닷컴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교사도 방학때 학생들처럼 학교 안 나와도 된다”... 공문까지 변조한 전북교육청』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전라북도교육청이 교과부의 공문을 변조하여 방학 중 교사들에게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 32~34 참조)] ※ 이행방법 • 동아닷컴 :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동아닷컴 : 『‘전북교육청 교원복무지침 공문 변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8월 16일자 A2면, 동아닷컴 8월 16일자)
2012서울조정1123~1126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오이티엔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과학 다큐멘터리를 위하여』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6월 25일자 A30면, 동아닷컴 6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언스 TV채널을 대전에서 볼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동아닷컴 홈페이지 오피니언 섹션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대전지역 YTN 사이언스TV 시청 관련』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8월 7일자 2면, 동아닷컴 8월 7일자)
2012서울조정1127~1130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병합) ○○○○○○ · KBS-1TV, KBSi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K리그 첫 승강제 ‘예민해진 서포터즈’』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6일자 21:00) • KBSi : 『K리그 승강제 ‘예민해진 서포터즈’』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K리그의 서포터즈인 신청인 단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감독 퇴진 운동을 벌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와 신청인 단체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없고, 신청인 단체는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격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2서울조정1131~1132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MBC every1, 인터넷 MBC every1	
조 정 대 상	• MBC every1 : 가족의 비밀 프로그램 『2화』 제하의 보도 (2012년 4월 25일자 23:00) • 인터넷 MBC every1 : 『[VOD] 가족의 비밀 - 2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트랜스젠더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보도하면서 아무 관련 없는 신청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손해배상금 550만 원 지급)

2012경남조정58~59	(정정·손배청구) 구○○對 TYN
조 정 대 상	『김동진 통영시장, 체면 크게 손상 가능성… 구○○ 법정대리인, 김시장 거짓말 감싸 다 뒤집어 쓸판』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신청인주장	김동진 통영시장의 고소대리인인 신청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잘못 보도하고, 김시장에 대해 강한 원망을 품고 탓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133~1141	○ 인터내셔널(주)對 디지털타임스(1133~1134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디지털타임스(1135~1136 정정·손배청구, 1133~1134와 병합), 네이버(1137 정정청구), 네이트(1138 정정청구), 다음(1139 정정청구), 야후(1140 정정청구), 줌닷컴(1141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디지털타임스: 『○○○○ 잦은 장애 ○서버 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1면)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줌닷컴: 『‘○○’ 종종 끊긴 이유… 원인 이거였어?』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4월 발생한 모 모바일메신저 중단 사태의 원인이 신청인 회사의 서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디지털타임스·인터넷 디지털타임스: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 네이버·네이트·다음·야후·줌닷컴: 각 취하 [사유: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27~31 참조)] ※ 이행방법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중단에 48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디지털타임스·인터넷 디지털타임스: 『‘○○○○ 장애’ 기사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디지털타임스 2012년 8월 14일자 2면,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8월 13일자)

2012광주조정49~52	(매체별 정정·반론청구)(병합) 영암군對 삼군신문, 인터넷 삼군신문
조 정 대 상	(1) 『‘예술인촌’ 사업 놓고 뒷말 무성』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5월 7일자 4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7일자) (2) 『영암에는 나무도독이 산다?』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5월 14일자 4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14일자) (3) 『우리 문중서 준 나무가 맞나요?』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5월 21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21일자) (4) 『영암농특산물판촉단 선거법 위반?』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5월 21일자 5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21일자) (5) 『영암지역 회전교차로 ‘과유불급’』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6월 4일자 4면, 인터넷 삼군신문 6월 4일자)

조 정 대 상	(6) 『기찬장터, ‘판촉단’ 운영 정체성 논란』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6월 11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6월 11일자) (7) 『영암군의 빈 쪽정이 정보공개』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6월 11일자 2면, 인터넷 삼군신문 6월 11일자) (8) 『영암군농특산물판촉단 판촉행사, 예산낭비?』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7월 3일자 11면, 인터넷 삼군신문 7월 3일자) (9) 『사업 시행방식, 입찰 담합 의혹까지...』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5월 14일자 5면, 인터넷 삼군신문 5월 14일자) (10) 『새로 개설한 도로 놓고 특혜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7월 17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7월 17일자) (11) 『재판에, 검·경 조사에, 주민소환까지?』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6월 25일자 1면, 인터넷 삼군신문 6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영암군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삼군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위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삼군신문 2012년 9월 4일자 6면, 인터넷 삼군신문 8월 30일자)

2012경기조정56~57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전국○○○○○○노동조합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1) 『인천지하철 노조원 임금착취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19면) (2) 『권한 없는 해고 남발...노동자 속수무책』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19면)
신청인주장	(1) 전국○○○○○○노조 인천지하철지부가 노조원의 임금을 착취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 전국○○○○○○노조 인천지하철지부가 부평역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짜리가 싫으면 무릎꿇고 빌라’고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전국○○○○○○노조 인천지하철지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7일자 2면)

2012서울조정1142~114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주)○○○항공對 인터넷 아주경제, 인터넷 이코노미세계
조 정 대 상	• 인터넷 아주경제 : (1) 『○○○항공, 승객 목숨 담보로 돈벌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2) 『○○○항공, 또 이륙중량 조작... 7년전 사고 잇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7일자), (3) 『○○○항공 함○○ 사장 등 경영진, ‘최대이륙중량’ 조작사건 고의적』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 인터넷 이코노미세계 : (1) 『○○○항공, 안전운항 우려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일자), (2) 『초과 중량 항공기 운항, ‘어떻게’ 가능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4일자), (3) 『‘경영진 따로 직원 따로’, 항공사 산으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8일자), (4) 『○

조 정 대 상	○○항공 공매, 毒든 성배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5) 『○○○항공, 2차 매각 실패 이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6일자), (6) 『○○○항공 매각, 각종 낭설 난무』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7) 『○○○항공, 주주총회 또 연기 책임경영 무산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3일자), (8) 『○○○항공, 대표, '직무정지' 심리 열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9) 『○○○항공 대표, 직무정지심리 법정 진실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9일자), (10) 『○○○, ○○○항공 인수 계획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항공사가 최대 이륙중량을 초과해 운항한 뒤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인터넷 아주경제 : ▷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손해청구 : 취하 • 인터넷 이코노미세계 : 취하 ※ 이행방법 • 인터넷 아주경제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산업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3)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아주경제 : 『'○○○항공 이륙중량 초과 및 정기총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3일자)

2012서울조정1146~114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환경운동연합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전력난 키우는 과소비와 대안 없는 原電 거부』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5월 29일자 A31면, 동아닷컴 5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발표한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가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리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동아닷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오피니언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연합의 원전사고 모의실험 결과'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9월 8일자 2면, 동아닷컴 9월 8일자)

2012서울조정1150	(정정청구) 심○○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MBC노조 "김재철, 복귀한 조합원에 악랄한 보복 인사"』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신청인주장	모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부장인 신청인이, 과거 여성작가들 앞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는 등 평가가 나쁘다는 MBC노조의 허위 성명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6일자)
2012서울조정1151~1153	(매체별 정정청구) 고용노동부 對 노컷뉴스⁽¹¹⁵¹⁾, 네이버⁽¹¹⁵²⁾, 다음⁽¹¹⁵³⁾
조 정 대 상	(1)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2) 『전두환 때보다 더해...노동부 장관 ‘멘붕’』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반론보도 (2012서울중재35~36 참조)]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유도’ 관련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2012서울조정1154~1155	(정정 · 손해청구) (주)○○○ 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 워크아웃 추진』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1면)
신청인주장	금융감독원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신청인 회사가 곧 워크아웃될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156~1158	(매체별 정정청구) 고용노동부 對 노컷뉴스⁽¹¹⁵⁶⁾, 네이버⁽¹¹⁵⁷⁾, 다음⁽¹¹⁵⁸⁾
조 정 대 상	(1)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2) 『전두환 때보다 더해...노동부 장관 ‘멘붕’』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노조전임시간 상한제도인 타임오프에서는 단체 행동권도 제한될 수 있으며, 노동 3권 행사를 사용자가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신청인 장관의 발언을 인용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반론보도 (2012서울중재37~38 참조)]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유도’ 관련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2012경기조정58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성남시장 친형 시의회 · 백화점서 난동』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성남시장의 친형인 신청인이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을 방해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7일자)

2012경남조정60~6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길중 對 한남일보, 인터넷 한남일보
조 정 대 상	『도의원이 숙원사업 예산 집행 막아 물의』 제하의 기사 (한남일보 2012년 7월 25일자 1면, 인터넷 한남일보 7월 24일자)
신청인주장	경남도의의원인 신청인이 거제시 동부면 산양우회도로 예산집행을 막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한남일보 : 홈페이지 기사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게재, 반론보도문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 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전문을 함께 게재토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도의원이 숙원사업 예산집행 막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남일보 2012년 8월 13일자 1면, 인터넷 한남일보 8월 13일자)

2012서울조정1159~1162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박○○ 對 코리아리포스트, 인터넷 코리아리포스트
조 정 대 상	• 코리아리포스트 : 『한남뉴타운 ○·○구역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완료, 그런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4일자 15면) • 인터넷 코리아리포스트 : (1) 『한남뉴타운 ○·○구역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완료, 그런데...』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4일자), (2) 『5월 12일 한남○구역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30일자), (3) 『창립총회 앞둔 한남○구역, ‘창립총회개최금지가처분’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정지가처분’ 신청돼』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일자)
신청인주장	한남재정비주민협회의 회장인 신청인이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코리아리포스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한남○구역 조합장 선거 및 주민협의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코리아리포스트 2012년 8월 28일자 15면, 인터넷 코리아리포스트 8월 28일자)

2012서울조정1163 (정정청구) 파주시청 對 주간 파주신문	
조 정 대 상	『파주시, 공장허가 3억 줬더니 OK』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개발제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산지전용 허가를 내줬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파주시, 공장허가 3억줬더니 OK” 관련 정정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9일자 1면)

2012서울조정1164~1167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주)○○○ 對 머니투데이,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머니투데이 : 『대기업 순환출자 뺏치는 ○○○○ · ○○○ 합병』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26면) • e머니투데이 : 『○○○○○ · ○○○ 등5개 상장사의 복잡한 ‘순환증자’』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합병과정에서 회사인수대금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대여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168~1170 (기사별 정정청구) (병합) 인천광역시중구청 對 아시아일보	
조 정 대 상	(1) 『인천 중구청, 공무원강 와르르』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9일자 4면) (2) 『구청장 공백 인천 중구 불법 난무』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9일자 4면)
신청인주장	인천 중구청이 주민의 민원을 무시해 건설현장 펜스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인천 중구청 기사 관련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0일자 4면)

2012대전조정32~35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충남일보, 인터넷 충남일보	
조 정 대 상	『재향군인회 ○○군 회장 공금유용 ‘파문’』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2년 7월 18일자 8면, 인터넷 충남일보 7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재향군인회 ○○군 회장이 횡령한 공금을 신청인의 사무국장 임명 로비자금조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보도에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1171 (손배청구) 오○○ 對 MBN	
조 정 대 상	현장르포 특종세상 프로그램 『환자를 삽니다. 한 정신병원의 실체!』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7일자 23:00)

2012서울조정1178~118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연대 對 동아일보(1178~1179), 동아닷컴(1180~1181), 주간조선(1182~1183), 인터넷 주간조선(1184~1185)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동아닷컴 : 『“억지 다문화 정책 폐지하라” 목청 높이는 외국인 혐오단체』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8월 3일자 A14면, 동아닷컴 8월 3일자) • 주간조선·인터넷 주간조선 : 『다문화사회가 키우는 외국인혐오증 ‘불편한 진실’의 현장』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2년 7월 23일자 36~39면, 인터넷 주간조선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외국인에게 적대감을 표시하는 ‘외국인 혐오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동아일보·동아닷컴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주간조선·인터넷 주간조선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주간조선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주간조선·인터넷 주간조선 : 『○○○○○○○○연대, ‘외국인 혐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조선 2012년 8월 27일자 43면, 인터넷 주간조선 8월 27일자)

2012서울조정1186~1187	(매체별 손배청구) 최○○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올레길 살인사건, 13일간의 기록』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2년 7월 27일자 22:00, 인터넷 TV조선 7월 27일자)
신청인주장	제주도 올레길 살인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무단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금 150만 원 지급)

2012강원조정7	(손배청구) 권○○ 對 강원일보
조 정 대 상	『“개사료로 국물낸다”... 악성 루머에 우는 맛집들』 제하의 기사 (강원일보 2012년 7월 17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비롯한 소문난 맛집들의 악성 루머에 대해 보도하면서 ‘개사료로 국물낸다’는 등의 루머 내용을 부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찬바람 불 때 뜨끈한 웅심이 한 그릇』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16면)

2012서울조정1188~119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운수 주식회사 對 서울경제, 인터넷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스쿨존, 안전 사각지대 되나』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2년 5월 1일자 16면, 인터넷 서울경제 4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택시주차지가 초등학교로부터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서울경제 :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초교 인근 ○○운수(주) 택시 주차지'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2년 9월 8일자 16면, 인터넷 서울경제 9월 10일자)
2012서울조정1192~1218, 1259	정○○對 노컷뉴스(1192~1193 기사별 정정청구), 뉴스한국닷컴(1194, 1259 각 정정청구), 마이데일리(1195 정정청구), 매경닷컴(1196 정정청구), 미디어스(1197~1198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민중의소리(1199 정정청구), 뉴스앤뉴스(1200~1202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세계닷컴(1203 정정청구), 스포츠서울닷컴(1204 정정청구), 아이피디저널(1205~1206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오마이뉴스(1207~1208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e머니투데이(1209 정정청구), 인터넷 미디어오늘(1210~1211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인터넷 일요시사(1212~1213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인터넷 헤럴드경제(1214~1215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쿠키뉴스(1216 정정청구), 티브이데일리(1217~1218 기사별 정정청구)(병합)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1) 『한류스타보다 비싼 무용단? MBC 김재철 사장 특혜 의혹 J씨』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0일자), (2) 『MBC노조 “김재철 사장 무용수 J씨와 부동산 투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뉴스한국닷컴 : 『MBC 노조 ‘김재철-무용가 J씨’ 부동산 투기 의혹 폭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마이데일리 : 『MBC노조 “김재철 사장·무용가 J씨와 아파트 공동구입”』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매경닷컴 : 『MBC노조 “특혜의혹 무용가 J씨, 샤이니보다 높은 8000만원 대 출연료”』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 미디어스 : (1) 『MBC노조 ‘무용가 J씨’ 의혹 추가 폭로, “샤이니” 보다 출연료 더 받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2) 『“김재철, 무용가 J씨와 총복 오송 아파트 함께 구입한 뒤 관리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민중의소리 : 『“특혜 의혹” 무용가 J씨, 샤이니보다 높은 출연료 받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 뉴스앤뉴스 : (1) 『MBC노조 “무용가 J씨, 아이돌보다 출연료 더 받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2) 『MBC노조 “김재철, 무용수 J에게 20억 이상 특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3) 『김재철, 무용수 J와 아파트 3채 공동구입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세계닷컴 : 『MBC 노조,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와 아파트 3채 공동 구입”』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스포츠서울닷컴 : 『MBC노조 “사장 특혜의혹 무용가 J씨, 샤이니보다 높은 출연료”』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 아이피디저널 : (1) 『“‘J씨 특혜’ 김재철 사장, 부동산 투기로...”』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2) 『“김재철 무용가 J씨 위해 기사청탁”』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 오마이뉴스 : (1) 『“김재철, 무용가 J씨에게 20억 이상 특혜성 자금”』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2) 『“김재철과 무용가 J씨, 아파트 3채 함께 구입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e머니투데이 : 『MBC노조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와 수억원대 아파트 공동관리”』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조 정 대 상	• 인터넷 미디어오늘 : 『“MBC 사장, 7년간 무용가 J씨에게 20억원 몰아줘”』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 인터넷 일요시사 : (1) 『내가 하면 로맨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7일자), (2) 『갈수록 구린내 나는 김재철-무용가 J씨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1) 『“김재철 사장 특혜” 무용가 J씨, 사이니보다 높은 몸값』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2)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에 20억 줬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 쿠키뉴스 : 『MBC노조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와 수억원대 아파트 공동관리”』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 티브이데일리 : (1) 『MBC노조 “특혜의혹 무용가 J씨, 사이니보다 출연료 더 받았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9일자), (2) 『MBC 노조 측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와 아파트 3채 샀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2일자)
신청인주장	무용가인 신청인과 MBC 사장의 관계에 대한 MBC 노조의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 2012서울조정1192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2012서울조정1193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뉴스한국닷컴 : ▷ 2012서울조정1194 -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기사수정) ▷ 2012서울조정1259 - 조정불성립결정 • 마이데일리 · 미디어스 · 뉴스엔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매경닷컴 · 스포츠서울닷컴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민중의소리 · 세계닷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아이피디저널 · 어머니투데이 · 인터넷 일요시사 · 티브이데일리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오마이뉴스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쿠키뉴스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인터넷 미디어오늘 · 뉴스한국닷컴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 2012서울조정1192 - 홈페이지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고,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2012서울조정1193 -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고,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한편, 신청인이 김재철 MBC 사장과는 무관하게 총복 오송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나올 경우 이 내용을 즉시 보도함 • 마이데일리 · 미디어스 · 뉴스엔뉴스 · 아이피디저널 · 어머니투데이 · 인터넷 일요시사 · 티브이데일리 : 홈페이지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매경닷컴 · 스포츠서울닷컴 : 홈페이지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 민중의소리 · 세계닷컴 · 오마이뉴스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쿠키뉴스 : 홈페이지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

처 리 결 과	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1) 『J씨 무용단, 한류스타보다 출연료 높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2년 8월 23일자), (2) 『무용수 J씨 아파트 구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 뉴스한국닷컴 : 『MBC 노조 '김재철-무용가J씨' 부동산 투기의혹 폭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 마이데일리 : 『무용가 J씨 아파트 구입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3일자) • 매경닷컴 : 『J씨 무용단, 인기 아이돌 그룹보다 출연료 높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 미디어스 : 『무용가 J씨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 민중의소리 : 『J씨 무용단 일본 공연 출연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 뉴스앤뉴스 : 『무용수 J씨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 세계닷컴 : 『무용가 J씨 아파트 구입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 스포츠서울닷컴 : 『J씨 무용단, 인기 아이돌 그룹보다 출연료 높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 아이피디저널 : 『무용수 J씨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 오마이뉴스 : 『무용수 J씨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 머니투데이 : 『무용수 J씨 아파트 구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 인터넷 일요시사 : 『무용수 J씨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무용수 J씨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 쿠키뉴스 : 『무용수 J씨 아파트 구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 티브이데일리 : 『무용수 J씨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2012경남조정64~6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 집행위원회 對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	
조 정 대 상	『○○○○○○○○○ ‘동네축제’ 됐다』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2년 8월 7일자 7면, 인터넷 경남신문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개최한 축제가 ‘동네축제로’로 전락했고, 정치인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전 문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경남신문 : ▷반론청구 - 조정성립(내용 : 반론보도) ▷손배청구 - 취하 • 인터넷 경남신문 : ▷반론청구 - 조정성립(내용 : 반론보도) ▷손배청구 - 취하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신문 : 조정대상기사 제목이 게재된 같은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 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신문 2012년 9월 3일자 7면, 인터넷 경남신문 9월 3일자)
2012서울조정1219~1222	(매체별 반론청구) 문○○ 對 서울신문 ⁽¹²¹⁹⁾ , 인터넷 서울신문 ⁽¹²²⁰⁾ , 한겨레 ⁽¹²²¹⁾ , 인터넷 한겨레 ^(1222, 1221과 병합)
조 정 대 상	• 서울신문 · 인터넷 서울신문 : 『경찰, ○○○○ 실제 운영자 서○○ 등 2명 出禁』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2년 8월 8일자 9면, 인터넷 서울신문 8월 8일자)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 회장은 ‘새누리당 당직자’ … 정치권 비호 노렸나』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8월 2일자 9면, 인터넷 한겨레 8월 2일자)
신청인주장	새누리당 중앙위원 출신인 신청인이 한 경비용역업체의 실제 운영자를 찾아가 채용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서울신문 · 인터넷 서울신문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1223	(정정청구) 서귀포경찰서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웃웃 벗고, 쌍욕하고… 대한민국 경찰 맞나요』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9일자)
신청인주장	서귀포경찰서가 해군기지 앞에서 미사를 진행하던 신부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미사 제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9일자)
2012광주조정56	(손배청구) 임○○ 對 KBC-TV
조 정 대 상	(1) 8시 뉴스 프로그램 『물관리 시스템 무용지물』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2일자 20:25) (2) 뉴스지금 프로그램 『물관리 시스템 무용지물 전락』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3일자 07:15)
신청인주장	물관리시스템에 대해 보도하면서 관계 공무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상과 음성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1224~122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조○○(○○스님)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천문학적 비용손실-국론 분열 이제 그만”』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5일자 8면) • 동아닷컴 : 『4대강 ... 경부고속철 ... 새만금 간척 ... 톡하면 국책사업 발목잡기』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과 환경 단체가 반대했던 천성산 터널공사와 관련,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손실을 과장해 보도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손배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재위에서 결정한 정정보도의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 이행방법 : 동아닷컴 홈페이지 정치섹션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동아일보에 정정·반론보도문이 게재되는 날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정정·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2012경기조정59	(정정청구) 인천광역시 중구청 對 KMB방송
조 정 대 상	(1) 『중구청 500명 용역동원 ○○○교회 통곡』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0일자) (2) 『인천중구청 영종출장소가 교회를 초토화시켰다』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3) 『용역들 부녀사 성희롱 앞에서 옷 입히고 수명 사상자』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1일자) (4) 『철거현장 용역철거요원들의 심각한 폭력사건 현장』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3일자) (5) 『중구청 ○○○ 부구청장 시민봉사 안중에도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3일자) (6) 『인천중구청 공무원 국가는 이대로 직무유기 방치할 것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0일자) (7) 『전철협 ○○○ 강제철거 인권침해 끝까지 투쟁』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8) 『악랄한 대집행 인천중구청과 송영길 시장』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7일자) (9) 『○○○ 철거민사태 인천시와 무관 그러나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인천 중구청이 실시한 교회불법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폭력 및 성희롱, 공갈 협박 등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1)~(9)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되,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인천중구청 기사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8월 22일자)

2012서울조정1228~123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장○○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성추행·금품수뢰』 의혹 받는데 ... 초등 교감에 대통령 훈장 추천?』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5월 18일자 T16면, 인터넷 한겨레 5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감인 신청인이 뷔페업체 사장을 성추행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232~1235	(매체별 조정·손배청구)(병합)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日유지선 익살연기에 캄보디아 주부 환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1일자 16면) • 동아닷컴 : 『[함께해요 나눔예술] 어색한 춤 동작에 중국인 외할머니 손녀와 '까르르'』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극단이 군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공연한 마리나와 비제의 후원사는 신한은행인데,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것으로 잘못 보도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동아일보에 반론보도문이 보도된 날 09:00부터 48시간 동안 동아닷컴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중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마리나와 비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동아일보 2012년 9월 18일자 A16면, 동아닷컴 9월 18일자)

2012서울조정1236	(반론청구) 부산일보(주)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부산일보 '편집권 탄압' 거부 간부 징징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9일자)
신청인주장	부산일보가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인사 조치를 했고, 지시 불이행과 사규위반에 따른 간부기자에 대한 징계를 편집권 탄압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부산일보 '편집권 탄압' 거부 간부 징징계>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3일자)

2012부산조정21	(정정청구) 경상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對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정신 빠진 경남도청 공무원』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8일자 10면)
신청인주장	경상남도 일부 공무원의 개인적 비리를 보도하면서 경남도청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는 개개 공무원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지 공무원 전체 또는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의 공무원들의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 노동조합이 전체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도 볼 수 없어 신청인과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된다)

2012부산조정22~25	(매체별 손배청구) 이○○對 국제신문 ⁽²²⁾ , 인터넷 국제신문 ^(23, 22와병합) , 부산일보 ⁽²⁴⁾ , 인터넷 부산일보 ⁽²⁵⁾
조 정 대 상	• 국제신문·인터넷 국제신문 : 『빛나간 효심 아들,父공탁금 마련하려 절도』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2년 7월 13일자 6면, 인터넷국제신문 7월 13일자)

조 정 대 상	• 부산일보 · 인터넷 부산일보 : 『구속 아버지 공탁금 위해 절도 20대 영장』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2년 7월 13일자 10면, 인터넷부산일보 7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병원 수술장비를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 국제신문 · 인터넷국제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50만 원, 부제소) • 부산일보 · 인터넷부산일보 :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237~1238 (매체별 반론청구) 최재천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 TV조선 : 9시 뉴스 ‘날’ 프로그램 『최재천 의원 “파출소 갯판이 왜 잘못?”』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9일자 20:21) • 인터넷 TV조선 : 『[다시보기]최재천 의원 “파출소 갯판이 왜 잘못?”』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주취 차량감경을 없애기로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신청인(민주통합당)이 “파출소에 가서 갯판 좀 부린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공권력의 시민보호의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부산조정26 (정정청구) 서○○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1) 『새누리 지도부 나흘간 알고도 ‘쉬쉬’』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2년 8월 4일자 3면) (2) 『서○○, 현○○ 놓고 엇갈리는 행보』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2년 8월 7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4.11 총선 공천 현금 수수의혹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숨겼으며, 모 의원의 검찰 출두를 직,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새누리 지도부 나흘간 알고도 쉬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5일자 4면)

2012서울조정1239 (손배청구) 이○○ 對 어패럴뉴스	
조 정 대 상	『조직 통폐합 ... 인력 감축』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4일자 2면)
신청인주장	의류업체에 재직 중인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조직통폐합으로 이미 회사를 떠난 것으로 잘못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경기조정60~63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이○○ 對 부천신문 ^(60~61) , 인터넷 부천신문 ^(62~63)	
조 정 대 상	• 부천신문 : (1) 『‘공단직원 총격고백’ 진실공방 ... 누구 말이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6일자 3면), (2) 『자살기도 공단직원 명예훼손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3면) • 인터넷 부천신문 : (1) 『‘공단직원 총격고백’ 진실공방 ... 누구 말이 맞나?』 제하의

조 정 대 상	기사 (2012년 4월 20일자), (2) 『자살기도 공단직원 명예훼손 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자살 미수 사건을 합리화시키고 동정을 받기 위해 거짓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료 직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240	(정정청구) 김○○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판·검사 포함 239건 ‘고소 대마왕’』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6일자 10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묻지마 고소’를 일삼는 상습 고소꾼이라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결정 (결정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2서울조정1241	(반론청구) 최○○對 구리넷
조 정 대 상	『○○○중, 학교폭력자치회 ‘편파심’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을 같은반 학생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242	(반론청구) (주)○○교육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싸운 지 1667일... “노조에서 매년 제사 지낸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노조원의 임금을 삭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교육’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2012광주조정57~61	(매체별 정정청구) 이○○對 남도일보 ⁽⁵⁷⁾ , 인터넷 남도일보 ^(58, 57과 병합) , 광남일보 ⁽⁵⁹⁾ , 인터넷 광남일보 ^(60, 59와 병합) , 전남인터넷신문 ⁽⁶¹⁾
조 정 대 상	• 남도일보 · 인터넷 남도일보 : (1) 『목포 A초등학교교사 학생체벌 ‘논란’』 제하의 기사 (남도일보 2012년 5월 24일자 10면, 인터넷 남도일보 5월 24일자), (2) 『담임교사가 제자 정신감정 강요 ‘말썽’』 제하의 기사 (남도일보 2012년 7월 16일자 11면, 인터넷 남도일보 7월 16일자) • 광남일보 : 『목포서 스승과 제자 ‘쓰쓸한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 일자 13면) • 인터넷 광남일보 : 『목포 모 초등학교 교사, 제자 정신문제로 몰아』 제하의 기사

조 정 대 상	(2012년 7월 14일자) • 전남인터넷신문 : (1) 『[지역]전남목포소재 S초교 교사, 학생폭행에 학부모들 발끈!』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2) 『[목포] 목포S초교, 멀쩡한 초등생 정신병 자취 급? 말썽』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제자를 체벌하고, 피해 학생 부모에게 학생의 정신감정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남도일보 · 인터넷 남도일보 · 광남일보 · 인터넷 광남일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전남인터넷신문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인터넷 남도일보 · 인터넷 광남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남도일보 · 인터넷 남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남도일보 2012년 9월 11일자 11면, 인터넷 남도일보 9월 11일자) • 광남일보 · 인터넷 광남일보 : 『[반론보도문] 목포서 스승과 제자 ‘쓸쓸한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광남일보 2012년 9월 12일자 13면, 인터넷 광남일보 9월 11일자)

2012서울조정1243~1247		(매체별 정정청구) 이○○ 對 뉴스1 코리아 ⁽¹²⁴³⁾ , 뉴시스 ⁽¹²⁴⁴⁾ , e머니투데이 ⁽¹²⁴⁵⁾ , 뉴스토마토 ⁽¹²⁴⁶⁾ , 아시아경제닷컴 ⁽¹²⁴⁷⁾
조 정 대 상		• 뉴스1 코리아 : 『○○산업, “온돌·돌침대 ‘○○’는 우리 뿐” 이번엔 손배소송』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 뉴시스 : 『○○산업 “○○온돌, 상표 쓰지말라”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 e머니투데이 : 『○○산업 “○○온돌 상표는 우리 것”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 뉴스토마토 : 『‘별이 다섯 개’ ○○산업 “‘○○’ 상표 쓰지말라” 억대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산업, “○○온돌, 상표 쓰지말라” 2억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온돌침대를 제조·판매하는 신청인이, 상호분쟁 중인 경쟁회사와의 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스1 코리아 · e머니투데이 · 뉴스토마토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뉴시스 : 취하 (사유 : 보도약속) • 아시아경제닷컴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뉴스1 코리아 : 『○○온돌, “‘○○’ 상표권침해 손배소송, 반소로 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9일자) • e머니투데이 : 『○○온돌, ‘상표권 소송’ ○○산업 상대 맞소송 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9일자) • 뉴스토마토 : 『○○온돌 “‘상표권 침해소송’ ○○산업에 맞대응”』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4일자)

2012서울조정1248, 1257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조달청 對 주간한국, 인터넷 주간한국	
조 정 대 상	• 주간한국 : 『○○○○-조달청-서울시 커넥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6일자 12면) • 인터넷 주간한국 : 『○○○○-조달청-서울시, 공사 수주 커넥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입찰과 관련, 조달청과 낙찰자인 대기업 건설회사 간에 커넥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주간한국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중단에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조달청 커넥션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2년 9월 10일자 12면, 인터넷 주간한국 9월 10일자)

2012서울조정1249~1251 1. 최○○ 2. 도○○ 對 KBS-1 · 2TV(1249 정정청구, 1250 손해청구), KBS(1251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KBS-1TV : (1) KBS 뉴스9 프로그램 『유치원이 무서워요』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5일자 21:00), (2)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유치원생 밀치고 때리고...』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5일자 23:00), (3)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못 믿을 유치원』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6일자 06:00) • KBS-2TV : KBS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 『또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일자 08:00) • KBS : (1) 『‘때리고 밀치고...’ 유치원 교사, 원생 학대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2) 『유치원생 밀고 때리고...또 교사 학대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3) 『‘아이들 때리고 밀치고...’ 못 믿을 유치원』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6일자), (4) 『또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252~1253 (정정 · 손해청구)(병합) 이○○ 對 구리넷	
조 정 대 상	『○○○○○○○○, 스포츠센터 여직원A씨 “2년간.. 지옥 같았다” 눈물로 호소』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시민스포츠센터 관리자인 신청인이 수 년 동안 소속 여직원을 욕설과 부당한 지시로 괴롭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254 (반론청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 對 메디파나뉴스	
조 정 대 상	『의협, H복지재단 ‘한마음카드’ 법적공방서 무혐의 공정위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 우려한 보호조치”』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바우처카드를 통한 의료비 지원이 의료법 위반인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의료바우처카드, 의료법 저촉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6일자)

2012서울조정1255~125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민주당당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선관위 ‘여야 공천현금’ 수사 의뢰』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8월 2일자 1면, 동아닷컴 8월 2일자)
신청인주장	지난 총선과정에서 민주당합당 전, 현직 의원이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선관위가 포착,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피신청인에 대하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취하하라는 결정 및 정정보도를 1면이 아닌 2면에 게재하라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48시간 동안 동아닷컴 홈페이지 정치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2012서울조정1258	(반론청구) 배○○對 KBS-2TV
조 정 대 상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 『[사건사고] 무면허 보톡스 부작용』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일자 06:0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한의사가 보톡스 주사를 시술했다고 보도됐으나, 이는 양의사인 신청인이 직접 시술한 것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260~1261	(정정·반론청구) ○○○○공업주식회사對 디펜스21
조 정 대 상	『주방용 소독제가 병사 생활관 의료용 살균제로?』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육군에 납품하고 있는 의료용 소독제를 바이러스 살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락스물에 가까운 소독제’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병사생활관 살균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2012서울조정1262~1263	(정정·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對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노보
조 정 대 상	『‘네 머리를 열어봐’...면접은 ‘사상 검증’』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2일자 3면)

신청인주장	한국방송공사가 신입사원 채용면접에서 파업과 관련한 개인 소신을 집중 추궁하는 등 사상검증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264~1265 (매체별 반론청구)(병합) 한국방송공사對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박근혜에 곤란한 질문 던지는 언론이 없다』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2년 8월 22일자 3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8월 22일자)
신청인주장	KBS가 뉴스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의 인생역정만을 부각시키고, 검증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KBS, 박근혜 후보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2년 9월 12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9월 12일자)

2012경기조정64~6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유○○對 강화뉴스, 인터넷 강화뉴스	
조 정 대 상	『정자형 가판대 지원 대상 선정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강화뉴스 2012년 8월 15일자 1면, 인터넷 강화뉴스 9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자형 농산물 가판대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출신인 신청인으로 인해 특혜를 받은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68~71 (매체별 정정청구) ○○○○○○○○노동조합對 경기일보 ⁽⁶⁸⁾ , 인터넷 경기일보 ^(69, 68과 병합) , 부평신문 ⁽⁷⁰⁾ , 인터넷 부평신문 ^(71, 70과 병합)	
조 정 대 상	• 경기일보 · 인터넷 경기일보 : 『지하철 미화원 임금서 ‘노조비 착복’ 의혹』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2년 6월 6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6월 6일자) • 부평신문 · 인터넷 부평신문 : 『지하철 미화원의 14만 6,000원은 어디로?』 제하의 기사 (부평신문 2012년 6월 12일자 10면, 인터넷 부평신문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노동조합의 특정지부가 노조원의 임금을 착취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경기일보 · 인터넷 경기일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부평신문 · 인터넷 부평신문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기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처 리 결 과	[] 안에 표시하여 2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부정신문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경기일보 · 인터넷 경기일보 : 『지하철 미화원 임금서 ‘노조비 착복’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2년 9월 19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9월 19일자) • 부평신문 · 인터넷 부평신문 : 『‘지하철 미화원의 14만 6,000원은 어디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부평신문 2012년 9월 25일자 10면, 인터넷 부평신문 9월 25일자)

2012경기조정72~73	(매체별 정정청구) 김○○ 對 중부일보,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주민 민원에 양심..진입 도로폐쇄』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2년 7월 12일자 9면, 인터넷 중부일보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그린벨트지역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신축 건축물 공사를 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266	(정정청구) 경찰청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단독]경찰, 안철수 룸살롱 · 여자관계 뒷조사 했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이 안철수 원장의 여자관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가 자주 드나들었다고 추정되는 룸살롱 주변을 수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267	(정정청구) 정○○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김재철, 휴가때 J씨 가족 왜 만났나?』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무용가인 신청인이 김재철 사장과 만나 노조의 주장을 실은 언론보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저널리즘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무용가 J씨 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2012서울조정1268~1273 (매체별 조정 · 반론 · 손해청구) ○○증권 주식회사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동업자 신뢰 팽개친 ○○증권』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2년 8월 6일자 31면, 한경닷컴 8월 5일자)
신청인주장	○○증권과 △△△증권 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 ○○증권이 상도의와 거래관행을 외면했다고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274~1277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병합) 권 ○ 對 SBS-TV, SBS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시뉴스 프로그램 『‘조세 피난처’ 스위스 비밀 계좌 빚장 열렸다』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5일자 20:00) • SBS : 『‘조세 피난처’ 스위스 비밀 계좌 빚장 열렸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신청인주장	국세청이 선박업에 종사하는 신청인의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를 찾아내 스위스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SBS-TV : 2012년 9월 11일 저녁 8시 뉴스(일기예보 전)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통상의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되게 하고, 뉴스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함 • SBS : SBS-TV에 반론보도문이 보도된 후 1일 이내에 홈페이지 뉴스 페이지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SBS-TV : SBS 8시뉴스 프로그램 『‘선박왕 권 ○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1일자 20:00) • SBS : 『‘선박왕 권 ○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2012서울조정1278 (조정청구) ○○○○○○○○노동조합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 ○○○ 미화원 노조비 14만 6,000원이 사라졌다』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의 특정 지부가 미화원 임금에서 노조비 수천만 원을 착복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사유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 기사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미화원 노조비’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4일자)

2012부산조정27	(정정청구) 울산지방해양항공청 對 울산제일일보
조 정 대 상	『해운사가 ‘항만청 수장’ 으름장… 오죽 화났으면』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7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항만청이 항운노조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해운사 관리자의 으름장에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항만청 수장 으름장’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4일자 5면)

2012광주조정62	(정정청구) 함평군 對 전남희망신문
조 정 대 상	『동함평산단 조성 총 사업비 711억 원 추정』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3일자 1면)
신청인주장	함평군이 추진중인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예산이 추가 증가돼 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동함평산업단지조성 총 사업비 711억 원 추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1면)

2012광주조정63	(정정청구) 화순군 對 파인뉴스
조 정 대 상	『화순시장에 예산 너무 투입하지 말아야!』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이 화순읍 시장 상인회에 매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상인회에 특혜를 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64	(정정청구) 화순군 對 파인뉴스
조 정 대 상	『화순5일 시장, 상인 간 내홍,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5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이 화순읍 시장 상인회에 많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화순 5일 시장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5일자)

2012광주조정65	(정정청구) 화순군 對 파인뉴스
조 정 대 상	『“공무원이 이럴 수는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5일자)
신청인주장	화순군 공무원과 시장 상인회 간부가 유착관계에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30~31	(매체별 추후청구)(병합)이○○對소통신문, 인터넷소통신문
조 정 대 상	『현직경찰, 임차인 조경수 갈아엎어 ‘파장’』 제하의 기사 (소통신문 2012년 6월 25일자 8면, 인터넷소통신문 6월 25일자)
신청인주장	현직 경찰인 신청인이 임차인의 조경수를 갈아엎어 재물을 손괴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소통신문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현직 경찰의 임차인 조경수 손괴 사건, 혐의없음 처분 받아』 제하의 기사(소통신문 2012년 9월 24일자 8면, 인터넷소통신문 9월 18일자)

2012대구조정16~17	(정정·손배청구)신○○對인터넷 경북제일신보
조 정 대 상	『포항소방서 “고압적” 비난 쇄도 기계의용 대원 50명 “센터장이 하인 부리듯” 항의집단 사직서』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5일자)
신청인주장	포항소방서 소방경인 신청인이 구태한 권위의식에 젖어 민간 의용소방대를 왜해시켜 말썽이 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소방서 ‘고압적’ 비난 쇄도” 기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2012서울조정1279	(반론청구) 1. 사단법인○○○○를 위한한국○○○○연합회 2. 홍○○對세무사신문
조 정 대 상	『○○○○연합회, ‘강제 외부세무조정’ 과 ‘강제 심사·심판청구’ 폐지 건의』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일자 2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합회가 회장의 독선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한국○○○○연합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6일자 13면)

2012서울조정1280~1281	(정정·손배청구)(주)○○○○투어對여행미디어
조 정 대 상	(1) 『○○·모두 상생은커녕 “나만 살면 돼”』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일자 1면) (2) 『○○투어 전문판매점 “난 봉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1면) (3) 『○○투어 ‘쌍끌이’에 중소여행사 ‘허탈’』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3일자 1면) (4) 『○○투어 유통채널 그 숨겨진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0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에 대한 중소여행사들의 불만을 객관적 자료 없이 과장되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처리결과 미이행

2012서울조정1282~1285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병합) 김○○ 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 MBN : 시사기획 맥 프로그램 『굿 한번에 1억! 요지경 무속세상』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25일자 22:00) • 인터넷 MBN : 『굿 한번에 1억! 요지경 무속세상』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5일자)
신청인주장	빙의(귀신들림)치료와 관련, 승려인 신청인이 상담자들에게 치료를 종용하거나 치료비를 미리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MBN 홈페이지의 조정대상기사 및 다시보기 VOD 영상에서 신청인 관련 자료화면 삭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사기획 맥> 프로그램37회~2회에서 신청인 관련 보도내용을 삭제 함

2012대구조정18 (손배청구) 박○○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담배 대놓고 파는 약국... 패스트푸드점 들인 대학병원』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2년 8월 20일자 4면)
신청인주장	담배 파는 약국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약국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286~1289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강○○ 對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월 100만 원 쉽게 번다” 입원 코드기는 병원』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2년 8월 18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290~1291 (반론·손배청구) 1. 주식회사 ○○○○○○○○○○ 2. 문○○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1) 『‘노조’ 무력화 나선 또 다른 ‘○○’, ○○○○○○○○○ 문○○ 사장』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31일자) (2) 『○○○○○○○○○, 이번엔 ‘노조시위 과잉대응’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본사 소속 노조 집행부 4명을 지역으로 발령내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1292~1293 (정정·손배청구)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선교회 2. 최○○ 對 크리스천 포커스	
조 정 대 상	『○○○ 선교대회(2003) 3억여 원 부정지출 의혹 제기돼』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7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선교회가 개최한 선교대회 회계처리에 부정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선교대회(2003) 부정지출 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3면)

2012서울조정1294~1297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주)○○의사對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 문화일보 : 『계약사 ‘변칙 리베이트’ 기승』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7일자 9면) • 인터넷 문화일보 : 『‘의사 노래자랑’ 상금 5,000만 원’ 계약사 후원 왜?’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법인이 주최한 ‘의사 노래자랑’ 행사에 계약사가 후원을 빙자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문화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48시간 동안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모바일 문화일보의 사회면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 함
이 행 결 과	• 문화일보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일자 8면) • 인터넷 문화일보 : 『 ‘의사 노래자랑, 계약사 리베이트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일자)

2012서울조정1298~1299 (조정 · 반론청구) (주)○○랜드對 소비자연합Times	
조 정 대 상	『○○랜드, “제품 불량이다” VS “소비자 부주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세탁 후 점퍼가 손상되어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수선도 해주지 않고 소비자의 과실을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전북조정32~33 (조정 · 손배청구) 박○○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전주○피부와 ○원장 ‘향정’ 위반, 검찰 재수사 여부 관심 ‘쏠려’』 제하의 기사(2012년 5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의사인 신청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위반하여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또한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관련 신청인에 대한 기사들을 모두 삭제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매개되어 있는 해당 기사들도 모두 삭제 함, 향후 검찰 수사 개시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후속보도나 재수사촉구 보도 등을 하지 않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전주○피부와 ○원장 항정 위반, 재수사 여부 관심 쏠려’』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30일자)
2012경기조정74~7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주식회사對 중부일보,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퇴임 앞둔 교장, 학교 농지 빌려주고 다시 얻은 ‘교장직’』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2년 8월 30일자 27면, 인터넷 중부일보 8월 31일자)
신청인주장	학교농장 임차업체로 낙찰된 신청인 회사가 해당 학교장을 신청인 회사가 신설할 예정인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초빙해 특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중부일보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중부일보 : 『반론보도문』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9일자 23면) • 인터넷 중부일보 : 『[반론보도문] 퇴임 앞둔 교장, 학교 농지 빌려주고 다시 얻은 ‘교장직’』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9일자)

2012서울조정1300~1305 (매체별 반론청구) 최○○對 한겨레(1300), 인터넷 한겨레(1301, 1300과 병합), KBS-1TV(1302), KBS(1303), YTN(1304), 인터넷 YTN(1305, 1304와 병합)	
조 정 대 상	• 한겨레 : 『감전된 아버지도 … 구하려던 아들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0일자 13면) • 인터넷 한겨레 : 『감전된 아버지도 … 구하려던 아들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9일자)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에어컨 청소하다 인부 2명 감전』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8일자 22:05) • KBS : 『에어컨 청소하다 인부 2명 감전』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8일자) • YTN : (1) YTN 뉴스 프로그램 『에어컨 수리하다 감전… 2명 중태』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8일자 18:22, 19:43), (2) YTN 뉴스 프로그램 『에어컨 수리 근로자 2명 감전 … 폭염 속 사고 잇따라』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28일자 20:20, 21:43) • 인터넷 YTN : (1) 『에어컨 수리하다 감전… 2명 중태』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8일자), (2) 『에어컨 수리 근로자 2명 감전.. 폭염 속 사고 잇따라』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남편과 아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에어컨 청소 작업을 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 KBS-1TV · KBS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 YTN · 인터넷 YTN :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약속)

2012서울조정1306~1307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문화방송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MBC 안철수 편파보도 “교묘하고 집요해”』제하의 기사(2012년 8월 26일자)
신청인주장	MBC가 안철수씨의 룰살롱 출입에 대한 해명을 보도하지 않는 등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08~131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1. (주)○○○○○ 2. 남○○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누가 이 책의 발판을 깔았나』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8월 29일자 A13면, 동아닷컴 8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출판한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사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312~1315	(매체별 정정청구) 대학생 ○○○○○○연구회 ○○○○○○ ○○○○○○ 對 조선일보 ⁽¹³¹²⁾ , 조선닷컴 ⁽¹³¹³⁾ , 네이버 ⁽¹³¹⁴⁾ , 다음 ⁽¹³¹⁵⁾
조 정 대 상	『“민노·민주당 소속 대학생 의식화” 北, 작년 ‘왕재산’ 통해 지령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5월 29일자 1면, 조선닷컴·네이버·다음 5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지하당 ‘왕재산’을 통해 북한대남공작기구로부터 지령을 받은 단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316~131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윤○○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김○○ 말고 또 있다” 소문… 청와대 내부 검찰 돌입』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7월 16일자 A3면, 조선닷컴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청인이 해운중개업체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힘써준 대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선닷컴 홈페이지 사회섹션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청와대 전 행정관 금품수수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9월 21일자 2면, 조선닷컴 9월 21일자)

2012서울조정1320	(반론청구) 강○○ 對 방송대신문
조 정 대 상	『방송대 왜곡보도, 초기 대응 해결』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9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방송통신대학교의 기성회비 방만 운용에 대해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된 기사가 오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방송대 왜곡보도, 초기 대응 해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3면)

2012대전조정36~37	(정정·손배청구) ○○사랑 對 대전투데이
조 정 대 상	(1) 『교수에게 농락당한 태안군 ‘망신살’』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6일자 1면) (2) 『“태안군수도 속고 군민도 속았다”』 제하의 기사(2012년 7월 6일자 1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미국 자원봉사기구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마치 태안군이 자원봉사자 성지임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 것처럼 속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 및 사과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5일자 1면)

2012대전조정38~4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심○○ 對 세종매일, 인터넷 세종매일
조 정 대 상	『세종시 인사 ‘난맥상’ … 성희룡 공무원 승진대상 포함 논란』 제하의 기사 (세종매일 2012년 8월 27일자 1면, 인터넷 세종매일 8월 27일자)
신청인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의 징계 사유가 성희룡 빌미 제공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세종매일: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반론보도문 표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세종시 인사 ‘난맥상’ … 성희룡 공무원 승진대상 포함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세종매일 2012년 10월 5일자 3면, 인터넷 세종매일 10월 5일자)

2012서울조정1321	(정정청구) ○○남부새마을금고 對 아시아투데이
조 정 대 상	(1) 『현금거래, 대체거래로 둔갑 고객 거래내역 허위 작성?』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3일자 1면) (2) 『고객통장, 최대 5개로 복제운용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4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새마을금고가 현금거래를 대체거래인 것처럼 꾸미고 통장을 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66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시민의 소리
조 정 대 상	『○○○○, 누가姜시장에게 소개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일자)
신청인주장	영상제작 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광주시의 입체영상 변환 사업(사기극)에 가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 표시,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광주시 입체영상 변환 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1일자)

2012경기조정78~8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여○○ 對 안성신문, 인터넷 안성신문
조 정 대 상	• 안성신문: 『“공정하고 투명한 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안성신문 2012년 8월 22일자 6면)

조 정 대 상	• 인터넷 안성신문 : 『[미니인터뷰] “공정하고 투명한 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성시지회 전 회장인 신청인이 협회 사무실을 점유,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안성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게재,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안성신문 2012년 10월 10일자 10면, 인터넷 안성신문 10월 10일자)

2012서울조정1322~132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기상청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100km 차이 난 ‘볼라벤’ 진로… 기상청 조작 의혹』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8월 30일 A01면, 조선닷컴 2012년 8월 30일자)
신청인주장	기상청이 태풍 ‘볼라벤’의 진로가 예보와 다르게 나타나자, 실제 진로를 예보에 맞게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24~1325	(정정 · 손해청구) 정○○ 對 인터넷 의정부신문
조 정 대 상	『(1보)의정부시 여성정치연합 전 회장, ‘불법사채’로 수억 원대 이자 챙겨』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불법사채로 수억 원대 이자를 챙겼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중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2012서울조정1326~1330	(매체별 정정청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對 노컷뉴스 ⁽¹³²⁶⁾ , 네이버 ⁽¹³²⁷⁾ , 네이트 ⁽¹³²⁸⁾ , 다음 ⁽¹³²⁹⁾ , 야후 ⁽¹³³⁰⁾
조 정 대 상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상한’ 해고』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직원을 해임하였으나 내부비리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39~42 참조)]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노컷뉴스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노컷뉴스 : 『‘이상한 해고’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2012서울조정1331~133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클럽 외 15인 對 한국경제,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 한국경제 : (1) 『‘○○○클럽’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0일자 27면), (2) 『뽀뽀한 ○○○클럽, 브라질 구경 실컷 해봐라』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1일자 39면) • 한경닷컴 : (1) 『기초자치단체장 친목모임 ‘○○○클럽’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9일자), (2) 『뽀뽀한 ○○○클럽, 브라질 관광 실컷 해봐라』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지자체장들의 연구모임) 회원들이 브라질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클럽, 브라질 방문 관련 정정보도』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2년 10월 9일자 32면, 한경닷컴 10월 8일자)

2012서울조정1335~1336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박○○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학교책임이 아닙니다』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일자 23:00) • IMBC : 『[다시보기] 학교책임이 아닙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일자)
신청인주장	중학교 교감인 신청인이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책임이 아니라고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37~1338	(정정·손배청구) 1. 박○○ 2. 김○○ 對 구리넷
조 정 대 상	(1) 『생체협 사태, 구리시 진상조사나서 ... 혹시?가 역시나로 ... “괴롭힘 당한 A씨만 추궁”』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6일자) (2) 『<속보> 구리시, 생체협 방치하면 ... “통제 불능 사태 올 것” 예측하고 경고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8일자)
신청인주장	구리시 내 스포츠센터 종합 안내 여직원인 신청인들이 동료 여직원을 왕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경남조정68~69	(정정·손배청구) 방○○ 對 고성미래신문
조 정 대 상	『고성 중견작가 ㅂ씨, 남의 이름 도용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4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서각·서예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타인의 작품을 도용하여 전시,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34~35	(정정·손배청구) 김○○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현직경찰 인척 사건 동료경찰에 수사 청탁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8일자) (2) 『현직경찰 청탁수사 의혹… 진상조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2일자) (3) 『K원장, 인척 현직경찰에 수사청탁 의혹 되레 악수』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6일자) (4) 『전북도경, 기획수사 청탁경찰 징계 지연』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7일자) (5) 『전주 A피부과, 얽히고 설킨 실타래 풀리긴 할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0일자) (6) 『전북경찰청, 청탁경찰 전보로 수습 어렵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8일자)
신청인주장	경찰인 신청인이 인척관계인 동서의 사건을 동료경찰에게 청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해당기사 삭제, 이행강제금, 부제소)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현직 경찰 인척 사건 동료경찰에 수사 청탁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2012서울조정1339~1341	(정정·반론·손배청구) ○○특허법인 對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삼성 '결정적 증거' 누락.. 실수? 다른 의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특허법인의 디자인담당 직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마치 변리사와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했고, 발언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1342~134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사단법인 ○○○○협회 對 KBS-1TV, KBSi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약이 아니라 독』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7일자 21:23) • KBSi : 『[현장추적] 한약국 다이어트한약 '약' 아닌 '독'』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신청인주장	한약국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한약에 마황성분이 기준치의 11배나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약속)

2012부산조정28~3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유○○ 對 울산광역시매일, 인터넷 울산광역시매일
조 정 대 상	『마구잡이식 공사 강행 학부모 뿔났다』 제하의 기사 (울산광역시매일 2012년 9월 10일자 5면, 인터넷 울산광역시매일 9월 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원아의 교육과 안전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공사를 감행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울산광역매일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인터넷 울산광역매일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울산광역매일 : 『반박문』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5일자 5면)

2012서울조정1344	(손배청구) 황○○ 對 다음
조 정 대 상	『[Topic메모] 현직 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조사』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신청인주장	현직 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보도하면서, 무관한 신청인의 얼굴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결정 (사유 : 블로그의 게시글을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012서울조정1345~1348	(매체별 반론 · 손배청구) (병합) (주)○○○○시스템 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7백만 베이비부머 ... 제2의 삶은?』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2일자 21:00) • IMBC : 『7백만 베이비부머 ... 제2의 삶은?』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 사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업체의 브랜드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MBC-TV :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에서 신청인 업체가 속한 프랜차이즈 관련 긍정적인 보도, 신청인 업체의 브랜드를 15초 전후로 노출시킴 • IMBC : 후속보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MBC-TV :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자영업자 수 늘어.. 업종 · 업체선정 중요』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16일자 06:00) • IMBC : 『[경제플러스] 4인 가족 김장비 22만 9천 원 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6일자)

2012서울조정1349~1350	(정정 · 손배청구) 왕○○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프로그램 『수입산의 천국, ○○○마트의 두 얼굴』 제하의 보도 (2012년 6월 16일자 23:1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수입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해명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프로그램 『수입산의 천국, ○○○마트의 두 얼굴』 편의 “○○○식당” 식재료 원산지 관련 해명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6일자 23:00)

2012서울조정1351~135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황○○ 對 서울구민신문, 인터넷 서울구민신문
조 정 대 상	『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육두문자쓰며 지역신문 편집권 훼손발언』 제하의 기사 (서울구민신문 2012년 9월 10일자 1면, 인터넷 서울구민신문 9월 6일자)

신청인주장	구의원인 신청인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을 ‘욕두문자를 사용하는 추태’로 왜곡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황○○ 의원 지역신문 편집권 훼손관련 발언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구민신문 2012년 9월 28일자 1면, 인터넷 서울구민신문 9월 25일자)

2012서울조정1355~1356	(조정·손배청구) 송○○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YTN, ‘노조 파업 적극 참가’ 앵커 하차시켜』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신청인주장	YTN의 앵커팀장인 신청인이 노조 파업에 참가한 모 앵커에게 앵커 교체를 통보하면서 “윗선의 평가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YTN파업 참가 앵커 하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5일자)

2012경기조정82~83	(조정·손배청구) 왕○○ 對 인천신문
조 정 대 상	(1) 『북항, 산업폐기물 창구 전락하나』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0일자 4면) (2) 『일본산 폐기물 수입경로 조사』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4면) (3) 『폐기물 수출입 신고·허가제 구멍』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0일자 1면) (4) 『구멍 난 수출입 폐기물 관리』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1일자 11면) (5) 『검증기관서 합격, 뒷거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3일자 1면) (6) 『“특정업체 표적검증·편파판정”』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3일자 4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무역회사가 들어온 일본산 화물에 국가간 이동이 금지된 유해폐기물인 변압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57	(조정청구) 박근혜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정수장학회·가족관계·○○○ 미스터리’가 의혹의 쟁점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9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임 당시 연간 장학금의 10% 이상을 받았고, 과거사 진실 규명위원회가 정수장학회를 ‘공권력에 의한 헌납’으로 결론 짓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58	(조정청구) 박근혜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씨 사위, 朴후보 정계 입문 때부터 비서로 지금도 핵심 측근설...차캠프 “본 적도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2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정계에 입문할 당시 보좌관으로 활동한 고 ○○○ 목사의 사위가 17대 대선 때 비선 조직을 이끄는 등 신청인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359~1361	(정정·반론·손배청구)이○○對뉴스스
조 정 대 상	『지하철서 여성승객 흥기 위험… 경찰, 보고도 제압 안해』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흥기로 위협하는 피의자를 경찰관인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제압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 보도문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을 '지하철 여성승객 흥기 위험범 검거'로 수정하고 소제목으로 '경찰 즉각 제압은 안해'를 추가 함
이 행 결 과	『지하철서 여성승객 흥기 위험… 경찰 보고도 제압 안해』 관련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362~1363	(정정·손배청구)○○○○○(주)對e상조뉴스
조 정 대 상	『○○○○○ '치과상품' 상조영업 도입 영업사원들 혼선』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0일자)
신청인주장	상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치과상품'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상조/장례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주), 치과상품 출시 계획'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2012부산조정32	(손배청구)이○○對hello tv 금정방송
조 정 대 상	뉴스퍼레이드부산 프로그램 『무책임 행정, 서민 한숨』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1일자 21:30)
신청인주장	부산광역시 동구청이 포장마차 철거를 추진하면서 상인들을 협박했다고 보도하여 담당자인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364~1365	(매체별 반론청구)(병합)○○○○ 회물자동차운송협회對jbc, 인터넷jbc
조 정 대 상	• jbc : 뉴스10 프로그램 『리터당 300원 할인… 가짜 화물차 수천대 '세금 도둑질'』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15일자 22:00) • 인터넷 jbc : 『리터당 300원 할인… 가짜 화물차 수천대 '세금 도둑질'』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가짜 화물차에 대폐차신고필증을 허위로 발급해 유가보조금을 받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jbc <뉴스10>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진행자가 통상의 속도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낭독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 자료화면으로 함, 인터넷 jbc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게재,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jbc : 뉴스10 프로그램 『○○화물협회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12일자 22:00) • 인터넷 jbc : 『○○화물협회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2일자)

2012서울조정1366~1367	(매체별 정정청구) (병입) 경찰청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1) 『2009년 ○○차 노사 타결 임박 알고도... 조○○, 상부지시 무시한채 경찰력 투입』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9월 20일자 1면, 인터넷 한겨레 9월 20일자) (2) 『조○○, 테이저건 자제 지시도 묵살』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9월 20일자 14면, 인터넷 한겨레 9월 20일자)
신청인주장	2009년 7월 ○○차 파업 당시, 경찰이 노사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368~1372	(매체별 반론청구) (주)○○○○ 對 온라인 중앙일보 ⁽¹³⁶⁸⁾ , 인터넷 한국일보 ⁽¹³⁶⁹⁾ , 인터넷 서울경제 ⁽¹³⁷⁰⁾ , e머니위크 ⁽¹³⁷¹⁾ , enews24 ⁽¹³⁷²⁾
조 정 대 상	• 온라인 중앙일보 : 『배우 민○○, 햄버거 업체에 모델료 청구소송』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민○○, 무단광고 대응 1억여원 청구 소송』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 인터넷 서울경제 : 『민○○, '○○○○'에 “모델료 달라”』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 e머니위크 :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 광고모델료 소송 휘말려..』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 enews24 : 『민○○,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울분이 밀려와” 미니홈피 의미심장 글』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전속 모델 계약을 맺은 배우에게 계약금 1억5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했다가 피소됐다고 보도했으나, 계약한 사실이 없다.
처 리 결 과	각각하결정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2서울조정1373, 1391~1393	(매체별 정정청구) (주)○○○○ 對 더벨 ⁽¹³⁷³⁾ , 다음 ⁽¹³⁹¹⁾ , e머니투데이 ⁽¹³⁹²⁾ , 네이버 ⁽¹³⁹³⁾
조 정 대 상	『○○○○, 2013년 목표 IPO 추진』 제하의 기사 (더벨 2012년 7월 31일자, 다음 · e머니투데이 · 네이버 8월 7일자)

신청인주장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2013년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PR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더벨』○○○○,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0일자)

2012서울조정1374~1375, 1414~1415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 정○○ 외 13인 對 중앙일보(1374 정정청구, 1414 손배청구), 온라인 중앙일보(1375 정정청구, 1415 손배청구)
조 정 대 상	『KGIT 30억여치 장비 누가 가져갔나』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9월 5일자 10면, 온라인 중앙일보 9월 5일자)
신청인주장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신청인들이 공모해 30억 원여치의 학교 기자재를 빼돌린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내용 : 정정보도) ▷ 손배청구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온라인 중앙일보 : 홈페이지 사회면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KGIT』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3년 2월 12일자 10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12일자)

2012서울조정1376~1379	(매체별 조정 · 손배청구)(병합) ○○○○오피스텔 관리단 對 KBS-1TV, KBSI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오피스텔 비리 더 심각... 세입자만 피해』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6일자 21:00) • KBSI : 『오피스텔 비리 더 심각...세입자만 피해』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6일자)
신청인주장	오피스텔 관리인인 신청인이 주차장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입주자들에게 약 30억 원을 부당 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KBS-1TV : 뉴스930 프로그램 『○○○○ 오피스텔 측 “주차료 징수 적법”』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12일자 09:30) • KBSI : 『○○○○ 오피스텔 측 “주차료 징수 적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2일자)

2012광주조정67	(정정청구) 신안군 對 인터넷 신안신문
조 정 대 상	『신안군, 향우회 등 지원조례안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안군이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의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부와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신안군 향우회 지원조례안 개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380~1381 (매체별 반론청구) (주)○○○ 對 KBS drama, 인터넷 KBS drama	
조 정 대 상	• KBS drama : 뷰티의 여왕 시즌2 프로그램 『판도라의 파우치 코너』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3일자 23:39) • 인터넷 KBS drama : 『[다시보기]판도라의 파우치 코너』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3일자)
신청인주장	피부건강용 수면팩을 비교하면서, 경쟁사 제품이 신청인 회사가 수입하는 제품에 비해 우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382~138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손○○ 對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초등생에게 저기(귀청소방)가 뭐하는 곳이나 물으니 “변태업소요”』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2년 9월 24일자 19면, 온라인 중앙일보 9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귀청소방을 퇴폐업소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386~1387 (매체별 정정청구) ○○○○○의료협회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고령화로 급증한 요양병원의 횡포 … 80%가 간병비 내야 입원시켜』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9월 3일자 A14면, 조선닷컴 9월 3일자)
신청인주장	요양병원 중 상당수가 입원비 외에 간병비를 내야 입원시켜주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전북조정36~37 (정정·반론청구) 장학수 對 전주KBS-1, 2TV	
조 정 대 상	(1) KBS 뉴스타임 프로그램 『내장산 리조트…보상 갈등 사업 지연』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7일자 18:00) (2) 930뉴스 프로그램 『내장산 리조트…보상 갈등 사업 지연』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7일자 21:40) (3) KBS 뉴스7 프로그램 『보상갈등 사업지연』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8일자 07:00) (4) KBS 뉴스9 프로그램 『내장산 리조트…보상 갈등 사업 지연』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8일자 09:30)
신청인주장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의 지연사유가 정읍시의원인 신청인의 토지보상문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KBS-1TV 뉴스9(전북권) 프로그램 및 뉴스광장 7시 30분(전북권)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되,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낭독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함, 또한 KBS에 있는 조정대상보도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1) KBS 뉴스9 프로그램 『내장산 관광사업 지연 시의원과 무관』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4일자 21:00) (2)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내장산 관광사업 지연 시의원과 무관』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4일자 07:30)

2012서울조정1388~1389	(정정·반론청구) 장○○ 對 KBS
조 정 대 상	(1) 『[다시보기]내장산 리조트…보상 갈등 사업 지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2) 『[다시보기]보상갈등 사업지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8일자) (3) 『[다시보기]내장산 리조트…보상 갈등 사업 지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7일자)
신청인주장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의 지연사유가 정읍시의원인 신청인의 토지보상문제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390	(정정청구) 국토해양부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정부, 외국자본에 ‘한국철도 기간망 장악’ 길터줬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5일자 8면)
신청인주장	정부가 2012년 3월 체결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에 ‘일반철도 시설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기고문)
이 행 결 과	『WTO 정부조달협정 철도 기간망 개방』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6일자 8면)

2012서울조정1394~1395	(정정·손배청구) 이○○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땅값 내놔” 이웃 흥기로 찢려 숨지게 한 70대』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부친이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68~69	(정정·손배청구) 이○○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땅 문제로 말다툼 벌이다 후배 찢른 70대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의 부친이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살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조건부 추후보도 약속)

2012대전조정42~44	(매체별 정정청구) 1. ○○농업협동조합 2. 한○○對 충남일보 ⁽⁴²⁾ , 인터넷 충남일보 ⁽⁴³⁾ , CTN ⁽⁴⁴⁾
조 정 대 상	• 충남일보 · 인터넷 충남일보 : 『농협도 비리로 '얼룩'』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2년 8월 6일자 8면, 인터넷 충남일보 8월 6일자) • CTN : 『서산S농협, 쌀 판매대금 횡령 회수...자랑』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농협이 쌀 판매대금을 횡령한 직원을 형사고발하지 않고 횡령대금 회수와 직위 해제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는 이를 숨겼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내용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충남일보 · 인터넷 충남일보 : 『‘농협도 비리로 얼룩’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충남일보 2012년 10월 9일자 8면, 인터넷 충남일보 10월 8일자) • CTN : 『[정정보도] ‘서산S농협, 쌀판매대금 횡령회수...자랑’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8일자)

2012서울조정1396~1399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공업주식회사對 KBS-1TV, KBS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육군 물 탄 락스로 ‘신병 생활관 살균’ 논란』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9일자 21:00) • KBSi : 『육군 물 탄 락스로 ‘신병 생활관 살균’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육군에 납품한 살균소독제가 물탄 락스이며,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400~1401	(매체별 정정청구) 문○○對 월간조선, 월간조선뉴스서비스
조 정 대 상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2년 9월 1일자 382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설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도됐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보도 (2012서울중재43~44 참조)]
이 행 결 과	『‘문○○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2년 11월 1일자 341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11월 1일자)

2012경남조정70~71	(정정 · 손배청구) 채○○對 경남타임즈
조 정 대 상	『“사이비 기자 단속해 달라” 호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언론사 편집국장인 신청인이 모 시의원에게 자정 무렵에 전화해 횡포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손배청구 : 취하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402	(정정청구)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환경정책평가연, 4대강 보로 녹조 심화 보고 받고도 총리실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8일자 12면)
신청인주장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이 4대강 보 설치로 인해 조류 발생이 심화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정부에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2일자 2면)

2012서울조정1403~1406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정○○ 對 민주신문 ^{(1403 정정청구, 민주신문^{(1404 손해청구), 인터넷 민주신문^(1405 정정청구, 1403과 병합)}, 인터넷 민주신문^(1406, 손해청구, 1404와 병합)}
조 정 대 상	『“성추행 인정 … 고의성 없어” 무죄 vs “성폭력 범죄 특성상 납득 안 돼”』 제하의 기사 (민주신문 2012년 8월 19일자 17면, 인터넷 민주신문 8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제빵사인 신청인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민주신문에 정정보도, 인터넷 민주신문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손해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50만 원, 이행강제금, 부제소)
이 행 결 과	• 민주신문 : 『“성추행 인정 … 고의성 없어” 무죄 vs “성폭력 범죄 특성상 납득 안 돼”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17면)

2012서울조정1407	(반론청구) 1. 국군기무사령부 2. 배○○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청와대 ‘기무사 성매수 은폐’ 특별 감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4일자 8면)
신청인주장	국군기무사령부가 소속직원의 성매수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청와대 특별감찰에 대비한 보고서를 준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2일자 2면)

2012서울조정1408~1411, 1420~1427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이○○ 對 한겨레 ^(1408~1409) , 인터넷 한겨레 ^(1410~1411) , 네이버 ^(1420~1421) , 네이트 ^(1422~1423) , 줌닷컴 ^(1424~1425) , 다음 ^(1426~1427)
조 정 대 상	『대구 여성회관, 동우회 활동비로 시골』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7월 5일자 14면, 인터넷 한겨레 · 네이버 · 네이트 · 줌닷컴 · 다음 7월 5일자)

신청인주장	도에 감사인 신청인이 여성회관 동우회 회원들에게 매월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 편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 네이버 · 네이트 · 줌닷컴 · 다음 : 각 취하

2012광주조정70~73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최○○對뉴스웨이 호남본부, 호남매일	
조 정 대 상	• 뉴스웨이 호남본부 : 『자질 논란 축구감독에 어린 선수 둔 ‘학부모 원성’』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1일자) • 호남매일 : 『 ‘자질 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 말썽 』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2일자 13면)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다른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을 축구부 감독으로 선임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 유혹접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뉴스웨이 호남본부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호남매일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뉴스웨이 호남본부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뉴스웨이 호남본부 : 『[반론보도문] 자질 논란 축구감독에 어린 선수 둔 ‘학부모 원성’』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5일자) • 호남매일 : 『“자질논란 초등 축구감독 선임 말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13면)

2012서울조정1412~1413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대학교對한국경제,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대 장학금 지급을 부풀려』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2년 9월 12일자 32면, 한경닷컴 9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2011년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 비율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한경닷컴 : 한국경제신문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날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홈페이지 사회섹션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대학교 장학금 지급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2년 10월 31일자 32면, 한경닷컴 10월 31일자)

2012전북조정38	(정정청구) 정읍시對 전북타임스
조 정 대 상	(1) 『정읍시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441억 확정 … 시민혈세 ‘줄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1면) (2) 『정읍시 화장시설 부지 ‘말뽕’』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2면)
신청인주장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의 건립부지가 시장의 지인 소유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1면)

2012광주조정74	(정정·손배청구) 이○○對 인터넷 시민의 소리
조 정 대 상	『브리튼 리, “갬코 이전 또 다른 사업제안 했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광주시 입체영상 변환사업과 관련해 국제 사기극을 벌인 브리튼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브리튼 리, 갬코 이전 또 다른 사업제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9일자)

2012서울조정1416~141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對 수산신문, 인터넷 수산신문
조 정 대 상	• 수산신문 : (1) 『농수산부 이의신청 기각』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7일자 4면), (2) 『습관적 반복적 행태 계속』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0일자 4면), (3) 『태풍 불고 상처 아물지 않았는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7일자 1면), (4) 『수협중앙회 어업인 알권리 심각하게 훼손』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1면), (5) 『수협중앙회장 동남아 출장 계획은 ‘풍문’ 아닌 사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3면) • 인터넷수산신문 : (1) 『이○○ 회장 중앙회 경고받는 최초 회장』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6일자), (2) 『수협중앙회장 동남아 출장 계획 없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9일자), (3) 『태풍불고 상처 아물지 않았는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7일자), (4) 『이제 사실을 공개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3일자), (5) 『수협중앙회 어업인 알권리 심각하게 훼손』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수협중앙회장이 태풍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가 아물기도 전에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수산신문 : 수산신문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날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을 클릭 시 반론

처 리 결 과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이○○ 수협중앙회장 해외출장’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수산신문 2012년 10월 29일자 2면, 인터넷 수산신문 10월 29일자)

2012대전조정45~4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전국○○○충연합 ○○지역연합회 對 충남시사신문, 인터넷 충남시사신문
조 정 대 상	『‘○○○ 노점상’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뻐나?』 제하의 기사 (충남시사신문 2012년 9월 11일자 1면, 인터넷 충남시사신문 9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연합회가 기존 노점 상인들에게 공갈과 협박, 영업방해 등의 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428~1429	(매체별 정정청구) ○○○○○코리아(주) 對 SBS-TV, SBS
조 정 대 상	•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급발진’ 의심 사고, 전문가도 속수무책』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5일자 20:00) • SBS : 『‘급발진’ 의심 사고, 전문가도 속수무책』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차량의 기록데이터 공개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430~1431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코리아(주) 對 YTN, 인터넷 YTN
조 정 대 상	• YTN : YTN24 프로그램 『차량 블랙박스 소리에 급발진 증거 있다』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0일자 20:58) • 인터넷 YTN : 『차량 블랙박스 소리에 급발진 증거 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 이행방법 • YTN : 『YTN이브닝뉴스 1부』(17:58~18:57)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고, 반론보도문의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함 • 인터넷 YTN : 반론보도문을 방영한 후 2일 이내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되, 조정대상보도 중 동영상은 삭제 함
이 행 결 과	• YTN : YTN 이브닝뉴스 1부 프로그램 『○○○○○ “급발진 여부 확인 안 돼”』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2일자 18:00) • 인터넷 YTN : 『○○○코리아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조 정 대 상	• iMBC : (1) 『불량 컬러렌즈 무더기 적발 ... 독성물질 각막에 치명적』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1일자), (2) 『‘색소 범벅’ 컬러 렌즈 ... 불량 렌즈 10개 제품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한 콘택트렌즈 대부분이 불량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MBC-TV :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메디칼 불량품 개수 오류』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5일자 06:00) • iMBC : 『○○메디칼 불량품 개수 오류 ... 전체 생산 개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5일자)

2012서울조정1440~1443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병합) (사)한국○○협회 對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 한겨레 : 『경찰간부, 경비업 행사서 “공조” 축하』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13면) • 인터넷 한겨레 : 『경찰, 경비업 행사에 악대 보내 축하공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경찰간부가 참석하여 축하한 것을 문제 삼는 등, 경비업체들을 용역폭력집단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444~144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차○ 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차○ 전 대변인,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2년 8월 1일자 26~27면, 인터넷 시사저널 8월 1일자)
신청인주장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인 신청인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사과, 기사삭제,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시사저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에 넣어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는 삭제하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차○ 전 민주당 대변인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2년 11월 13일자 목차, 7면, 인터넷 시사저널 11월 15일자)

2012경남조정72~75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한국전력공사 對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조 정 대 상	• 경남도민일보 : 『밀양 송전탑 분신 낳은 ‘한전 거짓말’ 들통』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7일자 1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한전, ‘송전탑 노선 이것 밖에는 없다’ 더니...』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7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송전선로 건설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5개 마을을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고도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경남도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1면)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 『‘밀양 송전탑 분신 낳은 한전 거짓말 들통’ 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2012서울조정1451~145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천○○ 對 한겨레 ^(1451~1452) , 인터넷 한겨레 ^(1453~1454) , 뉴시스 ^(1455~1456)
조 정 대 상	• 경남도민일보 : 『‘교장 성희롱, 고발 교사들을 되레 징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1일자 14면) • 인터넷 한겨레 : 『‘여교사 성희롱 교장’ 고발했더니 되레…』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1일자) • 뉴시스 : 『“성희롱 교장은 봐주고, 왜 우리만 보복성 징계?” 수원 모 초교 교사들 반발』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초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교사들을 성희롱하거나 폭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457~1458, 1662	조○○ 對 동아일보 ^(1457~1458 정정·손배청구) , 서울신문 ^(1662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권력핵심 때 갈등조정 리더십 부족… ‘아마추어 盧정부’ 비판불러』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5일자 A5면) • 서울신문 : 『“천성산 터널 2년 반 정도 중단 6조원 이상 사회 경제적 손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1일자 5면)
신청인주장	신청인과 환경단체가 반대했던 천성산 터널공사와 관련,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손실을 과장해 보도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75	(정정청구) ○○○원에농업협동조합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농협, 외상값 재촉하며 보상금 지급 미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외상값을 재촉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459~1460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이○○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사설] 대선 캠프에 물려드는 교수들의 본업과 副業』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9월 29일자 7면, 동아닷컴 9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문재인 캠프에 참여한 신청인이 노무현 정부 경제참모 당시, ‘토지 전면 국유화’를 주장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일자 2면) • 동아닷컴 : 『[바로잡습니다] 본보 9월 29일자 A27면』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일자)
2012서울조정1461~1469, 1472~1473	(매체별 정정청구) 안○○ 對 한국경제 ⁽¹⁴⁶¹⁾ , 한경닷컴 ⁽¹⁴⁶²⁾ , 노컷뉴스 ⁽¹⁴⁶³⁾ , 아시아경제닷컴 ⁽¹⁴⁶⁴⁾ , 아시아투데이닷컴 ⁽¹⁴⁶⁵⁾ , e머니투데이 ⁽¹⁴⁶⁶⁾ , 뉴시스 ⁽¹⁴⁶⁷⁾ , 연합뉴스 ⁽¹⁴⁶⁸⁾ , SBS ⁽¹⁴⁶⁹⁾ , 인터넷 YTN ⁽¹⁴⁷²⁾ , 네이버 ⁽¹⁴⁷³⁾
조 정 대 상	• 한국경제 · 한경닷컴 : 『안○○ 前 국세청 국장 ‘파면 취소’ 소송 패소』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2년 9월 12일자 33면, 한경닷컴 9월 11일자) • 노컷뉴스 : 『‘도곡동 땅은 MB 소유’ 안○○ 전 국세청 국장, 파면취소 소송에서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안○○ 前국세청 국장, 파면취소소송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법원, 안○○ 전 국세청 국장 파면취소소송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e머니투데이 : 『안○○ 前 국세청 국장, ‘징계 취소’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뉴시스 · 네이버 : 『법원 “안○○ 前국세청 국장 파면 정당”』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연합뉴스 : 『안○○ 전 국세청 국장, 파면취소소송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SBS : 『안○○ 전 국세청 국장, 파면취소 소송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인터넷 YTN : (1) 『안○○ 전 국세청 국장, 파면취소소송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2) 『‘세무조사 편의’ 안○○ 전 국세청 국장 파면 정당』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전 국세청 국장인 신청인이 기업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구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한국경제 · 한경닷컴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노컷뉴스 · 아시아경제닷컴 · 아시아투데이닷컴 :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 e머니투데이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뉴시스 · SBS · 인터넷 YTN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연합뉴스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네이버 : 취하 ※ 이행방법 • 한경닷컴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e머니투데이 : 홈페이지 사회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국경제 : 『안○○ 前국장 세무조사 무마 미술품 강매 논란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3일자 19면) • 한경닷컴 : 『안○○ 전 국세청 국장 형사 처벌』 관련 정정 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 노컷뉴스 : 『 '안○○ 전 국세청 국장 형사처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 아시아경제닷컴 : 『[정정보도] '안○○ 전 국세청 국장 형사 처벌'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안○○ 전 국세청 국장 미술품강매 부당이득 행각 논란』 관련 정정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 머니투데이 : 『 '안○○ 전 국세청 국장 형사 처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2012대전조정49~50	(정정·손배청구) 박○○ 對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시의회 의장 선거도 '뒷거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1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시의회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의장 및 총무 위원장직 등 자리를 보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 및 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시의회 의장 선거도 뒷거래 의혹'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16면)

2012충북조정41~42	(정정·손배청구) 박○○ 對 중부매일
조 정 대 상	『의장선출 금품·자리보장 꼼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9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시의회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의장 및 총무 위원장직 등 자리를 보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470~1471	(정정·손배청구) (주)○○○스타 對 KBS-1TV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프로그램 『똑똑한! 상품을 보는 눈! 가격의 자격』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1일자 19:2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조한 음식물 처리기가 타사 제품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468, 1474	(정정청구) 안○○ 對 연합뉴스, 네이버
조 정 대 상	『안○○ 前국세청 국장, 파면취소소 패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전 국세청 국장인 신청인이 기업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 구입을 강요했고, 이에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475~1478	(매체별 정정청구) ○○○원예농업협동조합조합對네이버 ⁽¹⁴⁷⁵⁾ , 네이트 ⁽¹⁴⁷⁶⁾ , 다음 ⁽¹⁴⁷⁷⁾ , 이후 ⁽¹⁴⁷⁸⁾
조 정 대 상	『○○○○, 외상값 재촉하며 보상금 지급 미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외상값을 재촉하고,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479~1484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 박○○화랑 對 국민일보 ^(1479~1480) , 쿠키뉴스 ^(1481~1482, 1479~1480과 병합) , 네이버 ^(1483~1484)
조 정 대 상	『‘失勢 3인방’ 가족 갤러리 동반위기』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2면, 쿠키뉴스 · 네이버 7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화랑이 과거 정치인 친척의 도움으로 급부상했고, 현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국민일보 · 쿠키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PR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취하 (사유 : PR보도 게재) ※ 이행방법 • 쿠키뉴스 : 홈페이지 문화면 기사목록에 신청인이 주관하는 11월 전시회 관련 홍보성 기사를 전시회 개최 7일 전에 24시간 동안 보도하되, PR보도문에는 전시회와 관련한 사진을 포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국민일보 : 『사진이야? 그림이야? - 강○○ 작가 개인전, 박○○ 화랑서 8~22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문화면) • 쿠키뉴스 · 네이버 : 『사진이야? 그림이야? ... 박○○화랑서 11월 8~22일 강○○ 작가 개인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4일자)

2012서울조정1485~1490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 박○○화랑 對 MBC-TV ^(1485~1486) , iMBC ^(1487~1488, 1485~1486과 병합) , 네이버 ^(1489~1490)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아침신문보기』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2일자 06:00) • iMBC · 네이버 : 『[아침신문보기] 술병 수천 개 널린 경포 백사장 ... 취객들은 밤바다 뛰어들어 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화랑이 과거 정치인 친척의 도움으로 급부상했고, 현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MBC-TV · iMBC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조건부 후속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취하 (사유 : PR보도 게재) ※ 이행방법 • MBC-TV · iMBC : MBC-TV는 국민일보가 신청인 관련 전시회 보도를 하면 그 보도가 있는 당일 아침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아침신문보기' 에서 국민일보의 신청인 관련 전

처 리 결 과	사회 기사를 소개, iMBC의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조정대상기사의 다시보기 동영상 중 신청인과 관련한 내용을 편집·삭제함
이 행 결 과	• MBC-TV :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아침신문보기』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5일자 06:00) • iMBC·네이버 : 『[아침신문보기] 프레너미 G2, 이젠 新패권 시대로 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2012부산조정33	(정정청구) ○○스카이라인○○입주자대표회의 對 KNN
조 정 대 상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원룸범죄 여성취약, 대책절실』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12일자 20:25)
신청인주장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아파트가 찍힌 CCTV 영상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 아파트의 명칭이나 외관 등이 화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이를 통해 일반 시청자들이 신청인의 아파트임을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 아파트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2경기조정84~8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주식회사○○기업 對 중부일보,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 중부일보 : 『검단산단 지식산업센터부지 건폐율 '3m 높이' 불법 매립』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2일자 23면) • 인터넷 중부일보 : 『서구의 한 건설 폐기물 업체, 폐기물 불법 매립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보관 중인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중부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2년 11월 1일자 2면, 인터넷 중부일보 11월 1일자)

2012서울조정1491~1496	(매체별 손배청구) 이○○ 외 3인 對 KBS-2TV(1491), KBS^(1492, 1491과 병합), MBC-TV⁽¹⁴⁹³⁾, iMBC^(1494, 1493과 병합), SBS-TV⁽¹⁴⁹⁵⁾, SBS^(1496, 1495와 병합)
조 정 대 상	• KBS-2TV :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최고 무기징역 엄벌』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1일자 08:00) • KBSi : 『미성년자 성폭행범 최고 무기징역 엄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판사들의 반성, "형량 높이겠다"』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일자 21:00)

조 정 대 상	• IMBC : 『‘술김에 그랬다’ 안 통한다 … “아동 성폭력 강력처벌”』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일자) • SBS-TV : 토요특집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부모와도 잘아는 ‘동네 아저씨’』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일자 06:00) • SBSi : 『부모와 인사하던 ‘동네 아저씨’가 악마로…』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아동 성폭행 문제를 보도하면서, 과거 신청인이 성폭행 당할 당시의 현장검증 장면과 신청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KBS-2TV · KBSi : 조정불성립결정 • MBC-TV · IMBC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SBS-TV · SBSi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MBC-TV · IMBC · SBS-TV · SBSi : 조정대상보도에서 사용된 자료화면(범죄 당시 CCTV화면, 현장검증 화면) 중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해당 영상 파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

2012서울조정1497~1504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전○○對 신동아 ^(1497~1498) , 인터넷 신동아 ^(1499~1500, 1497~1498과 병합) , 네이버 ^(1501~1502) , 다음 ^(1503~1504)	
조 정 대 상	『“대학원생 연구 빼앗은 악덕 교수” vs “제자 이용해 나를 음해”』 제하의 기사 (신동아 2012년 8월 1일자 160~167면, 인터넷 신동아 8월 1일자, 네이버 · 다음 10월 11일자)
신청인주장	대학원생인 신청인이함께 연구를 진행한 교수를 연구성과를 빼앗아간 교수로 매도하고, 신청인이 연구노트를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신동아 · 인터넷 신동아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인터넷 신동아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신동아 · 인터넷 신동아 : 『‘네이처 표지 저자 등재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신동아 2012년 11월 17일자 567면, 인터넷 신동아 11월 5일자)

2012서울조정1505~1506 (매체별 정정청구) 1. 주식회사○○○, 2. 이○○對 시사저널,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MB 6촌 동생 회사, 관공서에 거액 로비”』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2년 10월 10일자 36~38면, 인터넷 시사저널 10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이명박 대통령의 6촌 동생이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관공서 등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어들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507~1508 (매체별 손해청구) (병합) 신○○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 MBN : 생활의 재발견 프로그램 『알루미늄 포일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일자)

조 정 대 상	23:00) • 인터넷 MBN : 『2회 - 사골국 그 불편한 진실, 알루미늄 포일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일자)
신청인주장	알루미늄 호일의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알루미늄 호일 생산 업체의 대표인 신청인에게 제작 의도를 숨기고 취재,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00만 원,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MBN :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영상 중 신청인을 알 수 있는 부분(초상, 회사주소, 성명 등)을 모자이크 처리함

2012서울조정1509~1512 (정정·손배청구) 1. 이○○, 2. 김○○對 MBC-TV, MBC	
조 정 대 상	•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시골 총각 무더기 결혼 사기』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일자 21:00) • iMBC : 『한마을 시골총각 무더기 결혼사기 '황당'』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네팔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농촌 총각들에게 신원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네팔 여성을 소개시키는 등 결혼사기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양 당사자 이의신청 (사유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가 공익 목적의 보도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들은 반론보도 이외에 손해배상을 원한다) ※ 이행방법 • MBC-TV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 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함 • iMBC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 홈페이지 <다시보기/뉴스데스크> 코너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면의 동영상과 본문 사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

2012경기조정88~89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건설(주)對 경기신문, 인터넷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 경기신문 : 『○○배수지 공사 막무가내 '평'』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7일자 19면) • 인터넷 경기신문 : 『인천시상수도본부, ○○배수지 공사 막무가내 '평'』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법정 기준을 무시한 발파작업을 진행하여 인근 사찰의 문화재 등이 훼손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경기신문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처 리 결 과	• 경기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일자 21면) • 인터넷 경기신문 : 『○○배수지 공사 막무가내 '평'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일자)

2012서울조정1513~1516	(매체별 손배청구) 임○○ 對 스포츠서울닷컴 ⁽¹⁵¹³⁾ , 네이버 ⁽¹⁵¹⁴⁾ , 네이트 ⁽¹⁵¹⁵⁾ , 다음 ⁽¹⁵¹⁶⁾
조 정 대 상	『[SS포토] 강소라, '확 터진' 드레스... '코디언니 SOS!'』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6일자)
신청인주장	연예인 스태프인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517~1518	(정정·손배청구) 1.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 2. 강○○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소 잃은 대한야구협회 외양간이라도 고쳐라!』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의 회장과 사무국, 그리고 현 집행부가 구성원의 비리 의혹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대한야구협회 비리 보도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2012서울조정1519~1520	(추후·손배청구) 이○○ 對 한국관광신문BIMCE
조 정 대 상	『이○○ 여행○○신문 발행인 '근로기준법 위반' 구약식 벌금 부과』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0일자 A2면)
신청인주장	신문사 대표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90	(정정청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성남일보
조 정 대 상	『성남시설공단 대리인, 노동위서 허위진술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측 대리인들이 노동위원회 심판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성남시설관리공단 대리인, 노동위서 허위진술 논란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2012광주조정76~8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함평군 對 목포시민신문 ^(76~77) ,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78~79, 76~77과 병합) , 인터넷 브레이크뉴스 전남(서남) ^(80~81) , 폭로닷컴 ^(82~83)
조 정 대 상	• 목포시민신문·인터넷 목포시민신문 :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탈법적 실체를 밝힌다』 제하의 기사 (목포시민신문 2012년 10월 9일자 8면,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10월 8일자) • 인터넷 브레이크뉴스 전남(서남)·폭로닷컴 : 『전남 동함평 산단 조성사업 탈법 만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9일자)
신청인주장	함평군이 추진중인 동함평산업단지 사업비의 이자율이 6.4%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목포시민신문 ·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 강제금) • 인터넷 브레이크뉴스 전남(서남) · 폭로닷컴 :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 강제금) ※ 이행방법 •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 인터넷 브레이크뉴스 전남(서남) · 폭로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목포시민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탈법적 실체를 밝힌다’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6일자 11면) • 인터넷 목포시민신문 :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탈법적 실체를 밝힌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 인터넷 브레이크뉴스 전남(서남) · 폭로닷컴 : 『전남 동함평 산단 조성사업 탈법만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2012서울조정1521~1522 (매체별 정정청구)(재)○○○재단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朴, 인혁당 피해자 · 전태일 동료 등 선대위에 인선 … 安 “정당후보론 어처구니없다” … 文 “그런 험한 말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0월 12일자 A1면, 조선닷컴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의 김모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이 전태일 열사와 동료로 활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박근혜 선대위 김○○, 전태일 동료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2면) • 조선닷컴 : [바로잡습니다] ‘박근혜 선대위 김○○, 전태일 동료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2012서울조정1523~1524 (정정 · 손해청구) 한국철도공사 외 3인 對 매일경제	
조 정 대 상	(1) 『30조 개발사업 ‘백치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9일자 38면) (2) 『파산위기 용산개발에 ‘수백억 성과급’』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0일자 31면)
신청인주장	철도공사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투자사에 파견된 이사들에게 투자유치 성사에 대한 개인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39 (정정청구) 농업회사법인(주)○○○○○○유통 對 해피데이 고창	
조 정 대 상	(1) 『“○○○○○○유통에선 지금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1면) (2) 『○○○○유통 즉시해고, 이유는 무엇이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2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직원을 즉시 해고하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사건의 진위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유통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2면)
2012서울조정1525~1526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문화방송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최필립의 비밀회동』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3일자 1면) (2) 『MBC 이○○ “정치적 임팩트 굉장히 큰 사안”, 정수장학회 최필립 “대선앞 잔폐란 말 나올 것”』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MBC 지분매각에 대해 정수장학회와 밀실험의를 했고, 매각 대금으로 특정 지역 학생 및 노인층 등에게 선심성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527 (정정청구) 신학용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학교비정규직 해결하겠다’던 민주당, 새누리당과 손잡고 입법 미루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7일자)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문제 해결은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새누리당과 합의’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학교비정규직입법’ 관련 신학용 교과위원장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0일자)
2012서울조정1528 (반론청구) (주)○○○테크놀로지 對 프린터타임스	
조 정 대 상	『안철수, “손상님 뽑치는 거짓말 대통령”』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회사의 기술만 빼내고 프로그램 인수 논의를 중단한 안철수 연구소를 비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529 (정정청구) 박○○ 對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지경위 안랩 ‘기술 탈취’ 의혹…증인 채택』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8일자 13면)
신청인주장	안철수연구소의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이 신청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진 위여부를 추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3면)
2012서울조정1530~1533 (매체별반론·손배청구) 정○○ 對 아시아경제닷컴,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 아시아경제닷컴 : 『“미용실서 ‘성매매’ 한 대” 뺑 친 여자의 최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조 정 대 상	• 뉴스1 코리아 : 『아내 미용실 운영 어렵자 이웃 업소 괴롭힌 60대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신청인주장	미용실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경쟁업소를 폐업시키기 위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허위신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아시아경제닷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 뉴스1 코리아 : 조정불성립결정
이 행 결 과	• 아시아경제닷컴 : 『[‘이웃 미용실 수십 차례 허위신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2012서울조정1534~1538 (가사별 정정청구)(병합) 신경민對 MBC-TV	
조 정 대 상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경민 막말 파문』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16일자 21: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명백한 오보 ... 학벌주의 조장』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17일자 21:00) (3)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명백한 오보 ... 학벌주의 조장』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18일자 06:00, 06:30) (4)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신경민 “악마적 편집?”』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2일 21:00)
신청인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정감사에서 MBC 사장에 대해 욕설을 하고, 특정간부들의 출신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광주조정84~85 (매체별 추후청구) 박○○對 광주일보, 전광일보	
조 정 대 상	• 광주일보 : 『보상금 챙긴 어촌계원 무더기 적발』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7일자 7면) • 전광일보 : 『부당 보상금 탄 어민 무더기 검거』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주장	어촌계장인 신청인이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맨손어업 손실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아 입건되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광주일보 : 『허위증거 보상금 의혹 어촌계장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6일자 7면) • 전광일보 :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6일자 4면)

2012서울조정1539~1542 (매체별 정정·반론청구)(병합) 한국○○연합회對 KBS-1TV, KBSi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 가입자 피해 급증』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8일자 21:00) • KBSi : 『○○가입자 피해 급증...보호장치 전혀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8일자)
신청인주장	최근 ○○가입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고 보도했으나, 영업등록 요건 강화 등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서울조정1543~1545 (매체별 손배청구) 한○○ 對 세계닷컴 ⁽¹⁵⁴³⁾ , 조선닷컴 ⁽¹⁵⁴⁴⁾ , 인터넷 헤럴드경제 ⁽¹⁵⁴⁵⁾	
조 정 대 상	• 세계닷컴 : 『“뺨과 머리채를…” 깡패 교장, 말리던 교사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9일자) • 조선닷컴 : 『교감, 교사 - 학생 폭행 혐의에도 경찰 수사 거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9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학생 머리채 잡은 ‘깡패 교장’, 교사까지 폭행』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9일자)
신청인주장	고교 교장인 신청인이 학생을 체벌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의 주된 목적과 내용은 공공성이 인정되며, 신청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2012경기조정91~94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 對 중부일보,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 중부일보 : 『수원 ○○○○ ○○ ‘분양사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0일자 1면), (2) 『○○○○ ○○ 도면 ‘두 장’ 이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1면), (3) 『○○○○○○, 승인 한달전 모델하우스부터 제작했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1면), (4) 『공사 계약서엔 ‘○○○○○’ 분양 한달 전 ‘○○○○○’ 변경』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27면), (5) 『○○건설, 경찰 조사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7일자 23면) • 인터넷 중부일보 : (1) 『수원 ○○○○ ○○ ‘분양사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0일자), (2) 『○○○○ ○○ 도면 ‘두 장’ 이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3) 『○○○○○○, 승인 한달전 모델하우스부터 제작했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4) 『수원 ‘○○○○’ 당초엔 ‘○○○○○’..분양 한달전 변경』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5) 『수원 ○○○○, 경찰 조사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7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아파트인 것처럼 홍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95~102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병합) 주식회사○○○○○ 對 경인일보 ^(95~96, 99~100) , 인터넷 경인일보 ^(97~98, 101~102)	
조 정 대 상	• 경인일보 : (1) 『서구, 혐오시설 줄이려다 ‘혹 불인 끌’』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0일자 23면), (2)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0일자 5면) • 인터넷 경인일보 : (1) 『폐기물집단화단지 이전 예정업체, 지점형태로 신규허가 추진 ‘꿈수’』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0일자), (2) 『건폐물중간처리 신규허가 무더기 특혜 논란…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경기조정103~104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협회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인천 서구 혐오시설 집단화 조장 지적』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546~154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주식회사○○ 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 세계일보 : (1) 『○○, '甲의 횡포' 양계농 울린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5일자 1면), (2) 『양계농 울리는 ○○』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5일자 2면), (3) 『재해에도 병아리값·사료값 떼고 일부만 지급... 제배만 불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5일자 6면) • 세계닷컴 : (1) 『○○, 양계농가 보험금 수억 원 빼앗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5일자), (2) 『재해에도 병아리값·사료값 챙기고... 제 배만 채웠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매년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겨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550~1553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임○ 對 KBS-2TV, KBSi
조 정 대 상	• KBS-2TV :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어머니가 딸을 납치?』 제하의 보도 (2012년 7월 18일자 08:00) • KBSi : 『[뉴스 따라잡기] 여대생 납치사건 “종교에 빠진 딸 구하려...”』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신청인주장	특정종교에 빠진 신청인을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납치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어머니가 아닌 과한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554		(손배청구) 김○○ 對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김○○ 의원 막말, 캠프 사퇴로 끝낼 일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27면)	
신청인주장	지난 4.11 총선 때 공천을 받았던 신청인이 노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막말을 하다 후 보직을 사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부산조정34~37		(매체별 반론·손배청구)(병합) 한○○ 對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조 정 대 상	『학생·교사 안가리고 폭행, 누구도 못 말린 '공포 교감'』 제하의 기사 (국제신문 2012년 10월 18일자 6면, 인터넷 국제신문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사립고 교감인 신청인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시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교사 및 학생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의 주된 목적과 내용은 공공성이 인정되며, 신청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2012서울조정1555~1557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연합회 對 e상조뉴스
조 정 대 상	(1) 『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준비 자금 1500만 원씩 징수』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7일자) (2) 『○○연합회 또 사단법인 허가서류접수 '공정위 짝사랑'』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3일자) (3) 『한국○○연합회, 언론사 등록 잡지 5만부 제작 배포 계획』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7일자) (4) 『○○연합회, 해체 위기 5개 회원사 협동조합 비밀리 가입』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4일자) (5) 『연합회 대망신, 동반상장위 ○○중소업종 회의서 무자격』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8일자) (6) 『○○연합회, ○○꾼들 각 기관 민원제기 상조업 발목잡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사업자들의 대표성을 상실한 식물단체이며, 상조업 전체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한국○○연합회 운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3일자)

2012서울조정1558~1563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1. 전국금속노동조합○○지부, 2. 김○○ 對 조선닷컴,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 조선닷컴 : 『평균연봉 9,000만 원 넘는 ○○ 노조의 이상한 파업』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 한경닷컴 : 『○○ 노조의 '황당한 파업'』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신청인주장	파업 중인 ○○노동조합의 지부 노조원들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이 넘는다는 기사가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계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조 1차 파업때 먼저 투쟁을 시작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조선닷컴·한경닷컴 :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금속노조 ○○지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9일자)

2012전북조정40~41	(가시별 정정청구)(병합) 1. ○○중학교, 2. 학교법인 ○○학원 對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1) 『학교폭력 건디다 못해 목숨 버리려한 중학생』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3일자 1면) (2) 『○○ 학교폭력 은폐 의혹 학교 학부모들, 학교법인 퇴출 촉구』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3일자 6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가 학생의 자살 시도에 대해 축소·은폐하려 했으며, 신청인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의 폭력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의 퇴출을 촉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충북조정43~44	(매체별 정정청구) 윤○○對 충청투데이,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군의원 의정활동보다 표심잡기?』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2년 10월 23일자 18A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노인체육대회에 참석하면서 의정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2년 11월 7일자 18A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11월 7일자)

2012광주조정86~88	(정정·반론·손배청구) 변○○對 우리군민신문
조 정 대 상	(1) 『[긴급진단(1) - 홍길동문화체육진흥회 운영실태 점검] 보조금 3억2천 목적외로 대부분 탕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1면) (2) 『1면 '홍길동문화체육진흥회 운영실태 점검'에서 이어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2면) (3) 『[데스크칼럼] 언론인이 수천만 원의 향응을 받을 수 있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11면) (4) 『[긴급진단(2) - 홍길동문화체육진흥회 운영실태 점검] 관공서 상대로 사기치는 수준으로 운영확인 '충격'』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1면) (5) 『[데스크칼럼] 명예훼손 운운할 것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홍길동문화체육진흥회 이사로 재직할 때 업체 대표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인터넷 우리군민신문에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홍길동문화체육진흥회 운영실태』 관련 반론보도문 (우리군민신문 2012년 11월 19일자 2면, 인터넷 우리군민신문 11월 19일자)

2012서울조정1564~1565	(정정·손배청구) 1.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2. 정○○對 한강타임즈
조 정 대 상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정○○ 이사장, 친·인척 채용 논란! '인사비리 백화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이 이사장과 전 구청장 등의 친인척을 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채용이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3일자)
2012서울조정1566~1571	(매체별 조정 · 반론 · 손해청구) (병합) (주)○○○○○ 對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 아시아투데이 : (1) 『정부 ‘담배값 인상’ 뒤엔 ○○○○ 로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0일자 1면), (2) 『○○○○, ○○화장품 청산 등 비담배분야 계열사서 제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0일자 2면), (3) 『○○○○ 담배에 암모니아…흡연피해 소송 촉각』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8일자 1면), (4) 『○○○○, 문어발 계열사 재벌흥내 ‘자승자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1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1) 『정부 · 정치권 담배값 인상계획 배경… ○○○○ 로비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9일자), (2) 『○○○○ 담배에 암모니아 검출 … 인체와 도덕성에 치명상』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7일자), (3) 『○○○○ ‘문어발 확장’ … 재벌 흥내내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정부의 담배값 인상 추진 이면에 신청인 회사의 로비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아시아투데이에 정정 및 반론보도, 아시아투데이닷컴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담배값 인상 로비 의혹 및 암모니아 성분 첨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아시아투데이 2012년 11월 16일자 1면)

2012부산조정38	(손배청구) 손○○ 對 UBC
조 정 대 상	(1) ubc프라임뉴스 프로그램 『한밤의 아들 납치소동 행방 묘연』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7일자 20:15) (2) ubc굿모닝울산 프로그램 『한밤의 아들 납치소동 행방 묘연』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8일자 07:15)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마약에 취해 흥기를 들고 아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경찰 수배를 받자 홀로 도망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대구조정19~20	(조정 · 손해청구) (주)○○○○○ 對 경북일보
조 정 대 상	(1) 『대구 수성구 ○○○○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9일자 1면) (2) 『○○○○ 임의 설계변경 확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1일자 1면) (3) 『○○○건설, 부실시공 의혹 거짓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1면) (4) 『옹벽타고 물 줄출…새 아파트 맞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4면)
신청인주장	아파트 시행사인 신청인회사가 당초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 부실 시공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대구조정21~24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 입주자대표회 對 인터넷 경북일보, 인터넷 대구신문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북일보 : (1) 『대구 수성구 ○○○○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9

조 정 대 상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 호남뉴스24 : 『제19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수상자 선정 “곰품제공 의혹 제기” 파장 일 듯』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전통음식 요리가인 신청인이 작년과 올해 같은 음식을 출품하고, 신청인의 남편이 심사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노컷뉴스 :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호남뉴스24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이행방법 • 호남뉴스24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위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호남뉴스24 : 『제19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수상자 선정..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6일자)

2012서울조정1580 (정정청구) 노○○ 對 파이낸셜뉴스	
조 정 대 상	『檢鏡, 경미한 위법까지 단속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27면)
신청인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차에서 취침 중인 사람에게까지 음주단속을 하는 등 실적위주의 단속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581 (정정청구) 경상북도울진군 對 뉴스시스	
조 정 대 상	『울진군 일부 예산관리에 구멍』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신청인주장	울진군이 지역 각종행사에 지급한 격려금을 공무원이 착복하는 등 울진군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또한 정정보도문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함
이 행 결 과	『‘울진군 일부 예산 관리에 구멍’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3일자)

2012서울조정1582~1583 (정정 · 손해청구) 이○○ 외 2인 對 포바이포 아웃도어뉴스	
조 정 대 상	(1) 『포바이포 뉴스에서 짝통을 취재하며...』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8일자) (2) 『[동영상]○○○ 불법짝통유통 녹취 동영상』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9일자) (3) 『[보도] “○○○○ 짝통용품에 튜닝시장 발각”』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9일자) (4) 『[컬럼] “짝통 사태”는 이미 예고 되어 있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9일자) (5) 『○○○ 짝통 사건에 관련한 포바이포의 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30일자)

조 정 대 상	(6) 『[보도]○○○-불법쌍둥업체 공개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8일자) (7) 『[컬럼]○○○○(○○)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8) 『용인 ○○○○○(○○○) 운영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7일자) (9) 『[보도] 크라이슬러 코리아의 침묵 “○○○○ 중국불법쌍둥용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판매하는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 ‘중국불법쌍둥’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충북조정45~48 (매체별 반론·손배청구)(병합) ○○붕어마을 對 충청투데이,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 붕어찜 축제 전시·예산낭비』 제하의 기사 (충청투데이 2012년 10월 18일자 16면, 인터넷 충청투데이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단체가 주관하는 순수한 지역축제인 붕어찜축제를 전시성 예산낭비 및 지자체장의 표심모으기 행사라고 폄하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인터넷 충청투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함,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충청투데이: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16면) • 인터넷 충청투데이: 『[반론보도문]-○○붕어마을 붕어찜 축제』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584~1585 (매체별 정정청구) 전○○ 對 MBN,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 MBN: 생방송 매일경제 프로그램 『가을 이색 도서관』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25일자 08:00) • 인터넷 MBN: 『가을 이색 도서관을 아세요?』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사회복지공무원인 신청인의 인생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본업은 심마니이고, 부업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유감표명 공문발송)

2012경남조정76~77 (반론·손배청구) 권○○ 對 뉴시스(경남)	
조 정 대 상	『밀양시민 “주민 무시한 승마장 허가 백지화하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립하려는 승마장이 환경오염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후속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밀양 승마장 주민반발...사업주 해명 나서』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8일자)

2012서울조정1586~1591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더벨,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더벨 : (1) 『코레일, 공공기업가 쟁점기업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2) 『용산사업 투자한 국민연금, 코레일에 강력 '경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5일자) • e머니투데이 : (1) 『더벨』 코레일, 공공기업가 쟁점기업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4일자), (2) 『더벨』 용산사업 투자한 국민연금, 코레일에 강력 '경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 한국철도공사가 공익은 외면한 채 사업중단 협박을 통해 다른 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무리하게 인수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2부산조정39~40	(정정·손배청구) (주)부산○○○○ 對 부산MBC-TV
조 정 대 상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부산○○○○ 투자비 어디로...』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5일자 20:3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부산○○○○, 배관 투자비 소비자에게 전가』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6일자 20:3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배관투자 계획을 부풀려 가스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하였으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 배관을 회사 자산으로 계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전북조정42~43	(매체별 정정청구) 익산시 對 소통신문, 인터넷 소통신문
조 정 대 상	『익산시 악취, 온통 발암물질』 제하의 기사 (소통신문 2012년 11월 5일자 12면, 인터넷 소통신문 11월 5일자)
신청인주장	익산시의 기업들이 대기 중에 배출한 발암 화학 물질의 총량이 2,879톤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발암 물질의 악취가 장기간 이어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2012서울조정1592~1595	(매체별 정정청구) (주)미디어오늘 對 동아일보 ⁽¹⁵⁹²⁾ , 중앙Sunday ⁽¹⁵⁹³⁾ , 인터넷 중앙Sunday ⁽¹⁵⁹⁴⁾ , 동아닷컴 ⁽¹⁵⁹⁵⁾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동아닷컴 : 『[사설] 여기자 성추행 감춘 민주당과 '미디어오늘'의 유착』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8월 13일자 31면, 동아닷컴 8월 13일자) • 중앙Sunday·인터넷 중앙Sunday : 『[사설] '집안' 다르면 성추행 잦대 달라지나』 제하의 기사 (중앙Sunday 2012년 8월 12일자 2면, 인터넷 중앙Sunday 8월 12일자)
신청인주장	'미디어오늘'이 민주당과 유착해, 소속 여기자를 성추행한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중앙Sunday : 홈페이지 News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처 리 결 과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동아닷컴 : 홈페이지 오피니언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미디어오늘, 여기서 성추행 은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11월 28일자 2면, 중앙Sunday 11월 25일자 2면, 인터넷 중앙Sunday 11월 25일자, 동아닷컴 11월 28일자)

2012서울조정1596~1599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병합) 민○○對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서규용 장관, 동문 로펌에 부처 소송 ‘몰아주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14면) • 인터넷 경향신문 : 『서규용, 동문 로펌에 소송 ‘몰아주기’』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농식품부 관련 소송 사건을 몰아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가 결정 내린 반론보도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일부 받아들여진 정정보도 외에도 손해배상을 원한다) ※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경향신문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날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인터넷 경향신문 홈페이지 정치면 주요기사 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함, 또한 조정대상 기사를 매개한 각 포털사이트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게재되는 즉시 이를 송고해 각 포털사이트에서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하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이어서 게재되도록 수정된 조정대상기사 역시 이를 매개한 각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도록 함

2012서울조정1600~1601 (정정 · 손해청구) 1. ○○지방변호사회, 2. 오○○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변회, ‘눈엣가시’ 변호사 입회거부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단체 회장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강모 변호사의 입회신청을 패썹죄를 적용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602~1603 (정정 · 손해청구) 1. ○○지방변호사회, 2. 오○○對 대한변협신문	
조 정 대 상	『지방회가 등록변경 거부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2일자 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협 회칙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을 들어 강모 변호사의 입회신청을 거부한 것은 단체 회장의 권한 남용으로, 개인변호사의 개업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604~1605	(매체별 정정청구) 최○○對 KBS-1·2TV, KBS
조 정 대 상	• KBS-1·2TV : (1) KBS 뉴스9 프로그램 『“애완동물 의료 사고, 위자료 지급” 이례적 판결』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5일자 21:00), (2) KBS 아침 뉴스타임 프로그램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위자료 지급』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6일자 08:00) • KBSI : (1) 『“애완동물 의료 사고, 위자료 지급” 이례적 판결』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2) 『반려동물 의료사고에 위자료 지급』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6일자)
신청인주장	법원이 이례적으로 수의사인 신청인의 의료과실을 인정해 애완견 주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606~1607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업 및 ○○○○업 협회對 세계일보,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불법 가르치는 ○○업 등록 교육』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2년 11월 12일자 사회면, 세계닷컴 11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실시하는 업체 등록 교육이 오히려 불법, 탈법 영업을 부추긴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세계닷컴에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세계일보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12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불법 가르치는 ○○업 등록 교육’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세계닷컴 2012년 11월 30일자)

2012서울조정1608	(정정청구) ○○제약주식회사對 푸드투데이
조 정 대 상	『○○제약 ○○차, 0.475%의 현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일반 음료 제품이 기능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 기능성 음료로 인식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홈페이지 뉴스홈 기사목록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제약 ○○차 기능성음료 광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2012서울조정1609~1610	(본문·손배청구)진○○對스타뉴스
조 정 대 상	(1) 『박현빈 ‘사방사방’ 작곡자 “표절? 맞고소 검토”』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4일자) (2) 『 ‘사방사방’ 표절의혹 제기 가수, 무고혐의 피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3일자) (3) 『법원, 원고요청속 ‘사방사방’ 표절논란 재감정 의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6일자) (4) 『 ‘사방사방’ 작곡가 “표절누명 씌우려 악보 위조”』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중가요 ‘사방사방’의 작곡가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과 관련, 신청인이 표절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피고 김 모 씨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 이행방법 :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해 신청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기사화 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후속보도(인터뷰 기사)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신청인과의 인터뷰 기사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함, (인터뷰 기사) 제목을 조정대상기사 (1)~(4)의 하단 ‘이 기사의 관련기사’에 게시해 제목 클릭 시 인터뷰 기사가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진○○ “ ‘사방사방’ 유사성, 우연일치라 보기 어려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7일자)

2012서울조정1611~1612	(매체별 정정청구)(병합)(사)2018동계올림픽○○본부對경향신문,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경향신문 : 『평창동계올림픽 빙자한 사기 판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9일자 16면) •인터넷 경향신문 : 『[경향리크스] 평창올림픽 빙자한 사기 판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빙자해 의류 바자회 등의 행사를 주최하면서 물품을 제공한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613~1616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1.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2. 정○○對 성동저널, 인터넷 성동저널
조 정 대 상	•성동저널 : 『[취재 X 파일 도시관리공단 시리즈 ②] ○○동 재활용 선별장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4일자 2면) •인터넷 성동저널 : 『○○구, 도시관리공단 <○○동 재활용 선별장>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공단이 지역의 재활용 선별장 점유권을 가지고 있던 민간업체에 규정을 무시하고 장비 가격을 과다하게 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617~1618	(매체별 정정청구)(병합)박○○對TV조선,인터넷TV조선
조 정 대 상	•TV조선 :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프로그램 『10회 - 한의사들의 ‘교주’』 제하의 보도 (2012년 8월 11일자 23:00)

조 정 대 상	• 인터넷 TV조선 : 『[기자가 간다] 한의사들의 ‘교주’, 앉은뱅이도 일으키는 스승의 비밀』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인체파동원리’라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이용해 환자들에게 거액을 갈취하고 여성 제자들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619~1620 (정정·반론청구) 정○○對 채널A	
조 정 대 상	잠금해제 2020 프로그램 『30회 - 당신의 다이아몬드는 안녕하십니까』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6일자 20:40)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다이아몬드 감정원이 속칭 ‘선수’와 결탁해 허위감정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잠금해제 2020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되,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함, 인터넷 채널A의 조정대상보도와 향후 재방송 및 인터넷 VOD 영상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함
이 행 결 과	잠금해제 2020 프로그램 『잠금해제 2020 30회 ‘당신의 다이아몬드는 안녕하십니까?’ 방송편 관련 안내』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6일자 20:40)

2012서울조정1621~162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이○○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수업 안하고 학점 주고, 개강 3주만에 종강... 해임된 교수가 되레 반발 소송』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1월 7일자 A11면, 조선닷컴 11월 7일자)
신청인주장	지방대 음대 교수인 신청인이 부실한 수업과 동료 교수에 대한 폭언 등으로 해임되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조선닷컴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
이 행 결 과	『‘○○ 모 음대 이 모 교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2월 12일자 A2면, 조선닷컴 12월 12일자)

2012경남조정78~79 (매체별 정정청구)(병합) 창원시對 경남연합일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조 정 대 상	• 경남연합일보 : 『창원시 국기봉 제작비 ‘의혹 투성’』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6일자 1면) •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 『창원시 국기봉 제작비 ‘의혹 투성’』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창원시가 국기봉 및 시기봉을 설치하면서 설계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 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또한 조정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토록 함
이 행 결 과	『창원시 국기봉 제작비 ‘의혹 투성’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남연합일보 2012년 11월 30일자 1면, 인터넷 경남연합일보 11월 30일자)
2012서울조정1625 (반론청구)(재)예수그리스도○○○○교회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뉴스특보 프로그램 『2012 美대통령선거(2부)』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7일자 10:30)
신청인주장	미국 대선 개표소식을 전하면서, 롬니 후보의 종교인 ○○○교가 이단으로 평가 받고있다고 보도해 교회의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626~1627 (매체별 정정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주간한국, 인터넷 주간한국	
조 정 대 상	(1) 『특정 민간기업과 커넥션 있었나...』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2년 10월 29일자 16면, 인터넷 주간한국 10월 26일자) (2) 『계열사도 아닌데 ‘마진 챙겨주기’ 왜?』 제하의 기사 (주간한국 2012년 11월 12일자 10면, 인터넷 주간한국 11월 9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철도공사가 중고 철도차량 해외 판매를 추진하면서, 철도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주간한국 :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홈페이지 시사면 기사목록 앞 부분에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각 조정대상기사 (1)~(2)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주간한국 : 『반론보도 : ‘코레일의 해외사업 파트너 선정’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4일자 12면) • 인터넷 주간한국 : 『[반론보도] ‘코레일의 해외사업 파트너 선정’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0일자)
2012서울조정1628~1633 (매체별 정정 · 반론청구) 1.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최○○ 對 경제투데이(1628~1629), 네이트(1630~1631), 야후(1632~1633)	
조 정 대 상	『최○○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종합비리선물세트’ 완결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문화부 지원 사업비를 유용해 원장의 개인비서를 채용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경제투데이 : 『○○○○○○○○진흥원 국감 지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 네이트·야후 : 『[반론보도] ○○○○○○○○○진흥원 국감 지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2012서울조정1634~1642	1.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최○○ 對 e머니투데이(1634~1635 정정·반론청구), 네이버(1636~1637 정정·반론청구), 야후(1638~1639 정정·반론청구), 서울문화투데이(1640 정정청구),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1641~1642 정정·반론청구, 1640과 병합)
조 정 대 상	• e머니투데이·네이버·야후 : (1) 『폐허된 이순신 장군의 '디자인 DNA'』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2) 『[국감 브리핑] 홍지만 의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운영 부실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 서울문화투데이·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총체적 부실』 제하의 기사 (서울문화투데이 2012년 10월 31일자 1면,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10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문화부 지원 사업비를 유용해 원장의 개인비서를 채용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e머니투데이·서울문화투데이·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네이버·야후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e머니투데이 : 홈페이지 뉴스-생활문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e머니투데이·네이버·야후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7일자) • 서울문화투데이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2일자 2면) •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 『[반론보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2일자)
2012서울조정1643~1650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1.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최○○ 對 CNBNEWS(1643~1644), 야후(1645~1646), 뉴스1 코리아(1647~1648), 네이버(1649~1650)
조 정 대 상	• CNBNEWS·야후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 원장, 문화부 보조 사업비 유용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 뉴스1 코리아·네이버 : 『[국감 브리핑] 홍지만 의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운영 부실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문화부 지원 사업비를 유용해 원장의 개인비서를 채용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CNBNEWS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처 리 결 과	• 야후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2서울중재54~55 참조)] • 뉴스1 코리아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네이버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이행방법 • CNNBNEWS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 뉴스1 코리아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CNNBNEWS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감 지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4일자) • 뉴스1 코리아 · 네이버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감 지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5일자)

2012서울조정1651~1653	(매체별 정정청구) 1.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최○○ 對 연합뉴스 ⁽¹⁶⁵¹⁾ , 네이버 ⁽¹⁶⁵²⁾ , 다음 ⁽¹⁶⁵³⁾
조 정 대 상	『홍지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운영 부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문화부 지원 사업비를 유용해 원장의 개인비서를 채용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연합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네이버 · 다음 : 각 취하 ※ 이행방법 • 연합뉴스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감지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2012대구조정25~28	(매체별 정정 · 손배청구) 황병직 (병합) 對 경안일보, 인터넷 경안일보
조 정 대 상	(1) 『“의원 차량 파손 기사 유포로 보복성 감사 · 모욕 받았다”』 제하의 기사 (경안일보 2012년 8월 30일자 4면, 인터넷 경안일보 8월 30일자) (2) 『○○시, 女 공무원 유산 파문 ‘전전궁궁’』 제하의 기사 (경안일보 2012년 10월 22일자 4면, 인터넷 경안일보 10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시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SNS에 자신에 관한 글을 올린 시청 공무원에게 질책과 모욕을 주었고,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654~1655		(정정·손배청구)(병합) 송○○對뉴스타운
조 정 대 상	『○○ 초등학교 집단폭행…피해가족 수업시간 침입 ‘진술서’ 강요』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3일자)	
신청인주장	집단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가족이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고, 피해 학생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문, 기사삭제, 손해배상 100만 원,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초등학교 A군과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30일자)	
2012서울조정1656~1657		(매체별 손배청구)(병합) 고○○ 외3인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통진당 부정선거 45명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4일자 A14면, 동아닷컴 1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 혐의로 검찰이 당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인 신청인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각 50만 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정대상기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신청인 각각에게 손해배상하라는 중재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2012부산조정41~46		(매체별 정정·반론·손배청구)(병합) 송○○對 울산광역매일, 인터넷 울산광역매일
조 정 대 상	『피해자·가해자 폭력사건 두고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울산광역매일 2012년 11월 5일자 1면, 인터넷 울산광역매일 11월 4일자)	
신청인주장	학교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이 도리어 학우들에게 흉기나 하키채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일삼았으며, 신청인의 가족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사과문, 기사삭제,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사과문 - ○○ 초등학교 A군과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울산광역신문 2012년 12월 6일자 1면, 인터넷 울산광역매일 12월 6일자)	
2012강원조정8~1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박○○對 강원일보, 인터넷 강원일보
조 정 대 상	• 강원일보 : (1) 『또 교사가 자리 비워… 장애 남녀 학생간 폭행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면), (2) 『“장애학생 간 폭행사건 관련 교사가 모욕적 언사”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22면) • 인터넷 강원일보 : (1) 『또 교사가 자리 비워… 장애 남녀 학생간 폭행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강릉] “장애학생간 폭행사건 관련 교사가 모욕적 언사”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신청인주장	특수교사인 신청인이 교내 폭행사건에 연루된 장애학생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장애학생 간 폭행’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강원일보 2012년 12월 10일자 5면, 인터넷 강원일보 12월 10일자)	

2012제주조정22~25	(매체별 조정·손배청구) 1. 주식회사○○○, 2. 진○○對 KBS-1TV, 제주의 소리
조정대상	• KBS-1TV : 시사파일 제주 프로그램 『○동 그린시티 자진철회 그 후』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27일자 22:00) • 제주의 소리 : (1) 『“지사도 내 청은 거절 못해. 80m도 지을 수 있어!”』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3일자), (2) 『제주도 도시계획행정 ‘오락가락’ …의혹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의 임원이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전사업자측에 도지사와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하며 사업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 KBS-1TV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제주의 소리 :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 KBS-1TV : 시사파일 제주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 제주의 소리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 및 반론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 KBS-1TV : 시사파일 제주 프로그램 『“○동 그린시티 특혜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4일자 22:00) • 제주의 소리 : 『[반론 및 정정보도] ○동 그린시티 특혜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7일자)

2012전북조정44~45	(조정·손배청구) (주)○○對 전주일보
조정대상	『진안, 간판정비 업체선정 잡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2일자 10면)
신청인주장	간판제작 업체인 신청인 업체가 부적격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행결과	『진안, 간판정비 업체선정 잡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1일자 10면)

2012서울조정1663~1664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한국철도공사對 머니투데이, e머니투데이
조정대상	• 머니투데이 : 『[송○○의 히트 & 런] 환불 번복·임의 좌석배정 잊지 못할 ‘KTX 여행상품’』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6일자 23면) • e머니투데이 : 『멋대로 좌석배정? 못잊을 “KTX 부산여행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6일자)
신청인주장	한국철도공사가 부산불꽃축제 KTX 패키지 여행상품의 승차권을 환불해주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e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사회섹션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이후에는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머니투데이 : 『‘KTX 여행상품’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4일자 19면) •e머니투데이 : 『KTX 부산꽃축제 패키지상품 관련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3일자)

2012서울조정1665~1668	(매체별 조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對 KBS-1TV, KBSi
조 정 대 상	•KBS-1TV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가격의 자격-포장김치』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3일자 19:30) •KBSi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다시보기] 가격의자격-포장김치』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만드는 김치에 중국산 고춧가루가 사용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KBS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KBSi 홈페이지 소비자고발 프로그램면의 ‘다시보기’ 코너의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모 연예인 김치 중국산 고춧가루 사용” 관련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KBSi 2012년 12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669~1673, 1678	(매체별 손해청구) 김○○對 뉴스1 코리아 ⁽¹⁶⁶⁹⁾ , 네이버 ⁽¹⁶⁷⁰⁾ , 네이트 ⁽¹⁶⁷¹⁾ , 다음 ⁽¹⁶⁷²⁾ , 야후 ⁽¹⁶⁷³⁾ , e머니투데이 ^(1678, 1669와 병합)
조 정 대 상	(1) 『힘찬 출발』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2) 『젓먹던 힘까지』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뉴스1 코리아 · e머니투데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야후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674~1677	(매체별 손해청구) 김○○對 연합뉴스 ⁽¹⁶⁷⁴⁾ , 네이버 ⁽¹⁶⁷⁵⁾ , 네이트 ⁽¹⁶⁷⁶⁾ , 다음 ⁽¹⁶⁷⁷⁾
조 정 대 상	『환경미화원 실기시험』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연합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1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679~1680	(매체별 손해청구) 김○○對 MBC-TV, iMBC
조 정 대 상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835회 - ‘빔’ 권하는 사회』제하의 보도 (2012

조 정 대 상	년 11월 25일자) • iMBC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다시보기] 835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원비공개를 전제로 신청인의 주택담보 대출 사례를 인터뷰 했는데, 실명과 초상을 그대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손해배상 300만 원 (2012서울중재56~57 (병합)참조)]

2012서울조정1681~1684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對KBS-1TV, KBS	
조 정 대 상	• KBS-1TV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가격의 자격-포장김치』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3일자 19:30) • KBSi :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다시보기] 가격의자격-포장김치』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만든 김치에 중국산 D등급 고춧가루가 사용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KBSi 에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 KBS-TV · KBSi : KBSi 홈페이지 소비자고발 프로그램면의 '다시보기' 코너의 조정대상 보도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이 행 결 과	『“모 연예인 김치 중국산 고춧가루 사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KBSi 2012년 12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685~168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이○○對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 『부모와 경비원까지... 20명 이상 대가족? 이○○ 부부, 셔틀버스까지 운영?』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6일자 09:50) • iMBC :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 다시보기] 1527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탈런트인 신청인이 호화 전원주택에서 직원들을 포함한 20여 명과 함께 거주하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셔틀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 MBC-TV :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 『1532회』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4일자 09:50) • iMBC :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 다시보기] 1532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4일자)

2012서울조정1689~1691 (정정·반론·손배청구) 윤○○對조선일보	
조 정 대 상	『경찰 목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6일자 A12면)
신청인주장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적법하게 농성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해, 불법으로 텐트를 세우고 경찰관 목살을 잡았다는 잘못된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692~1693 (매체별 정정청구) 환경부對MBC-TV, iMBC	
조 정 대 상	• MBC-TV :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불산, 낙동강으로 유입』 제하의 보도 (2012

조 정 대 상	년 10월 28일자 21:00), (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낙동강 불산 ‘편차’ 공방』 제하의 보도(2012년 10월 29일자 21:00), (3) 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불산 ‘하천 유입’ 은폐 의혹』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일자 07:15) • iMBC : (1) 『불산, 낙동강으로 ‘확산’ … 안전하다더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8일자), (2) 『낙동강 불산 검출 … 측정 결과 편차 놓고 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3) 『환경당국, 누출된 불산 ‘하천 유입’ 은폐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일자)
신청인주장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낙동강에서 검출된 불산 수치를 환경부가 축소 ·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이미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반론보도가 있었고, 중재부의 결정에 따른 반론보도 내용의 진위가 불분명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행방법 • MBC-TV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함 • iMBC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iMBC 홈페이지 ‘다시보기/뉴스데스크’ 및 ‘다시보기/뉴스투데이’ 코너에 게재된 각 조정대상기사면의 동영상과 본문 사이에 반론 보도문을 게재함

2012서울조정1694~1695 (매체별 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미디어스, 네이버	
조 정 대 상	『‘KBS 9시 뉴스’, 네티즌 선정 ‘최악의 대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신청인주장	북방한계선에 관련된 ‘비밀대화록’의 존재를 부인한 국정원장의 발언을 KBS가 왜곡하여, 마치 ‘비밀대화록’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네티즌 선정 최악의 대선보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2012서울조정1696 (정정청구) 은평구 對 은평뉴스비전	
조 정 대 상	『민선 구청장 행정력 ‘결점 투성’』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9일자 1면)
신청인주장	서울 은평구청이 불광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절차 및 내용 등의 흠결로 패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제30호 1면 기사 정정 보도합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1일자 1면)

2012충북조정49 (손배청구) 강○○ 외2인 對 CJB-TV	
조 정 대 상	(1) CJB 8 뉴스 프로그램 『수험표는 할인 쿠폰』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8일자 20:00) (2) CJB 7 뉴스 프로그램 『수험표는 할인 쿠폰』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9일자 07:00)
신청인주장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할인행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과 신청인 자녀의 초상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만 원, 기사삭제, 부제소)
2012서울조정1697	(정정청구) 박○○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금고 부정선거 주장 후 생명 위협 느껴』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소속 회사 이사장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반대파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1698~1699	(정정·손배청구) 오○○ 對 프레스인
조 정 대 상	『박지민 회사 소유 건물에 '덴프로 룸살롱' 성업 중』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동생 소유 건물에 입주한 룸살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허위 보도해, 룸살롱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1700~1703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박영선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박영선·출입국사무소 한밤 대치』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9월 1일자 A10면, 조선닷컴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검찰이 국회 법사위원장인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으로 열람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라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조선닷컴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중앙 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해당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박영선·출입국사무소 한밤 대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3년 1월 15일자 A02면, 조선닷컴 1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704~1707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1.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박○○ 對 KBS-1TV, KBSi
조 정 대 상	•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아파트 관리 실태] 아파트 회계 시스템 사후 조작 가능』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5일자 21:00) • KBSi : 『아파트 회계 시스템 사후 조작 가능』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들이 회계시스템을 사후조작해 아파트 관리비를 이중부과하고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전북조정46~47	(매체별 손배청구) 이○○ 對 네이버, 뉴스1 코리아전북
조 정 대 상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네이버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뉴스1 코리아전북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2서울조정1708~1710	(정정·반론·손배청구) 류○○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 ‘발각’ “귀하를 찌 지지자 명단에…”』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 생활체육단장을 사칭하며,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제주조정26~2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강○○對 제주MBC-TV, 인터넷 제주MBC-TV
조 정 대 상	• 제주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거꾸로 가는 학교폭력 대책』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30일자 21:00) • 인터넷 제주MBC-TV : 『(리포트) 학교폭력 대책 미흡』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학교에서 발생한 동급생 간 싸움에 대해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제주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가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함, 인터넷 제주MBC-TV 홈페이지 뉴스면의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제주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거꾸로 가는 학교폭력 대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9일자 21:00) • 인터넷 제주MBC-TV : 『“거꾸로 가는 학교폭력 대책”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2012서울조정1711~1715	(매체별 손배청구) 김○○對 매경ECONOMY ⁽¹⁷¹¹⁾ , 매경닷컴 ⁽¹⁷¹²⁾ , 네이버 ⁽¹⁷¹³⁾ , 네이트 ⁽¹⁷¹⁴⁾ , 다음 ⁽¹⁷¹⁵⁾
조 정 대 상	• 매경ECONOMY : 『이통사·제조사 저가 제품 판매 기피』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33면) • 매경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 : 『[휴대전화대이동] 궁금증 ⑤ MVNO·블랙리스트 시행 한 달째...이통사·제조사 저가 제품 판매 기피』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8일자)
신청인주장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신청인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단말기 판매업체 직원인 신청인의 이름과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매경ECONOMY :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 매경닷컴 :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기사수정) • 네이버·네이트·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716~1717	(정정·반론청구) ○○○○교회 평신도모임對 인터넷 기독교신보
조 정 대 상	『편호하여 불공정하게 판결한 서수원노회 재판국』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5일자)

신청인주장	서수원노회가 신청인들이 속한 교회 목사의 (교리적)범죄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경미한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사유 : 조정대상보도와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2경기조정105~108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박○○ 對 경기신문, 인터넷 경기신문
조 정 대 상	• 경기신문 : (1) 『박○○ ○○○ 원장 교육비로 관광성 외유』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1면), (2) 『탄 주머니 찬 용역 응모·수주 ‘들통’』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8일자 1면) • 인터넷 경기신문 : (1) 『박○○ ○○○ 원장 교육비로 해외 여행』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2일자), (2) 『탄 주머니 찬 용역 응모·수주 ‘들통’』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1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직원교육비로 관광성 외유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718~1721	(매체별 정정·손배청구)(주)○○○○ 對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조 정 대 상	• TV조선 :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프로그램 『14회 - 블랙박스의 배신』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8일자 23:00) • 인터넷 TV조선 : 『[강용석이 간다] 블랙박스의 배신』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8일자)
신청인주장	블랙박스 제작 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제품 결함 시 보상정책이 없고 A/S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TV조선 : 강용석의 불편한 진실 프로그램 말미에 후속보도,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자료 화면을 배경으로 후속보도문을 보도하되,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후속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 함 • 인터넷 TV조선 : 홈페이지 시사제작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후속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후속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후속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TV조선 :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프로그램 『지난 9월 8일 ‘블랙박스의 배신’ 관련 추가보도』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31일자 23:00) • 인터넷 TV조선 : 『‘블랙박스의 배신’ 관련 추가 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1일자)

2012서울조정1722	(정정청구) 사단법인○○○사랑나눔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1) 『침묵하던 신부님들의 향의 ... “톤즈 아이들 울린 한국 방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1일자) (2) 『‘울지마 톤즈’ 수도회와 KBS 사이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법인이 아프리카 톤즈 브라스밴드 청소년을 초청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723	
(반론청구) 백○○ 對 KBS-1TV	
조 정 대 상	아침마당 프로그램 『〈수요 가족탐구〉 정체불명의 남자와 동거를 하는 팔순의 친정어머니』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8일자 09:30)
신청인주장	‘아침마당’ 가족상담 코너에서 신청인에게 애정 결핍 및 정서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노모의 재혼을 반대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아침마당 프로그램 『〈수요 가족탐구〉 치매 아내 병수발 6년… 자식들도 등을 돌렸어요』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16일자 09:25)

2012서울조정1724~1727	
(매체별 정정청구) 문용린 對 한겨레 ^(1724 정정청구) , 인터넷 한겨레 ^(1725 정정청구) , 오마이뉴스 ^(1726 ~1727 기사별 정정청구)	
조 정 대 상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문용린, 국내최대 사교육업체와 밀착』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2년 12월 7일자 8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7일자) • 오마이뉴스 : (1) 『서울교육감 후보가 사교육업체 연구책임자? 교수출신 문용린 후보, 공무원법 위반 의혹』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7일자), (2) 『교육감 후보 문용린은 사교육업체 회장이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8일자)
신청인주장	서울시 교육감 후보인 신청인이 모 사교육업체와 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한겨레 · 인터넷 한겨레 :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 오마이뉴스 : ▷ 2012서울조정 1726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2012서울조정 1727 - 조정불성립 결정 ※ 이행방법 • 오마이뉴스 :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1)의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8일자 2면) • 인터넷 한겨레 : 『‘문용린, 국내 최대 사교육업체와 밀착’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7일자) • 오마이뉴스 : 『교수 출신 문용린 후보, “공무원법 위반한 사실 없어”』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8일자)

2012제주조정30~33	
(매체별 정정 · 손해청구) (병합) 제주○○중학교 對 제주MBC-TV, 인터넷 제주MBC-TV	
조 정 대 상	• 제주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거꾸로 가는 학교폭력 대책』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30일자 21:00) • 인터넷 제주MBC-TV : 『(리포트) 학교폭력 대책 미흡』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30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학교의 학교폭력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728	(반론청구) 1. 김○○, 2. ○○○○○○對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장애시설 원장이 상습 성폭행”... 전북판 도가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장애시설 원장인 신청인이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기사수정)

2012경기조정109~111	(정정·반론·손배청구) 1. 전국○○노동조합, 2. 전국○○노동조합 ○○○○○○판매지원회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OBS 뉴스 M 프로그램 『‘가려가며 철거’ 논란』 제하의 보도 (2012년 9월 14일자 19:45)
신청인주장	부천시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신청인 단체가 내건 현수막은 집단 반발로 인해 철거를 포기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OBS 뉴스 M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함
이 행 결 과	OBS 뉴스 M 프로그램 『‘전국○○노동조합 불법 현수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3년 1월 22일자 19:45)

2012서울조정1729~1730	(매체별 정정청구) ○○○○파트너스 유한회사對 매일경제, 매경닷컴
조 정 대 상	『‘큰손’ ○○○ 실속은 별로네』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2년 11월 27일자 A23면, 매경닷컴 11월 26일자)
신청인주장	M&A를 전문으로 하는 신청인 회사가 기업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매일경제: 취하 (사유: 정정보도 게재) •매경닷컴: 취하 (사유: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매일경제: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7일자 A25면)

2012서울조정1731	(정정청구) (주)○○○플러스對 인터넷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 보안요원에 좀도둑 갈취 부추겨』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6일자)
신청인주장	대형마트 보안용역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소액상품을 훔친 절도범들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도록 보안요원들을 부추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홈페이지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일자)

2012부산조정47~48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對 울산제일일보
조 정 대 상	(1) 『“불의 덮으려고 정의 잘랐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2일자 1면) (2) 『사사건건 학생번호 학교측엔 미운털』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6일자 1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대학이 음악대학 현악과 교수를 해임한 것은 해당 교수의 비위사실들이 적발

신청인주장	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데도, 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등 각종 부패를 덮기 위해 표적징계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금지,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학교 음악대학 현악과 A교수 해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31일자 3면)

2012서울조정1732	(정정청구) 1. 서울○○○○고등학교, 2. 박○○ 對 MBC-TV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뉴스플러스] 걸려도 그만 비리 사학 철용성』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6일자 20:00)
신청인주장	교육청 감사결과, 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이 학교 신축 공사비를 자신의 빚을 갚는데 썼고 공사과정에서도 비리가 적발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733~1735, 1737~1755, 1757~1767, 1769~1786, 1822	(매체별 순배청구) 송○○ 對 스타엔(1733), 인터넷 일간스포츠(1734), 인터넷 스포츠조선(1735), 스타뉴스(1737), 마이데일리(1738), 프런티어타임스(1739), 쿠키뉴스(1740), 브레이크뉴스(1741), 뉴데일리(1742), 인터넷 MBN(1743), 와우넷(1744), 이투데이(1745), 이데일리(인터넷)(1746), 이뉴스투데이(1747), 매경닷컴(1748), 경제투데이(1749), 뉴시스(1750), 온라인 중앙일보(1751), 세계닷컴(1752), 인터넷 경향신문(1753), 인터넷 일요서울(1754), enews24(1755), 스포츠서울닷컴(1757), 인터넷 스포츠동아(1758), 아시아투데이닷컴(1759), 노컷뉴스(1760), 문화저널21(1761), 티브이데일리(1762), 인터넷 헤럴드경제(1763), 메디컬투데이(1764), 컨슈머타임즈(1765), 아츠뉴스(1766), 아이(이)-이투데이(1767), 인터넷 서울신문(1769), 인터뉴365(1770), TV리포트(1771), SSTV(1772), 오에스이엔(1773), 이버즈(1774), 뉴스천지(1775), NPS통신(1776), CNBNEWS(1777), 조선닷컴(1778), 소비자가이드는신문(1779), 인터넷 한국일보(1780), 조세일보(1781), 엑스포츠뉴스(1782), 더블유스타뉴스(1783), 뉴스핌(1784), 동아닷컴(1785), DKBnews(도깨비뉴스)(1786), 민중의소리(1822)
조 정 대 상	• 스타엔 : 『송○○ 박○○ 결별 폭로,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나 몰라라 하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일간스포츠 : 『○○○○○○ 박○○ 측 입 열었다 “송○○과 관계는…”』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스포츠조선 : 『박○○ 측 “사권적 없다” vs 송○○ 측 “협박 말도 안돼”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스타뉴스 : 『박○○ 측 “송○○ 교제 사실아냐..오해 비롯된 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 마이데일리 : 『박○○ 측, “송○○과 사적인 관계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프런티어타임스 : 『디자이너 송○○, ○○○○○○ 박○○과 결별 “날 찌질이로 만들어줘선 고맙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쿠키뉴스 : 『박○○ “교제 결별 모두 사실 아니다” 공식입장 밝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브레이크뉴스 : 『송○○VS박○○, 엇갈린 주장…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조정 대상

- **뉴데일리** : 『디자이너 송○○, 박○○과는 연인관계 폭로 “날 이용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MBN** : 『박○○ 측, 공식입장 “송○○과는…”』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와우넷** : 『박○○ 측 “송○○과 일적인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3일자)
- **이투데이** : (1) 『디자이너 송○○, ○○○○○ 박○○에게 “날 이용한 건가?”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디자이너 송○○ “이용당했다” 주장…박○○ 소속사 정면반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이데일리(인터넷)** : 『“추호의 거짓 없다” 송○○, 박○○과 과거 폭로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이뉴스투데이** : 『송○○, 박○○ 측 “연인 아니었다” 반박글에 “내가 정신병자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 **매경닷컴** : 『디자이너 송○○, 박○○과 결별폭로 “나를 존중해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경제투데이** : 『박○○ “100% 사실 아냐” vs 송○○ “추호의 거짓 없다”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뉴스스** : 『가수 박○○, 디자이너 송○○ 옛 애인?…11세 연상』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온라인 중앙일보** : (1) 『송○○ vs 박○○, 엇갈린 진실 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측 “열애설 부인한 박○○ 어이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일자)
- **세계닷컴** : (1) 『송○○, 박○○과 결별 글 … “내가 쉬운 여자였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박○○과 결별 폭로…상대는 “사실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디자이너 송○○과 결별 해프닝 … “100% 업무적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전 ○○○○○ 멤버 박○○, 11살 연상녀와 염문설 휩싸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박○○ 해명 “송○○과 연인 사이 아니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일요서울** : 『박○○ 공식입장, “100% 업무적인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enews24** : (1) 『박○○ 측 반박 “송○○과 교제 No! 일방적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박○○ 엇갈린 주장 “100% 아니다 vs 교감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측 “송○○, 심경글 공개 후 연락해왔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박○○ 결별 심경글 끝내 삭제 “정신병자 취급 마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스포츠서울닷컴** : (1) 『디자이너 송○○, ○○○○○ 박○○과의 결별 폭로 “날 이용만하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송○○ 결별폭로에 어이상실 “일적인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연인’ 폭로 vs 박○○ ‘동료’ 반박,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측 “송○○과 교제? 100% 사실 아니다.” 공식 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가수 박○○ “사적 친분 없다” vs 디자이너 송○○ “거짓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송○○, 고무줄 나이 … ‘박○○과 11세 차이? 마흔 훌쩍?’』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7) 『‘박○○ 루머’ 송○○ “37세 맞다! 40대 논란 억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8) 『[위클리 트러블메이커] 패션디자이너 송○○은 왜 박○○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4일자)

조 정 대 상

- **인터넷 스포츠동아** : (1) 『박○○ “송○○, 연인관계로 교체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심경 “정신병자 취급 당했다” vs 박○○측 “교제 100% 아냐”…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 ‘박○○ · 송○○ 결별 파문’ 박○○ “100% 업무적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연예 뉴스 스테이션] 송○○ “박○○ 나를 이용”…박○○ “교제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 **아시아투데이닷컴** : (1) 『박○○과의 관계 폭로한 디자이너 송○○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해명 해명글 “막무가내 정신병자 취급” … “난 환상속 사람도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측 “송○○과 친분은 있지만 사귀는 것은 100% 아냐” 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박○○과의 관계 폭로 “난 대체 너에게 뭐였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5) 『차○○ : “我们只是好朋友, 绝对不是恋人关系”』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노컷뉴스** : (1) 『송○○ 한밤의 폭로…박○○ 측 “오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측 “송○○과 업무적 관계일 뿐” 공식입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문화저널21** : (1) 『디자이너 송○○, 박○○과 도대체 무슨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 ‘박○○과 연인 관계 폭로한’ 송○○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해명 “송○○과 열애? 말도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티브이데일리** : (1) 『디자이너 송○○, 박○○과 결별했다? “마음만은 확실한 연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2) 『박○○ 공식입장, “송○○과 교제 절대 아냐” 적극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심경 “막무가내로 정신병자 취급, 추호의 거짓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헤럴드경제** : (1) 『송○○, 박○○과 교제설 “내가 뭘 바라고 헐박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지인, 송○○ 겨냥 “스토커가 사랑은 아냐”…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 박○○관 결별 폭로 “난 이용당했다” 파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측 “디자이너 송○○과 친분 있지만 교제는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5) 『송○○, 박○○ 해명에 재반박 “정신병자 취급”』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박○○ 측 “송○○ 디자이너와 교제? 사적인 교류 없었다” 부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메디컬투데이** : (1) 『송○○, 박○○관 연인관계와 결별 폭로 “이용만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해명, “송○○과 연인관계 아니었다..오해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공식입장 “송○○과의 친분은 사실.. 교제는 100%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퀵스터타임즈** : (1) 『송○○, 박○○관 연인관계와 결별 폭로 “이용만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2) 『박○○ 해명, “송○○과 연인관계 아니었다..오해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9일자), (3) 『송○○ “다 갚은건가 이 정도면?” ‘오썸’… 박○○과 대체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지인들 “그X 사진위에 살충제” “기자 나부령이들” 댓글 실시간 난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송○○ 폭로에 박○○ 드디어 입 열었다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송○○ “말할 가치도 없는…” 결별 폭로 이어 격앙된 심경까지 ‘폐북’ 관심 집중』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아츠뉴스** : (1) 『송○○, ○○○○○ 박○○과 연인관계 폭로 “날 이용했다”』 제하의 기사

조정대상

- (2012년 10월 30자), (2) 『박○○ 공식입장 “송○○과 연인? 업무적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박○○ 해명에 분노 “날 정신병자 취급하다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내가 박○○ 팬이라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박○○과 연인관계 폭로한 ‘송○○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아이(이)-이투뉴스** : 『 ‘사귀었다’ 는 송○○ … ‘아니다.’ 라는 박○○,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서울신문** : (1) 『송○○ 심경, “내가 이용하기 쉬운 여자?” 박○○과 연인관계 폭로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공식 입장,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송○○과 엇갈린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뷰365** : (1) 『디자이너 송○○, 박○○관 결별 폭로 “난 대체 뭐였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디자이너 송○○, 박○○ 측에 “날 정신병자 취급하다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디자이너 송○○과 결별설 공식 입장 “업무 관계였을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TV리포트** : (1) 『송○○, 박○○관 교제? “나 이용한거냐?” 울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vs 박○○, 연인? 동료? 엇갈린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디자이너 송○○, 박○○ 반박에 추가 심경토로 “착각이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공식입장, “송○○과 교제 절대 아냐…비즈니스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SSTV** : (1) 『박○○ 송○○과 연인사이?, SNS 글 파문 … ‘진실공방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심경, 박○○ 연인관계 부인에 다시 글 올려 ;추호의 거짓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오에스이엔** : (1) 『박○○ 측 “교제 100% 사실 아냐” vs 송○○ “착각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측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당당』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측 공식입장 “교제 사실 100%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11세연상 디자이너, 박○○과 결별 폭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박○○, 예정대로 내일(31일) 일본 출국 … “활동 전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이버즈** : 『송○○ 심경,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 **뉴스천지** : (1) 『디자이너 송○○, ○○○○○ 박○○과 결별 폭로 “내가 쉬운 사람이었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박○○ 해명에 불쾌 “정신병자 취급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NPS통신** : 『 ‘연인관계’ 송○○ vs ‘일적관계’ 박○○, 진실공방 “주거니 받거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CNBNEWS** : (1) 『송○○, 열애설 부인에 “내가 박○○ 팬? 정신병자 취…”』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송○○과 사귀지 않았다” 열애설 부인…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박○○에게 버림받았다” 연인관계 폭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조선닷컴** : (1) 『가수 박○○ 11살 연상 디자이너와 열애설…소속사 “사실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송○○과 교제 사실무근 … ‘업무적 관계’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심경, “막무가내 정신병자 취급” 논란 증폭』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과의 열애 · 결별설 암시한 디자이너 송○○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조 정 대 상

- **소비자기만드는신문** : (1) 『송○○, 박○○과의 열애와 결별 폭로 “두 사람에게 무슨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해명글 논란 “협박이라니?... 다 같은건가? 이정도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측 송○○ 교제 해명 “업무적인 교류는 사실이지만..”』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한국일보** : (1) 『박○○VS송○○, 연애는 혼자하나...공방전의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측, “송○○과 교제? 사실이나 업무적인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정신병자 취급하지 마라” 박○○ 측 반박에 “분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스캔들 진실공방...송○○ 측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박○○ “송○○과 교제? 100% 사실 무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박○○ 측, “송○○ 교제NO, 핸드폰 꺼놓은 것 오해”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7) 『박○○과 연인관계 폭로한 디자이너 송○○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8) 『송○○ 박○○과의 관계는 결국...』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조세일보** : (1) 『박○○ 공식입장, “송○○과 교제설, 사실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해명글,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엑스포츠뉴스** : (1) 『송○○ 디자이너, 박○○과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측, 송○○ 결별 폭로글 해명 “친하게 지내는 사이일 뿐, 오해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 공식입장, “송○○과 교제 100% 사실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박○○에 분통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다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더블유스타뉴스** : 『박○○ 공식입장 “100% 오해” vs 송○○ 반박 “정신병자 취급에 협박까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뉴스핌** : (1) 『박○○, 송○○과 관계 논란 속 일본 출국...“예정된 일정 소화”』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측, 공식입장 “100% 사실무근...송○○과는 업무적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내가 쉬운 사람이었나” 비밀관계 폭로, 박○○과 대체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해명 “송○○ 업무상 관계...연인주장은 혼자만의 착각”』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송○○ 박○○에 분노?...“막무가내 정신병자 취급...거짓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박○○과 비밀열애 폭로한 송○○ 누구?...아이돌 ‘비주얼 디렉터’ 활동』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동아닷컴** : 『아이돌 가수-11세 연상 女 디자이너 ‘열애설’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DKBnews(도깨비뉴스)** : (1) 『송○○, 박○○ 겨냥 “날 찌질이로 만들어줘서 고맙다”...결국 삭제』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측 “송○○과 100% 업무적인 관계... 오해없길”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나는 박○○ 팬 아니라... 정신병자 취급하지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민중의소리** : (1) 『박○○ 공식입장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 살펴보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심경, 완벽하게 상반된 두 주장...배신인가 모함인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심경, 모조리 사라진 관련글 또다른 심경 변화?』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폭로 ... ‘회색 날개’ 달고 등장했던 그와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5) 『송○○ 박○○ 논란, 인신공격으로 번져...네티즌 “성숙한 자세” 요청』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6) 『송○○ 반박, “나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7)

조 정 대 상	『송○○ 심경, “비주얼 디렉터 한 적 없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8) 『송○○ 박○○, 연인포스 느껴지는 이별편지…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9) 『송○○ 심경고백 “서운함 넘어 배신감마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10) 『송○○ 박○○, 그녀의 디자인 옷을 즐겨 입어… 한때 패션쇼 모델로 활약』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스타엔 · 인터넷 스포츠조선 · 스타뉴스 · 마이데일리 · 쿠키뉴스 · 브레이크뉴스 · 뉴데일리 · 인터넷 MBN · 와우넷 · 이투데이 · 이데일리(인터넷) · 이뉴스투데이 · 매경닷컴 · 경제투데이 · 뉴시스 · 세계닷컴 · 인터넷 경향신문 · 인터넷 일요서울 · enews24 · 스포츠서울닷컴 · 인터넷 스포츠동아 · 아시아투데이닷컴 · 노컷뉴스 · 문화저널21 · 티브이데일리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메디컬투데이 · 컨슈머타임즈 · 아츠뉴스 · 아이@-이투뉴스 · 인터넷 서울신문 · 인터뷰365 · TV리포트 · SSTV · 오에스이엔 · 이버즈 · 뉴스천지 · NPS통신 · CNBNEWS · 조선닷컴 · 소비자만드는신문 · 인터넷 한국일보 · 조세일보 · 엑스포츠뉴스 · 더블유스타뉴스 · 뉴스핌 · 동아닷컴 · DKBnews(도깨비뉴스) · 민중의소리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인터넷 일간스포츠 · 프런티어타임즈 · 온라인 중앙일보 :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736, 1818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스포츠경향, 네이버
조 정 대 상	『박○○ “송○○ 연인 아니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756, 1816~1817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조이뉴스24 ⁽¹⁷⁵⁶⁾ , 네이버 ⁽¹⁸¹⁶⁾ , 다음 ⁽¹⁸¹⁷⁾
조 정 대 상	(1) 『박○○ 측, “송○○과 결별? 사실무근 … 일적인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측 “송○○은 업무적 관계 … 오해 없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768, 1812~1813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오마이뉴스 ⁽¹⁷⁶⁸⁾ , 네이버 ⁽¹⁸¹²⁾ , 다음 ⁽¹⁸¹³⁾
조 정 대 상	『박○○ 측 공식입장 “디자이너 송○○과 업무적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787~1791	(매체별 손해청구) 박○○ 對 조선일보 ⁽¹⁷⁸⁷⁾ , 조선닷컴 ⁽¹⁷⁸⁸⁾ , 네이버 ⁽¹⁷⁸⁹⁾ , 네이트 ⁽¹⁷⁹⁰⁾ , 다음 ⁽¹⁷⁹¹⁾
조 정 대 상	『감옥서 18개월 기른 둘째와 헤어지던 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못난 엄마 되지말자고』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2년 11월 14일자 11면, 조선닷컴·네이버·네이트·다음 11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여성 재소자인 신청인이 수감 중 출산한 자녀를 친정으로 보낸 사연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혼 사실 등 사생활까지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선일보·조선닷컴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손해배상 100만 원 (2013서울중재1~2(병합))] • 네이버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792~1793	(매체별 반론청구) 장○○ 對 SBS-TV, SBS
조 정 대 상	• SBS-TV :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139회 - 황혼이혼을 강요한 법사, 아버지는 왜 그의 말에 인생을 거나?』 제하의 보도 (2012년 10월 12일자 20:50) • SBSi : 『황혼이혼을 강요한 법사, 아버지는 왜 그의 말에 인생을 거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2일자)
신청인주장	철학원과 사찰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신도에게 황혼 이혼을 강요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SBSi : 홈페이지 내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게시판의 초기화면 전체기사 목록 중간 이상 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황혼이혼 강요한 법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SBSi 2013년 1월 4일자)

2012서울조정1794	(정정청구) 최○○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최○○ 잠적, 박근혜 실세참모인 최○○도 잠적』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3일자 11면)
신청인주장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참모인 신청인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잠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795	(정정청구) 영농조합법인 ○○○○○○ 對 jbc
조 정 대 상	미각스캔들 프로그램 『40회 - 불멸의 청국장』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4일자 23:00)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하는 청국장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미각스캔들 프로그램 『44회』 제하의 보도 (2012년 12월 22일자 23:00)

2012충북조정50	(본문청구) ○○○○병원 對 충청매일
조 정 대 상	『멸절한 무릎 수술 후 적반하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6일자 3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병원이 멸절한 다리를 수술했고 이 수술의 봉합을 무자격 간호조무사가 시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CCTV 화면 사진 또한 동의 없이 게재되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부산조정49~50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부산일보, 무비조이
조 정 대 상	• 인터넷 부산일보 : 『송○○ “내가 쉬운 사람”에 박○○ “오해! 일적 만남뿐 왜 이런 글?”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무비조이 : (1) 『디자이너 송○○, 그룹 ○○○○○ 멤버 박○○ 비밀 연예폭로 파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민 공식입장 보도 자료 발표, 디자이너 송○○과 연인 관계 아닌 업무적 관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송○○, 박○○ 측에 “막무가내로 정신병자 취급이라니, 거짓말 안한다” 반박』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측 송○○ 폭로에 연인 관계 같은 사이 아니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대구조정29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송○○ 박○○ ‘누구 말이 맞아?’ … 송○○ “비밀 연애” VS 박○○ “교제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경기조정112~113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중부일보,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 인터넷 중부일보 : 『가수 박○○, 디자이너 송○○과 열애설 공식 입장 “단지 업무관계였을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경기일보 : 『박○○ 공식입장 “송○○과 교제? 업무적인 관계일 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대전조정51~53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대전일보닷컴 ⁽⁵¹⁾ , 인터넷 중도일보 ⁽⁵²⁾ , 인터넷 충청투데이 ⁽⁵³⁾	
조 정 대 상	• 대전일보닷컴 : (1) 『송○○ 박○○에 “원할 때만 날 찾고 이용했다” 호소하더니 결국...』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공식입장 “송○○과 몇 번 만나긴했지만...”』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중도일보 : (1) 『박○○과 스캔들 폭로한 송○○ ‘추호의 거짓도 없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 송○○과는 업무상 관계일뿐.. 연인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 인터넷 충청투데이 : 『디자이너 송○○ “박○○과 열애” VS 박○○ 교제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충북조정51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충청일보	
조 정 대 상	『디자이너 송○○, 박○○과 결별 폭로 ... ‘도대체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경기조정114	
(손배청구) 임○○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시화MTV 광역교통개선...표지판 등 미설치』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14일자)
신청인주장	시화 MTV 광역교통개선의 일환으로 공사중인 도로의 안전시설 미비에 대한 신청인과의 인터뷰에서 신청인의 직장 및 성명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처리결과 불이행
2012경기조정115	
(정정청구) 성남시 對 성남일보	
조 정 대 상	『성남시, 대선 앞두고 민간단체 동향 파악 ‘논란’』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간단체의 동향 파악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간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성남시, 대선 앞두고 민간단체 동향파악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15일자)
2012서울조정1796	
(손배청구) 강○○ 對 프레스비이플	
조 정 대 상	『○○, 박근혜 당선 축하인사는 노출?』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0일자)

신청인주장	특정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신청인의 알몸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2012서울조정1797~180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 (병합) (사)한국○○○○○○가구공방협회 對 나무신문, 인터넷 나무신문
조 정 대 상	『‘분별없는 산림청’ 예산지원 논란』 제하의 기사 (나무신문 2012년 11월 12일자 3면, 인터넷 나무신문 11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협회가 주최하는 박람회예 산림청의 녹색자금이 지원된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나무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인터넷 나무신문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분별없는 산림청 예산지원’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나무신문 2013년 1월 14일자 3면)

2012서울조정1801~1802	(매체별 손배청구) 송○○對 네이버, 뉴스1 코리아
조 정 대 상	•네이버 : (1) 『○○○○○○ 박○○ “송○○ 일적으로 만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송○○, 결별설 설전』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뉴스1 코리아 : 『○○○○○○ 박○○ “송○○ 일적으로 만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2서울조정1803~1804	(매체별 손배청구) 송○○對 데일리안, 네이버
조 정 대 상	•데일리안 : (1) 『송○○ “내가 정신병자?” vs 박○○ “100% 교제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박○○의 11살 연상녀’ 송○○, 누구길래 이런 폭로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네이버 : (1) 『‘비밀연애 폭로’ 송○○ vs ‘전면부인’ 박○○, 더 최악의 쪽은?』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송○○ 폭로 논란’ 박○○, 활동 못할 이유가…일본 스케줄 위해 출국』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 『‘박○○의 11살 연상녀’ 송○○, 누구길래 이런 폭로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송○○ “내가 정신병자?” vs 박○○ “100% 교제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805~1807	(매체별 손배청구) 송○○對 아시아경제닷컴 ⁽¹⁸⁰⁵⁾ , 네이버 ⁽¹⁸⁰⁶⁾ , 다음 ⁽¹⁸⁰⁷⁾
조 정 대 상	(1) 『“박○○ 만났단 ‘송○○’ 일 커지더니 결국”』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조 정 대 상	(2)『박○○ 공식입장 “송○○과 친분 있지만 교제 아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송○○ “박○○ 협작? 내가 뭘 바라고…”』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 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808~1809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스포츠한국, 네이버	
조 정 대 상	(1)『박○○, 열애설 폭로에 해명… “팬들은 진실 알 것”』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송○○, 박○○ 측 발언에 “날 정신병자 취급 하지 마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송○○, SNS에 박○○과 결별 암시…박○○ 측 ‘사실무근’』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4)『○○○○○○ 박○○ 교제설 논란 덮고 국내 컴백 집중』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1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 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810~1811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인터넷 일요신문, 다음	
조 정 대 상	(1)『박○○ 공식입장, “친분과 업무적 관계는 인정, 교제설은 100% 부인”』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 ‘비밀관계 폭로’ 송○○ “박○○ 팬들 이해…열심히 공부하시라” 심경 고백』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송○○ vs 박○○ 상반된 주장 입체분석 … ‘송○○ 치명적 오류는 소송시점’』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 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814~1815 (매체별 손배청구) 송○○ 對 네이버, 다음	
조 정 대 상	『○○○○○○ 박○○, 11살 연상女 결별 폭로 논란 “이용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3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 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819 (손배청구) 송○○ 對 네이버	
조 정 대 상	(1)『 ‘논란’ 박○○, 예정대로 출국…일본 활동 위해』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2)『박○○, 송○○과 교제 사실무근 … ‘업무적 관계’ 해명』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3)『송○○ 심경, “막무가내 정신병자 취급” 논란 증폭』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820	(손배청구) 송○○對 다음
조 정 대 상	『박○○ 측, 송○○ 결별 폭로글 해명 “친하게 지내는 사이일 뿐, 오해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서울조정1821	(손배청구) 송○○對 다음
조 정 대 상	『박○○ “사실 무근” VS 송○○ “정신 병자 취급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30일자)
신청인주장	패션 디자이너인 신청인이 SNS를 통해 모 가수와의 결별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2충북조정52~55	(매체별 반론 · 손배청구) 1. (사)○○○○○○부모회 ○○지회, 2. 한○○對 인터넷 충청매일, 인터넷 충청타임즈
조 정 대 상	• 인터넷 충청매일 : 『“부의장님, 행감서 지정한 일 두고봅시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9일자) • 인터넷 충청타임즈 : 『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 신변보호 요청』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9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지회가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회원수를 부풀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이행방법 • 인터넷 충청매일 · 인터넷 충청타임즈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충청매일 : 『“부의장님, 행감서 지정한 일 두고봅시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6일자) • 인터넷 충청타임즈 : 『“공주 시의회 이창선 부의장 신변보호요청”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3일자)

2012경남조정80	(손배청구) 박○○對 인터넷 경남신문
조 정 대 상	『여름 피서 ‘거창 달빛고운 마을(월성 · 별곡마을)’ 로 오세요』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여름 피서지로 각광받는 캠핑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촬영한 가족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2경기조정116~119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정○○ 對 여주시민신문, 인터넷 여주시민신문	
조 정 대 상	『공무원 J씨 둘러싼 의혹들』 제하의 기사 (여주신문 2012년 9월 25일자 1면, 인터넷 여주신문 9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연예협회 여주지회의 군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하여 공무원인 신청인이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정정청구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 손배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 이행방법 : 인터넷 여주시민신문 홈페이지 사회·정치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공무원 J씨 둘러싼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여주신문 2013년 1월 29일자 2면, 인터넷 여주신문 1월 29일자)

2012서울조정1823~1826 (매체별 정정·반론청구) ○○ 주식회사 對 동아일보,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엔터리 자궁암 키트... 2007년 이후에는 검사 11만명 다시 받아야』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2년 9월 28일자 A12면, 동아닷컴 9월 2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업이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를 전국 산부인과에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이행방법 : 동아닷컴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3일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바이오벤처기업 ○○’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3년 1월 19일자 A12면, 동아닷컴 1월 19일자)

2012서울조정1827~1830 (매체별 정정·손배청구)(병합) 전○○ 對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1) 『“풀이 살아나 붙었다” “건너온 다리 불살라” ... 선거의 해 ‘말’이 춤쳤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A6면), (2) 『‘노인암살단’ 나올 거라는 좌파 역사학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A10면), (3) 『오늘의 100자평』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A37면), (4) 『萬物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6일자 A38면) • 조선닷컴 : (1) 『‘노인암살단’ 나올 거라는 좌파 역사학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2) 『[만물상] 노인 암살단』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3) 『[2012 말말말] “풀이 살아나 붙었다” “건너온 다리 불살라”... 선거의 해 ‘말’이 춤쳤다』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4) 『[오늘의 100자평] ㅅ, 비서실장에 의외의 경제통...친

조 정 대 상	박·영남은 없었다 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5) 『[팔면봉] 親朴 실세들, 일제히 낙향 또는 칩거 모드 외』 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역사학자인 신청인의 트윗글이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2서울조정1831~1832	(정정·반론청구)(주)○○○ 對 매경ECONOMY
조 정 대 상	『LTE 경쟁 밀리고 밖에선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15일자 16~17면)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민영화 10년간 순이익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와 이○○ ○○ 회장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3일자 17면)

제2장

중재사건 전체 목록

2012서울중재1		(정정청구) ○○건설(주) 對 네이버
중 재 대 상	『연천, 수해복구 특정업체 수의계약 밀어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는 연천군 수해복구사업을 경쟁입찰시스템에 의해 수주했는데, 연천군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후속보도) ※ 이행방법 : 기사제공언론사(뉴시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 관련 후속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후속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함, 홈페이지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후속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연천, 수해복구 특정업체 수의계약 밀어주기 의혹” 관련 후속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2012서울중재2~5		(매체별 반론청구) 사단법인 ○○○○○협회 對 네이버 ⁽²⁾ , 네이트 ⁽³⁾ , 다음 ⁽⁴⁾ , 야후 ⁽⁵⁾
중 재 대 상	『소화제 먹고 1년2개월 총 한 방 못 쓰는 강○○』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3일자)	
신청인주장	모 사격선수가 도핑 테스트에 걸려 자격정지를 당한 사건은 반하사심탕에 도핑금지약물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약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처방인 반하사심탕 자체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중앙일보)로부터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 함,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 모음' 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중앙일보)로부터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함,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중앙일보)로부터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함, 뉴스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야후 : 기사제공언론사(중앙일보)로부터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함, 뉴스홈에 마련된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한약 처방 '반하사심탕', 도핑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3일자)	
2012서울중재6~8		(매체별 정정청구) 주식회사 ○○○리얼에스테이트코리아○○ 對 네이버 ⁽⁶⁾ , 네이트 ⁽⁷⁾ , 다음 ⁽⁸⁾
중 재 대 상	『○○○○도 도시개발 가능, 특혜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6일자)	

신청인주장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신청인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함,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함, 뉴스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시함, 뉴스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 특혜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네이버 · 네이트 2012년 2월 2일자, 다음 2월 3일자)

2012서울중재9~13	(매체별 반론청구) 사단법인 대한배구협회 對 네이버 ⁽⁹⁾ , 네이트 ⁽¹⁰⁾ , 다음 ⁽¹¹⁾ , 드림위즈 ⁽¹²⁾ , 야후 ⁽¹³⁾
중 재 대 상	『무리한 회관 매입, 배구협회 파산 위기』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9일자)
신청인주장	대한배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의 승인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배구회관을 매입,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 드림위즈 · 야후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경향신문)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중재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시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뉴스홈에 마련된 <고침기사모음> 코너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 함
이 행 결 과	『“무리한 회관, 배구협회 파산 위기” 보도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31일자)

2012서울중재14	(정정청구) 김○○ 對 다음
중 재 대 상	『청와대 근무 공무원 술값 시비 끝에 체포』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7일자)
신청인주장	청와대 파견 공무원인 신청인이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기사제공언론사(YTN)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정정보도문을 전송받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정정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고침> ‘청와대 행정관 사칭 소방공무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2012서울중재15~21	(매체별 추후청구) 남○○ 對 연합뉴스 ⁽¹⁵⁾ , 노컷뉴스 ⁽¹⁶⁾ , 네이트 ^(17, 21) , YTN ⁽¹⁸⁾ , 인터넷 YTN ⁽¹⁹⁾ , 네이버 ⁽²⁰⁾
중 재 대 상	•연합뉴스 : 『안티사이트 폐쇄 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3일자)

중재대상	• 노컷뉴스·네이트 : 『‘안티사이트 폐쇄’ 기업체에 댓가 요구했다 구속』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4일자) • YTN : YTN24 프로그램 『안티사이트 폐쇄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보도 (2004년 2월 4일자 07:00, 08:00) • 인터넷 YTN·네이버·네이트 : 『안티사이트 폐쇄조건으로 돈 요구』 제하의 기사 (2004년 2월 4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모 출판사의 안티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았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 이행방법 • 연합뉴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에 24시간 이상 추후 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중재대상기사 하단부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를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노컷뉴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사회면에 24시간 이상 추후 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중재대상기사 하단부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되 중재대상기사를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추후보도문이 포털 네이트의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전송·조치 함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 (노컷뉴스, 인터넷 YTN)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 보도문을 전송받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홈페이지 뉴스홈에 마련된 ‘고침기사모음’ 코너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 함 • YTN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YTN24 프로그램에서 1회 추후보도, 뉴스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본문을 낭독하고, 추후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처리, 인터넷 YTN의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및 검색되도록 추후 보도문 전송 함 • 인터넷 YTN : 결정문을 송달받고, YTN이 추후보도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인터넷 YTN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추후보도문 게재, 제목 클릭 시 추후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검색되도록 함, 이후에는 중재대상기사의 하단부에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며, 중재대상기사를 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삭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추후보도문이 포털 네이버 및 네이트의 뉴스섹션에서 검색되도록 전송·조치 함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YTN)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추후보도문을 전송 받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추후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홈페이지 뉴스홈에 마련된 ‘고침기사모음’ 코너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시 함
이행결과	• 연합뉴스 : 『안티사이트 운영 남모씨 8년만에 무죄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5일자) • 노컷뉴스·네이트 : 『‘안티사이트로 금품 요구’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4일자)

이 행 결 과	• YTN : YTN24 프로그램 『안티사이트 운영 혐의 남 모 씨 무죄 확정』 제하의 보도 (2012년 5월 27일자 07:00) • 인터넷 YTN : 『안티사이트 운영 혐의 남 모 씨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7일자) • 네이버 · 네이트 :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2년 5월 27일자)

2012서울중재22~23	(매체별 정정청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 對 네이버, 다음
중 재 대 상	『김두관 정부부지사 출신 강○○ 진보당 黨대표 후보로 급부상』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1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통합진보당 당대표 선거에서 강○○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조선닷컴)로부터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조선닷컴)로부터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고침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함
이 행 결 과	『민주노동 ○○본부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네이버 2012년 7월 3일자, 다음 7월 2일자)

2012서울중재24~25	(정정 · 손해청구) 주식회사○○시스템 對 CNBNEWS
중 재 대 상	『○○시스템 남○○-○○ 형제 부도덕성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8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회사가 기업사냥 · 횡령 등 부도덕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전체 목록 중간 이상)에 48시간 동안 게재, 제목 클릭 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중재대상기사의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이후에는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시스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8일자)

2012서울중재26	(손배청구) 1. 이○○, 2. 김○○ 對 인터넷 서울경제
중 재 대 상	『[대한민국은 지금 세일중] 백화점 역대 최장기 세일...마트도 50% · 최저가 할인전』 제하의 기사 (2012년 6월 24일자)
신청인주장	백화점 장기 세일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물건을 구경하는 신청인들(예비 신랑신부)의 모습을 몰래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손해배상 각 100만 원, 이행강제금)

2012제주중재1~2	(정정·손배청구) 허○○ 對 다음
중재대상	『6명 구속! 도대체 제주경마장에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경마 승부조작으로 구속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보도문을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뉴스 홈페이지 마련된 '고침기사 모음' 난에 보도문을 게시함
이행결과	『[정정보도문]경마 승부조작 가담, 기수 허 모 씨 무관』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6일자)

2012서울중재27~31	(매체별 정정청구) ○인터내셔널(주) 對 네이버 ⁽²⁷⁾ , 네이트 ⁽²⁸⁾ , 다음 ⁽²⁹⁾ , 야후 ⁽³⁰⁾ , 줌닷컴 ⁽³¹⁾
중재대상	『'○○' 종종 끊긴 이유... 원인 이거였어?』 제하의 기사(2012년 7월 20일자)
신청인주장	4월모 모바일 메신저 중단 사태의 원인이 신청인 회사의 서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디지털타임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공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 반론 추후 보도 기사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디지털타임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언론중재법 피해구제보도'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디지털타임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 줌닷컴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디지털타임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이행결과	『'○○○○ 장애'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3일자)

2012서울중재32~34	(매체별 정정청구) 전라북도교육청 對 네이버 ⁽³²⁾ , 네이트 ⁽³³⁾ , 다음 ⁽³⁴⁾
중재대상	『“교사도 방학때 학생들처럼 학교 안 나와도 된다” ... 공문까지 변조한 전북교육청』 제하의 기사(2012년 7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전라북도교육청이 교과부의 공문을 변조하여 방학 중 교사들에게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처 리 결 과	※ 이행방법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동아닷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동시에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하고,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동아닷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동시에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고,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동아닷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동시에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하고,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함
이 행 결 과	『전북교육청 교원복무지침 공문 변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16일자)

2012서울중재35~36 (매체별 정정청구) 고용노동부 對 네이버, 다음	
중 재 대 상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뜸』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2일자)
신청인주장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 보도 기사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유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2012서울중재37~38 (매체별 정정청구) 고용노동부 對 네이버, 다음	
중 재 대 상	『전두환 때보다 더해 ... 노동부 장관 '멘붕'』 제하의 기사 (2012년 7월 16일자)
신청인주장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 기사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여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 함
이 행 결 과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유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9월 28일자)

2012서울중재39~42 (매체별 정정청구) 한국보건산업연구원 對 네이버 ⁽³⁹⁾ , 네이트 ⁽⁴⁰⁾ , 다음 ⁽⁴¹⁾ , 야후 ⁽⁴²⁾	
중 재 대 상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상한' 해고』 제하의 기사 (2012년 8월 22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직원을 해임하였으나 내부비리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네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언론중재법'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 야후 : 기사제공언론사(노컷뉴스)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야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야후! 미디어 공지사항' 난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 행 결 과	『'이상한 해고'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네이버 · 다음 2012년 9월 24일자, 네이트 10월 24일자, 야후 9월 27일자)

2012서울중재43~44	
(매체별 정정청구) 문○○對 월간조선,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중 재 대 상	『“국회의원들은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정○○)』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2년 9월 1일자 제382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9월 1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이 ○○건설 회장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도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내용 : 정정보도) ※ 이행방법 •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홈페이지지시사항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시함, 제목 클릭 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함,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문○○ 전 부산시장의 사전수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월간조선 2012년 11월 1일자 341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11월 1일자)

2012서울중재45~47	
(매체별 반론청구) 한국○○총연맹對 네이버 ⁽⁴⁵⁾ , 네이트 ⁽⁴⁶⁾ , 다음 ⁽⁴⁷⁾	
중 재 대 상	『자유총연맹 ‘국고 유용’ 정황포착 본격수사』 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6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 집행부가 국고를 유용하고, 간부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 기사제공언론사(동아닷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또한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함 •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동아닷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또한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함 •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동아닷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또한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 · 반론 · 추후 보도기사 모음’ 난에도 반론보도문 게시함
이 행 결 과	『○○총연맹 국고 유용 수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일자)

2012서울중재48~53	
중재대상	『매체별 정정·반론청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 네이버 (48~49), 네이트 (50~51), 다음 (52~53)
신청인주장	신청인 기관이 제2대 원장 취임 이후에는 주요보직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연구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각 중재결정 (내용: 정정 및 반론보도) ※ 이행방법 • 네이버: 기사제공언론사(코메디닷컴)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 모음' 난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시 함 • 네이트: 기사제공언론사(코메디닷컴)으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정정기사 모음' 난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 함 • 다음: 기사제공언론사(코메디닷컴)으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함,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홈페이지 뉴스 홈에 마련된 '바로잡습니다' 난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행결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차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3일자)

2012서울중재54~55	
(정정·반론청구) 1. (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최○○ 對 이후	
중재대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 원장, 문화부 보조 사업비 유용 논란』제하의 기사 (2012년 10월 23일자)
신청인주장	신청인 단체가 문화부 지원 사업비를 유용해 원장의 개인비서를 채용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리결과	중재결정 (내용: 반론보도) ※ 이행방법: 기사제공언론사(CNB뉴스)로부터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전송받고, 전송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반론보도문이 뉴스검색기능을 통해 검색되도록 하며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뉴스 홈에 마련된 '뉴스편집실 공지사항' 난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함
이행결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감 지적' 관련 반론보도』제하의 기사 (2012년 12월 5일자)

2012서울중재56~57	(매체별 손해청구)(병합) 김○○ 對 MBC-TV, MBC
중 재 대 상	•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835회 - ‘빔’ 권한는 사회』 제하의 보도 (2012년 11월 25일자) • iMBC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다시보기] 835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25일자)
신청인주장	신원 비공개를 전제로 신청인의 주택담보 대출 사례를 인터뷰 했는데, 실명과 초상을 그대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0만 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및 지역사무소 안내

서울

* 주소 : 100-7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대표전화 : 02) 397-3114
*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 홈페이지 : www.pac.or.kr
*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 : people.pac.or.kr
* 트위터 : www.twitter.com/pac_news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지역

■ 중부본부 ☎ 031)211-9027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인계동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442-835

☎ 031)211-9027, 9022/FAX 031)212-0223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302-2220

☎ 042)525-0778~9/FAX 042)525-0768

충북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 (산남동 657)
엔젤 변호사빌딩 404호 ☎361-160

☎ 043)286-8083, 8081/FAX 043)286-8084

강원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200-030

☎ 033)255-2878~9/FAX 033)255-2872

■ 영남본부 ☎ 051)759-7083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613-120

☎ 051)759-7083~4/FAX 051)759-7093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706-040

☎ 053)763-0020~1/FAX 053)763-0242

경남사무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사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641-826

☎ 055)263-1787, 1780/FAX 055)263-1769

■ 호남본부 ☎ 062)676-0360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503-310

☎ 062)676-0360~1/FAX 062)676-0362

전북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갑영로 72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560-040

☎ 063)288-0010, 0981/FAX 063)288-0980

제주사무소

제주도 제주시 남광복5길 6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690-825

☎ 064)722-3328, 3352/FAX 064)726-3201

2012년도 언론조정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

2013년 4월 30일 제작

2013년 5월 6일 발행

편저_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연구팀

발행_언론중재위원회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 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02)397-3114 • FAX : 02)397-3049
<http://www.pac.or.kr>